



# 한미동맹 70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 한미동맹 70년사

(1953~20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 발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성장에 교두보가 된 동맹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한미동맹 7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 주한미군, 연합방위체제, 국방협력 등 한미동맹을 주요 이슈별로 엮었으며, 동맹 형성의 근간이 되었던 주요 사안별로 그 역사적 맥락과 변천 과정을 깊이 있게 조망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된 『한미동맹 60년사』가 역사를 시간순으로 기술한 종적(縱的) 기록이었다면, 『한미동맹 70년사』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주제별로 기술한 횡적(橫的)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사』는 4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제Ⅰ부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성립된 한미동맹의 변천 과정을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구분하여 다루었습니다. 제Ⅱ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주한미군지위협정, 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 등 주한미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기술하였습니다. 제Ⅲ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에서는 연합방위체제와 군사협력, 북한 위협 관리, 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Ⅳ부 ‘한미동맹과 국방협력’에서는 동맹의 확대되는 국방협력을 해외파병과 포괄적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별 서술방식은

한미동맹 관련 업무담당자들 및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사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각주와 참고자료로 제공된 1차 자료는 명확한 활용 근거와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구소는 『한미동맹 70년사』를 발간함에 있어 특별히 객관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장·절 편성 시부터 군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방부·합참·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학계 전문가의 원고 검토과정을 통해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완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진, 도표, 그림, 인포그래픽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과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과거 70년의 발자취 속에서 역사적 교훈을 도출한 『한미동맹 70년사』는 미래 한미동맹의 추진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가 발간되기까지 원고를 꼼꼼히 검토해주신 정부 관련 부처와 국방부·합참 관계관, 그리고 원고 집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 준 연구소 집필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오 성 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오 성 대

# 목 차

## 머리말

제1장 발간 목적	14
제2장 부(部)별 개관	16

## ■ 제 I 부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

### 제1장 한미동맹의 성립

제1절 한미동맹 성립 이전의 한미관계	20
제2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26

### 제2장 한미동맹의 변천

제1절 냉전기 한미동맹의 변천	42
제2절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변천	50

## ■ 제 II 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제1장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제1절 대북억제력 제공과 전후 재건지원	60
제2절 한국의 자주적 방위력 구축 지원	71
제3절 주한미군 조정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84

### 제2장 주한미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제1절 주한미군지위협정	106
제2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기지환경 개선	124
제3절 자조(自助)·상호원조 및 방위비 분담	137

## ■ 제 III 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 제1장 연합방위체제와 군사협력

제1절 한미안보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	152
제2절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	186
제3절 군사교육과 교리발전	201

제2장 북한 위협 관리	
제1절 북핵위기와 한미공조	217
제2절 핵·미사일 위협과 확장억제	242
제3장 작전통제권 전환	
제1절 작전지휘권 이양의 배경과 과정	262
제2절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71
제3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83

## 제Ⅳ부 한미동맹과 국방협력

제1장 해외파병	
제1절 베트남전쟁 파병	300
제2절 다국적군 평화활동	317
제2장 포괄적 안보협력	
제1절 재해·재난 대비	335
제2절 사이버·우주 협력	341
제3절 방산·과학기술 협력	352
맺음말	367

## 부 록

1. 영어 약어	372
2. 한미관계 연표	379
3. 한미 안보협의체 개최 현황	392
4.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대 주요 직위자	412
5. 한미동맹 주요 합의문 변천 경과	417
6. 한미 주요 국방·군사 조약·각서·약정 목록	453
7. 주한미군 기지 약사	460

참고문헌 463

찾아보기 487

# 표 목차

〈표 1-1〉 6·25 전쟁 당시 남북한 군사력 비교 .....	27
〈표 1-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3가지 조건 .....	55
〈표 2-1〉 1954~1970년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 .....	66
〈표 2-2〉 동아시아전략구상(EASI)과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비교 .....	77
〈표 2-3〉 1971~2000년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 .....	79
〈표 2-4〉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 내용(2006.1.) .....	91
〈표 2-5〉 2000~2022년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 .....	94
〈표 2-6〉 10대 군사 임무전환 .....	101
〈표 2-7〉 한국노무단(KSC)의 창설과 운용 .....	112
〈표 2-8〉 제2차 SOFA 주요 개정내용 .....	119
〈표 2-9〉 미·일 및 미·독 SOFA와의 주요조항 비교 .....	121
〈표 2-10〉 평택기지 요약 .....	134
〈표 2-11〉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요약 .....	146
〈표 3-1〉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구성 .....	154
〈표 3-2〉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 및 전략지시 제1호(요약) .....	177
〈표 3-3〉 1994년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 및 전략지시 제2호 .....	181
〈표 3-4〉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현황 .....	186
〈표 3-5〉 자유의 방패(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차이점 .....	193
〈표 3-6〉 뱀부계획(Bamboo Plan)의 세부 내용 .....	201
〈표 3-7〉 국군의 미 군사교육 기관 수료(졸업) 인원 현황(2022년 기준) .....	208
〈표 3-8〉 미군의 국군 교육기관 교육 수료 인원 현황(2022년 기준) .....	209
〈표 3-9〉 국군의 교리 문헌 정의 .....	213
〈표 3-10〉 대한민국 육군과 미 육군 간 연례교리발전 회의 개최 현황 .....	215
〈표 3-11〉 북한의 핵개발과정(1950년대~1990년대 초반) .....	219
〈표 3-12〉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요내용(1994.10.21.) .....	223



〈표 3-1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내용(1991.12.31.) .....	226
〈표 3-14〉 「9·19 공동성명」의 주요내용(2005.9.19.).....	235
〈표 3-15〉 6자회담의 전체 진행과정(2003~2008년) .....	240
〈표 3-16〉 북한의 핵실험과정(2006~2017년) .....	247
〈표 3-17〉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제원 .....	251
〈표 3-18〉 작전통제권의 변화·전환·논의과정 .....	296
〈표 4-1〉 베트남전쟁 파병 주요 연혁 .....	308
〈표 4-2〉 연도별 베트남전쟁 파병 병력 현황 .....	309
〈표 4-3〉 대대급 이상 부대 작전 현황(파병 이후~1972.12.) .....	313
〈표 4-4〉 국군의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319
〈표 4-5〉 국군의료지원단의 국적별 환자 진료 현황.....	321
〈표 4-6〉 제54차 SCM 공동선언문 중 국방과학기술협력 내용.....	358
〈표 4-7〉 미 국방기술 연구·개발(R&D) 3대 정책방향 .....	359
〈표 4-8〉 한미 연구개발 정보교환 협정 개정내용.....	362

# 사진 목차

〈사진 1-1〉 한미동맹조약 초안 .....	23
〈사진 1-2〉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1953.8.8.) .....	34
〈사진 1-3〉 조약 조인식(1953.10.1.) .....	35
〈사진 1-4〉 조약 서명란 .....	36
〈사진 1-5〉 조약 비준서(1954.11.17.) .....	40
〈사진 1-6〉 제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46
〈사진 2-1〉 미군사고문단의 L-5 엔진정비 교육(1948).....	61
〈사진 2-2〉 제9사단 FTC 훈련지도 .....	63
〈사진 2-3〉 워싱턴 D.C. 한국전쟁 추모의 벽.....	64
〈사진 2-4〉 메타도어 유도탄 .....	69
〈사진 2-5〉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교환각서 서명식 .....	80
〈사진 2-6〉 백곰 시험 발사 .....	82
〈사진 2-7〉 사드체계 .....	98
〈사진 2-8〉 주한미우주군 창설식 .....	99
〈사진 2-9〉 애스컴시티(1950년대) .....	124
〈사진 2-10〉 미군의 텐트 막사(1951) .....	125
〈사진 2-11〉 동작대교 북단이 미8군 골프장 부근에서 잘려있는 모습.....	127
〈사진 2-12〉 주한미군기지이전계획 .....	128
〈사진 2-13〉 한미연합사 창설·이전 기념식 .....	135
〈사진 3-1〉 한미 제1군단(집단) 부대 마크 .....	169
〈사진 3-2〉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 부대 마크 .....	172
〈사진 3-3〉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 마크 .....	174
〈사진 3-4〉 한미연합사단 부대 마크 .....	184
〈사진 3-5〉 포커스 레티나 훈련 .....	188
〈사진 3-6〉 을지 자유의 방패 로고 .....	193
〈사진 3-7〉 독수리연습 .....	196
〈사진 3-8〉 팀스피리트 1983연습 .....	198
〈사진 3-9〉 2023 코브라 골드훈련 .....	200
〈사진 3-10〉 도미 군사유학생 환송식 .....	205
〈사진 3-11〉 초창기 국군의 교범 .....	210
〈사진 3-12〉 군사 기본교리 .....	212
〈사진 3-13〉 영변의 5MW 원자로 .....	218

〈사진 3-14〉 영변 핵시설의 내부모습 .....	232
〈사진 3-15〉 ‘은하-3호’ 발사(2012.4.) .....	244
〈사진 3-16〉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2016.4.) .....	248
〈사진 3-17〉 제2차 KIDD 회의(2012.9.) .....	252
〈사진 3-18〉 제1차 핵협의그룹 회의(2023.7.18.) .....	256
〈사진 3-19〉 국군의 F-35A 스텔스기 .....	258
〈사진 3-20〉 국군의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 .....	259
〈사진 3-21〉 무기를 검열하는 로버츠 고문단장(1949.9.) .....	265
〈사진 3-22〉 맥아더 장군에게 전달되는 유언기 .....	267
〈사진 3-23〉 주한미군 제7사단 철수식(1971.3.) .....	274
〈사진 3-24〉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식(1978.11.7.) .....	276
〈사진 3-25〉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신고(1994.12.1.) .....	281
〈사진 3-26〉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02.12.) .....	283
〈사진 3-27〉 전략적 전환계획 서명(2007.6.28.) .....	285
〈사진 3-28〉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0.10.8.) .....	287
〈사진 3-29〉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4.10.23.) .....	290
〈사진 3-30〉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8.10.31.) .....	292
〈사진 3-3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22.11.3.) .....	295
〈사진 4-1〉 한미정상회담(1961.11.14.) .....	301
〈사진 4-2〉 제1이동외과병원 창설식 .....	302
〈사진 4-3〉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	303
〈사진 4-4〉 「브라운 각서」 국문 및 영문 .....	306
〈사진 4-5〉 제2단계 철수 장병(수원비행장) .....	311
〈사진 4-6〉 중대전술기지 .....	312
〈사진 4-7〉 맹호6호작전 시찰 .....	314
〈사진 4-8〉 응급 구조 활동 .....	321
〈사진 4-9〉 비마부대 C-130 수송기 .....	322
〈사진 4-10〉 故 윤장호 하사 시신을 동맹군과 함께 운구하는 모습 .....	323
〈사진 4-11〉 해성부대 수송물자 적재 .....	324
〈사진 4-12〉 청마부대 한미 합동 화물탑재 .....	325
〈사진 4-13〉 다국적군 장병 진료활동 .....	326

〈사진 4-14〉 한미 공사현장 토의 ..... 327  
 〈사진 4-15〉 경호 작전 임무 ..... 328  
 〈사진 4-16〉 중간 급유소 방벽설치 지원 ..... 330  
 〈사진 4-17〉 제마부대 순회진료 ..... 331  
 〈사진 4-18〉 자이툰부대 경호작전 ..... 332  
 〈사진 4-19〉 미 중부사령관 자이툰부대 방문 ..... 333  
 〈사진 4-20〉 다이만부대 수송지원임무 ..... 334  
 〈사진 4-21〉 국제우주상황 조치연습(2019.9.) ..... 350  
 〈사진 4-22〉 공군 우주작전대대의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 351

## 그림 목차

〈그림 2-1〉 주한미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96  
 〈그림 2-2〉 맞춤형 억제전력(TDS) ..... 104  
 〈그림 3-1〉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구성 ..... 154  
 〈그림 3-2〉 한미군사위원회(MC)의 지휘 관계 ..... 156  
 〈그림 3-3〉 최초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구성 ..... 160  
 〈그림 3-4〉 개편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구성 ..... 161  
 〈그림 3-5〉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편성(1971.7.1.) ..... 170  
 〈그림 3-6〉 한미 제1군단(집단) 작전통제부대(1971.7.1.) ..... 171  
 〈그림 3-7〉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의 지휘체계 ..... 173  
 〈그림 3-8〉 한미연합군사령부 기구도 ..... 178  
 〈그림 3-9〉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체계 ..... 181  
 〈그림 3-10〉 한미 연합연습 명칭 변천 ..... 191  
 〈그림 3-11〉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 250  
 〈그림 4-1〉 주월한국군의 편성 기구도 ..... 307  
 〈그림 4-2〉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은 국가 순위 ..... 342  
 〈그림 4-3〉 연도별 방산수출 수주액 ..... 356  
 〈그림 4-4〉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및 세부기술(30개) 목록 ..... 360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의 부·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 가. 부 : 제 I 부, 제 II 부, 제 III 부...
- 나. 장 :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 다. 절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 라. 항 : 1, 2, 3, ...
- 마. 목 : 가, 나, 다, ...

### 2. 용어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 가. 독자층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한자어는 한글로 전환하여 썼으나, 공간사(公刊史)라는 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군사·안보 관련 용어는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해가 어려운 전문용어에는 해설을 달았다.
- 나. 국가·단체를 지칭하는 북괴, 중공, 월남, 월맹,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베트남(VC)은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각각 북한, 중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NLF, 베트남으로 각각 표기하였다. 단, 한국과 국교 수교 이전의 중국은 중공으로 표기하였고, 월남전쟁은 베트남전쟁으로 표기하였다.
- 다. 2개 국가를 줄여 표기할 경우 한미, 남북은 가운데점(·)없이 표기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일, 중·소 등과 같이 가운데점(·)을 넣어 표기했으며, 3국 이상일 경우는 한·미·일 등과 같이 모두 가운데점(·)을 넣어서 표기하였다.
- 라.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한국군’ 등과 같이 고유명사의 성격이 있는 명칭은 당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 마. 아래 용어는 정식 명칭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약칭을 혼용했으나 장별로 최초 기술 시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였다.
  -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유엔안보리
  - 2) 유엔군사령부 : 유엔사
  - 3) 한미연합군사령부 : 한미연합사
  - 4)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 : 한미야전사
  - 5)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6)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 FOTA
  - 7) 한미통합국방협의체 : KIDD
  - 8)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9) 기타
- 바. 영어 약어는 각 부별로 처음 사용 시 약어와 원어를 ( )에 표기하였고 이후에는 약어만을 사용하였다.

### 3. 이 책에서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소괄호 ( ) : 인명·지명·숙어 등의 해당 한자·영문을 넣거나 해설·보충한 경우 표기
- 나. 큰따옴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다. 작은따옴표 ‘ ’ : 인용문 속에 대화체를 넣거나, 중요 사건·숙어·강조의 표시
- 라. 겹낫표 『 』 : 서명(書名) 표시, 영어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 마. 홑낫표 「 」 : 특정 문건 명칭, 조약·협정·각서·선언 표기

### 4. 외국의 인명·지명 등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가급적 해당국 언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한글로 표기하고 장별로 처음 나올 때는 ( ) 안에 원어를 병기하였다.

### 5. 기 타

- 가. 인용문은 다소 어법이 맞지 않더라도 원문 그대로 인용했으며, 필요시 ( ) 또는 각주를 이용하여 보충 설명하였다.
- 나. 표(table), 사진(picture), 그림(figure)은 각 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인포그래픽은 일련번호 부여 없이 추가하였다.





# 머리말

제1장 발간 목적  
제2장 부(部)별 개관

## 제1장 발간 목적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비롯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어느덧 70년이 되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기념사업을 계획하였고, 국방부는 한미동맹 국방비전 발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등의 행사를 추진해 왔다. 그중 하나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한미동맹 70년사』 연구·편찬사업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한미동맹 60주년이었던 2013년에 통사(通史) 형식의 공간사(公刊史) 『한미동맹 60년사』를 편찬하였다. 『한미동맹 60년사』가 한미동맹 60년 역사를 시간순으로 기술하는 종적(縱的) 기록에 치중했다면, 『한미동맹 70년사』는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주제별로 기술하는 횡적(橫的) 기록에 더욱 주안을 두었다. “역사는 시간의 씨줄과 공간의 날줄로 짠 직물과 다름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한미동맹 역사의 종적 기록인 『한미동맹 60년사』의 씨줄에 횡적 기록에 주안을 둔 『한미동맹 70년사』의 날줄이 더해지면 양국의 동맹 관계를 이어온 70년 역사를 더욱 깊이 있고 통찰력 있게 조망(眺望)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 60년사』는 한미동맹의 성립-성장-강화-발전 순으로 구성했던 반면 『한미동맹 70년사』는 동맹의 성립과 변천, 주한미군, 연합방위체제, 국방협력 등 한미동맹의 주요 주제별로 편찬하였다. 양국의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데 근간이 되는 주요 사안별로 그 역사적 흐름과 맥락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주제별 서술 방식은 한미동맹 관련 업무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 60년사』와 비교해 볼 때, 이번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史料)를 더욱 많이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주로 제공되는 1차 자료는 원전(原典)을 선호하는 전문연구자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 그들의 후속 연구를 위해서도 유용할 것이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양국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갈등과 부침의 시기도 있었지만,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조로 한미동맹은 선순환적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왔다. 각종 난관을 함께 극복하면서 한미 양국은 전쟁으로 맺은 혈맹 관계를 꾸준히 이어 왔고, 지금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3년 4월 양국 정상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도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발전해왔음”을 재확인하였다. 70년 전 군사동맹에서 비롯된 한미동맹의 범위가 현재는 경제·사회·문화·기술,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두 나라가 축적해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을 더욱 확장하였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세 가지다. 역사를 배우므로써,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한미동맹 70년사』가 일반 독자들에게는 한미동맹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주고, 정책입안자들에게는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바르게 인식해서 현안(懸案)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혜안(慧眼)을 갖게 하며, 공통적으로는 한미동맹 관련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제2장 부(部)별 개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 관계는 70년의 세월이 흐른 2023년 현재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사회, 문화·기술, 글로벌 이슈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고, 동아시아와 지구적 수준을 넘어 우주·사이버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70년 역사를 네 개의 부(部)로 구분하여 먼저 전반적인 역사를 개관한 다음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핵심 주제를 다루었다.

**제I부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은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변천 과정을 개관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성립, 한미동맹의 변천 등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한미동맹의 성립**에서는 한미동맹의 토대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조약의 체결 과정을 설명하였다. **제2장 한미동맹의 변천**은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구분하여 한미동맹 70년 역사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의 안보정세와 한미동맹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변화과정을 시대순으로 서술하였다. 냉전기는 베트남전쟁 파병, 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 한미안보협의체 설치, 주한미군의 감축과 국군의 현대화, 연합방위체제 구축이 주요 사안이다. 탈냉전기는 미국의 전략구상 변화, 안보 질서의 변화, 북핵 위협 등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재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제II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서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이행하는 실체인 주한미군을 주제로 선정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분야로 나누었다. **제1장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서는 미군의 휴전선 방어,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 지원, 주한미군의 조정에 따른 한미연합방위체제 변화를 기술하였다. **제2장 주한미군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서는 한미동맹의 핵심 논제인 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III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는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주제로 해서 연합방위체제와 군사협력, 북한 위협 관리, 작전통제권 전환 등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연합방위체제와 군사협력**에서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형성과 발전, 한미연합연습과 훈련, 군사교육과 교리발전을 다루었다. **제2장 북한 위협 관리**에서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확장억제 진행 과정을 다루었다. **제3장 작전통제권 전환**은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제Ⅳ부 한미동맹과 국방협력**은 안보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진화를 주제로 정하고 해외파병, 포괄적 안보협력 등 두 개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제1장 해외파병**에서는 베트남전쟁 파병, 한미동맹과 관련된 국군의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를 다루었다. **제2장 포괄적 안보협력**에서는 재해·재난 대비, 사이버·우주 협력, 방산·과학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확장된 영역과 범위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다.

**맺음말**에서는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의 역사를 개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과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의 도약을 설명하며 마무리하였다.







# 제 I 부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

제1장 한미동맹의 성립

제2장 한미동맹의 변천

## 제1장 한미동맹의 성립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함께 성립되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 간에 「북대서양조약」이 체결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태평양지역에서도 유사한 동맹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동맹 체결에 소극적이었지만, 정전협정 조인을 서둘렀던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집요한 설득 끝에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수용하였고,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 제1절 한미동맹 성립 이전의 한미관계

#### 1. 한미관계의 형성과 발전(1882~1910)

한국과 미국 간의 인연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52년 12월에는 미상의 미국 포경선이 경상도 동래 용당포에 표류했고, 1855년에는 미국의 또 다른 포경선인 투브라더스(Two Brothers)호의 선원 4명이 풍랑으로 인해 강원도 통천에 표류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866년 2월에는 사불(土佛)이라는 이름의 미국 상선이 부산에 표류했고, 1866년 6월 24일에는 미국의 또 다른 상선인 서프라이즈(Surprise)호의 선원들이 평안도에 표류했던 기록이 있다.<sup>1)</sup>

이후 1866년 8월 9일에는 무장한 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가 조선과 통상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당시 평양 관헌들은 제너럴 셔먼호의 행위를 무단 침입으로 판단하였고 이들에게 물러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평양 부근 강변에서 조선 군민의 화공(火攻)으로 격침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열강처럼, 미국 정부는 무력으로라도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포함외교(砲艦外交)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1871년 6월 1일 강화도에서 조선과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sup>2)</sup>

1) 김원모, 『근대한미관계사: 한국전쟁편』(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0), pp.100-129.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19-101.

신미양요(辛未洋擾)라고 불리는 위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청나라·러시아 3국의 갈등 속에서 세력균형을 도모하면서, 특히 러시아의 남하를 대비하기 위한 청나라 측의 연미론(聯美論)과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미국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sup>3)</sup> 이에 따라 조선은 문호개방의 대세를 더 이상 물리치지 않고, 1882년 5월 22일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서구국가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국제외교에서 다변화의 길을 열어놓았다. 나아가 본 조약 제1조에 의하면 조선과 미국은 “타국의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일단 통지하면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 준다.”고 합의하였다.<sup>4)</sup> 이듬해인 1883년 1월 9일 미 상원은 이 조약을 비준하고, 1883년 6월 4일 아더(Chester Arthur) 대통령이 이 비준을 승인하면서 조약의 각 항을 엄수할 것을 선언하였다.<sup>5)</sup> 이후 조선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자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였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이권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속에,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년), 러일전쟁(1904~1905년)에서 연이어 승리한 후 한반도를 서서히 자신의 영향권으로 흡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국권이 상실될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 정부는 1905년 7월 29일 일본과 비밀리에 카쓰라-태프트 협정(Katsura-Taft Agreement)을 맺어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하였다.<sup>6)</sup> 그리고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탈취하였다.<sup>7)</sup>

물론 일본의 조선 지배를 반대하는 미국인들도 있었다. 주한미공사관 1등 서기관 및 대한제국 궁내부 고문직을 역임한 샌즈(W. F. Sands)는 1904년 미국으로 귀국하여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과 국무부 관리를 만나 미 정부의 친일정책과 조선 포기 의도를 비판하였다.<sup>8)</sup> 조선에서 활발한 교육 활동과 고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던 미국인 연합감리교 선교사 험버트(Homer B. Hulbert)는 국권 침탈을 막고자 하는 고종을 도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도 고종의 밀사가 되어 이상설, 이준, 이위중 특사를 도우면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미수교 1세기의 회고와 전망』(성남: 한국정신문화원, 1983), p.17.

4)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국사편찬위원회.

5) Department of State, *The Statutes at Larg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23*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85), p.725.

6) Taft-Katsura Agreement, 29 July 1905, William H. Taft Papers, Library of Congress.

7) 「을사늑약」(1905.11.17.), 국사편찬위원회.

8) 김현숙, “대한제국기 미국관료지식인의 한국 인식: 궁내부 고문관 샌즈(W.F.Sands)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8(2005), pp.65-87.

서 헤이그 평화클럽(Peace Club)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였다.<sup>9)</sup>

을사늑약 이후 고종 황제는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제국이 처한 위기를 알리고 제국을 위하여 외교적 중재 노력을 해 줄 것을 호소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헐버트 선교사에게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친서를 주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의거하여 늑약의 저지를 호소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한반도는 1910년 8월 22일 조인된 「한일병합조약(韓日併合條約)」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당시 미국은 세력균형이라는 현실주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묵인하였다.<sup>10)</sup>

## 2. 미국의 동맹정책과 한국의 동맹조약 추진(1945~1950)

미국은 역사적으로 동맹 체결에 소극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49년 4월 4일에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미국이 맺었던 동맹 관계는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1778년에 체결한 프랑스와의 동맹이 유일하였다. 이 동맹 또한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1798년에서 1800년 사이 미국과 프랑스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1800년 미국과 프랑스 간의 협정에 따라 사문화되었다. 한편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퇴임연설에서 외국과의 동맹 및 연대를 경계할 것을 당부하였다.<sup>11)</sup> 제3대 대통령인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취임연설에서 그 누구와도 동맹은 체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sup>12)</sup> 미국의 이러한 동맹 회피 정책은 약 140년 동안 유지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공산 진영과 전략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미국은 다시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을 체결하게 된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자국의 안보가 외부와 단절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서양과 태평양이 자연 보호막 역할을 하여 미국을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주었으나, 군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험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잠수함이 미국 동부에 출몰하여 대서양에서 미국의 민간 선박들을 격침 시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대공황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

9) 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Consuls in Seoul, 1886-1906, volume 2(1899. 1. 19-1906. 7. 6), 군사편찬연구소, HM 611; 김동진, 『파란 눈의 한국훈 헐버트』(서울: 참좋은 친구, 2010).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12.

11) George Washington's Farewell Address, 1796, George Washington Presidential Library at Mount Vern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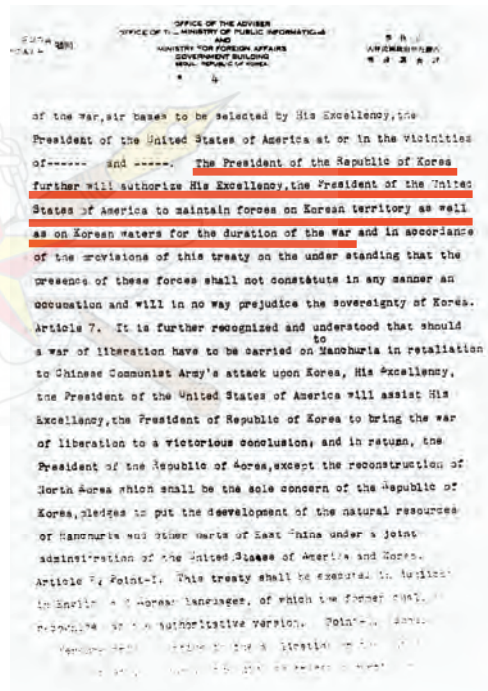
12) Speech of Mr. Jefferson, 4 March 1801, Library of Congress.



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결국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통해 외부 세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결국 미국의 안보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다.<sup>13)</sup>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공산주의의 팽창이 세계를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려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미국 지도자들은 우려하였다. 전쟁의 폐허로 인하여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던 상황을 틈타 공산세력은 계속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공산주의는 미국이 추구하는 이념, 즉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원칙 등과 충돌하는 사상이었으며, 공산주의의 팽창은 결국 미국을 심각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판단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며, 이를 위해 우방들을 경제적·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이 1949년 4월에 체결되었고, 이후 1951년 9월에는 미·일 동맹, ANZUS(미·호주·뉴질랜드 동맹), 미·필리핀 동맹이, 1953년 10월에는 한미동맹이 성립되었다.<sup>14)</sup>

「북대서양조약」이 1949년 4월 4일에 조인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5월 14일과 16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과 흡사한 동맹을 태평양에서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대통령은 반공국가들 간의 연대와 미국의 위상을 위해 태평양 동맹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에 진주만 공격 사건으로 일본과 4년 동안 전쟁을 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태평양지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미국을



〈사진 1-1〉 한미동맹조약 초안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13) Timothy Ireland, *Creating the Entangling Alliance: The Origins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1981).

14) Lawrence S. Kaplan, *NATO 1948: The Birth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07).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태평양 동맹 결성을 주도하여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다국적 태평양 동맹이 불가할 경우 미국은 대한민국과 단독으로 안보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5)</sup> 그리고 대한민국 외무부는 1949년 4월 18일에 「한미동맹조약」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초안에서 특기할 점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은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러한 기본 골자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승만 대통령의 동맹조약 체결 요구에 이어 장면 주미 한국대사는 1949년 6월 2일 웹(James Webb) 국무부 부장관과 버터워드(William Walton Butterworth) 극동국장과의 회의에서 미국의 대한공약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7)</sup> 또한 1949년 6월 27일 장면 대사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태평양동맹’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sup>18)</sup> 이후 장면 대사는 1949년 7월 13일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태평양동맹 혹은 유사한 공동안전을 위한 아시아제국의 공동단결에 미국이 절대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9)</sup>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동맹 체결 요구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1949년 1월 31일 미합동참모본부에서 작성한 “드롭샷(Dropshot)”이라는 명칭의 전쟁계획에 따르면 미국과 소련 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중점을 두고 방어전을 한다고 명기하였다.<sup>20)</sup> 즉, 한국은 전시에 미국이 방어할 대상이 아니었다. 나아가 1949년 3월 23일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한 NSC-8/2(「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은 한국이 조속히 독립 국가로 설 수 있도록 돕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조기 철수시키는 것이었다.<sup>21)</sup> 이미 1946년 3월 15일 미 제6사단의 한반도 철수를 시작으로 한반도 주둔 미군의 본국 귀환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1949년 6월 30일 미군 철수를 완료하였다.

15) New York Times Interview with President Rhee, 14 May 1949, 이승만 서한철, 국사편찬위원회; *FRUS* 1949, Vol. VIII, pp.1023-4.

16) 「한미동맹조약 초안」(1949.4.18.), 국사편찬위원회.

17) *FRUS* 1949, Vol. VII, Part 2, p.1038.

18) 「트루먼 면담 결과보고」(1949.6.27.), 국사편찬위원회.

19) 「주미대사의 주간보고에 관한 건」(1949.7.13.), 국사편찬위원회.

20) Steven T. Ross, *American War Plans, 1945-1950*(New York: Frank Cass, 1996), pp.119-125.

21) NSC-8/2: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22 March 1949, *FRUS* 1949, Vol.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pp.969-978.

물론 군사고문단(KMAG: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설치 및 「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을 통한 군사원조 제공 등을 통해 한국군의 강화를 지원하였다.<sup>22)</sup> 하지만 1949년 12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한 NSC-48/2(「아시아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의 우선순위는 일본과 필리핀이었다.<sup>23)</sup> 한미동맹이 맺어진 것은 북한이 1950년 남침을 한 이후 3년의 고된 전쟁을 한미가 함께 싸운 이후인 1953년 10월 1일이다.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pp.264-279;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국방부, 1983), pp.165-174.

23) NSC-48/2: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sia, 30 December 1949, *FRUS 1949*, Vol.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pp.1216-1217.

## 제2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 1. 6·25전쟁과 미군의 참전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한국은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1945년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각각 남한과 북한에 진주하였다. 이후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감독하에 38도선 이남에서 총선거가 있었고, 동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유엔 총회는 1948년 12월 12일 결의문 195(III)을 통해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sup>24)</sup> 이어 1948년 9월 9일 38도선 이북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광복과 함께 한국에 주둔해있던 미군이 1949년 6월 30일 철수하자 김일성은 스탈린(Joseph V. Stalin)·마오쩌둥(毛澤東)과 공모하여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침략함에 따라 3년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김일성은 이미 194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괴뢰”로 비하하며 “모든 것을 국토완정을 위해서 바치자.”고 주장했다.<sup>25)</sup> 그들은 미군·소련군 동시 철군론과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을 연계해, 군사력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이미 소련군이 철수한 후 얼마 되지 않았던 1949년 3월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8월에도 재차 공격의사를 표명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김일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949년 6월 30일부로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를 완료하였다. 남북한 군사력의 차이도 분명하였다. 이미 1949년 7월경에 국군이 10만 명인데 비해, 1949년 9월 당시 북한군은 육·해·공군 병력이 9만 7,500명, 경비대 병력 4만 2,000명에 이르고 있었다.<sup>26)</sup> 그리고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6·25전쟁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확연하였다. 더욱이 공산 진영은 1949년 9월에 소련의 핵개발로 미국에 대한 견제력이 제고되었고, 10월에는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사실에 고무되었다.

24)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12 December 1948, UN Digital Library.

25) 『김일성 전집 9(1949.1~1949.7)』,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pp.4-12.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38.

〈표 1-1〉 6·25전쟁 당시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구분		국군	북한군
병력(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103,827명	188,297명
주요무기	탱크(T-34)	0	242대
	장갑차	27대	59대
	포(곡사포, 박격포, 대전차포 등)	1,191문	2,250문
	함정	36척	115척
	항공기	22대	226대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 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6-7.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국의 대한정책은 미온적이었다. 미국은 아시아의 모든 비공산주의 국가를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군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선택된 국가에 대해서만 한정할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1949년 12월 30일 아시아에서의 미국 안보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실론(스리랑카)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일본과 필리핀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트루먼 대통령은 같은 날 이 보고서를 승인하였다.<sup>27)</sup>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12일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미국의 선택적 공약을 받은 국가는 일본·필리핀 등으로 한정된다고 선언하였다.<sup>28)</sup>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심의 당시 델레스(John Foster Dulles) 미 국무장관이 시인하였듯이,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남침시 미국은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조선인민군의 선제공격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이때 스탈린이 남침계획에 대한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5월 중순에 중국을 방문하였다. 김일성은 5월 13일 마오쩌둥과 회담에서 남침계획에 관한 스탈린과의 회담 결과를 알리고 15일 그의 동의를 받았다. 마오쩌둥은 미군의 참전에 대비하여 중국도 병력을 파견하여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 전역에서 불법 남침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즉시 북한의 공세 행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을 규탄하며, 유엔현장을 존중하는 국가들이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sup>29)</sup> 또한 미국의 공식 요청으로 긴급 유엔

27) FRUS 1949, Vol.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pp.1215-1220.

28) Crisis in Asia: An Examination of US Policy, *Bulletin* Vol. 22-551(1950), pp.111-118.

29)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Violation of the 38th Parallel in Korea, 25 June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1950년 6월 26일 04:00(현지시간 25일 14:00)에 개최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문 제82호」를 통해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sup>30)</sup> 하지만 북한군이 이를 무시하고 남진을 계속하자 유엔 안보리는 다음날인 6월 27일 「결의문 제83호」를 통해,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을 원조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sup>31)</sup> 같은 날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전복을 넘어 무력 침공과 전쟁을 통해 독립 국가를 정복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북한이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 해·공군의 지원을 공포하였다.<sup>32)</sup> 한편 맥아더(Douglas MacArthur) 미 극동군사령관은 6월 29일(한국 시간)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후 북한군이 한국군을 압도한다면 미 지상군의 개입을 본국에 요청하였다.<sup>33)</sup> 이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6월 30일 4차 안보회의에서 공군과 해군의 지원에 이어 미 지상군의 파병도 결정하였다.<sup>34)</sup> 이에 따라 1950년 7월 1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사단 소속 스미스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가 부산에 상륙하여 7월 5일에는 경기도 오산 북쪽 죽미령에서 북한군 제4사단과 교전하였다.

북한의 남진이 계속되자 안보리는 1950년 7월 7일 「결의문 제84호」를 통해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위해 미군 지휘 아래 통합사령부를 창설하도록 하였다.<sup>35)</sup> 이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8일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원수를 임명하였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공세로 수도 서울을 3일만에 빼앗기고 대전 이남까지 후퇴하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한다는 서한을 발송하였고, 맥아더 사령관은 7월 16일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위임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회답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로써 작전상태가 존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게 되었다.<sup>36)</sup> 그 결과 한국군은 6·25전쟁 당시

1950, 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

30) UNSC Resolution 82, 25 June 1950, UN Digital Library.

31) UNSC Resolution 83, 27 June 1950, UN Digital Library.

32)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Situation in Korea, 27 June 1950, 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

33)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MacArthur) to the Secretary of State, 30 June 1950, *FRUS 1950*, Vol. VII, pp.248-250.

34) *FRUS 1950*, Vol. VII, Korea, p.255.

35) UNSC Resolution 84, 7 July 1950, UN Digital Library.

36) 「국군 통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각서 및 MacArthur 유엔군 총사령관의 회한

대통령의 통수권과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이라는 이중지배구조 하에 들어갔다.<sup>37)</sup> 한편 유엔 안보리는 1950년 7월 31일 「결의문 제85호」를 통해 한국의 민간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물자를 제공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구하였다.<sup>38)</sup>

작전지휘권 이양 이후 전투에서는 지휘통제가 일원화되어 효과적인 연합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서울 수복, 그리고 여기에 힘입어 낙동강 전선에서 38도선으로의 북진 등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서울 수복 후 1950년 10월 1일에는 국군 제3사단이 강원도 양양에서 38도선을 넘었고, 10월 9일에는 유엔군도 전면적으로 북진하였다. 유엔군은 평양·원산까지 수복하고 다시 북진하여 서쪽으로는 청천강 건너 압록강으로, 동쪽으로는 함흥과 길주·명천을 지나 청진까지 점령했으며 북·중 접경지역인 혜산진까지 진격하였다. 이렇게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출하게 되자, 만주지역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한반도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였다.<sup>39)</sup>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항미원조: 抗美援朝)’는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였다. 중국이 개입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 연대, 김일성 및 스탈린의 지원 요청 등도 있지만, 한반도에서 그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 특히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군 제38군, 제39군, 제40군, 제42군 등 약 29만 명의 병력이 압록강을 건넜고, 이후 유엔군과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다. 1951년 1월 초까지 세 차례의 중국의 공세로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삼척까지 후퇴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은 곧 중국의 공세를 물리치고 계속되는 반격을 통해 6월 중순까지는 현재의 군사분계선과 비슷한 선까지 전선을 전진시켰다. 이후 전쟁 상황은 전선이 교착되면서, 고지 쟁탈전으로 전환되었다.<sup>40)</sup>

이 같은 전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51년 6월초 소련은 말리크(Yakov Malik) 유엔주재 소련대사를 통해 미국 측과 접촉하여 평화회담을 언급하였고, 미국에서 이를 수용하여 정전협상이 시작되었다.<sup>41)</sup> 이 무렵 마오쩌둥도 중국 공산당 중앙회의에서 협상과 전투를

(1950.7.14. 및 7.16.), 분류번호: 741.14조624군1950, 등록번호: 8976, 국가기록원;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629-630.

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p.42-43.

38) UNSC Resolution 85, 31 July 1950, UN Digital Library.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6권: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p.75-509.

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pp.19-580.

41)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p.204-209.

병행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가 38도선으로부터 군대의 상호철수를 규정하는 정전을 유엔군 측에 공식 제의하자, 6월 30일 리지웨이(Mathew B. Ridgway) 유엔군사령관도 정전회담의 개최를 공식 제의함으로써 협상이 시작되었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배경은 어느 쪽도 무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소련 지도자들은 6·25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sup>42)</sup> 그러나 정전협정은 통일을 바라고 있던 한국 정부의 염원과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정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강렬하게 반대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7월 28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정전협정이 한국민에게는 사형선고(death warrant)나 마찬가지로, 정정보다는 공산권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을 계속해 힘으로 압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 또한 1951년 6월 1일에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대통령은 1952년 3월 21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서한을 보내 정전협정 체결을 강렬하게 반대하였으며, 1953년 4월 9일에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정전협정이 맺어지면 한국군은 유엔군에서 이탈해 독자적으로 싸울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협의 끝에 한국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대한민국과 동맹을 체결할 것과 한국군 증강을 미국에 요구하였다.<sup>43)</sup>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간 방위조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1953년 4월 16일 브릭스(Ellis O. Briggs) 주한미국대사와의 회의 중 이 대통령은 미국이 1882년 대한제국과 체결했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의무, 즉 일본이 한반도를 강탈하려고 할 때 미국은 한국을 돕기보다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미국은 과거의 이러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한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44)</sup> 또한 1953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9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pp.95-205.

43) 「한국 전란에 대한 정전 협상 반대 결의안」(1951.6.1.), 의안정보시스템, 대한민국 국회; *FRUS 1951*, Vol. VII, Part 1, Korea and China, pp.263, 745; *FRUS 1952-1954*, Vol. XV, Part 1, Korea, pp.114-116, 902-903.

44) 「이승만이 양유찬에게 보내는 서한」(1953.4.16.), 군사편찬위원회.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중국과 소련이 1950년 2월 14일 동맹조약(友好同盟互助條約)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중국과 북한 또한 분명히 비슷한 조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또한 동맹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 정부는 동맹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자동군사개입, 즉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외부 세력이 침략할 경우 미국이 즉시 군사지원을 해줄 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동맹조약의 범위가 한반도 전역에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한반도 전역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또한 이 동맹조약을 정전협정 이전에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sup>45)</sup>

그러나 미국은 동맹조약 체결에 회의적이었다. 미국 의회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극도로 반대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요구는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였다. 만약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동맹조약을 체결할 경우 미국은 38도선 이북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고, 이러한 군사적 부담은 의회가 반대할 것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한반도의 일부에 그친다는 것을 동맹조약이 인정할 경우, 이것은 간접적으로 공산권이 한반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고, 이는 미국 의회는 물론 미국 정부에게도 곤란한 것이었다.<sup>46)</sup>

나아가 존슨(U. Alexis Johnson) 국무부 극동지역 담당 부차관보는 델레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한국과 동맹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성격에 비추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한국에서의 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유엔의 공동대응인데,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으면 이러한 유엔의 행위나 명목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존슨 부차관보는 또한 미 국방부가 한미동맹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 국방부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체결하는 것은 이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가 구상하고 있던 전쟁계획과 배치된다는 것이었다.<sup>47)</sup>

하지만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필리핀,

45)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필요 조치」(1953년 7월 13일), 국사편찬위원회; *FRUS 1952-1954*, Vol. XV, Part 1, Korea, Vol. 15-1, pp.1125-6.

46) *FRUS 1952-1954*, Vol. XV, Part 1, Korea, p.899; 「Conversations between the President and General Clark」(1953.5.26.), 국사편찬위원회.

47) Johnson to Dulles, 8 April 1953, RG59, Entry A1 205, 795.00/4-853, Reel 20, NARA.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조약과 맥락을 같이하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를 1953년 6월 7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통보하였다. 이 서한에서 아이젠하워는 한국과 동맹을 체결하는 대가로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체결을 반대하지 않을 것과 유엔과 함께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조약은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조약의 범위는 대한민국이 현재 통제하고 있는 영토와 향후 관할하는 영토에 적용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상호방위조약을 협상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8)</sup>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배경에는 6·25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노력과 해외 군사개입을 환영하지 않았던 의회의 분위기가 있었다. 정전협정에는 적극적이면서 동맹조약 체결은 계속 미루려고 하는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이 쌓여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반공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하였다. 이 대통령은 당일 성명을 통해 제네바협정과 인권 정진에 의하여 반공포로는 석방해야 하며, 계속하여 그들을 구금하는 것은 적에게 이롭고 대한민국에게는 흠이 되므로 6월 18일 석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sup>49)</sup>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하여 상호방위조약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적국이었던 일본과는 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과 체결하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sup>50)</sup>

반공포로 석방은 당시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으며, 정전협정 체결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포로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 아니면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할 것인가였다. 유엔군은 포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산권은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유엔군과 공산군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정전협정 체결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고,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반발하였다.<sup>51)</sup> 클라크(Mark Clark) 유엔군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의 지상군, 해군, 공군에 관한 지휘권을 유엔

48) FRUS 1952-1954, Vol. XV, Part 1, Korea, pp. 1122-3;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에게 보내는 서한」(1953.6.7.), 국사편찬위원회.

49) 「반공 한인포로 석방에 대하여」(1953.6.18.), 대통령기록관.

50) 「Statement by President Rhee for Mr. Handleman INS」(1953.6.18.), 국사편찬위원회.

51) Stueck, *The Korean War*, pp.268-347.

군사령관에게 이양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군이 포로들을 석방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sup>52)</sup>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유사한 내용의 항의서한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재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sup>53)</sup>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반대에도 필요할 경우 한국은 단독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그리고 정전협정의 대가로 미국은 즉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한국의 지상군을 20개 사단까지 증강시킬 수 있도록 미국은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후속 정치회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유엔이 공산측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은 정치회담을 과감히 중단하고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sup>54)</sup>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한국의 이러한 요구들을 1953년 7월부터 수용하였다. 하지만 역으로 이 대통령이 정전협정 협상을 방해하지 않을 것과 포로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sup>55)</sup>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사령관, 북한군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은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것을 명시한 「한국정전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본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sup>56)</sup>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행위를 정지하는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었다. 유엔 참전국 16개국은 같은 날(1953년 7월 27일) 공동성명을 통하여 공산진영이 이 합의를 위반하여 적대행위를 재개하는 경우 유엔은 다시 한번 뭉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정전협정의 위반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무력분쟁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다.<sup>57)</sup>

앞서 논의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협상을 위해 로버트슨(Walter Robertson) 특사가 방한하였다. 1953년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로버트슨 특사와 12회 회동하였고, 8월 5일부터 8월 8일 사이 한국을 방문한 델레스 국무장관과는 4회 회동하였다.

52) 「클라크 장군이 이승만에게 보내는 서한」(1953.6.18.), 국사편찬위원회.

53)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에게 보내는 반공포로 석방 항의 서한」(1953.6.19.), 국사편찬위원회.

54) 「휴전회담 관련 이승만의 요구 조건 제시」(1953.6.27.), 국사편찬위원회.

55)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미국정부의 외교각서」(1953.7.2.), 국사편찬위원회; *FRUS 1952-1954*, Vol. XV, Part 2, Korea, p.1369.

56)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27 July 1953, NARA.

57) *Mutual Defense Treaty with Korea: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Washington DC: GPO, 1954), 58.

미국은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재로 귀결되었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는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했던 조약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했지만,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없었고 「북대서양조약」과 같이 군사개입의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동맹의 성격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방어적인 것이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돕는 공세적 조약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미국은 자조(self-help)를 강조하며 한국의 과도한 대미 안보 의존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sup>58)</sup>

델레스 국무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포함하는 대신 1953년 7월 17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산권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은 무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하였다.<sup>59)</sup> 델레스 국무장관은 1953년 7월 25일에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이 다시 침략받는 경우, 이는 미국을 포함한 유엔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무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60)</sup> 아울러 한국의 반일감정을 고려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을 공산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일본으로부터도 보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위협재발을 방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sup>61)</sup> 아울러 미측이 1953년 7월 4일에 제시한 초안에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



〈사진 1-2〉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  
(1953.8.8.)

※ 출처: 미국 국가기록원(NARA)

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도록 조약을 수정하였다. 대신 델레스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미국 의회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수정은 자제해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호소하였다.<sup>62)</sup> 이 대통령은 델레스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했고, 1953년 8월 8일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델레스 국무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였다.<sup>63)</sup>

58) 「로버트슨이 이승만에게 보내는 서한」(1953.7.4.); 「로버트슨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1953.7.11.), 국사편찬위원회.

59) 「Report to the Nation」(1953.7.17.), 국사편찬위원회.

60) 「델레스가 이승만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1953.7.25.), 국사편찬위원회.

61) FRUS 1952-1954, Vol. XV, Part 2, Korea, pp.1408, 1472.

62) 「한미상호방위조약 초안 수정안」(1953.8.4.), 국사편찬위원회.

63) FRUS 1952-1954, Vol. XV, Part 2, Korea,, p.1489.

1953년 8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립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귀중한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sup>64)</sup> 변영태 외무부 장관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이제 강력한 우방국을 얻게 되었고, 잠정 적국들이 선불리 행동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65)</sup>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후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델레스 국무장관이 공식 서명하면서 체결되었다.



〈사진 1-3〉 조약 조인식(1953.10.1.)  
※ 출처: N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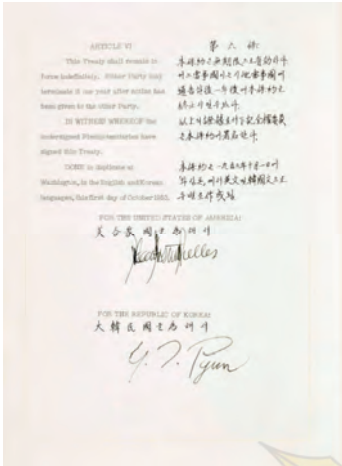
###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

1949.4.18.	한미동맹조약 한측 초안 작성
1950.6.25.	6·25전쟁 발발
1950.7.10.	정전협정 협상 개시
1952.3.21.	이승만, 정전 조건으로 한미동맹 요구
1953.6.7.	아이젠하워, 정전 이후 협상을 조건으로 한미동맹 체결 동의
1953.6.18.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
1953.7.2.	미국, 한미동맹 협상을 즉시 개시하기로 결정
1953.7.11.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 중임을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
1953.7.27.	「한국정전협정」 체결
1953.8.8.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1953.10.1.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1954.11.17.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64) 「전국민에게 보냄」(1953.8.9.), 대통령기록관.

65)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과 관련한 외무장관 성명서(변영태)」(1953.8.8.), 국사편찬위원회.

## 3.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 및 비준·발효 과정



(사진 1-4) 조약 서명란

※ 출처: NARA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총 6개 조로 구성되었다. 전문에서는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함으로써 동맹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조약의 목적으로 명기하여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또 특기할 점은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의 발전을 명기하여 미래에 태평양지역 집단안전보장체제 출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표현은 미국이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과 체결한 조약에서도 발견된다. 1949년 12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서

(NSC-48/2)에 따르면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집단안보체제 발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집단안보체제 발전에 대한 염원을 동맹국들과의 조약에 반영한 것이다.<sup>66)</sup>

제1조는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며, 타국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한다고 명기하여 다시 한번 한미동맹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였다. 제2조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을 경우 양국은 서로 협의하여 그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기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한국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 한미가 함께 한다는 증표였다. 동시에 양국은 자조(self-help)와 상호원조(mutual aid)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명기하여 한쪽이 다른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이 있다면 제3조일 것이다. 제3조는 한미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공통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세력에 대하여 미국도 대응한다는 의미이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 혹은 미국을 침략하려는 세력에 대한 엄

66) FRUS 1949, Vol. VII, Far East and Australasia, p.1216.

중한 경고였다. 한편 조약의 범위를 현재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미래에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로 정의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장차 한반도 전체에 적용될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미국이 과도한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둔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근간이 된다. 제5조는 조약이 비준교환을 통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약의 관습을 명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조는 한미 중 일방이 조약의 종료를 공식 통고하지 않는 이상 동맹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안보는 무기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67)</sup>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월 15일 한국 국회가, 1954년 1월 26일 미국 상원이 비준하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비준에 앞서 백두진 국무총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협상 경과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양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서로 돕기로 하는 공통된 결의를 상징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변영태 외무부 장관은 북한과 중국이 밀접한 사이이며, 중국은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산 국가들 사이의 이러한 연대가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6·25전쟁은 미국이 과거에 대한민국을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발발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러한 오만에 대한 미국의 반성에서 비롯되었고, 동 조약은 한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적신호를 보내는 큰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재석 인원 123인 만장일치로 1954년 1월 15일 국회에서 비준되었다.<sup>68)</sup>

한편 미국에서는 상원 비준 심의에 앞서 1953년 12월 30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상원의 조속한 비준을 호소하며, 이 조약이 공통된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어 침략을 억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자유진영 개별 국가들의 안보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태평양지역에서 자유 국가들의 공동의 안보를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sup>69)</sup>

미국 상원 비준 심의는 1954년 1월 13일과 1월 14일 이틀간 진행되었는데, 델레스 국무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6·25전쟁이 공산진영의

6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3.10.1. 서명; 1954.11.17. 발효).

68) 「제18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호(1954.1.15.), 대한민국 국회회의록.

69) Mutual Defense Treaty with Korea(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1 January 1954, Harvard Law Library.

잘못된 판단, 즉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해도 미국과 유엔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의 결과였다고 주장하였다. 딜레스 국무장관은 공산진영이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미가 외부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제3조는 한국에 대한 공격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에 처하게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말미암아,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적들에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70)</sup>

하지만 딜레스 국무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방어적 성격의 동맹조약인 만큼,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여 북진통일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도울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양국이 외부공격의 위협을 받는 경우 서로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제2조의 의무도 한미 양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쌍방이 동의해야 발동한다고 설명하였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행정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에 관해서는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이 북한지역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즉, 제3의 외부 세력이 북한을 침략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여 취득한 영토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물론 북한이 대한민국에 평화롭게 흡수될 경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된다고 첨언하였다. 또한 노울랜드(William Knowland) 캘리포니아 공화당 상원의원이 강조하였듯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현재 남한에 한정한다는 조항은 어디까지나 공산 진영이 북쪽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들의 관할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sup>71)</sup>

아울러 딜레스 국무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가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표현과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가 미국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을 설명하였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긴급한 군사적 행동이 필요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신속한 대응을 명분으로 의회의 허락 없이 행동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의원들 사이에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논란이 없었던 먼로(James Monroe) 대통령이 사용했던 표현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반영하였다고 딜레스는 설명하였다.<sup>72)</sup>

70)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Mutual Defense Treaty with Korea: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Washington DC: GPO, 1954), pp.2, 4, 6.

71)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Mutual Defense Treaty with Korea*, pp.6-8, 11-17.

72)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Mutual Defense Treaty with Korea*, pp.7-8.



한편 리지웨이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국가를 돕는 정책은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인들에게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감과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역사를 통해 위협을 본토로부터 최대한 멀리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한국을 도와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73)</sup>

당시 와일리(Alexander Wiley)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서 말하는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태평양관 NATO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었고, 텔레스 국무장관은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으나 가까운 시일에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태평양의 반공국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고, NATO 회원국들과는 달리 태평양의 경우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이 지리적으로 서로 너무 떨어져 있으며, 태평양관 NATO를 향한 긴밀한 협조가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sup>74)</sup> 미 상원은 1954년 1월 26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을 결정하였고, 이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월 5일에 승인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의 비준 이후 한미 간의 이견으로 1954년 11월 17일에서야 비준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양국 간의 쟁점은 이승만 대통령의 계속되는 북진 주장이었다. 1953년 10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은 헐(John E. Hull) 유엔군사령관에게 정전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정치회담은 실패할 것이며,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한반도가 계속 분단되어 있는 상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75)</sup> 1953년 11월 4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경우 참담한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속한 비준과 한국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법안의 순조로운 의회 통과를 위해 군사적 단독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sup>76)</sup> 1954년 3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군의 단독 북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해·공군의 증강을 위한 미국의 지원, 육군 20개 사단 이상의 증강

73)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Mutual Defense Treaty with Korea*, pp.27-28.

74)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Mutual Defense Treaty with Korea*, pp.8-9.

75)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Hull) to the Joints Chiefs of Staff, 21 October 1953, *FRUS 1952-1954*, Vol. XV, Part 2, Korea, pp.1544.

76) Eisenhower to Rhee, 4 November 1953, *FRUS 1952-1954*, Vol. XV, Part 2, Korea, pp.1952.



(사진 1-5) 조약 비준서(1954.11.17.)

※ 출처: 외교사료관

을 위한 미국의 훈련·장비 지원을 요구하였다.<sup>77)</sup> 이에 대해 1954년 3월 21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사단 증가보다는 예비사단 또는 예비군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sup>78)</sup> 최종적으로 한국이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하는 것을 미국이 돕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1954년 4월 26일부터 1954년 7월 20일까지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진행되었으나, 한국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4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국 문제 논의를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1954년 7월 27일 한미정상회담 1차 회의 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진 무력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런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79)</sup> 7월 29일 딜레스 국무장관은 한국군 해군과 공군의 전투력 강화를 반대했는데, 한국이 증강된 해·공군의 전력을 일본이나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sup>80)</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합의의사록」 초안이 작성되었는데,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미국 측이 제시한 “전쟁을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다.<sup>81)</sup> 이후 한미는 「한미합의의사록」의 세부 내용을 계속 조율하였고, 1954년 11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한미가 전쟁을 제외한 방법으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표현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1954년 11월 12일 미 측이 이에 동의하였다.<sup>82)</sup>

이렇게 한미가 서로 양보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1954년 11월 17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한미합의의사록)」과 그 부록에 서명하였고, 같은 날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를 교

77)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4.3.11.), 대통령기록관.

78)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4.3.21.), 대통령기록관.

79) Hagerty Diary, 27 July 1954, *FRUS 1952-1954*, Vol. XV, Part 2, Korea, pp.1841-5.

80)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08th Meeting of the NSC, 29 July 1954, *FRUS 1952-1954*, Vol. XV, Part 2, Korea, pp.1852-5.

81) US Summary Minutes of the Fourth Meeting of US-Korea Talks, 30 July 1954, *FRUS 1952-1954*, Vol. XV, Part 2, Korea, pp.1857-8.

82)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4.11.5.), 대통령기록관; Dulles to Briggs, 12 November 1954, *FRUS 1952-1954*, Vol. XV, Part 2, Korea, pp.1915-6.

환하면서 한미동맹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한미합의의사록」에서는 “국제연합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 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라고 명기하여 한국의 단독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끈질긴 요구로 미국은 「부속서(부록 B)」를 통하여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약속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은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만 5,000명, 해병대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명으로 구성된 총 72만 명의 국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의 급여와 급식량, 장비의 규모 및 예산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여 한국군 전력 증강의 수준 및 속도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sup>83)</sup>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육군 7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 등 약 32만 명에 달하던 미군을 2개 사단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철수하였다. 1954년 3월 14일부터 미 제45·40사단과 해병대 제1사단이, 1954년 8월 18일부터 미 제25·3·24사단이 철수하였다. 또한 제5공군사령부가 오산에서 일본 나고야로 이동하고 일부 독립 비행연대들도 규슈와 사세보로 재배치되었다. 한국에는 약 5만 명으로 구성된 미 제8군(1개 군단사령부, 2개 보병사단, 군단포병, 방공포병, 군수지원사령부 및 지원부대)과 제314비행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주한공군 그리고 주한해군을 주력으로 전방지역의 일부를 직접 방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전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계속하였다.<sup>84)</sup> 나아가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에 의하지 않은 침공이 있을 경우” 미국은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sup>85)</sup>

83)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협력의 계속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분류번호: 741.12, 등록번호: 1091, 외교사료관.

84) 국방부, 『국방사』 제2집(서울: 국방부, 1987), p.322.

85)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1954.11.17.), 외교부.

## 제2장 한미동맹의 변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지원-피지원 관계였던 한미동맹은 1960년대 미국의 요청에 따른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1969년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군 현대화와 한미연합훈련 활성화의 동인이 되었고, 이후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91년 최초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이후부터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의 상호 역할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으로 조정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는 FOTA, SPI, KIDD, EDSCG, NCG 등 SCM과 MCM에 이은 한미 협의체를 추가 구성하여 주한미군 감축, 작전통제권전환, 확장억제 등 동맹 현안을 양국이 함께 논의해왔다. 2023년 현재 한미동맹은 상호 협력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 제1절 냉전기 한미동맹의 변천

#### 1. 베트남전쟁 파병과 상호협력적 동맹 관계 형성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하는 도미노 효과를 저지하기 위해 베트남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미국은 1960년대의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 자유진영이 모두 함께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더 많은 우방국의 남베트남 군사지원을 통해 군사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sup>1)</sup> 1964년 4월 23일 존슨(Lyndon B. Johnson) 미국 대통령은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더 많은 깃발(More flags)’을 표방하였고, 같은 해 5월 9일 한국을 비롯한 25개 자유 우방국에 남베트남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다. 미국이 요청한 이동외과 병원에 태권도교관단까지 추가하여 1964년 9월부터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이 시작되었다.

1) General William C.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s*(New York: Da Capo Press Inc., 1989), p.132.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 이유는 6·25전쟁에서 도와준 우방국에 대한 보답, 주한미군의 감축 없는 주둔, 국군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협조,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정통성 인정 등 복합적이었다.<sup>2)</sup>

1964년 12월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병부대·수송기 조종사·의무대 등 비전투병 파병을 요청하였고,<sup>3)</sup> 한국 정부는 1965년 3월 건설지원단 비둘기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1965년 이후 미국의 전황이 불리해지자, 존슨 대통령은 남베트남 대사를 역임했던 롯지(Henry C. Lodge Jr.)를 한국에 특사로 보내서 박 대통령에게 한국군 연대전투단 약 4,000명을 남베트남에 파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sup>4)</sup> 1965년 5월 17일과 18일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군 전투부대의 남베트남 파병을 공식화하였고, 같은 해 9월 25일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남베트남 파병 요청으로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 파병부대의 범위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은 다음 내용을 합의하였다. 첫째,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한국과 사전 협의한다. 둘째, 한국방위에 충분한 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한다. 셋째,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군사원조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넷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경제원조를 확대한다. 다섯째, 미국은 한국에 대한 개발차관으로 1억 5,000만 달러를 우선 반영한다. 여섯째, 미국은 ‘주둔군 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sup>5)</sup> 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이전부터 계획했던 주한미군 감축계획의 실행을 중단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경제지원을 확대하였다.<sup>6)</sup>

한국은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주한미

2) Memorandum for Mrs. Evelyn Lincoln from W.W. Rostow, November 13, 1961. KCV/D-13, “Topical Outline for the President for his conversations with Chairman Park on Tuesday,” November 14.

3)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oul, December 19, 1964, *FRUS, 1964-1968*, Vol. XXIX, Part1, Korea., pp.53-55.

4)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April 27, 1965, *FRUS, 1964-1968*, Vol. XXIX, Part1, Korea, p.79.

5)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May 17, 1965, 05:00 pm(May 18, 1965, 05:00 pm), “U.S.-Korean Relation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제3권).

6) “Brown Memorandum,” Seoul Korea, March 4, 1966. 1966년 3월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외무장관에게 서한(브라운 각서)을 보내 군사원조 10개 항과 경제원조 16개 항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 제공, 군사원조 이관 중단, 기술원조, 차관 제공, 주한미군 계속 주둔 등이다.

군 감축 중단과 군사·경제 원조의 확대로 불안정했던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고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마무리하여 제2차 경제개발계획 추진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은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유지되던 양국 관계를 상호협력적 관계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7)</sup>

이처럼 한국은 1964년 9월 비전투부대를 파병한 이후, 미국의 거듭된 요청으로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 5,000여 명의 장병을 남베트남에 파병했고, 전사자 5,099명을 포함하여 한국군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는 총 1만 6,061명이었다.<sup>8)</sup> 남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많은 신형장비와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국군 전력증강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베트남전쟁 참전에 따른 파병 장병과 근로자들의 수당, 남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익, 미국과 국제기구들이 제공한 차관 등을 토대로 경제 개발을 추진하여 1970년대부터 한국의 국민총생산이 대폭 증가했고 이 시기부터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sup>9)</sup>

## 2.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구축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은 개인 자격이나 부대 단위로 학교·병원·교회·보육원 등의 건립을 지원하였다. 1958년 5월 물에 빠진 한국군을 구하려다 익사한 미군 로버트 일병의 경우처럼 주한미군의 미담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1962년 미군 부대의 물자 도난방지 목적의 총기사용으로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한미행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했고,<sup>10)</sup> 1963년에는 주한미군 물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군 초병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미 제8군사령관이 설명하기도 하였다.<sup>11)</sup>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 미군에 의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미군의 주둔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 한미 양국 간의 주둔군 지위협정, 즉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164.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40.

9) 통계청,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서울: 통계청, 1998), p.304.

10) 고려대 학생총회, “한미행정협정 추진 쟁기대회 결의문,” 『조선일보』(1962.9.6.)

11) 『조선일보』(1964.2.21.) 하우스 미 제8군 사령관은 “한 달에 도난당하는 물자가 7만 달러어치 되기 때문에 초병들이 도난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접근자들에게 총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명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지위는 1950년 7월 12일 체결된 「대전협정」을 근거로 하였다. 6·25전쟁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미군의 배타적 재판권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의 지위 승인을 요청하였고, 대전으로 피난 중이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를 승인한다고 통보함으로써 「대전협정」이 체결되었다.<sup>12)</sup> 당시 한국 정부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요구에 동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후 양국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같은 해 8월 8일 이승만 대통령과 딜레스(John F. Dulles) 미 국무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부터 한미 양국이 SOFA 협상을 시작하였고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였다.<sup>13)</sup>

### 3. 북한의 도발과 한미안보협약체 설치

‘4대 군사 노선’에 입각하여 군사력 구축을 완료한 북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일련의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sup>14)</sup> 1968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위한 1·21 청와대 기습미수 사건과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Pueblo)호의 공해(公海)상 납치, 1968년 10월 울진·삼척 무장간첩침투, 1969년 4월 미국 정찰기 EC-121 격추, 1970년 6월 연평도 근해 한국 초계정 납치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한국군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전황이 더 나빠지자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다.

당시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시각 차이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공세를 한반도 차원보다 세계적 냉전 차원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을 막고 미국의 베트남전쟁 수행을 방

12) 「대전협정」의 공식 명칭은 「재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협정」이다. 대전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군 당국의 전속적인 형사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였다.(조약 제1135호, 1950년 7월 12일, 외교부).

13)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주요 내용은 군인과 군무원, 그 가족의 출입국 관리, 관세, 조세,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노무 조달 등이다. 1991년 1차 개정, 2001년 4월 2차 개정으로 환경·노사관계·인권 분야로 확대되었다.

14) ‘4대 군사 노선’은 북한이 국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행동 요강으로 ① 전 인민의 무장화, ② 전 국토의 요새화, ③ 전 군의 간부화, ④ 전 군의 현대화 등이다.

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하였다.<sup>15)</sup>

베트남의 전황이 미국에 불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는 미국 정부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보다 협상으로 푸에블로호 선원을 송환하려 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소극적 대응에 한국이 불만을 표출하자, 1968년 2월 12일 존슨 대통령은 밴스(Cyrus R. Vance) 특사를 한국에 보내 양국의 안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방각료급 회의를



〈사진 1-6〉 제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출처: 국방부

적으로 다시 설명할 것이다.

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sup>16)</sup> 1968년 4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였고, 같은 해 5월 한미 간 최초의 국방장관급 회담인 제1차 ‘한미국방각료회담’을 개최하였다.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한미국방각료회담’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구성, 기능, 역할 등에 대해서는 제Ⅲ부(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제1장에서 세부

#### 4. 주한미군 감축과 국군의 현대화 추진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완화되면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축소하려 했고, 미국 내의 반전여론 등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되었다.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1969년 7월 발표된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이다. 핵 위협을 제외한 방위의 1차 책임은 동맹국 자국에 있음을 강조한 「닉슨독트린」은 아시아 동맹국에 미국의 핵전력과 해·공군력 지원은 계속하되 지상군 병력 지원은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70년 3월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제7사단 병력 2만여 명을 1971년까지 감축하고, 1971년부터 197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억 달러 규모로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특별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국가안보 결의각서(NSDM-4

15)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Washington, February 4, 1968. *FRUS 1964-1968*, Vol. XXIX, Part1, Korea, pp.322-323.

16) Telegram from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12, 1968, *FRUS 1964-1968*, Vol. XXIX, Part1, Korea, pp.369-371.



8)를 채택하였다.<sup>17)</sup>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는 1971년 2월 6일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국군 현대화계획 제1차 연도를 위한 추가 예산 1억 5,000만 달러에 대한 미국 의회의 승인, 주한미군 병력 2만여 명의 감축과 이에 따른 국군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양국 정부의 외교·국방 관계 고위관료가 참석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 개최 등이었다.<sup>18)</sup>

이에 따라 1971년 3월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 제7보병사단 2만여 명과 3개 공군 비행대가 철수하면서 1960년대 말 기준 약 6만 2,000명이었던 주한미군이 4만 1,0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당시 서부전선의 비무장지대에 배치했던 미 제2보병사단이 동두천과 의정부로 재배치되면서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일부를 제외한 155마일 휴전선에서의 방어 임무를 국군이 인수하였고, 우리 국군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체감하였다.<sup>19)</sup>

1973년 4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전략의 수립과 군사력의 건설 착수’를 지시하였다.<sup>20)</sup>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중화학 공업과 연계시켰고,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 등을 제외한 주요 무기와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였다. 같은 해 7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최초로 「기본군사전략」을 수립하고 8개년에 걸친 「자주적 군사력 건설계획」을 마련하였다. 1960년대 말 북한의 도발과 1970년대 초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인해 한국 정부는 기본방위 구상을 재검토하고 국군의 현대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울곡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sup>21)</sup>

## 5.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연합방위체제 구축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 설치를 결의하였다.<sup>22)</sup> 미국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

17)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 Washington, March 20, 1970.

18) 「한국군 현대화 및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공동성명서」(1971.2.6, 서울·워싱턴 동시 발표).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125.

20)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국방부, 1994), p.23.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p.133-134.

22)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Unified Command,” S/1588, July 7, 195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의 병력과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 하의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

를 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했고,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맥아더 사령관에게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귀하에게 이양한다.”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sup>23)</sup> 이에 미국 측은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위임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7월 16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sup>24)</sup> 이후 1954년 11월에 체결된 「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 제2조에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대한민국 군대를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 하에 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될 때까지 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16개 유엔 회원국의 적대국이었던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1971년 대만(중화민국)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승계하자 주한 유엔군은 ‘유엔’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1972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16개 유엔 회원국 중 미군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태국군이 철수하면서 주한 유엔군에는 미군만 남게 되었다.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 공산주의 진영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했고,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군사령부와 관련하여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에서 제의한 2개의 상반된 안건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유엔군 측 안건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 후,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도록 최단 시일 내에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고, 공산군 측 안건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유엔 기치 하의 모든 주한 외국군이 철수한 후,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sup>25)</sup>

미국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가로 한국에 약속했던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sup>26)</sup> 1977년 제10차 한미

---

under the U.S.)가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미국에 사령관 임명을 위임했고, 통합군사령부가 북한군과의 작전 중에 각 참전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임의대로 병행 사용할 권능을 통합군사령부에 부여했으며, 미국이 통합군사령부의 활동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3) The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to the American Embassy(July 15, 1950), July 14, 1950, Pusan, Korea, 국가기록원.

24) Reply of General MacArthur to President Rhee through American Ambassador John J. Muccio in Korea(July 18, 1950), July 16, 1950, Taegu, Korea, 국가기록원.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159.

26)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년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01: 한국전쟁 이후 주요 시점별 미국의 한반도 지정학적 가치 평가와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연구』(2020.12.31.), p.188.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미 지상 전투병력 제1진의 철수 완료 전에 한국방위의 작전 효율화를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하는 주한미군이 철군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공동공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sup>27)</sup>

1978년 제11차 SCM 공동성명에서 같은 년도 내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설치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는 동 기구의 운용을 한미 간에 수시로 공동 검토함으로써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성을 계속 증대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78년 11월 7일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을 이어받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보다는 “관계 당사국들이 정전체제를 유지하도록 마련한 유일한 현행법적 조치인 정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한, 유엔군사령부는 평화유지기구로서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sup>28)</sup>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고조된 미국과 소련 간의 새로운 냉전 기류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 레이건(Ronald W. Reagan) 정부 기간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양국 간 커다란 갈등 사안이 없었고, 미국은 상당한 양의 군사·경제·외교적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였다.<sup>29)</sup>

1981년 2월 초 전두환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당시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한미동맹의 복원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재확인이었다. 당시 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이전의 카터(James E. Carter Jr.) 정부에서 연기한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취소하고, 미군 F-16 전투기의 한국군 이전에도 동의하였다. 미국은 당시의 한미 정상회담을 한미동맹의 기초를 복원하고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책임을 나타내는 상징적 회담으로 평가하였다.<sup>30)</sup> 당시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북한을 앞섰으나 군사적으로는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한미동맹 지원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는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전력증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던 시점이었기에 레이건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sup>31)</sup>

27)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7.7.26.)

28)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8.7.27.)

29)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한국전쟁 이후 주요 시점별 미국의 한반도 지정학적 가치 평가와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연구』, pp.230-234.

30) Document 5: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ect: Summary of the President's Meeting with President Chun Doo Hwan of the Republic of Korea, February 2, 1981, 11:20-12:05 P.M., Cabinet Room, with Cover Memorandum, Richard V. Allen to President Reagan, February 6, 1981, Subject: Your Meeting with President Chun of Korea.

31)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한국전쟁 이후 주요 시점별 미국의 한반도 지정학적 가치 평가와 안보정책』

## 제2절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변천

### 1.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과 한미동맹의 재조정

1980년대 말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럽 냉전의 막바지였던 1989년, 미 상원은 유럽 주둔 미군과 주일미군, 주한미군, 해외 주둔 미군 군속(軍屬) 유지 경비 등에 관한 4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년·워너 수정안(Nunn-Warner Amendment)」을 통과시켰다.<sup>32)</sup> 이 법안에서 한미동맹 관련 내용은 “한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가능성을 협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1990년 4월 19일 미 국방성이 의회에 보고한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 Strategy Initiative)」에서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들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소련에 의한 전통적 안보위협 감소, 미국 내 재정압박에 따른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 등을 고려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구상에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감축한다는 전략적 계획이 들어 있었다.<sup>33)</sup>

동아시아전략 변화에 따른 부시(George H. W. Bush) 행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전략에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군사 관계를 보다 대칭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한국군의 기여도를 점증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부시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요청했고, 한미 양국은 1991년 1월 25일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sup>34)</sup> 이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

책 및 군사전략 연구」, pp.232-234.

32)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s 1990 and 1991, <https://www.congress.gov/bill/101st-congress/senate-bill/1352/all-info>(검색일: 2023.5.11.)

33)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Looking for the 21st Century*, April 1990.

34)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이다. 이는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조치다. SOFA 제5조에 “미국 측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 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라고 되어있다.

부가 방위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담 금액을 정하게 되어있었다. 이 협정에 따라 1991년 처음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1,073억 원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통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완화와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한미 양국은 한국방위에서 주도적이었던 미군의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꾸면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구하였다.<sup>35)</sup> 1991년 3월 25일 미군 장성이 맡았던 유엔군사령부 측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이 담당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 미 제2사단이 담당하던 판문점 지역 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일부의 경계 책임을 한국군이 인수하였다. 1992년 말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주한미군 경계병력 100명을 한국군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1992년 7월 한미연합아전군사령부(CFA: Combined Field Army)를 해체하고 그 임무와 지휘권을 한국군 제3군사령부로 전환했고, 같은 해 12월 1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겸직하던 지상구성군사령관 직위를 한국군 장성으로 전환 임명하였다.

한미 양국은 1992년 10월 제24차 S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까지 한국군이 환수하기로 합의하였고,<sup>36)</sup>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자주적 국방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입지를 확실히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sup>37)</sup> 미국의 관점에서는 냉전 종식으로 소련과 군사적 대결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작전 차원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유지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였다.<sup>38)</sup>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결정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구상하는 공동작업을 진행

35)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용어는 이상훈 국방부장관의 인터뷰 기사[“이 국방에 들어본 「한국방위의 한국화,」 『서울신문』(1990.2.9.)]에 나온다. “미국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평시에는 한국군에 이양하고 전시에만 통합지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군 구조 개편으로 국방참모본부 창설 되면 우선 평시 작전지휘권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중략) 국방참모본부의 창설은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구하면서 군 상부조직은 간소화하고 예하부대는 전투임무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36)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한미 양국 정부는 1954년 11월 17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 하에 둔다.”라고 합의하였다. 이후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37) 김영삼, 『김영삼 회고록』(서울: 조선일보사, 2001), pp.368-370.

38)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한국전쟁 이후 주요 시점별 미국의 한반도 지정학적 가치 평가와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연구』, pp.323-324.

하였다. 그 결과 1995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랜드연구소(RAND)가 공동으로 『21세기를 지향한 한미안보 협력 방향 공동연구』를 출간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는 한미동맹의 과거 역사와 현재 상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및 국지적 도전에 비추어 동맹의 미래를 구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sup>39)</sup>

## 2. 21세기 안보질서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재배치

21세기 국제 안보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미국은 군사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으로 대응하였다.<sup>40)</sup>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테러는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등장시켰다.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군사 변환을 통한 반테러전쟁 및 폭정의 종식과 같은 자유의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세계안보정책을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과 동맹 변환 및 해외기지의 재조정을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변화하는 국제 및 지역 안보질서 속에서 근본적인 변환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은 어떤 지역에서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형 동맹체제로 재편을 시도했고, 이를 한미동맹의 재조정에도 적용하였다. 미국의 동맹전략은 지구적-동아시아-한반도 수준으로 적용되는 하향식이었다. 당시 한국은 탈냉전기를 맞아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대미 자주성의 향상과 자주 국방력 증진을 지향하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한반도와 국내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의 변화요인에 주목했고, 미국은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였다.

한미 양국은 2003년과 2004년 총 12차례에 걸쳐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집중되었고, 한미 양국은 FOTA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새로운 동맹관계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은 2005년 ‘한미안보정책구상(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로 이어졌다. 이 SPI 회의 의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후속 조치사항 점검, 전

39) Jonathan D. Pollack, Young Koo Cha, ed. al.,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the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Santa Monica: RAND, 1995).

40) U.S. Department of Defense, *Elements of Defense Transformation*, 2004.

시작전통계권 전환과 연합 군사능력 발전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시행 점검, 한미동맹의 비전 연구였다. SPI는 FOTA와 함께 향후 변화하게 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비전과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2003년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2004년 FOTA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004년 10월 한미 양국은 3단계에 걸쳐 미군 1만 2,500명을 줄여서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 5,0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3단계 철수 이후 주한미군은 2만 5,0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2만 8,500명 수준으로 재조정되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 변환과정에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북한의 도발 억제라는 주한미군 본연의 임무는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미 양국은 연합 군사 능력을 강화하였다.

### 3. 북한 핵 위협과 확장억제

미국은 1978년 제11차 SCM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하’에 있다며 핵우산을 명기한 이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해 왔다.<sup>41)</sup>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개최된 제38차 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되었고, 그 이후에 개최된 SCM 공동성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미 양국은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후 개최된 제45차 SCM에서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도 “미국은 확장억제와 재래식 및 핵전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명문화하였다.<sup>42)</sup>

2016년 10월 20일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차관급이 주관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sup>43)</sup> 이 협의체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논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도화했다는 데 그 의미가

41)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8.7.27.)

42)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2013.5.7.)

43)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Statement for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20 December 2016.

있다. 확장억제의 제도화는 향후 한국과 미국에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sup>44)</sup>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서 ‘한국형 확장억제’의 공동 기획 및 실행을 위한 한미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sup>45)</sup>

2000년 이후 한국의 국력 상승과 국군의 능력,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변혁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약칭,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었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한미안보정책구상(SPD)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미국에 제의하였다. 2005년 10월 제37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의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여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06년 9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의 기본원칙을 합의하였다. 2007년 2월 23일 양국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내용의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심화로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였다.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8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42차 SCM에서 「전략동맹 2015(SA 2015)」에 서명하고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제반 동맹 현안을 조정하고 보완하기로 하였다.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로 인한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미 정상은 2013년 5월 7일 전작권 전환이 연합방위력 강화에

44) 확장억제는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여 동맹국과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략개념이며,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해 왔다. 냉전 이후의 확장억제는 핵 억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서 핵 억제가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러시아의 핵전략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핵 억제력이 없으므로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45) 한미동맹 기반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관련 내용은 국방부 제공 자료(2023.7.24.)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같은 해 10월 2일 제45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였다. 이후 2015년 11월 2일 제47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였다.

〈표 1-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통제권 전환’의 3가지 조건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 출처: 국방부 제공자료(2023.6.).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미래 지휘구조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23년 현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5.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

2019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이 안보 외에 지역·글로벌 이슈도 함께 하는 동맹으로 확고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으로 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위대한 동맹의 역사와 정신을 잊지 않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국방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핵협의그룹(NCG) 등 다양한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통해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한미동맹 현안을 공동 관리하며 한미동맹의 발전방안을 협의해 왔다. 2019년 11월 15일 발표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에서 한미 간 국방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추구하고, 사이버·우주·해양·환경 문제 등 새로운 초국가적·비전통적 위협을 포함하도록 국방협력의 수준·범위를 심화·확대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능력·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sup>46)</sup>

2020년 10월 14일 제52차 SCM에서 양국 국방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협력이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국방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sup>47)</sup> 이행을 통한 남북 간의 적대행위 중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지속 이행 및 관리로 한반도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였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한 연합방위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핵·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sup>48)</sup>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안보·경제·첨단기술·사이버공간·공공급을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급변하는 전략환경과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Joseph R. Biden Jr.) 대통령은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공동의 비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공간적 범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전통적 군사안보에 더하여 우주·사이버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동맹협력의 수준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sup>49)</sup> 같은 해 11월 3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54차 SCM을 통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국제사회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립과정에서 양국 국가이익의 접점을 확대하고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하였다.<sup>50)</sup>

2022년 11월에 개최된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간다는 비전 아래 포용·신뢰·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같은 해 12월

46)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2019.11.15.).

47)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 회담에 따른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지칭한다.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48) 국방부, 『202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pp.162-163.

49)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152.

50)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22.11.3.).

한국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의 국방영역에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인도·태평양지역 질서 구축,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과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6월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정부는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확고한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 간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sup>51)</sup>



51)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울: 국가안보실, 2023), pp.28-32.





## 제Ⅱ부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제1장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제2장 주한미군에 대한 제도적 지원

## 제1장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으며,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대북억제력을 제공하고, 국군이 자주적 방위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을 지원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국내정치 요소에 따라 감축되기도 하였으나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었다. 탈냉전기 들어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은 한반도 역외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가져왔다.

### 제1절 대북억제력 제공과 전후 재건지원

#### 1. 한미동맹 성립 이전 주한미군 주둔 약사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마련된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소 분할점령안’에 의해서였다.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1945년 9월 2일 「일반명령 제1호」를 발표해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은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게 항복할 것을 지시했다.<sup>1)</sup> 곧이어 9월 7일 38도선 이남에 미군정 실시를 선포한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고 1호」가 발표되었고, 9월 8일에는 미 육군 제24군단이 인천에 상륙했다.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은 9월 9일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재(在)조선 일본군 및 총독의 항복문서 조인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미 제24군단 예하 부대를 주축으로 약 7만 2,000명 규모의 주한미군사령부(USAFIK: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를 발족하였다. 미군정청은 1945년 10월 1일까지 남한에 주둔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완료하였고, 10월 9일까지 전국에 미군 배치를 완료하였다.<sup>2)</sup> 미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하였다.

1) 신복룡 편, 『한국분단사 자료집(II)』(서울: 원주문화사, 1991), pp.151-156.

2) 한용원, 『창군』(서울: 박영사, 1984), p.153.

미군정은 1945년 11월 13일 국방기구인 국방사령부(정부 수립 후 국방부로 개칭)를 설치하고 국군의 조직·편성과 교육훈련을 위한 제반 준비업무에 착수하였다. 우선 미군정은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여 국군의 기간요원과 미군 지휘관의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이후 「뱀부계획(Bamboo Plan)」을 수립하여 각 도에 1개 연대씩 총 8개 연대 2만 5,000명 규모의 남조선국방경비대(이후 조선경비대로 개칭)를 창설하였다.<sup>3)</sup> 조선경비대는 정부 수립 전까지 총 5개 여단, 15개 연대와 후방지원부대로 증편되었다. 해안경비대는 인천기지 등 총 7개 기지를 창설하여 전국에 기지를 확충하였다.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부대를 창설할 때 미군정에서는 임시군사고문단(PMAG: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을 배치하여 조직·편성과 교육훈련을 지도하였다.<sup>4)</sup>

미군정에서는 매년 예산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8.7~14.2%로 편성하여 부대를 증·창설하고 무기·장비를 도입하였다.<sup>5)</sup> 창설 초기 조선경비대는 일본군으로부터 회수한 무기인 38·99식 소총을 사용하다가 점차 미군의 M1 소총과 카빈총을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교육훈련은 일본식 교육훈련이 주를 이뤘으나 미군이 각 부대에 군사고문관을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지도·감독하였기 때문에 점차 미국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미군에 의한 M-3 105mm 야포, 57mm 대전차포, 2.36인치 로켓포, 60mm 및 80mm 박격포 운용을 위한 집체교육이 이루어졌다.<sup>6)</sup> 미 보병학교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도미 유학생도 미국식 교육훈련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였다.<sup>7)</sup> 해안경비대는 LCI(상륙정), JMS(소해정), YMS(소해정), YO(유조정) 등의 함정을 미국으로부터 양도받아 운용하였다. 해안경비대 발족 이후 미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에서 파견된 군사고문단이 배치되어 함정 운용과 작전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였다.<sup>8)</sup>



〈사진 2-1〉 미군사고문단의 L-5 엔진 정비 교육(1948)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미 양국은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 사령관 간에 체결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 I』(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pp.27-34.

4)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서울신문사, 1979), p.118.

5)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국방부, 1983), pp.316-318.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 I』, pp.75-84

7)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서울: 중앙일보사, 1993), p.37.

8)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1집(서울: 해군본부, 1954), pp.27-28.

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의 철군과 한국 정부로 정권 이양, 당시 편성 중인 국군을 계속하여 조직·훈련 및 장비할 것을 규정하였다.<sup>9)</sup> 이 협정 체결 후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었고, 9월 5일 조선경비대는 육군,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기까지 국군에게 최소 6개월분의 군사 장비와 보급품을 양도하도록 명기한 NSC-8/2의 결정(1949.3.22.)에 따라 1949년 6월 하순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하기 전에 모든 보급품과 장비를 국군에게 인계하였다.<sup>10)</sup> 이렇게 하여 국군은 미군으로부터 무기·장비 사용법을 전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격·방어 시 분대·소대·중대의 시범훈련과 대대기동훈련 등 신교리를 적용하여 훈련할 기회를 얻었다.<sup>11)</sup>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해서 이듬해인 1949년 6월 29일 군사고문단(KMAG: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500명만 잔류시키고 철수하였다.<sup>12)</sup> 이로써 주한미군사령부가 해체되었고 한국 정부는 국군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고문관은 육군 각 사단과 병과학교에 파견되어 상대역제도(Counterpart System)에 따라 지휘관에게 부대 지휘 요령과 교육훈련을 조언하였다.<sup>13)</sup> 해군 함정에도 군사고문관을 배치하여 해군력 증강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였다. 한국군 장교들이 미국 육군보병학교 등에 군사 유학을 통해 미 군사체계를 교육 받았으며, 일본에 있던 미 제8군 예하 부대에도 파견되어 실무교육 등을 받았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미 군정기로부터 6·25전쟁 이전 시기에 국군 창설을 위한 조직·편성과 교육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다시 한반도로 전개하였고 한미는 1950년 7월 12일 「재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대전협정)을 체결하였다.<sup>14)</sup> 이 협정은 주한미군의 재판관할권을 규정한 것으로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9)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협정에 관한 행정협정(1948.8.24.)」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34-39.

10) NSC-8/2, The Position of the U.S. with Respect to Korea, 22 March 1949.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 I』, pp.187-189.

12)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1950.1.26. 서명, 1949.7.1. 소급발효)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58-63.

13)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5), pp.73-78.

14) 「재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1950.7.12. 대전에서 서명, 1950.7.12. 발효).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70-73.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 하에 전쟁을 수행하였다.<sup>15)</sup> 6·25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개 야전군(미 제8군), 3개 군단(제1·9·10군단), 9개 사단(육군 제1기병사단·2·3·7·24·25·40·45사단, 해병대 제1사단), 그리고 2개 연대전투단(제5보병연대·제187공수연대) 등 지상전력의 절반 이상이 일본과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하였다. 해군은 극동해군사령부 예하 제7함대의 전력을 해상전투 및 작전에 투입하였다. 공군은 극동공군사령부 예하의 제5공군과 전략폭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고갈시키기 위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sup>16)</sup>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미군으로부터 직접 군사원조(직접 군원)를 받아 새롭게 증강되는 부대들을 무장시켰다. 6·25전쟁 기간 동안 국군에 대한 보급지원, 무기와 장비보강은 미 회계연도 방위비에 포함되어 지출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 전에 북한보다 전력수준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국군은 북한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었다. 이러한 무기는 1980년대 국군의 핵심 무기와 장비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재래식 무기의 주축을 이루었다. 국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양적·질적으로 전력증강을 할 수 있었다. 육군은 개전 당시 8개 사단, 2개 독립연대 규모였으나 「한국군 20개 사단 확장안」에 따라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3개 군단, 18개 사단 규모로 증가하였다. 장비도 미군의 직접군원에 따라 57·75mm 대전차 무기, M36 전차 그리고 155mm 곡사포 등이 도입되었다. 해군은 제1함대를 창설하였으며, PT(어뢰정), PCS(구잠정), PF(호위함), LSSL(상륙정) 등의 함정을 미국 해군으로부터 양도받았다. 해병대는 한미연합작전을 통해 미국 해병대로부터 개인화기·공용화기, M36 전차 그리고 105mm 곡사포를 지원받았다. 공군은 F-51D 전투기로 구성된 1개의 전투비행단과 1개 훈련비행단 규모로 성장하였다.<sup>17)</sup>

국군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수준도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6·25전쟁 중 국군 9개 사단은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이 설립한 야전훈련사



〈사진 2-2〉 제9사단 FTC 훈련지도

※ 출처: 군사편찬위원회

15) 「이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공한」(1950.7.14.), 「맥아더장군의 회한(回韓)」(1950.7.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629-631.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282.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 I』, pp.241-271.

령부(FTC: Field Training Command)에서 1951년 8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9주까지 훈련을 받았다. FTC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선에 복귀한 국군은 1952년 후반에 공산군의 공세를 격퇴함으로써 유엔군에게 국군의 우수한 전투 역량을 입증할 수 있었다.<sup>18)</sup> 이에 추가하여 미군은 국군의 장교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대상 인원을 선발하여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전문군사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1,000여 명의 국군 장교가 미국의 군사학교에 파견되어 미국식 전술 교리와 편제, 장비와 무기체계 운용법을 익혔다.<sup>19)</sup> 전쟁 기간 중 국군의 전쟁 수행과 편성·작전·정보·군수 등 전 분야에 걸쳐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지도가 이루어졌다. 이들의 규모는 1950년 7월 470명에서 1952년에는 1,95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sup>20)</sup>

1950년 7월 1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최초로 한국전선에 투입된 이래 미국의 병력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1년 후(1951.6.30.)에는 25만 3,250명, 2년 후(1952.6.30.)에는 1만 2,000여 명이 늘어나 26만 5,864명에 달하였고, 정전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에는 약 32만여 명을 기록하였다. 유엔군 전체에서 미군의 비율은 지상군이 91.5%, 해군과 공군은 각각 85.9%와 93.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미국은 연인원 178만 9,000명이 참전하여 전사 3만 6,634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 및 포로 8,176명 등 총 13만 6,944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였다.<sup>21)</sup> 주한미군은 전쟁 수행과정에서 유엔군이 수행한 역할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주도하였다.



〈사진 2-3〉 워싱턴 D.C. 한국전쟁 추모의 벽

※ 출처: 국가보훈부

인명 손실이 발생하였다.<sup>21)</sup> 주한미군은 전쟁 수행과정에서 유엔군이 수행한 역할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주도하였다.

6·25전쟁 기간 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고 전력증강 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해 국군을 정예화시켰으며, 동북아에서 공산세력의 확장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 I』, pp.282-288.

19) 국방부, 『국방백서 1967』(서울: 국방부, 1966), p.68; 국방부, 『국방사』 제2집(서울: 국방부, 1987), p.268.

20)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 p.161.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p.28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추모의 벽’ 준공... 6·25전사 미군·카투사 4만여 명 이름 각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077>(검색일: 2023.4.5.).

## 2. 한미동맹 형성과 국군 정비 지원

### 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1953년 정전협정체결 이후 10월 1일 한미 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군사동맹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6·25전쟁 이후 한국에 주둔하면서 군사분계선(DMZ: Demilitarized Zone) 방어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국군의 정비와 현대화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는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미군사관계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60년대 북한의 군사도발과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미군사관계를 점차 미국 주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sup>22)</sup>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주한미군은 6·25전쟁이 끝나자 육군 7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 등 총 32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아이젠하워 정부의 ‘뉴 룩(New Look)정책’<sup>23)</sup>과 ‘대량보복전략’<sup>24)</sup>에 따라 2개 사단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철수하였다. 1954년 3월 14일부터 미 제45·40사단, 해병대 제1사단이 철수하였는데 미 제45사단은 철수하면서 주요 전투 장비를 한국군에 인계하였다. 이어 1954년 8월 18일부터 미 제25·3·24사단이 철수하였고, 제5공군사령부가 오산에서 일본의 나고야로 이동하고 일부 독립 비행연대들도 규슈와 사세보로 재배치되었다.<sup>25)</sup>

미국 내에서는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1개 여단 정도의 상징적인 병력만 남기고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2개 사단 규모인 7만여 명을 잔류시킨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정전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위협

2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3.10.1. 워싱턴에서 서명, 1954.11.17. 발효),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154-157.

23) 뉴룩(New Look)정책은 대량보복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핵무기가 전쟁에 혁명을 초래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었다. 미국은 이 정책에 따라 각 군의 역할을 원자력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여 각 군의 규모와 구성을 크게 바꾸었다.

24) Robert Frank Futrell, *Ideas, Concepts, Doctrine: Basic Thinking i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1907-1960* (Maxwell AFB, AL: Air University, 1989), p.16.

25)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 pp.303-308.

이 지속하고 있어 이를 억제해야 했다. 둘째,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 시 공산세력의 오판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이 있었다. 셋째,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경우 유엔군이 패퇴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1954년 제네바 정치협상 등에서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넷째,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지함으로써 한국 이승만 정부에 의한 단독 북진과 같은 위험성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후 주한미군 철수 관련 논의는 1969년 「닉슨독트린」이 발표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2개 사단 규모를 지속 유지하였다.

미 국방성은 1954년 11월 20일, 태평양 방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군 재배치계획의 목적으로 미 제8군사령부를 일본 자마(座間)캠프로 이전하였다가 1955년 7월 26일 서울로 다시 복귀함으로써 ‘서울 용산 시대’를 열었다. 이것은 미 육군 주력부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6·25전쟁 이후 20개 전투사단과 10개 예비사단 규모로 팽창했던 국군에 대한 감독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일고 있던 주일미군 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1957년 7월 미 국방성은 주일미군의 하와이 이동에 따라 서울의 미극동지상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하였으며 주한미군사령부(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를 창설하였다.<sup>26)</sup> 이로써 주한미군사령부는 예하에 약 7만 명으로 구성된 미 제8군과 제314비행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주한공군과 주한해군을 주력으로 두게 되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휴전선 일부 지역을 직접 방어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전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계속하였다.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5전쟁 이후 2개 사단을 제외하고 철수했던 주한미군은 1960년대 말까지 최소 4만 6,000여 명에서 최대 7만 5,000여 명이 주둔하였다.

<표 2-1> 1954~1970년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

(단위 : 명, %)

연도	해외주둔 미군	주한미군	점유율	연도	해외주둔 미군	주한미군	점유율
1954	1,120,175	325,590	20.1	1963	731,045	56,910	7.8
1955	927,851	75,328	8.1	1964	737,433	62,596	8.5
1956	881,548	68,810	7.8	1965	832,364	58,636	7.0
1957	927,537	71,043	7.7	1966	1,051,893	47,076	4.5
1958	811,254	46,024	5.7	1967	1,228,538	55,057	4.5
1959	708,618	49,827	7.0	1968	1,205,695	62,263	5.2
1960	685,582	55,864	8.1	1969	1,171,893	66,531	5.7
1961	705,109	57,694	8.2	1970	985,913	52,197	5.3
1962	766,628	60,947	8.0				

※ 출처: 미국 국방인력데이터센터(US DMDC).

26) 김일영 외, 『주한미군 쟁점 역사 전망』(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78.

## 나. 주한미군의 역할

### 1) 「한미합의의사록」 체결과 군사원조 지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어 1954년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지원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약칭, 한미합의의사록)」 제2조에서 한미 양국은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하에 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전후에도 계속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고 규정한 것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요구에 대한 미국 측의 안전확보를 위한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작전통제권의 행사 시기는 6·25전쟁 당시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한미합의의사록」은 국군의 최종적인 규모와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등을 규정하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만 5,000명, 해병대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명 등 모두 72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sup>27)</sup> 이에 따라 1960년대까지 미국은 매년 3억 달러에 이르는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국방비의 87%에 달하는 규모였다.

### 2) 국군의 전력증강 지원

국군은 6·25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를 토대로 군을 재정비하고 기구 개편을 통해 1953년 12월 육군 제1군사령부, 1954년 10월에 제2군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예하에 군수지원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하는 등 군비증강을 이루었다.<sup>28)</sup> 한편 6·25전쟁 초기 서울을 떠났던 각 군 본부는 1955년 초에 서울로 복귀하여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계룡대로 이전할 때까지 서울에 주둔하였다. 국군이 부대 개편을 통해 스스로 군수지원태세를 갖추게 되자 1956년도부터 미합동참모본부는 「군사지원계획(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에 따라 직접 군원에서 정상군사원조(정상 군원)으로 전환<sup>29)</sup>하여 연평균 2억 8,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1958년도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1959년도부터 유지비에 속하는 물자 중에서 국내 생산이 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국

27) The Department of the Army to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Hull), *FRUS 1952-1954*, Vol. XV. part 2. Korea, pp.1875-1878.

28) 육군본부, 『육군 40년 발전사(1945~1985)』(서울: 육군본부, 1989), pp.113-117.

29) 6·25전쟁 기간 중 미군은 자체군수지원계통으로 작전통제하에 있던 한국군에게 소요 장비와 물자를 직접 보급했는데, 이러한 미군의 대한 군사원조 방식을 직접군사원조라고 한다.

제무역으로 획득이 가능한 물자를 한국 측에 이관하는 계획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군원이 관으로 1959년 당시 한국의 국방비는 GNP의 7.5%, 정부 일반예산의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상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sup>30)</sup> 한미 양국은 6·25전쟁 이후 계속된 국군의 부대 증편과 군비증강이 양국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1958년도에 국군의 병력 규모를 72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감축하는 「한국군 감군계획」에 합의하였다. 이때 국방부는 국군의 군 구조개편 및 부대 해체와 함께 전력을 증강하는 방식으로 감군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군은 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전후 부대구조를 정비하고 전력을 증강하였는데 전후 1965년까지 국군의 군사력건설은 대부분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한 것이었다.<sup>31)</sup>

육군은 전후 20개 사단까지 증강되었던 부대 규모를 1958년 말에 2개 사단을 감축하는 대신 사단 화력을 증강하였다.<sup>32)</sup> 해군은 미 해군의 편제 개념으로 부대를 개편·정비하면서 제1함대를 해체하여 한국함대를 창설(1953.9.10.)하였으며, 해병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도서 부대를 서해 5개 도서에 재배치하는 한편 상륙작전부대인 제1해병사단을 창설(1955.1.15.)하였다. 공군은 「공군현대화계획」을 추진하여 제10전투비행단을 제트화하고 전술공군작전체계를 구축하였다.<sup>33)</sup>

이후 미국은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에 대한 대가로 「브라운 각서」(1966.3.4.)를 통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군원이관 중단,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국군은 1960년대 말까지 3개 예비사단을 전투사단화 하는 동시에 육군 1개 사단과 해병 1개 여단 증·창설, 해군 3개 전단, 공군 1개 전투비행 전단, 작전사령부와 군수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또한 육군은 호크·나이키 유도탄대대와 어네스트 존 대대 창설과 M-48 전차를 도입하였고, 해군은 대간첩 작전용 고속정을 건조하고 구축함(DD) 및 호위함(FB)을 도입하였다. 공군은 F-4D 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열세에 놓여 있던 대북한 항공전력을 보강하였다.<sup>34)</sup>

### 3) 수도권 서부 축선 방어

후전선 방어는 미 제1군단이 미 제2·7사단, 국군 제1·5·6군단을 작전통제하여 서울과

30) 국방부, 『국방사』 제2집 pp.453-455.

31) 국방부 재정국, 『국방예산통계』(서울: 국방부, 1972), pp.316-317; 국방부,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0), p.293.

32) 육군은 18개 사단을 신편제표에 따라 사단 포병 105mm 대대와 155mm 대대를 1개 포대 4문에서 6문으로 증강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33) 공군본부, 『공군약사』(서울: 공군본부, 1986), pp.1398-1399.

34)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국방부, 1994), pp.34-37.

인접한 서부전선 방어를 담당하였고, 동부전선과 후방지역은 국군이 담당하였다. 1957년 6월 21일 유엔군 측이 북한의 불법 전력증강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정전협정 제13조 D항(신무기 도입금지)의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미 보병사단들과 편제 부대를 새로운 편제로 개편하였다. 5각 편제를 적용한 신편 사단(펜토믹 사단)은 전술핵무기의 투발수단을 갖추어 화력 면에서 획기적인 증강이 이루어졌고 기동력과 통신능력이 개선되었다.<sup>35)</sup> 미 육군이 펜토믹 사단으로 개편하게 된 것은 핵무기의 등장으로 핵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동력과 타격력을 겸비한 전투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사진 2-4〉 메타도어 유도탄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있었기 때문이었다. 펜토믹 사단은 기존의 사단 예하 3개 보병연대를 증강된 대대 규모의 5개 전투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각 전투단은 5개 중대 편제로, 각 중대는 5개 소대를 편제화하였다. 1개 사단에 5개 전투단을 편제함으로써 이론상 일부 전투단이 적의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괴멸되더라도 나머지 전투단이 임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1960년대 들어 폐지되었고 각 사단은 3개의 전투여단 본부와 필요에 따라 대대를 추가하는 형태로 회귀하였다.<sup>36)</sup>

미국은 1958년 주한미군의 무기 근대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후 1959년 초 메타도어(Metador) 중거리유도탄, 280mm M-65 원자포 및 어네스트 존(Honest John) 유도탄 등을 배치하였다.<sup>37)</sup> 또한 재래식 장비현대화를 위해 M-46 전차를 폐기 후 M-47 전차로 대체하였고, H-21 플라잉 바나나 수송 헬기와 M-14 자동소총을 지급하였다.<sup>38)</sup> 이 밖에 전쟁 재발 상황을 가정해 1954년부터 현상 유지와 방어 성격이 강한 포커스 렌즈(Focus Lens) 지휘소연습과 1961년부터 소규모 후방지역 방호훈련인 독수리(FE: Foal Eagle)연습을 시작하였다.

35)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 pp.308-320.

36) 토머스 G. 맨켄 저, 김수빈 역, 『궁극의 군대』(서울: 미지북스, 2018), pp.84-101.

37) 김일영 외,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pp.79-80.

38) 안승범,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기 보유 변천사,” 『디펜스 타임스』 통권 26호(2004.7), p.107.

## 4) 한미군사관계 조정

1960년대 들어 북한의 빈번한 군사도발은 한미군사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1968년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국방각료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소화기(M-16소총)를 생산할 수 있는 군수공장 설치, 대간첩기구 편성, 향토 예비군 무장지원과 1억 달러의 추가 군사원조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국방각료회담은 1971년 제4차 회의 시부터 외교부 간부까지 참가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확대되었다. 한미국방각료회담은 1953년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후 미국 주도적인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한미간에 점차 수평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사령부 내에 ‘한미연합기획참모단’을 설치하기로 상호합의함으로써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한국방위계획 수립에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가 마련되었다.<sup>39)</sup>

이처럼 주한미군은 6·25전쟁 이후 군사원조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재건, 국군의 전력증강을 지원하였고, 전선 최전방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과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연합전력으로서 기능 그리고 정전협정 유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주한미군은 전쟁 발발 시 서부전선에서 북한의 주 공격로 중 하나인 ‘개성-판문점-문산-서울’로 이어지는 축선에 배치되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였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심리적 부담감을 주었고, 1960년대 초반 한국의 국내정치가 혼란한 상황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주한미군의 주둔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증가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그리고 한국의 국력 증대에 따라 국군은 한미국방각료회담(이후 한미안보협의회의로 개칭) 개최, 한미연합기획참모단 설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 등을 통해 미군 주도의 일방적인 동맹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39) 김일영 외,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pp.81-83.



## 제2절 한국의 자주적 방위력 구축 지원

### 1.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정책

#### 가. 닉슨 행정부의 「닉슨독트린」 추진

6·25전쟁에 참전하였던 미군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철군 정책에 따라 차례로 철수하고 2개 사단만이 주둔하고 있었다. 1960년대 말 취임한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은 베트남전쟁을 미국화(Americanization)했던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1963~1969)와는 달리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아시아 5개국 순방에 앞서 괌(Guam)에서 대아시아정책을 발표하였다. 「닉슨독트린」으로 불린 이 정책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 실패와 동·서양 진영의 국제적 긴장 완화 무드, 미국의 군사적 부담 경감 등의 배경에서 발표되었다. 핵심내용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적 갈등의 경우 미국은 해당 동맹국과의 조약에 따라 그 나라에 안보와 경제원조를 제공하지만 방위의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동맹국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이었다.<sup>40)</sup> 이것은 기존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이 “2½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에서 “하나 이상(one more)의 전쟁” 시나리오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41)</sup>

미국의 대한방위 정책은 1969년 「닉슨독트린」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닉슨 행정부(1969~1974)는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이 미 지상군병력을 기대하지 말고 자국 국방의 1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하였다.<sup>42)</sup> 이후 닉슨 행정부는 1969년 9월 1차로 2만 5,000명, 2차로 4만 5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을 발표하여 철군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였다.<sup>43)</sup>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심각한 안보위기로 인식하고 미국의 철군 방침을 철회하기

40) 김봉중, 『독트린의 역사』(광주: 전남대학교출판원, 2017), p.201.

41) The White House, NSDM 27, “US Military Posture,” October 11, 1969, <https://fas.org/irp/offdocs/nsdm-nixon/nsdm-27.pdf>(검색일: 2022.12.20.);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Kissinger, “U.S. Military Posture,” Oct 2, 1969.

42)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p.20.

43)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Nixon, 1969, p.718. <https://quod.lib.umich.edu/p/ppotpus/4731731.1969.001/778?view=image&size=100>(검색일: 2022.12.20.).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은 기정사실화되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철군에 대비한 정부 당국자 간 회담을 연쇄적으로 개최하였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철수로 인한 전력 공백의 발생 방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방위공약 이행 보장, 한국군 전력증강과 현대화를 위한 미국 지원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sup>44)</sup>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 언론은 미 국방성이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1차로 1개 사단을 철수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미 제7사단의 철수를 막기 위해 대미교섭을 다각적으로 벌였으나 미국의 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미국은 1970년 7월 포터(William J. Porter) 주한미 대사를 통해 주한미군 1개 사단 감축 계획을 공식 통보하였으며, 한미는 1971년 2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 현대화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sup>45)</sup>

닉슨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로 인해 이전 정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닉슨독트린」은 미국이 연루의 위험을 줄이고 한국의 안보 책임을 증대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으며 한미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포드 행정부(1974~1977)는 닉슨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베트남 전쟁의 상황 악화와 북한의 도발 증가 등의 정세를 반영하여 백지화하였다.<sup>46)</sup>

#### 나.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추진

카터(James E. Carter Jr) 행정부(1977~1981)는 선거공약이었던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정책화하여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77년 1월 23일 「대통령 검토각서(PRM)-13」을 하달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1977년 3월 워싱턴을 방문한 박동진 외무장관

44)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Kissinger) to President Nixon, *FRUS 1969-1976*, Vol. XIX Korea 1969-1972, pp.117-118;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FRUS 1969-1976*, Vol. XIX Korea 1969-1972, pp.121-122.

45) Memorandum from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Kissinger), *FRUS 1969-1976*, Vol. XIX Korea 1969-1972, pp.227-228;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서울: 중앙일보사, 1992), p.319.

46)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226, Washington, May 27, 1975, *FRUS, 1969-1976*, Vol. E-12,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sia 1973-1976,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e12/d268>(검색일: 2022.12.20.).

에게 통보하였다.<sup>47)</sup> 우리 정부는 ‘선보완 후철수’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철수와 보완병행’이라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카터 대통령은 1977년 5월 5일 「대통령명령(PD)-12」를 통해 1978년까지 미 제2사단의 1개 전투여단 6,000명, 1980년 6월 말까지 두 번째 여단과 모든 비전투 병력 9,000명, 1982년까지 잔여 병력과 미군사령부,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sup>48)</sup>

1977년 7월 26일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 브라운(Harald Brown) 미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시행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여전히 완벽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북한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 의심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카터 대통령의 친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10차 SCM을 마친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1978년 말까지 미 지상군 전투병력 6,000명을 철수하고 나머지 전투병력의 철수는 신중히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미 제2사단 본부와 2개 여단은 철수 최종 단계까지 한국에 잔류할 것이라고 밝혔다.<sup>49)</sup> 그러나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대내적으로 행정부의 고위 관리, 의회, 군부를 비롯하여 언론으로부터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였다.<sup>50)</sup> 특히 당시 베시(John W. Vessy) 유엔군사령관과 그의 참모장 싱글러브(John K. Singlaub) 소장은 철수 반대에 적극적이었다. 베시 장군은 카터 행정부의 철수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 참모차장으로 전보되었으나, 1982년 3월 레이건 행정부에서 참모총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싱글러브 소장은 “미 제2사단의 철수가 남한의 전력을 약화해 김일성의 남침을 유발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터 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카터 대통령의 철군 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는 당시 주한미군에 관한 비보도 사항(off the record)이 언론에 보도되어 당혹스러웠으나, 카터 대통령에게 군인의 견해를 반영시킬 필요를 느꼈다고 회고하였다.<sup>51)</sup>

대외적으로 동남아시아 5개국 지도자들도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했고, 일본 후쿠다(福田

47) “Meeting wit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Park Tong-Chin”(March 8, 1977), 양승함·박명림·장훈각 편, 『한국대통령 통치사료집: 박정희(5): 주한미군 철수』VIII(서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2010), pp.109-110.

48) “Presidential Directive-12”(May 5, 1977), 양승함·박명림·장훈각 편, 『한국대통령 통치사료집: 박정희(5): 주한미군 철수』 VIII, pp.145-146; Samuel S. Straton,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to Withdraw United States Forces from Korea*(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p.7-8.

49)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7.7.26.).

50)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주한미지상군철수에 관한 청문록』(서울: 국회도서관, 1979);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미의회 보고서』(서울: 국방대학원, 1979).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127-128; 싱글러브 장군, “나는 좌천된 것이 아니다.” 『국방일보』(2009.9.17.), 8면.

康夫) 수상은 1977년 2월 먼데일(Walter F. Mondale)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주한 미군의 철수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sup>52)</sup>

또한 주한미군 철수 검토에 소련의 극동함대 증강, 베트남 감란만에 대규모 소련 해군기지 건설, CIA의 북한 군사력 평가결과 그리고 미 제2사단 재배치 시 예산 소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다.<sup>53)</sup> 이에 따라 카터 대통령은 1979년 7월 20일 성명을 통해 1981년까지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카터 행정부에서 계획했던 주한미군 철수는 최초 6,000명에서 지상군 3,400명으로 축소하여 철수하는 것에서 종료되었다.<sup>54)</sup>

카터 행정부 시기 주가 되었던 미국의 인권외교에 기반한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의한 한미동맹 재조정 시도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 다. 레이건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계획 백지화

레이건(Ronald W. Reagan) 행정부(1981~1989)는 ‘힘에 의한 평화’ 정책 기조하에 강력 한 대소봉쇄정책을 추진하였다. 레이건 행정부의 적극적인 반공산주의 안보정책은 「국가안보 결정지침-32」(NSDD-32: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32)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위시한 동맹국의 재원과 협력을 끌어내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55)</sup>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직후 1981년 2월 전두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지상군을 철수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즉,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복원하였고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다.<sup>56)</sup> 이에 따라 이전

52) Cyrus Vance, *Hard Choices* (New York: Simon & Shuster, 1983), p.128.

53)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Factors Affecting the Withdrawal of U.S. Ground Combat For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June 1, 1979), 양승함·박명림·장훈각 편, 『한국대통령 통치사료집: 박정희(5): 주한미군 철수』 VIII, pp.358-409.

54)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686.

55)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No.32: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Top Secret),” May 20, 1982, <https://fas.org/irp/offdocs/nsdd/nsdd-32.pdf>.(검색일: 2022.12.3.).

56) Document 5: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ect: Summary of the President's Meeting with President Chun Doo Hwan of the Republic of Korea, February 2, 1981, 11:20 – 12:05 P.M., Cabinet Room, with Cover Memorandum, Richard V. Allen to President

정부에서 감축 추세에 있었던 주한미군은 4만 4,000명까지 증가하였다.

소련과의 군사적 경쟁을 벌이고 있던 미국에게 반공을 내세운 전두환 정부는 중요한 지정학적 자산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소련이 극동지역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서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한국은 소련을 저지하기 위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동맹으로 인식되었다.<sup>57)</sup> 한미관계는 레이건 행정부의 우호적인 지원으로 특별한 갈등 사안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레이건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은 새로운 국제질서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 라. 탈냉전과 주한미군 주둔정책 변화

### 1)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발간

1989년대 베를린 장벽 붕괴 등으로 국제 안보환경이 변화하자 미국 의회에서는 국방비 절감을 위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안되었다. 1989년 민주당 년(Sam Nunn) 의원과 공화당의 워너(John W. Warner)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년·워너 수정안」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동아시아 및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장래에 관한 보고서를 이듬해 4월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sup>58)</sup> 이에 따라 부시(George H. W. Bush) 행정부(1989~1993)는 동아시아 관련 국가들과 협의를 거친 후 1990년 4월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을 발표하였다. EASI에는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과 일부 공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sup>59)</sup>

EASI의 단계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EASI 제1단계(1990~1992)는 당시의 유엔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지상군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한 임무를 한국군에게 인계하여 주한미군의 전력구조를 간소화·경량화하며, 지상군

Reagan, February 6, 1981, Subject: Your Meeting with President Chun of Korea. [MDR-Reagan Library]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306//doc05.pdf>.(검색일: 2023.3.4.).

57) 전재성, “1980년대 전반기 전두환-레이건 정부 한미협력,”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사와 외교사』 현대편 3(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9), pp.16-20.

58)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s 1990 and 1991, <https://www.congress.gov/bill/101st-congress/senate-bill/1352/all-info>(검색일: 2023.2.11.).

59)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EASI-I), April 1990.

5,000명과 공군 2,000명 등 총 7,000명을 비전투요원 위주로 철군한다는 것이었다. 제2단계(1993~1995)는 제1단계 말에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전력증강 성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미군 부대를 재편성하는 것이었다. 제3단계(1996~2000)는 제1·2단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태세가 갖추어질 경우, 최소화된 필수인원의 소규모 미군만 잔류시키는 계획이었다.<sup>60)</sup>

아울러 부시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요청함으로써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은 방위비 분담이라는 명칭으로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냉전의 종식에 따른 세계 군사전략 변경의 목적으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하자 노태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여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남한 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였다.<sup>61)</sup>

부시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 재조정 계획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맹 조정에 임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SCM을 통해 동맹 이슈를 긴밀하게 조정하여 갈등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2)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발간

클린턴 행정부(1993~2001)는 냉전 이후 비대해진 군사력 축소 등 국방비 감축을 추구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전략을 재평가하고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였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 문제가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부시 행정부 마지막 해인 1992년에 발간된 두 번째 EASI에 반영되었고, 1995년에 발간된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East Asia Strategic Report)」로 구체화하였다.<sup>62)</sup> EASR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을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EASI에서 논의되었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는 중단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11월 EASR-II를 통해 EASR-I(1995) 발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아시아 경제위기 등 변화한 동아시아 안보 정세를 반영하여 개입과 확대정책을 ‘포괄적 개입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으로 조정하였다.<sup>63)</sup> EASR-II에서는 동아시아

60)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2011), p.196.

61)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 하권(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1), pp.366-370.

62)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EASR-I), February 1995.

63)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Pacific*

아 역내 주둔 미군도 10만 명 규모를 지속 유지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부시 행정부 시기 체결했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비용분담 기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국방비 대비 1.44%에서 1999년에는 3.20%로 국방비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액되었다.<sup>64)</sup> 부시 행정부의 EASI와 클린턴 행정부의 EASR의 주요 내용은 <표 2-2>와 같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특수 안보환경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동맹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지휘구조 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의 군사 무기 수입 증가,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추진되었다. 클린턴 행정부 기간 한미 동맹은 안정적으로 발전했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냈다.

<표 2-2> 동아시아전략구상(EASI)과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비교

구 분	EASI(1990 / 1992)	EASR-I(1995)	EASR-II(1998)
특 징	부시 행정부 년-워너 안에 대한 행정부의 대의회 보고서	클린턴 1기 행정부 국방부 동아·태전략(BUR) 반영	클린턴 2기 행정부 국방부 동아·태전략 (QDR) 반영
정책 기조	군사 개입 축소	개입과 확대 (Engagement & Enlargement)	포괄적 개입 (Comprehensive Engagement)
동 아시아 미군 규모	단계적 감축	동아시아지역 10만 명 유지 주한미군 3만 7,000명 명시	동아시아지역 10만 명 재확인 역내 미군의 유연성, 상호 보완성 강조
주한미군 역할	주도적 → 지원적 역할	소극적 역할 (장기적 변경)	소극적 역할 (장기적 변경)
대북 및 남북 관계	대북 억제력의 중요성 강조	북한위협 소멸 후에도 한미 안보관계 지속, 남북대화 강조	한미 항구적 안보동반자 관계 유지, 4자회담 강조
한미 연합사	북한위협 소멸 후 해체 가능성 시사	미언급	미언급

※ 출처: EASI-I, EASI-II, EASR-1, EASR-II 내용 토대로 종합 정리.

Region(EASR-II), November 1998.

64) 김영일·신종호, “한미 방위비분담의 현황과 쟁점,” 『현안보고서』(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8), p.2.

##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

### 가. 주한미군 철수와 연합연습·훈련 정례화

「닉슨독트린」에 따라 1971년 3월 주한 미 제7사단과 공군 3개 비행대대가 철수하였다.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에 배치되었던 주한 미 제2사단은 제7사단이 주둔하던 곳으로 이동하였으며 DMZ 방어는 공동경비구역(JSA)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국군에 인계하였다. 한미는 주한 미 제7사단이 철수함에 따라 ‘한미 제1군단(집단)(I Corps (ROK-US Group))’을 창설하여 과거 미 제1군단의 책임 지역인 서부전선 방어를 담당하게 하였다.

아울러 한미는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에 앞서 1969년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망막의 초점)와 1971년 프리덤 볼트(Freedom Bolt: 자유의 도약) 훈련을 하였다. 이것은 북한에 미국의 한반도 방위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75년 4월 베트남의 공산화와 한반도 주변의 긴장 고조에 따라 1976년 6월 한미 4만 6,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 팀스피리트(TS: Team Spirit) 연습을 시작하였다. 한미는 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팀스피리트 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고, 팀스피리트 연습은 1993년까지 계속되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따라 3,000명이 철수하였으며, 부시 행정부의 EASI 제1단계(1990~1992) 감축안이 추진된 결과 주한미군은 지상군 5,000명, 공군 1,987명 등 총 6,987명이 철수하여 3만 6,000명 수준으로 감축되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91년 11월 제23차 SCM에서 제2단계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였고,<sup>65)</sup> 1992년 발간된 EASA-II에서 1993년부터 철군 예정이던 2단계 이후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보류하였다.<sup>66)</sup> 닉슨 행정부부터 부시 행정부까지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는 <표 2-3>과 같다.

65) 국방부, 『국방부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4), pp.373-374.

66)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EASI-II)*, July 1992.



〈표 2-3〉 1971~2000년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

(단위 : 명, %)

연도	해외주둔 미군	주한미군	점유율	연도	해외주둔 미군	주한미군	점유율
1971	752,999	40,740	5.4	1986	525,328	43,133	8.2
1972	608,329	41,600	6.8	1987	523,702	44,674	8.5
1973	529,800	41,864	7.9	1988	540,588	45,501	8.4
1974	477,968	40,387	8.4	1989	509,873	44,461	8.7
1975	458,261	40,204	8.8	1990	609,422	41,344	6.8
1976	459,796	39,133	8.5	1991	447,572	40,062	9.0
1977	459,385	40,705	8.9	1992	344,065	35,743	10.4
1978	471,874	41,565	8.8	1993	308,020	34,830	11.3
1979	458,424	39,018	8.5	1994	286,594	36,796	12.8
1980	488,726	38,780	7.9	1995	238,064	36,016	15.1
1981	501,832	38,254	7.6	1996	240,421	36,539	15.2
1982	528,484	39,194	7.4	1997	227,258	35,663	15.7
1983	519,517	38,705	7.5	1998	259,871	36,890	14.2
1984	510,730	40,785	8.0	1999	252,763	35,913	14.2
1985	515,367	41,718	8.1	2000	257,817	36,565	14.2

※ 출처: 미국 국방인력데이터센터(US DMDC).

#### 나.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닉슨 행정부 시기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로 그동안 미 제2사단과 제7사단을 지휘하던 미 제1군단의 해체가 불가피해지자 한미 양국은 한미 제1군단(집단)을 창설하였다. 이로써 작전적 수준의 인계철선(tripwire)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8년 시작하였던 한미국방각료회담을 1971년 제4차 회의 때부터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개칭하여 외교부도 참여하는 안보 차원의 최고 회의로 격상하였다.

카터 행정부 시기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별개로 유엔군사령부에 관한 한미군사 관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5년 11월 30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공산 측이 제출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안(제3390호)」이 비동맹국들의 지원 속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사를 대체할 새로운 지휘체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sup>67)</sup>

67)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서울: 합동참모본부, 1994), p.334.



〈사진 2-5〉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교환각서 서명식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

서울 용산에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25년 동안 미국 일변도로 유지되어 오던 한미군사관계는 한미 연합방위를 위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1980년 한미 양국은 한미 제1군단(집단)을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로 개편하였다.<sup>70)</sup>

부시(George H. W. Bush) 행정부의 EAST 제1단계 동안 미국의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었다. 즉, 한미연합군사령부 예하 지상구성군사령부(GCC: Ground Component Command)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 임명, CFA 해체, JSA 경비중대원 전원을 국군으로 편성 전환, 군사정전위원회(MAC: Military Armistice Committee)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 새롭게 구성된 한미연합해병대사령부(CMFC: Combined Marine Forces Command)의 평시 사령관에 한국군 사령관 임명 등이 이루어졌다.<sup>71)</sup> 클린턴 행정부에서 발간된 EASR-I(1995)은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지휘통제 분야에서 한국군의 주도적인 역할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했다.<sup>72)</sup>

1992년도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한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자 간 공동협약이 진행되었다.

68)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7.7.26.).

69)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8.7.27.).

70) 육군본부, 『제30야전군사령부 변천사』(계룡: 육군본부, 2018), pp.324-325.

71) 김영삼, 『김영삼 회고록』(서울: 조선일보사, 2001), pp.368-370; U.S. Department of Defense, 1995. “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 Pacific Region”, <https://nautilus.org/globalproblem-solving/us-security-strategy-for-the-east-asia-pacific-region/>(검색일: 2023.4.1.).

72)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EASR-I), February 1995.

한미 양국은 1992년 10월 제24차 SCM 및 제14차 MCM에서 현재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sup>73)</sup> 이에 따라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주었던 작전통제권 가운데 전시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부터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는 변화하였을지라도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국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닉슨독트린」에 의해서 주한미군 1개 사단이 철수함으로써 주한미군은 휴전선에서 후방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대북 억제 임무를 수행하였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군은 주한미군 감축 시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울곡사업 등을 통해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군사분계선 방어 임무도 국군이 전담해서 담당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군에 의한 한국방위가 실현되었다.

주한미군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군과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해 전술 교리를 공유하고 장비·무기의 상호운용성을 증대하였다. 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한미연합사 창설로 한미동맹의 군사관계는 미군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수평적인 관계로 변모하였다. 특히 한미연합사 창설로 한미 간에 공동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한미 양국 군이 동등하게 참모진을 구성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

### 3. 한국의 자주적 방위력 강화 추진

#### 가. 「국군 현대화계획」 추진과 「국방 8개년계획(울곡계획)」 수립

미국은 주한 미 제7사단이 철수하는 대가로 「국군 현대화계획」(1971~1975) 추진을 위해 5년간 15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계획으로 국군의 장비 일부가 신형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1973년 3월 베트남에서 철수한 주월한 국군의 장비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장비현대화에 포함되어 효과를 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군 현대화계획」은 미국의 지원으로 추진되었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북한과 비교하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따라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sup>73)</sup> 제2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2.10.8.).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4월 19일 「을지연습 73」 상황을 순시 중 자주적 군사력건설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 최초의 자주적 전력 증강계획인 「국방 8개년계획」(1974~1981)을 작성하여 1974년 2월 25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 사업계획은 을곡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사상을 선호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자주국방 의지를 반영하여 「을곡사업」으로 불렸다. 정부는 사업추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75년 방위세법을 신설하여 전력증강 투자비에 사용하였다. 을곡계획은 대내외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후 1976년 7월 26일 3차 수정계획을 마련하여 1980년까지 방위전력을 완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sup>74)</sup>

#### 나. 을곡사업 추진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의 대가로 뚜렷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로 생기는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30계획」을 을곡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다.<sup>75)</sup>

기간 중 을곡사업은 대북 방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성과로 육군은 M1 소총과 카빈총을 M16 소총, LMG 기관총을 M60기관총으로 대체하였고, 500MD 기술도입 생산, M-48 계열 전차의 성능개량이 이루어졌다. 해군은 연안 작전을 위한 고속정(PKM)과 한국형 전투함인 2,000톤급의 울산함(FFK-951)을 건조하였다. 공군은 1955년 도입한 세이버(Saber) 전투기를 대체하여 F-4D/E(팬텀)를 추가 도입하였고, KF-5E/F(제공호) 국내 조립 생산에 착수하여 1980년 12월 1호기를 제작하였다.<sup>76)</sup> 특히 정부는 1978년 9월에 세계 일곱 번째 미사일 개발국임을 선포하고 사거리 180km인 국산 미사일 1호 ‘백곰’의 발사시험을 공개하였다.<sup>77)</sup>



〈사진 2-6〉 백곰 시험 발사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군은 ‘방위전력 보완 및 전력의 질적 향상’에 주안을 두고 주요 무기의 국산화,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 통합전투력 달성 극대화 등을 2차 을곡사업(1981~1986)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이

74) 국방부, 『을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pp.22-24.

75) 국방부, 『을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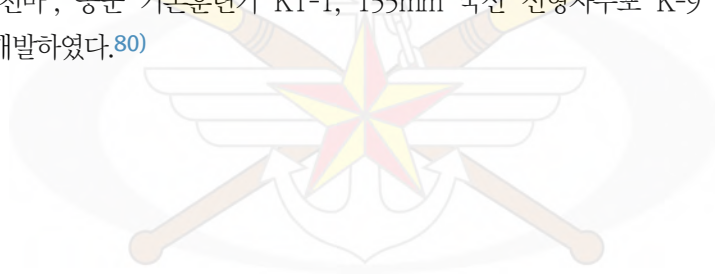
76) 육군본부, 『육군 40년 발전사』, p.258.

77) 안동만 외,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서울: 플랫미디어, 2016).

를 통해 육군은 M47 및 M48 전차의 성능개량, 한국형 K-1전차(88전차) 개발 및 K-200 한국형 장갑차 개발, K55 155mm 자주포 국내 생산, 다연장로켓(K136A) 전력화 등을 추진했다. 해군은 울산급 구축함 건조 이후 1985년 2번 함 건조, 1,200톤급 초계함(PCC) 및 유도탄정을 건조하여 배치하였다. 공군은 제공호(KF-E/F)의 생산 및 실전배치, F-16 전투기와 RF-4C 정찰기를 도입하였다.<sup>78)</sup>

우리 군은 3차 율곡사업(1987~1992)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위협에 대비한 첨단정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육군은 K-1전차와 K-200 장갑차 양산, 공격헬기 및 500MD 다목적 헬기 대량 확보, 155mm 자주포를 계속 생산하여 포병 화력의 자주 화율을 높였다.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KDX-1) 건조에 착수하고 209급 잠수함(1,200톤급)의 기술도입 생산, 개량형 상륙돌격장갑차(AAV7A1) 확보를 추진하였다. 공군은 KFP(한국형전투기사업) 착수, KF-16 기술도입생산을 추진하였다.<sup>79)</sup>

이후 국군은 정밀 무기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포병사격지휘장비, 반잠수쌍동선, K-731 중어뢰, 전투기용 전자전 체계 등의 주력 무기체계와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천마’, 공군 기본훈련기 KT-1, 155mm 국산 신형자주포 K-9 등의 첨단고도 정밀무기를 개발하였다.<sup>80)</sup>



7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70-271;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pp.37-40.

7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pp.309-311;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pp.40-45.

80)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플래닛미디어, 2015), p.175.

## 제3절 주한미군 조정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 1. 미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미 역할 조정

#### 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군사변환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략개념, 군 구조와 작전개념 등이 전면 수정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 기동능력과 정밀타격능력 확보가 목표였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2001~2009년)는 2001년 9월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특정한 위협을 상정한 종전의 ‘위협기반(threat-based)’ 접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기반(capability-based)’ 접근으로 전환하고,<sup>81)</sup> ‘1-4-2-1’ 개념의 군사전략을 제시하였다. 1은 본토의 완전한 방어, 4는 유럽·동북아시아·동아시아·중동/서남아시아 등 4대 핵심지역에서의 침략 및 위협 억제, 2는 4개 핵심지역 가운데 2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략을 동시에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 유지, 1은 2개 전쟁 가운데 한 곳에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전략을 뜻한다. 즉, 미국은 본토 방위능력을 강화하면서 2개의 대규모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하는 ‘윈윈(Win-Win) 전략’에서 1개의 전구에서 적을 격퇴하는 동시에, 다른 전구에서는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원플러스(One-Plus) 전략’으로 수정하였다.

군사전략의 변화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으로 이어졌다. 2003년 11월 25일 부시 대통령은 가장 적절한 지역에 적합한 능력을 배치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GPR을 공식화하였다. 분산 배치된 해외 주둔 미군기지들을 통폐합해 전략 허브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대테러작전, 안정화 작전,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확산방지 작전 등 전력 전개가 필요한 지역에 미군을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작전 수행태세를 갖춘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GPR은 사전배치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전진 배치의 최소화를 구현하고자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뒤 해외

<sup>81)</sup>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30, 2001), pp.19-21.

주둔 미군기지의 배치개념을 전력투사중추기지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sup>82)</sup>

4개 그룹은 하와이·괌·알래스카 등 대규모로 미군이 주둔하는 전력투사기지(PPH: Power Projection Hubs), 한국·일본·독일 등 미군이 상시 주둔하고 증원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주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s), 중동·중앙아시아·폴란드 등 소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전진작전기지(FOS: Forward Operating Sites), 호주·필리핀·싱가포르 등 기지 사용협정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군사훈련하는 협력안보지역(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s)이다.<sup>83)</sup> 이러한 미군 배치개념은 전통적 의미의 단순한 ‘기지’ 개념이 ‘배치’ 개념으로 전환된 것으로 중동·유럽 지역은 안보위협을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배치되었고, 아시아 지역은 전력이 강화되었다.

이어 미국은 2004년 8월 GPR의 연장 선상에서 발표한 「미군 군사력재정비계획(ORMF: Outlines Realignment of Military Forces)」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의 구조 조정과 기지 재배치를 추진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위협, 테러 위협, 중국의 부상 등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중심축으로 전력을 재배치했다. 또한 미국은 GPR 개념에 맞게 전력구조를 신속화·경량화·첨단화의 방향으로 개편했다. 냉전 시기 불박이로 남아있던 해외 주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경량화해 다양한 지역에 분산 재배치하였다. 해외 주둔 미군의 구성도 지상군 위주에서 해군과 공군 위주로 확장해 이동성과 유연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군 조직은 대규모 사단에서 신속한 이동과 전개를 할 수 있는 여단전투단(BCT: Brigade Combat Team) 체제로 편성되었다. 아울러 작전구조도 군사령부·군단·사단·여단 4단계 편제에서 작전지원사령부(U Ey)·작전사령부(U Ex)·작전부대(U A) 체제의 미래 구조로 개편하였다. 이처럼 GPR은 병력 숫자보다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해외 미군 주둔기지와 병력을 축소·감축하되 미군 전력의 유연성 향상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GPR은 2008년 미 국방부의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에 반영되어 계속 추진되었다.

GPR은 주한미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미는 2002년 제34차 SCM에서 운영하기로 합의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과 2005년부터 FOTA를 계승한 ‘안보정책구상(SPI:

82)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은 해외 주둔 미군을 특정 지역·임무에 고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으로 유연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태세와 역량을 의미하는 국가안보전략 수준의 포괄적 개념으로 정치·경제·외교·군사 요소 외 동맹국 또는 우방국의 전략적 이익도 고려한다. Johnsen, William T. et al, *The Principles of War in the 21st Century: Strategic Considerations*,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1995, pp.4-5.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289.

Security Policy Initiative)’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군사력 재정비 등을 논의하였다. 2004년 협의를 통해 한미는 미 제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추진하고, 미 제2사단 1개 여단을 2004년 이라크전쟁에 파병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 조정을 가시화하였다. 그 결과 2003년 3만 7,500명이었던 주한미군은 2008년 2만 8,500명으로 감축되었고, 한반도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이 담당했던 ‘10대 군사 임무’도 차례대로 한국군에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현대화로 대북억제력과 작전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이라크전쟁으로 변화하였다. 이라크전쟁에서 안정화작전이 장기화함에 따라 사단·군단급 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2007~2008년 미국을 강타한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미 국방부는 미래부대 구조개편을 중단하였다. 반면 미국이 중동지역에 집중한 사이에 중국은 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지한 오바마(Barack H. Obama) 행정부(2009~2017)는 미국 안보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하는 ‘재균형 전략(Rebalancing Strategy)’을 선언하고, 중동에 집중되어 있던 미국의 전력을 서서히 태평양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sup>84)</sup>

오바마 행정부는 첫 번째 국방전략문서인 2010년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에서 전력의 유연성과 핵심전력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미국 군사력의 균형과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2012년 1월 발표한 「국방전략지침(DSG: Defense Strategic Guidance)」인 ‘글로벌 리더십 유지 : 21세기 국방 우선순위(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와 2014년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에서는 정부 재정 악화로 국방비 감축을 전제한 전력조정을 강조했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최우선으로 미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핵심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sup>85)</sup> 전략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유연성을 보유한 합동군을 육성하고, 지상군 구조를 재조정하여 기동화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의 전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는 「안보정책구상(SPI)」과 2012년 4월 이후 개최되고 있는 「한미

84) 한국국방연구원,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전력 운용과 한국의 대응 방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2), p.15.

85) 반 접근(Anti-Access, A2)은 미국이 관심을 두는 주요지역으로의 미 전력투사를 원거리에서부터 차단하는 개념이고, 지역거부(Area Denial, AD)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 등 연·근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상전력의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차단하는 개념이다.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의 지속 유지’를 약속하는 한편 2009년 주한미군 복무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복무 정상화를 통해 유사시 주한미군을 역외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따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전환한 미군 전력을 2013년부터 한반도에 재전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하였다. 2014년에는 미 육군의 부대 개편에 따라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공식화하였다. 순환배치로 증원되는 미군 부대들이 유사시 실제 전투를 치르게 될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사전에 경험함으로써 한미연합 군사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2015년에는 한국군과 미 제2사단 전력이 함께하는 한미연합사단이 창설되었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전략적인 부대로 만들어졌다면 기술적인 부대인 한미연합사단은 한미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모든 훈련과 작전을 함께 하는 최초의 시도이자 세계 최초의 연합사단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해 한미 간 선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 배치를 공식화하였다.

미국은 2018년 대테러전쟁 중심의 군사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강대국 전쟁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략으로 전환하였다. 2001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대테러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2010년부터 대(對) 중국 전략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의 A2/AD 전략 강화로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이 군사 전략을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1월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준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평가하고,<sup>86)</sup> 강대국과의 경쟁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전력 운용을 본격화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오랫동안 유지해 온 중동과 동북아시아 2개 지역 전쟁 개념을 중국 또는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한 1개 강대국 전쟁 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다.<sup>87)</sup>

이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은 장거리 정밀타격·정보감시정찰 능력 등 무기체계의 발전과 대중(對中) 억제·견제 차원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그런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86)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2018), DoD(defense.gov).(검색일: 2023.1.16.).

87) Hal Brands and Evan Montgomery, “One War is not Enough: Strategy and Force Planning for Great Power Competition,”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Vol. 3, No. 2 (Spring 2020), pp.1-7.

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미 본토 및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증가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기반하에서 새로운 군사력 운용개념으로 ‘범세계 군사력 운용모델(GOM: Global Operating Model)’과 ‘역동적 전력 운용(DFE: Dynamic Force Employment)’ 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sup>88)</sup> 범세계 군사력 운용모델은 전 세계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을 전방전개전력, 신속대응전력, 전시지원전력, 본토방어전력으로 구분 운용함으로써 평시 경쟁-위기 시 억제-전시 전투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역동적 전력 운용은 범세계 군사력 운용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경쟁국들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함 모강습단이나 전략폭격기 등 주요전력을 탄력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다.<sup>89)</sup> 이러한 미군의 역동적 운용은 군사력 분포가 대(對)중국 전략적 경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2017~2021)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미 본토 및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증가 되자, 2019년 6월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전략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하고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규정하였다.<sup>90)</sup>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이 미군의 작전 및 전력투사 계획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불확실성 제고 차원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전략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한미군 감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을지프리트미가디언(UFG) 연습은 중단되었고, 그 후 한미 연합훈련 또한 대폭 조정되었다. 2020년 10월 제52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기존에 있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하며 감축 혹은 철군 내용까지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해외 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의 점유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 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행정부(2021년~현재)는 이전 정부보다 동맹 복원을 통해 미·중 간의 선명한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다각적이고 공세적인 대중(對中) 정책을 추진

88)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2018), DoD(defense.gov).(검색일: 2023.1.16.).

89) 이상엽, “미(美) ‘경쟁’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함의,” 『합참』 제92호, p.31.

90)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June 1, 2019).

하고 있다.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잠정안(INSSG: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sup>91)</sup>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한 대중(對中)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의 국익 보호를 위해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였고, 외교·국방예산 효율화에 방점을 두었다.

2021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GPR을 검토한 결과 미군의 전(全) 지구적 전력투사 부담 완화와 함께 중·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는 소폭 조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은 그대로 반영하였다. 특히 GPR에는 인도·태평양의 전투 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다른 지역의 군대와 장비를 감축함으로써 이 지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한미군의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그간 순환배치 대상이던 포병여단 본부와 아파치헬기부대는 상시 주둔 배치로 전환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질적으로 증강하였다. 또 2022년 11월부터 순환 배치된 기갑여단 전투단(ABCT: Armour Brigade Combat Team)을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SBCT: Stryker Brigade Combat Team)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

2022년 10월 「국방전략서(NDS)」에서는 중국을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통합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을 핵심 군사전략 개념으로 제시하고 여러 영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통합하여 군사충돌 때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였다.<sup>92)</sup> 2022년 12월 주한미군사령부는 우주 전투 통합능력 강화를 위해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의 예하 부대로 주한미우주군(SPACEFOR-KOR)을 창설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전략과 GPR이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에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 추세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외교 관계를 심화시켜 전략적 경쟁자들과 경쟁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대를 현대화하고, 선진기술을 구축하여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동맹국과 파트너국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지속 배치할 것임을 밝혔다.<sup>93)</sup>

91) Secretary of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III Message to the Force*(March 4, 2021).

92)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October 27, 2022).

93) The U.S.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 <https://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2.12.30).

## 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확대

미국은 1990년대 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를 통해서 한미동맹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한반도의 안전만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도 미국의 네트워크화된 세계동맹 체제 속 하나의 동맹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활용도 대북억제와 방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신속히 기동할 수 있는 ‘지역 및 세계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였다.<sup>94)</sup>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할 때 주한미군은 한반도로 유입 및 유출(flow-in and flow-out)과 경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헨(William S. Cohen) 전 미 국방장관은 “아태지역 안정을 위한 미군의 주둔 가치는 전략적 유연성과 이러한 유연성이 제공하는 보장과 억제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였다.<sup>95)</sup> 동맹은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국민적 지지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미 전략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볼 때, 전략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과 책임은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3년 3월 개최된 제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때 미 측이 최초로 제기하였다. 크리스토퍼 라플레르(Christopher Lafleur) 미 국무부 특별대사는 “주한미군의 현재·미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지역 안보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잠재적 적은 한미의 전략적 유연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지역 임무의 표현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것처럼 묘사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발표문에서도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라고 표기하였다. 제3차 FOTA 회의에서는 한미 간에 관련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및 지역 내 안보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2003년 10월에 개최된 제35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sup>96)</sup>

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 317.

95) Asia-Pacific Defense Forum. “US Defense Secretary Visits the Asia-Pacific.” US Information Agency Press Leases, 1998.

96)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3.11.17.).

이후 한미 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제8차 FOTA 회의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하여 교환각서 등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하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협의는 2005년부터 하기로 제의하였다. 그리고 주요 고려사항으로 대한방위공약 유지, 제3의 분쟁에 개입 방지, 그리고 사전협의 절차 마련 등 3가지를 설명하였다. 이후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를 고려하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2004년 제36차 SCM 공동성명에서도 제35차 SCM 공동성명과 같은 문안이 발표되었다.<sup>97)</sup>

2005년 2월 전략적 유연성 문제 협의를 위한 정부대표단이 임명되었고, 이후 약 10개월 간 미국 측과 12회에 걸쳐 공식 및 비공식 협의를 거쳤다.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 원칙을 천명하였다.<sup>98)</sup> 2006년 1월 19일 한국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미국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부 장관 간 제1차 한미 전략대화에서 한미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역 밖 출동에 관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를 <표 2-4>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의 의사에 반(反)하여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공동성명은 전략적 유연성이 동북아·한반도에서 가지는 전략적 민감성을 고려해 정치·외교적 차원의 큰 원칙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핵심쟁점이었던 이행절차 부분은 미포함되었고, 구체적 논의는 유예되었다.

<표 2-4>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 내용(2006.1.)

-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 전략적 유연성의 이해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 출처: 국방부,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 p.84.

97) 제3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4.10.22.).

9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318.

또한 이 합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의미한다. 이로써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전력에 머물지 않고 지역 안정을 위해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주한미군 전력의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의 투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한미가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에 합의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2015년부터 주한미군의 기갑여단, 아파치 대대, 다연장 로켓(MLRS) 대대, F-16 대대 등의 주요전력이 순환배치 형태로 한반도에 전개하였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하였다.<sup>99)</sup>

한편 한미는 2006년에 체결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근거해 실무협의를 추진하여 2010년 10월 「주한미군 전력 운용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 내·외로 전개 시, 한미는 협의를 통해 억제력 증강, 대체능력 확보, 준비태세 강화, 연습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미는 미군 전력의 한반도 내·외 전개와 관련하여 적절한 협의체를 운용하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주한미군 전력 운용 : 통보 및 협의 절차」를 합의하여 효과적인 전력 운용 시행을 위해 적시적으로 협의하고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전력 강구, 억제력 증강, 연합연습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전력 전개 시 한미 간에 합의된 「주한미군 전력 운용 원칙」과 「주한미군 전력 운용 : 통보 및 협의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였다.

벨(Burwell B. Bell)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략적 유연성의 주한미군 적용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sup>100)</sup> 이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한미 간에 이루어진 논의는 없다. 그러나 미·중 경쟁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이래, 해외에서 동맹국·우방국과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주한미군의 순환배치를 시작하였고, 공군전력을 수시로 해외에 전개하고 있다.

편제상으로 주한미군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통합사령부이므로 인도-태평양

99) 이수훈,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pp.270-271.

100) 벨(Burwell B. Bell) 전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인터뷰 내용(2013.3.2.).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 요소는 긴급 배치(contingency deployment) 이후 미군이 항상 한국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군 부대가 한국을 한번 떠나면 돌아온 사례는 실제로 없다. 이 때문에 양국은 주한미군이 만약의 사태에는 한국과 함께 공격을 억제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단일목표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침략자로 남아있는 한,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은 그만 두어야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p.318-319.

사령관의 작전구역 내 작전 참여 지시가 있을 때 지시를 따라야 한다.<sup>101)</sup> 즉, 미·중 경쟁 속에서 주한미군은 미군의 범세계적 안보전략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한반도 역외지역으로 미군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미·중 군사경쟁에서 미 군사력의 역동성을 강조하였고, 폴 라카메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인사들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을 언급하였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동맹이지만 미국은 국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투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한미 간 역할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 2. 연합방위태세와 한미 역할 조정

### 가. 주한미군 감축과 전력증강

#### 1) 주한미군 감축

2004년 6월 6일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2005년 말까지 이라크 지원부대를 포함한 주한미군 1만 2,500명의 감축을 희망한다는 기본구상을 한국에 제시하였다. 이라크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감축을 추진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한미는 약 4개월 동안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거쳐 동년 10월 6일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최종 합의하였다.

협상을 통해 한국은 당초 미국의 요구보다 3년이 늦춰진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감축하도록 일정을 연기하는 데 합의하였다. 즉, 한미는 2008년 말까지 1만 2,500명을 감축하여 주둔 인원을 2만 5,000명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sup>102)</sup> 또한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01) 한국국방연구원,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전력 운용과 한국의 대응 방향』, p.90.

102)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협상 결과(기자회견 설명자료)」(2004.10.6.).

〈표 2-5〉 2000~2022년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

(단위 : 명, %)

연도	해외 주둔 미군	주한미군	점유율	연도	해외 주둔 미군	주한미군	점유율
2000	257,817	37,000	14.2	2012	272,623	27,724	10.2
2001	254,788	36,500	14.8	2013	251,737	30,252	12.0
2002	230,484	37,000	16.4	2014	232,790	29,074	12.5
2003	252,764	41,145	16.3	2015	213,067	24,934	11.7
2004	287,802	40,840	14.2	2016	198,557	24,190	12.2
2005	290,997	30,983	10.6	2017	215,249	23,635	11.0
2006	-	28,481	-	2018	172,797	25,813	14.9
2007	-	28,481	-	2019	174,253	26,086	15.0
2008	370,449	25,772	7.0	2020	168,766	26,416	15.7
2009	352,603	26,605	7.5	2021	174,711	25,593	14.6
2010	339,360	27,869	8.2	2022	174,000	25,837	14.8
2011	336,654	28,271	8.4				

※ 출처: 미국 국방인력데이터센터(US DMDC).

※ 2006~2007년 해외 주둔 미군의 통계치는 확인할 수 없음.

그러나 감축 계획과 달리 2004년 5,000명, 2005년 3,000명, 2006년 1,000명 등 2006년까지 총 9,000명이 감축되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는 2003년 3만 7,500명에서 2006년 2만 8,5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었다. 2008년 말에는 2만 5,000명까지 감축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을 당시의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한미는 SCM이나 외교·국방(2+2)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재확인하였다.

2000년 이후 주한미군 규모는 해외 주둔 미군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 규모와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점유비율은 줄지 않았다. 2008~2011년 10% 이하이던 점유비율은 2012년 이후 10%를 넘었다. 2019년에는 15%까지 확대된 뒤 2022년까지 14% 이상 수준을 유지하였다. GPR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였지만, 해외 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의 점유율은 냉전기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다. 주한미군의 점유비율이 높다는 것은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이 확고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숫자상으로 감축되었지만, 임무 수행능력 측면에서는 질적 증강을 이루게 되어 한미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가 강화되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자주 언급하였다. 2020년 6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 병력을 절반으로 줄일 것인데, 이는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밝혔



다. 이후 2020년 8월 주독 미군 1,000여 명을 주폴란드 미군에 전환 배치하였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기도 하였다.<sup>103)</sup> 2020년 10월 제52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sup>104)</sup>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해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53차 SCM 공동성명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를 재반영하였다.<sup>105)</sup> 이는 확장억제 공약과 더불어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견고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sup>106)</sup>

현재 2만 8,5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한 주한미군사령부는 미 제8군사령부, 주한 미 해군사령부, 주한 미 해병대사령부,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 미 제7공군사령부, 주한 미 우주군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그림 2-1>과 같다.<sup>107)</sup>

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력은 한미동맹의 핵심기재이나 미국의 증원전력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즉, 주한미군은 증원군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빙산을 물밑에 숨겨놓은 실체인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유사시 초전 방어의 역할을 한다면, 미 증원전력은 위기 및 전시에 결정적이고 신속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국의 증원전력<sup>108)</sup>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이처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전 미 해군의 40% 이상, 미 공군의 50% 이상, 미 해병대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증원전력의 전개계획<sup>109)</sup>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3) 김열수, 『한미동맹 70년 한미역사 140년』(서울: 법문사, 2022), p.295.

104)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20.10.14.).

105)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21.12.2.).

106)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제53차 SCM 성과와 의의,” 『Policy Cooperation Relation Management』(2022).

107)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p.47-48.

108)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따라 ‘신속 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고,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되며, 육군사전배치재고(APS: Army Prepositioned Stocks) 등을 통해 전쟁물자가 지원된다.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4), pp.56-57.

109)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p.56.

〈그림 2-1〉 주한미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출처: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50.

## 2) 전력증강

한미는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2004년 10월에 합의된 주한 미군 감축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주한미군 감축으로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보강하였다. 주한미군 감축 때 대북 억제에 긴요한 전력인 대화력전 자산은 제외하였다. 주한미군 감축 이후에는 미 육군의 군사변혁계획과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미 제2사단을 개편하는 등 주한미군 전력을 현대화하였다. 그 결과 주한미군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실질적인 전투능력은 강화돼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 대화력전 수행전력 잔류, 전환 주한미군 한반도 재전개, 한미연합사단 편성·운영,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순환배치를 고정배치로 전환, 주한미우주군 창설 등이 그 예이다.

**주한미군의 전력 현대화** 주한미군 감축 시 대북억제에 긴요한 전력인 다연장로켓(MLRS)과 대(對)포병레이더(AN-TPQ) 등을 포함한 대화력전(counter-fire) 자산은 감축에서 제외하였다.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전투 장비는 주한미군 개편과 연계하여 조정하되, 미 육군사 전배치재고(APS)에 포함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은 감축 이후, 미 육군의 군사변혁 계획에 따른 미 제2사단 개편과 전력증강을 통해 주한미군을 첨단화하였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에 걸쳐 150개 분야에 11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주한미군의 전력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을 재편하여 전력 운용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sup>110)</sup> 주한미군의 전력 현대화는 아파치 롱보우 2개 대대, 방공(PAC-3) 8개 포대, 고속 수송함(HSV) 배치 등 주로 전투부대 능력 보강과 C4ISR<sup>111)</sup> 분야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전력을 현대화하고 지휘체계 및 구조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전투능력은 보다 강화되었다.<sup>112)</sup>

**대(對)화력전 수행전력 잔류** 한미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라 2004년부터 미 제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심화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제46차 SCM에서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하였다.<sup>113)</sup> 한미는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 증강계획이 완성되고 그 능력이 검증되면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기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환 주한미군 한반도 재전개**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 따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에 투입되었던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다시 전개됨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이 증강되었다. 2004년 미 중부사령부(중부사)로 전환되었던 미 제23화학대대가 2013년 7월 주한미군에 다시 전개되었고, 2009년 중부사로 전환되었던 아파치헬기대대를 대체하여 미 OH-58 공격정찰헬기대대가 한반도에 배치되었다. 아울러 2009년 아파치헬기대대가 중부사로 전환될 당시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운용되어 오던 한국 TSP(F-16 12대)는 2014년 1월 미 태평양 공군 전구안보자산(TSP: Theater Security Package)으로 교체되었다.<sup>114)</sup>

**한미연합사단 편성·운용** 한미는 전술적 수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3일 의정부시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했다. 2014년 2월 국방부가 하달한 「연합사단 편성 관련 지침」에 따라 한국 합참은 2014년 7월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 연합사단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한미연합사단 운용을 준비하였다. 미 제8군 예하 미 제2사단과 국군 제3군사령부 예하 협조단 및 1개 기계화보병여단으로 편성된 한미연합사단은 평시부터 전술 제대급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초급 및 중견간부를 육성하였다.<sup>115)</sup>

110)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제2차 협의(2003.6.5.)에서 최초 언급하였고 제5차 협의(2003.10.6.)에서 재확인하였다.

111)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의 약자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이다.

112)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p.78.

113)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4.10.23.).

114) 국방부,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서울: 국방부, 2016), p.129.

115) 국방부,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 p.131.

한미연합사단은 평시부터 한미 참모가 함께 근무하며 전술도의·연합훈련 등으로 전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대급부터 대규모 훈련까지 다양한 전술 제대에서 연합 훈련을 함께하며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최고 수준의 연합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단 예하 제210화력여단은 북한의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다련장로켓(MLRS) 부대로, 평시 한미 연합연습으로 대북억제력 및 유사시 대공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사진 2-7〉 사드체계

※ 출처: 『2016 국방백서』

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Patriot)이 약 2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요격 체계로 핵심시설 위주 방어의 작은 우산이라면 사드는 지역방어가 가능한 거대한 우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전 가능 고도는 약 40~150km 수준으로 대기권 내외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급(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사거리 3,000km) 이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sup>116)</sup>

사드는 40k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므로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을 비롯하여 개발하고 있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과 함께 종말 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서 요격 성공률을 현저히 높여 훨씬 더 넓은 지역(남한지역의 1/2에서 2/3 범위)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순환배치 일부 부대 고정배치로 전환** 미국은 주한미군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순환배치 되었던 일부 부대를 상시 주둔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미국

**사드체계 배치** 한미는 2017년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의적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HAAD)체계를 성주기지에 배치하였다.<sup>116)</sup>

사드체계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고도 40~150km 고도에서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한미

116)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222-224.

117) 국방부, 『주한미군 THAAD 배치』(서울: 국방부, 2016), pp.4-9.

은 2021년 11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검토를 통해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부대와 포병부대를 고정배치로 전환해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대북억제력을 높였다. 2022년 5월에는 한미연합사단에 아파치(AH-64E) 공격헬기부대가 창설돼 2개 대대가 상시 주둔하게 되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공격헬기로 구성된 제5-17공중기병대대가 창설되면서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됨으로써 대북 억제력이 증강되었다.

**주한미우주군 창설** 2022년 12월 주한미군사령부는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의 예하 부대로 주한 미 우주군(SPACEFOR-KOR)을 창설하여 합동연합작전과 우주전투 통합능력을 강화하였다. 미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 우주군 예하 부대가 창설된 것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처음이다.

#### 나. 군사 임무전환

주한미군의 조정 중 가장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주요임무의 한국군으로의 전환이다. 2003년 4월 제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협의에서 최초로 군사 임무전환에 대한 안건이 미국 측에 의해 제기되었다. 2003년 6월 27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군 간에 한미연합군사 능력발전과 연계하여 국군과 미군 간 일부 군사 임무(selected missions)를 전환해 나가기



〈사진 2-8〉 주한미우주군 창설식

※ 출처: 『국방일보』(2022.12.14.).

로 합의했다.<sup>118)</sup> 2003년 7월 제3차 FOTA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후방지역 제독, 신속 지뢰 설치, 공대지 사격장 관리, 해상 대 특수전 부대 작전, 주야탐색 및 구조, 근접항공지원 통제, 주 보급로 통제, 기상예보 등 8개 임무는 2006년까지 한국군으로 전환하되, 한국군의 능력 및 준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미 간 사전협의를 통해 구체적 인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경비 임무와 대

<sup>118)</sup> 국방부, 「한미국방장관회담 공동발표문」(워싱턴 D.C., 2003.6.27.).

화력전 수행본부(CFTFHQ: Counterfire Task Force Headquarters)의 임무전환 시기는 한국군의 능력, 준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전환 시기를 추후 논의하기로 협의했다.<sup>119)</sup>

2003년 9월에 실시된 제4차 FOTA 회의에서 JSA 경비 임무는 JSA의 상징성 및 국민의 안보 우려를 반영하여 현 체제를 지속 유지하되, 미군은 대대장 등 지휘부를 담당하고, 한국군은 경비대대 내 인원을 점진적으로 증편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대화력전 수행본부는 한국군의 능력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기로 합의했다. 한국군의 임무 수행능력 검증 후 전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으며 임무전환 후에도 미국 측에서 조기경보 및 정보획득자산은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003년 10월 제5차 FOTA 회의에서 「군사 임무전환에 관한 합의각서(MOA)」 안에 합의했다. 2003년 11월 7일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은 「군사 임무전환이행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부록으로 「군사 임무전환 이행계획」을 2004년 2월 11일에 체결함으로써 10대 군사 임무전환이 추진되었다.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판문점 JSA 경비 및 지원 임무에서 경비대대의 지휘부는 미군이 임무를 수행하되, 병력을 90% 이상 한국군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10월 31일부로 임무를 전환하였다. 2004년 11월 1일부로 새로 편성된 JSA 경비대대는 미군 대대장의 작전통제 하에 한국군 부대대장이 지휘하였다. 대대장을 포함한 주요 참모 직위에만 30여 명의 유엔사령부(UNC) 소속 미군으로 보직하고 나머지 미군은 모두 후방으로 철수하였으며, JSA 경비 및 훈련·전투근무지원 임무는 한국군에게 이양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의 ‘오울렛(Oulette) 초소’(일명, 241초소) 인근 지역의 수색 및 정찰 임무도 종료되었다. 그러나 DMZ 관할 등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 유지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의 JSA 경비대대에 대한 작전 통제를 유지하고 군사정전위원회·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체제 관리를 위한 인원과 기능은 종전대로 판문점에 남아있다.

해상 대특작부대 작전은 미 AH-64 공격용 아파치헬기를 한미연합사와 협의하여 운용하기로 합의하고 계획된 일정보다 오히려 앞당겨 임무를 전환하였다. 2004년 2월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를 전환하기 위해 국군 제3군사령부는 미군의 지원 아래 한미연합사의 지구사 대화력전 수행본부 지휘 및 통제 임무 인수를 위한 훈련을 개시하였다. 2005년 UFL 연습 간 한미 공동평가단은 제3군사령부의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무 수행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sup>120)</sup> 「유엔사/한미연합사 단편명령 #05-28(2005.9.21.)」에 따라 군

119) 국방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결과 보도자료」(2003.7.23.).

120) 2005년 태극연습 등 4차례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2005년 UFL 연습 간 한미 공동평가 최종 수검에서 필수과제는 100% 합격, 일반과제는 96% 합격을 받아 ‘우수’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320.

사 임무전환 서명식을 하였고, 2005년 10월 1일부로 ‘한국 제3군사령부는 미 제2사단 (UEX)으로부터 수도권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LRA: Long Range Artillery)를 파괴하기 위한 지구사 대화력전 수행본부 지휘 및 통제 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주·야간 탐색구조는 2008년 12월 31일로 조정 추진되었으나 한국 공군의 탐색구조헬기(HH-60)가 2008년 6월에 보강되어 2008년 9월 30일부로 임무를 조기 전환함으로써 10대 군사 임무전환을 완료하였다. 양국이 합의각서에 따라 10대 군사 임무전환을 추진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10대 군사 임무전환

임무	최초 계획	완료 시기	조치 내용
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 및 지원	2003년 11월	2004년 10월	JSA경비대대 지휘부는 미군이 계속 임무 수행, 90%를 한국군으로 대체
② 대화력전 수행본부 지휘 통제	2005년 8월 (목표)	2005년 10월	한국군 임무수행 능력 평가 후 미 제2사단사령부에서 한국군 제3군사령부로 임무전환
③ 후방지역 제독작전	2004년 8월	2004년 8월	미 제8군 후방지역 화생방 제독 임무를 한국군 제2군사령부로 전환
④ 해상 대특수전 부대 작전	2006년 8월	2006년 1월	미 아파치헬기 대신 한국 공군과 공격헬기로 임무 수행
⑤ 공·지 사격장 관리	2005년 5월	2005년 8월	미 제7공군에서 한국 공군으로 전환
⑥ 주·야간 탐색구조	2006년 8월	2008년 9월	한국 공군의 탐색구조헬기(HH-60) 장비보강('08. 6월) 후 임무전환
⑦ 근접항공지원 통제	2006년 8월	2006년 8월	미 제604지원대대에서 한국 공군 서부 ASOC으로 전환
⑧ 신속 지뢰 설치	2005년 8월	2005년 8월	미 제2사단(볼케이노 특임대대)에서 한국군 제3군사령부로 전환
⑨ 주 보급로 통제	2006년 12월	2005년 10월	미 제8군 헌병여단(제728대대)에서 한국군 제2작전사령부로 전환
⑩ 작전 기상예보	2006년 12월	2006년 12월	미 제607 기상대대에서 한국 공군 제736 기상대대로 전환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321.

#### 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미 육군이 2013년 6월 발표한 「여단전투단(BCT: Brigade Combat Team) 개편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여단급 부대가 해체되는 대신 미국 본토의 전투여단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순환배치 되었다. 미 육군은 45개의 BCT를 32개로 감축함에 따라 고정배치보다

는 여단 단위의 순환배치가 전투능력을 유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중동지역 전쟁 종료 이후 한반도에도 순환배치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sup>121)</sup>

2014년 한미는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공식화하였다. 제1기병사단을 비롯해 몇 개 사단급 부대에 소속된 여단 전투단들이 한반도에 전개돼 주기적으로 순환하는데, 이것이 '순환배치 기갑여단'이다. 여단 예하 대대들을 포함하여 많은 부대가 한반도 전역의 전장 환경을 이해하고,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으로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며 그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6·25전쟁 당시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는 한반도를 경험한 미군의 전투대대가 단 하나도 없었던 시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준비태세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순환 배치된 기갑여단은 2015년 6월 미 제2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을 대신해 미 본토에서 온 제1기갑사단 예하 제2기갑전투여단이였다. 2016년 10월에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시험 등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3,500명 규모의 1개 기갑전투여단을 한국에 순환하여 배치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는 미군 제1기갑사단 소속 제3기갑여단이 제1기갑사단 제1기갑여단을 대체하여 순환 배치되었다. 2019년 6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에 있는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의 병력과 장비가 한국에 순환 배치되어 제1기갑여단을 대체하였다. 2020년 2월에는 미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제2전투여단이 「2020년 겨울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순환 배치되었다. 2021년 6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주둔한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이 한국에 순환 배치되었다. 2022년 2월 제1기갑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 전투단이 미 제8군과 미 제2사단·한미연합사단을 지원하는 '차기 순환배치 기갑여단 전투단'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한국에 순환 배치되었다.

2022년 11월 한국에 12번째로 순환 배치된 부대는 미 제2사단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으로, 그 성격이 기갑여단전투단(ABCT)에서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SBCT)으로 바뀌었다. 다련장로켓(MLRS)대대, 카이오와(Kiowa) 헬기대대, 패트리엇(PAC-3) 미사일부대 등 대대급 부대의 추가 및 순환배치도 이루어졌다. 이런 순환배치를 통해 많은 미군 장병이 한반도의 주요 항만, 공항, 철도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전방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는 전시 한반도에 증원 예정인 순환배치 기갑여단의 수송속도를 증가시키고 제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 주한미군의 전력과 연합방위능력의 강화로 이어졌다.

<sup>121)</sup> 국방부,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 p.128.



## 라. 확장억제 강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확장된 억제’를 뜻하는 핵 전략용어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하여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미국은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1년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 철수 결정이 있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운용되었으나, 1991년 전술핵 철수 이후 첨단 재래식 무기에 의존한 ‘역외억제(off-shore deterrence)’로 전환되면서 핵전력이 아닌 재래식 전력에 기초한 억제로 전환되었다. 단 미국은 극단적 상황(extreme circumstance)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견지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 한미와 국제사회가 북한 핵 포기를 위해 6자회담 재개 노력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였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였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국은 미국의 대(對)한반도 안보공약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억제를 요구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열린 제38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확장억제의 지속 보장’을 명기함으로써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핵우산의 신속한 전개를 확인하고 구체화하였다.<sup>1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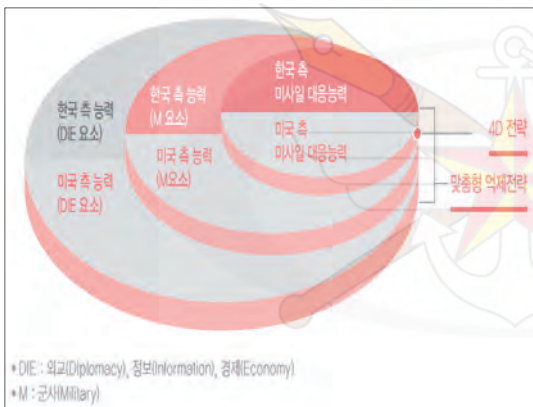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한반도 전쟁 상황과 관련된 기본 가정사항에서의 질적 변화가 발생하고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였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해 왔을 때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특히 미국 본토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되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이런 우려 속에 2009년 6월 1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통해 “안보이익을 유지하는 동맹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과

<sup>122)</sup>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6.10.20.).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sup>123)</sup>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재래식 도발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능동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를 도입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억제에 관한 협의 및 논의과정에서 처벌에 의한 억제, 거부에 의한 억제 등과 같이 차별화된 논의가 진행되고 맞춤형 억제라는 개념에 합의하였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미는 북한 핵위기 상황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 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수립하여 기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 전략에는 전략적 수준에서 이행 가능한 북한 핵위기 상황별 군사적·비군사적(외교·경제) 대응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림 2-2) 맞춤형 억제전략(TDS)

※ 출처: 『2022 국방백서』

수행개념’을 포함하여 「4D 전략 및 이행지침」을 승인함으로써 동맹 차원의 미사일대응 협력을 견인하였다.<sup>124)</sup>

이와 함께 한미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핵전력 3축과 핵우산에 버금가는 재래식 전략자산을 전개하여 효과적 억제와 압도적 대응을 보장하였다. 북한의 제3차

2015년에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d)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이행지침(약칭,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구축하였다.

2019년 제9차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서는 ‘4D 작전개념’을 작전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탐지(Detect)·결심(Decide)·격퇴(Defeat)·방어(Defend)의 ‘4D 작전

123) The White Hous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eoul.usembassy.gov/pv-061609b.html>.(검색일: 2023.2.1.).

124)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p.164-165.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과 4월에는 B-2, B-52 전략폭격기,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2016년 북한의 제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에는 미 공군의 B-52, B-1B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을 전개하였다.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기상황이 고조되었을 때에도 한미는 긴밀한 공조 하에 전략자산을 전개하였다.

2017년 12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약 5년 만인 2022년에 재개되었다. 2022년 9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을 동해상에 전개하였고, 11월에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참가하였다.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sup>125)</sup>



125)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p.163-164.

## 제2장 주한미군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기지 사용, 주한미군을 위해 일하는 한국인 직원, 미군의 범죄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세부 규정들이 부재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66년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었고, 이후 두 차례 보완되었다. 한편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방위비 부담 및 전략적 변화로 인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하여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경비를 일부 분담해오고 있으며, 「연합토지관리계획」(2002) 및 「용산기지이전협정」(2004)에 따라 대대적인 주한미군기지 통합 및 이전을 시작하여 2022년 11월 15일부로 완료하였다.

### 제1절 주한미군지위협정

####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 배경과 과정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되었다. 이후 1991년과 2001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그 배경에는 동맹의 장기적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국 정부의 노력 및 한국의 주권 존중과 호혜 평등의 원칙을 요구하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다.

SOFA 체결 이전에는 한국에 주둔해있던 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2개의 한미 합의문이 있었다. 하나는 1948년 8월 24일에 서명된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었다. 이 협정 제3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사령관은 그의 지휘하에 있는 군인·민간인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보유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관할하는 개인이 한국에서 체포될 경우 한국은 그 미군 당사자를 미군에게 즉시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점령군의 철수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지역과 시설(항구, 진지, 철도, 병참선, 비행장 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였다.<sup>1)</sup> 이 협정은 1949년 9월 미군이 철수하

1)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면서 무효화 되었으나, 한국과 한국 주둔 미군이 체결한 최초의 지위협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 합의문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1950년 7월 12일 한미가 체결한 「대전협정」이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상대로 가해행위를 범한 한국인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 미군이 구속한 한국인 피의자는 가급적 빨리 한국에 인도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언제까지 인도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한국인 피의자의 인도 시기를 미군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나아가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의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었다.<sup>2)</sup> 다시 말해, 형사재판권에 관하여 미국은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미국인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협정은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합의였다.

이후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 본 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sup>3)</sup> 이 조문은 이후 SOFA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8월 8일 가조인 되었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 주둔 미군의 지위를 즉시 상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sup>4)</sup>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1954년 12월 2일 조정환 외무부장관 대리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sup>5)</sup>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 12년이 지난 1966년에 체결되었는데, 미국이 계속하여 SOFA 체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배후에는 형사재판권 문제가 있었다. 1958년 6월 25일에 작성된 미 국무부 내부분서는 주한미군에 관한 형사재판권을 한국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sup>6)</sup> 이에 따라 1958년 9월 18일 다

(1948.8.24.).

- 2)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대전협정)」(1950.7.12.).
-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3.10.1. 서명; 1954.11.18. 발효).
- 4)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 공동성명」(1953.8.8.), 대통령기록관.
- 5) 「주한 미국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 교섭 경위,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59권(이하 SOFA)」 Vol.5, 분류번호: 741.12., 등록번호: 903(9576), 프레임: 6, 외교사료관.
- 6) Memorandum From the Under Secretary of State's Operations Coordinator (Richards)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obertson), 25 June 1958, *FRUS 1958-1960*, Vol. XXVIII, Japan-Korea, pp.463-464.

울링(Walter Dowling) 대사는 조정환 외무부장관에게 주한미군이 계속하여 미군에 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전달하였다.<sup>7)</sup> 만약 한국이 미군을 재판할 경우 미국 수준의 재판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는 요구하였다. 형사재판권 문제 외에 미 국무부는 미군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 한국인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요구하였다.<sup>8)</sup>

이후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조속한 SOFA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2년 1월 6일 임진강 부근에서 미군이 한국인 나무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SOFA 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고조되었다.<sup>9)</sup> 1962년 4월 4일에는 미군이 한국인 청년을 사냥총으로 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미군들의 비행이 인권문제로 불거져 1962년 4월 10일에는 국제인권옹호본부가 한국의 SOFA 체결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sup>10)</sup> 1962년 5월 29일에는 파주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SOFA 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더욱 고조되었다.<sup>11)</sup> 1962년 6월 6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 2,000여 명이 SOFA 체결을 촉구하는 거리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sup>12)</sup>

이렇게 SOFA 체결 필요성이 사회문제로 발전하자 1962년 6월 9일 버거(Samuel Berger) 주한미국대사는 최덕신 외무부장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SOFA 협상 재개 의지를 설명하였다.<sup>13)</sup> 이후 양국은 3개월 동안 협상 방식에 관한 토의를 거쳐 SOFA가 완전한 민정 이양이 이루어진 이후(정상적 헌법 정부와 일반 법원의 기능 및 법 절차가 정상화된 이후) SOFA를 체결한다는 조건과 한국이 미국인을 재판할 때 미국 수준의 재판을 보장한다는 조건에 합의하였다. 최 장관과 버거 대사는 이러한 조건에 기초하여 SOFA 협상을 재개한다고 1962년 9월 6일 언론에 발표하였다.<sup>14)</sup>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실무교섭은 1962년 9월 20일에 공식 재개되었고 4년 후인 1966년에 체결되었다. 협상이 길어진 중요한 이유는 역시 형사재판권 문제였다. 미국은 계

7) 「외무부장관 보고서: 주한 미국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 교섭 경위」(1958.9.18), 『SOFA』 V.4, 등록번호: 902, 분류번호: 741.12, 프레임: 217-219.

8) *FRUS 1961-1963*, Vol. XX, Northeast Asia, pp.440-442.

9) “한미 행정협정의 긴급성,” 『조선일보』(1962.2.11.).

10) “주한미군 신분협정 체결을 촉구 한국측 요구 지지,” 『조선일보』(1962.4.10.).

11) “파주서 미군인이 린치,” 『동아일보』(1962.5.31.); “한미 행협 빨리 체결하라,” 『동아일보』(1962.6.4.).

12) “결의문,” 『조선일보』(1962.6.6.).

13) 『SOFA』 Vol.13, 등록번호: 911(9584), 분류번호: 741.12, 프레임: 231-237, 외교사료관.

14) “공동성명서 전문,” 『동아일보』(1962.9.6.).

속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한국에 요구했고, 한국은 이를 반대하였다. 1964년 9월 3일에 주한미국대사관은 국무부에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첫째, 한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형사재판권 포기에 동의한다. 둘째, 형사재판권 포기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면 한미 간의 합동위원회가 문제를 검토하고, 그래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외교협상을 한다. 셋째, 외교협상을 통해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되 미국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미군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다.<sup>15)</sup>

한편 미 국방부는 한국의 형사재판권을 강간, 살해, 도난 등 특정한 경우로 제한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정치적 개입으로 인하여 법철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했고, 한국의 형사재판권을 제한시켜 미군이 한국 법정에 서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하였다.<sup>16)</sup> 미국의 이러한 의견은 최종 협정에 반영되었다.

형사재판권만큼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노무 조항이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한국은 반대로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1965년 5월 14일 주한미국대사관은 현안 타결을 위해 70일의 냉각 기간 이후 쟁의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미 국무부에 제의하였다.<sup>17)</sup> 국무부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최종 협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장관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13년, 무려 82회의 실무자 회의와 그 외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1966년 7월 9일 마침내 SOFA가 체결되었다. 본문,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4가지 문서로 구성된 SOFA는 같은 해 10월 14일 국회의 동의(재석 94명, 가 67명, 부 23명)를 얻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sup>18)</sup> SOFA 체결은 한미동맹에 있어 상당한 성과였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약점들이 일찍이 발견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91년 개정되었다.

15) Letter From the Ambassador to Korea (Brown)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Bundy), 3 September 1964, *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p.46.

16) Memorandum From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McNaughton) to the Deputy Secretary of Defense (Vance), 13 April 1964, *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pp.73-74.

17)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14 May 1965, *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pp.91-92.

18) 조약 제232호(1966.6.22.); 제5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9호(1966.10.14.).

## 2. 제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1991년)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된 SOFA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복합적이었다. 1966년 7월 10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SOFA가 민족 감정을 만족시킨 동시에 한국의 지위를 향상시킨 협정이라며 환영하였다. 하지만 청구권, 형사재판권, 노무에 관한 조항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9)</sup> 특히 형사재판권 조항과 노무 조항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sup>20)</sup>

먼저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한국이 미군을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SOFA 본문 제22조 3(다)항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사건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었고, 한국은 미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해야 하였다. 그리고 SOFA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한국은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 있었다.<sup>21)</sup> 그리고 한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sup>22)</sup> 아울러 SOFA 「교환서한」에 따르면 한국은 상호방위 목적과 신속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미군에게 재판권 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한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인정하였다. 이상의 조문은 한국의 ‘자동 포기’ 조항으로 인식되었고 1991년 개정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본문 제22조에 따르면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국이 구속한 미군 피의자를 주한미군에 인도해야 했고,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어 한국이 그 미군 피의자의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주한미군이 계속 구금하게 되어 있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구속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주한미군은 이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뿐 실제로 인도할 의무는 없었다.<sup>23)</sup> 한국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도 미국이 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되어있었다.<sup>24)</sup> 아울러 한국이 제

19) “한미 행정협정 평가,” 『조선일보』(1966.7.10.).

20) 「대한국민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제6대 국회 제58회 제2차 외무위원회, 1966년 9월 16일; 제6대 국회 제58회 제1차 외무위원회, 1966년 9월 9일; 제6대 국회 제57회 제9차 외무위원회, 1966년 7월 28일; 제6대 국회 제57회 제8차 외무위원회, 1966년 7월 26일; 제6대 국회 제57회 제6차 외무위원회, 1966년 7월 21일; 제6대 국회 제57회 제5차 외무위원회, 1966년 7월 18일); “미흡점 보완 촉구,” 『조선일보』(1966.7.10.).

21) 「합의의사록」 제3항(다)에 관하여.

22) 「합의양해사항」 제22조 제3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2.

23) SOFA 본문 제22조 5(다)항.

24) SOFA 본문 제22조 7(나)항.



엄령을 선포한 경우 형사재판권 조항은 즉시 정지되며, 주한미군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주한미군 구성원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었다.<sup>25)</sup> 이러한 조문은 1951년 「NATO 행정협정」이나 1960년 「미·일 행정협정」에는 없었다.

나아가 반역, 방해행위(sabotage), 간첩행위 혹은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즉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범한 미군 피의자에 대해 한국이 원칙상 배타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과연 대한민국의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미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공무집행 중이었는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문제였다. 미군이 공무집행 중에 범한 범죄에 관해서는 미군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사자가 공무집행 중이었는지를 결정하는 주체도 미국이었다.

이외에도 미군 피의자는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sup>26)</sup> 반면 한국 검찰은 무죄판결을 받은 미군을 다시 재판할 수 없었다. 나아가 미군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할 때에는 재판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권리, 구금시설이 적절한 환경이며 합중국 수준으로 적합하여야 할 권리 등이 인정되었다.<sup>27)</sup> 또한 현행범이 미군 기지 내에 있으면 미군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었다.<sup>28)</sup> 아울러 본문 제22조의 11항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은 모든 주한미군 구성원에 대한 전속적인 형사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노무 조항에 관한 첫 번째 약점은 한국 노동법의 선택적 적용이었다. 본문 제17조 3항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합의의사록」 제17조 2항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한국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군사상의 필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노무 조항에 관한 두 번째 문제점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파업권과 고용안정성에 관한 문제였다. SOFA 절차를 따를 경우 노무 조건에 불만이 있는 한국인 직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은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인 직원은 실직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본문 제17조 4항에 의하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이 노동 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주한미군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고, 해결이

25) 「합의양해사항」 제22조 제1항 (나)에 관하여.

26) 「합의양해사항」 제9항(가).

27) 「합의의사록」 9항에 관하여; 「합의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28) 「합의의사록」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불가하면 한국 노동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합동위원회에 문제를 상정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 합동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어도 70일은 기다려주어야 했는데, 이 70일 동안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해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나아가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데, 한국인 직원이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해고당할 수 있었다. 또한 70일이 지났는데도 합동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때는 파업을 할 수 있었지만, 합중국 군대의 군사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파업이 불가하였다.<sup>29)</sup> 주한미군의 한국 노무단(Korea Service Corps)을 대상으로 1967년 2월 23일 별도의 합의문이 체결되었는데, 상기 문제의 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sup>30)</sup>

〈표 2-7〉 한국노무단(KSC)의 창설과 운용

지계를 지고 전쟁터를 누비는 모습 때문에 당시 “지계부대(A-frame Army)”라고 알려진 한국노무단은 6·25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26일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에 따라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민간인 인력 자원을 유엔군이 징발하면서 출발하였다. 이후 이들을 준군사적 조직체로 운용하기 위하여 밴 플리트(James Van Fleet) 중장의 행정명령 제322호에 따라 한국노무단이 창설되었다. 한국노무단은 한반도 작전지역 전역에 있는 주한미군 및 유엔군을 지원하고, 유사시 동원보충대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주한미군과 미8군의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노무단은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을 지탱시켜주며 한미동맹을 이끌었던 영웅이었다. 전사자 2,064명, 실종 2,448명, 부상 2,682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노무자들이 전장에 투입되어 희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군번도 계급장도, 제대로 된 방어구 하나 없이 유엔군과 미군을 지원했던 한미 혈맹의 시초이며, 정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한미연합 전력 극대화에 기여해왔다.

※ 출처: KSC 제공자료(2023.6.).

2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6.7.9. 서명; 1967.2.9. 발효).

3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의 한국 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2.23. 서명; 1967.3.10. 발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의 한국 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양해사항」(1967.2.23. 서명; 1967.3.10. 발효).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시설과 관련해서 SOFA 본문 제2조에서 한국에 이미 반환된 시설과 구역을 미군이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는 점과 제4조에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을 한국에 반환할 때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할 의무도 없었다는 점, 오히려 제5조에 따라 한국이 미군에게 공여한 시설과 땅의 원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문제시 되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국에 반입하는 우편물 중 문제가 있는 물품이 들어있는지를 한국이 검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힘들다는 점과 주한미군 구성원이 누리는 면세 혜택이 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sup>31)</sup> 이러한 문제점들에 비추어 국회 및 언론에서는 1966년 10월 14일 SOFA 비준 당시부터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5년 이후 첫 개정 협정이 합의되었다.<sup>32)</sup>

SOFA의 제1차 개정은 1991년 2월 1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의 민주화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여론이 있었다.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1986년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는 국민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국가 안전 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33)</sup> 다시 말해 대한민국 지도부가 인권의 중요성, 언론의 자유, 정당 간의 소통 그리고 국민 의사의 존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언론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기능도 많이 변한 만큼 한미관계가 더 대등한 것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4)</sup> 아울러 한미 간의 협정이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에 비해 불평등하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미·일 행정협정」 제18조 2항 및 8항은 미군 피의자의 범행이 공무집행 중에 발생했는지를 일본인 법관이 판단하게 되어있었다.<sup>35)</sup> 미국과 필리핀 간에 체결된 1947년 「기지협정」 제14조는 미군 피의자가 필

31) SOFA 본문 제9조 2항·3항·5항(다) 및 제13조; 「합의의사록」 제9조 2항·3항·5항; 합의양해사항 제9조 5항 참고.

32) “불평등내용 포함,” 『동아일보』(1966.10.11.).

33) 「노태우 대표 특별선언」(1987.6.29.), 국무조정실, 『7·1결단과 6·29선언 관계철』, 국가기록원(성남 나라기록관).

34) “한·미 행정협정 40년,” 『조선일보』(1988.10.28.); “불평등조항 모두 고쳐야,” 『경향신문』(1988.10.29.); “한·미 행정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 형사재판권과 피해보상권,” 『한겨레』(1988.9.15.); “한·미 행정협 서독·일본 수준으로,” 『한겨레』(1988.12.22.).

35) Agreement under Article VI of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Status of

리핀의 형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도록 미군 사령관이 필리핀 당국에 인도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고, 제23조는 민사상 보상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미군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sup>36)</sup>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서는 서독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 보충협정」 제48조 5-b항에 의하여 독일의 이익에 우선된다고 인정되면 특정 시설의 사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up>37)</sup> 미국과 필리핀 간의 「기지협정」 제22조의 경우 필리핀에 주둔하는 미군이 군사적 이유로 사유지가 필요한 경우 미국이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었다.<sup>38)</sup> 또한 필리핀이 미군기지사용료로 매년 6억 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한국은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 매년 19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sup>39)</sup>

노무 조항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을 고용하여 주일미군에 제공하는 형태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한국인 직원 감원 계획이나 부당하고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NATO 행정협정」 제9조 4항에서는 고용과 노동의 조건이 주둔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민간인 노동자는 군대나 군속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군사상 필요”와 같은 모호한 단서조항이나 미군의 일방적인 임금문제 결정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sup>40)</sup>

1988년 두 차례 사건들로 인해 SOFA 개정요구의 열기가 급속하게 고조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1988년 9월 3일 서울 용산구에서 임신 4개월인 한국인 여성을 주한미군 구성원의 10대 자녀 2명이 폭행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1988년 10월 16일 이태원에서 미군이 한국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로 차 시비가 붙자 미군과 한국인들 사이에 집단난투극이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SOFA의 형사재판권 조항에 대한 비판과 개정요구가 고조되었다.<sup>41)</sup>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국은 SOFA 체결 22년 만인 1988년 12월 16일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Japan, 19 January 196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36) Agreement concerning Military Bases, Manila, 14 March 1947 (Naval War College, *International Law Documents* Vol. 45 (Washington DC: GPO, 1948), pp.176-177).
- 37) Agreements with respect to the Foreign Forces stationed in the German Federal Republic, supplement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regarding the Status of their Forces, 3 August 1959, accessed via UN.
- 38) Agreement concerning Military Bases, Manila, 14 March 1947.
- 39) “한미행정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 시설과 기지 사용,” 『한겨레』(1988.9.14.); “한·미 행협 서독·일본 수준으로,” 『한겨레』(1988.12.22.).
- 40)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regarding the Status of their Forces, 19 June 1951,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41) “불평등 한미 행협 하루빨리 고쳐야,” 『조선일보』(1988.9.11.).

SOFA 개정을 위한 특별회의를 개시하였다.<sup>42)</sup> 이후 몇 차례의 난항을 거친 후 1991년 2월 1일 한미 각서가 교환되면서 기존의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이 폐기되었다.<sup>43)</sup> 동시에 새로운 「양해사항」이 합의되었다.<sup>44)</sup>

제1차 개정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재판권 자동 포기 조항이 폐기되었다.<sup>45)</sup> 둘째, 주한미군 부대에서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한국 노동법에 실질적으로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sup>46)</sup> 셋째, 미군의 미사용 시설과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조항이 강화되었다. 한미 합동위원회는 미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과 토지를 반환하기 위한 연례 합동심사절차를 합의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미군이 반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설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측이 이러한 재사용권을 미군이 포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sup>47)</sup> 넷째, 미군 우편물에 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였다. 한국의 세관 당국은 군사우체국이 아닌 주한미군 구성원의 숙소에서 물품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주한미군이 행하는 모든 검사에 참관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의심될 경우 주한미군에 불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sup>48)</sup> 또한 한국인의 미군 비세출기관 이용 통제를 강화하여 미군 부대에서 미국산 물품이 한국 암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sup>49)</sup>

### 3. 제2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2001년)

한국 여론은 SOFA 개정을 통한 불평등조항들의 폐지를 환영했지만, 여전히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권과 관련하여 아직도 미군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해주어야 하였다는 점과 노무 조항과 관련하여 냉각 기간을

42) “주한미군지위협정 22년 만에 개정논의,” 『동아일보』(1988.12.16.).

4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각서교환」(1991.2.1.).

4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련 합의의사록 이행에 관한 양해사항」, 조약 제1038호(1991.2.1.).

45) 「양해사항」 제22조 참고.

46) 「양해사항」 제17조 참고.

47) 「양해사항」 제2조 참고.

48) 「양해사항」 제9조 참고.

49) 「양해사항」 제13조 참고.

70일로 유지한 것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라고 지적하였다.<sup>50)</sup> SOFA는 2001년 1월 18일 다시 한번 개정되었는데, 주한미군으로 인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었다.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군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국인 여성(윤○○)을 미군(Kenneth Markle)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SOFA의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SOFA 제22조 5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안전에 관한 범죄를 미군이 범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 신병 인도 요청에 주한미군이 호의적 고려를 한다고만 규정할 뿐 반드시 미국이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군 피의자를 넘겨줄 의무는 없었다.<sup>51)</sup> 이에 따라 한국 검찰은 재판을 진행하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마클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sup>52)</sup> 주한미군도 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마클 이병이 한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sup>53)</sup> 한국 시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마클 이병을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하면서 SOFA의 개정을 촉구하였다.<sup>54)</sup> 결과적으로 마클 이병은 천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한국이 불구속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했고, 장기적으로 SOFA 개정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sup>55)</sup>

1995년 5월 19일 지하철 3호선에서 미군들이 한국인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에 SOFA에 따라 미군 피의자들은 미군에 넘겨졌는데, 이를 계기로 SOF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었다.<sup>56)</sup> 1995년 9월 4일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일본인 여자 초등학교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지인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주일미군의 지위협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도 미군범죄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소 전에 미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sup>57)</sup> 일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SOF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자극하였다.<sup>58)</sup> 김영삼 대통령 또한 1995년 10월 14일

50) “불평등의 완화,” 『조선일보』(1991.1.5.).

51) “여종업원 살해 미군 검찰, 인도 요청 안해,” 『조선일보』(1992.11.11.).

52) “미병 신병처리 이견 팽팽,” 『동아일보』(1992.11.13.).

53) “미병 동두천 여인살해 유감 한국법 절차에 따를 터,” 『동아일보』(1992.11.14.).

54) “윤금미씨 49재 계기로 한미 행정협정 개정을,” 『동아일보』(1992.12.23.).

55) “살인 미 사병 기소 천안 교도소 수감예정,” 『동아일보』(1992.11.26.).

56) “미군 범죄는 늘고 사법권은 약하고…한미 행협 개정여론 높다,” 『경향신문』(1995.5.23.).

57) Kevin Sullivan, “3 Servicemen Admit Roles in Rape of Okinawan Girl,” 8 November 1995, *The Washington Post*; “Clinton Offers Apology in Girl’s Rape,” 22 September 1995, *AP News*; “미군 범죄위 설립,” 『조선일보』(1995.9.23.); “범죄 미군 기소전 인도 미·일 각서 교환키로,” 『한겨레』(1995.10.6.).

국무위원 만찬에서 SOFA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sup>59)</sup> 이후 1995년 11월 30일 한미 간에 SOFA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다.<sup>60)</sup>

이런 가운데 1996년 9월 7일 동두천에서 미군(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이 한국인 여성(이○○)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한미군은 SOFA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를 거부했고,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sup>61)</sup> 1995년 11월 30일에 시작된 한미 SOFA 개정 협상은 형사재판권 문제 등에서 양국 간 이견으로 1996년 9월 10일 7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sup>62)</sup>

결국 제2차 개정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완료되었다. 2000년 2월 19일 이태원 미군클럽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김○○)이 미군(크리스토퍼 매카시 이병)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시민단체가 형사재판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SOFA의 개정을 요구하였다.<sup>63)</sup> 3개월 후인 2000년 5월 8일 훈련 중이던 미 제7공군의 공격기가 엔진 고장으로 전시용 포탄을 투하해 주민 7명이 다치고 가옥 700여 채가 금이 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민사 청구권 문제, 즉 민간인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sup>64)</sup> 2000년 7월 14일 주한미군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한국 여론은 여야를 불문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고 한국 정부는 환경 관련 규정이 SOFA에 신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sup>65)</sup>

2000년 8월 2일 SOFA 개정 협상이 4년 만에 재개되었고 동년 12월 28일 협상이 타결되었다.<sup>66)</sup> 그리고 2001년 1월 18일 「개정협정」이 정식 조인되었고, 4월 2일 발효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SOFA 본문 제22조(형사재판관할권),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이 수

58) “클린턴 댈연 사과했는데,” 『조선일보』(1995.9.25.).

59) “한미 행협 고쳐야,” 『한겨레』(1995.10.15.).

60) “한미 행협 개정 논의,” 『조선일보』(1995.11.30.).

61) “미군 신병 인도 해야,” 『조선일보』(1996.10.14.).

62) “한미 SOFA 개정 합의 못해,” 『동아일보』(1996.9.13.).

63) “미군 범죄 이번엔 철저히 수사, 처벌해야,” 『한국경제』(2000.2.21.).

64) “[협상재개 앞둔 SOFA개정] 대표적 쟁점...이것이 문제다,” 『국민일보』(2000.5.19.).

65) “녹색연합, 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방류 주장,” 『한국경제』(2000.7.13.); “미군 독극물 방류 시인,” 『매일경제』(2000.7.14.); “[국회 대정부질문] SOFA에 환경문제 포함 촉구...환경대책,” 『국민일보』(2000.7.14.).

66) “SOFA 개정 협상, 4년 만에 재개,” 『한국경제』(2000.8.2.); “한미 SOFA 협상 타결-1,” 『연합뉴스』(2000.12.28.).

정되었다.<sup>67)</sup>

제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형사재판권과 관련하여 「개정협정」 제1조는 주한미군 구성원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재판이 끝난 시기가 아닌 기소된 시점에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나아가 한국이 구금 가능한 범죄의 유형이 살인, 강도, 강간에서 다음과 같이 12개로 확장되었다. ① 살인, ② 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한 강간 행위, ③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④ 불법 마약 거래, ⑤ 유통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⑥ 방화, ⑦ 흉기 강도, ⑧ 위의 범죄의 미수, ⑨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⑩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⑪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⑫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sup>68)</sup> 또한 「개정합의의사록」 제22조에 의하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을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 피의자를 체포와 함께 구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둘째, 쟁점이 되어왔던 환경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합의의사록」 제3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SOFA를 이행하고 한국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은 주한미군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정과 함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서명되었는데, 주한미군은 인간건강에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관리기준(EGS: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EGS를 지속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규정 중 더 엄격한 규정을 참조한다고 합의하여 환경보호를 향한 한미의 진지한 의사를 반영하였다.<sup>69)</sup>

셋째, 주한미군을 위해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이 강화되었다. 「개정합의의사록」 제17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군사상 필요에 의해 감원해야 하는 경우, 주한미군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군사상 필요”를 좀

67)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개정협정」, 조약 제1553호(2001.1.18. 서명; 2001.4.2. 발효);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합의의사록」, 조약 제1553호(2001.1.18. 서명; 2001.4.2. 발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조약 제1553호(2001.1.18. 서명; 2001.4.2. 발효).

68) 개정합의의사록 제22조 제5항(다)3.

69)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1.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더 구체적으로 전쟁, 전쟁에 준하는 상황, 임무변경 상황으로 정의하였다.<sup>70)</sup> 한편 새롭게 개정된 「양해사항」 제17조 4항(가)(5)에 의하면 냉각 기간이 70일에서 45일로 단축되었다.<sup>71)</sup>

넷째, 1991년 제1차 개정문에는 없었던 “공여 당시 최초의 취득문서에 명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용 계획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을 반환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조문(양해사항 제2조 3항)이 추가되었다. 또 「양해사항」 제3조 1항에 의해 미군시설 및 구역 안에서 신축 또는 건축을 하면 한국 정부에 반드시 사전 통보하고 협의토록 했고, 이는 주한미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도 「양해사항」 제23조에 따라 미군이 낸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처리하기 위한 민사청구절차가 신설되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양해사항」 제26조 2항에 의해 동물·식물의 해충 및 질병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위한 식료품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동검역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sup>72)</sup> 나아가 「양해사항」 제13조에 따라 주한미군 클럽과 골프장 등과 같은 비세출 시설에 대한 한국인 출입 통제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데도 양국은 합의하였다.

〈표 2-8〉 제2차 SOFA 주요 개정내용

- 형사재판권
  -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를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 시”로 조정
  - 한국 측이 살인·강간 미군 피의자 체포 시 계속 구금 가능
- 환경: 「개정합의의사록」에 환경조항 신설
- 노무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쟁의 냉각 기간을 70일에서 45일로 단축
  - 한국인 근로자 해고 요건 강화
- 시설/구역
  - 미군기지 내 주요 시설 건축 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종전: 단독 결정)
  - 연 1회 한미 합동 실사 불용토지 반환, 용도변경 사유 발생 시 합동위 실사 후 용도변경 혹은 반환
- 민사소송절차: 미군에 대한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 및 집행 절차 신설
- 기타 검역, 비세출 자금기관(도박장 등) 관련 규정 개선

※ 출처: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정책기획국, 2002), p.76.

70) 「양해사항」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3.

71)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 고용 및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2001.1.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2) 서현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형성과 변화”(국사편찬위원회, 『한미행정협정 문서 1』, p.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88~200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256~257.

한국 언론과 일반 국민들은 한국의 의견이 많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하면서도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환경조항이 SOFA 본문이 아닌 「개정합의사록」과 「양해각서」에 들어 있고, 환경피해도 독일과 다르게 “원상회복”이 아닌 “치유·복구”로 규정되어 있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형사재판권 조항에 관해서는 미군을 한국이 체포했을 당시 구금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12개 항목으로 제한한 사실, 변호사 부재시 취득한 증언은 증거로 재판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 그리고 일단 무죄가 선고된 피의자에 대해 한국 검찰이 상고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sup>73)</sup> 한편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훈련 중이던 미 제2사단의 장갑차에 여중생 2명이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계기로 SOFA 개정요구가 다시 증대되기도 하였다.<sup>74)</sup> 2002년 12월 5일 제34차 SCM에서 이준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전달”하였고, 럼스펠드(Donald Rumsfeld) 미 국방장관은 “이 장관의 설명을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sup>75)</sup>

물론 앞으로도 SOFA 운영 과정에서 한미는 한국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 간의 이해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미 SOFA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 특히 독일·일본과 체결한 SOFA와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는 합의문으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면, 미·일 SOFA에는 환경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SOFA와 별도로 선언적 성격의 환경 관련 공동선언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미 SOFA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미 측에게 환경오염 긴급치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SOFA에는 반환 대상 부지에 대한 합동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미·일 SOFA와 미·독 SOFA에는 합동 실사 규정이 없다.<sup>76)</sup>

형사재판권에 관하여서는 미·독 SOFA의 경우, 미군 피의자를 재판 종결 후에 독일측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 SOFA에 비해 오히려 구금권 행사가 제한적이다. 미·일 SOFA의 경우 기소시 신병인도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일본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급하는 중대사건의 경우에만 신병을 인도받으므로 사실상 한미

73) “[SOFA협상] 미, 우리측 요구 대부분 수용,” 『매일경제』(2000.12.28.); “[사설] 논란소지 여전한 SOFA,” 『동아일보』(2000.12.28.); “[SOFA협상 타결] 범죄 유형 명시 안해 불씨 여전,” 『동아일보』(2000.12.28.); “[SOFA협상 타결] 많이 고친 소파 그래도 불균형,” 『국민일보』(2000.12.28.).

74)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SOFA 개정 근본책 없인 반미 감정 확산 불가피,” 『국민일보』(2002.7.7.); “특집: 대선 정책공약 검증 ④ 외교분야,” 『연합뉴스』(2002.11.18.); “〈특집: 대선 정책공약 검증〉 ⑤ 국방·안보,” 『연합뉴스』(2002.11.18.).

75)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2002.12.5.).

76) 외교부, 「알기 쉬운 SOFA 해설」(2002년 11월).

SOFA와 유사하다. 한편 미국에서는 인권보장을 위해 공권력은 개인을 상대로 하여 한번 판결을 받았으면 더 이상 상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미 헌법상의 기본권리다(이중위험 금지, 미국 헌법 수정5조). 또한 일본과 독일의 경우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국내 사법 관행상 피고가 상소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상소하지 않고 있다.<sup>77)</sup>

〈표 2-9〉 미·일 및 미·독 SOFA와의 주요조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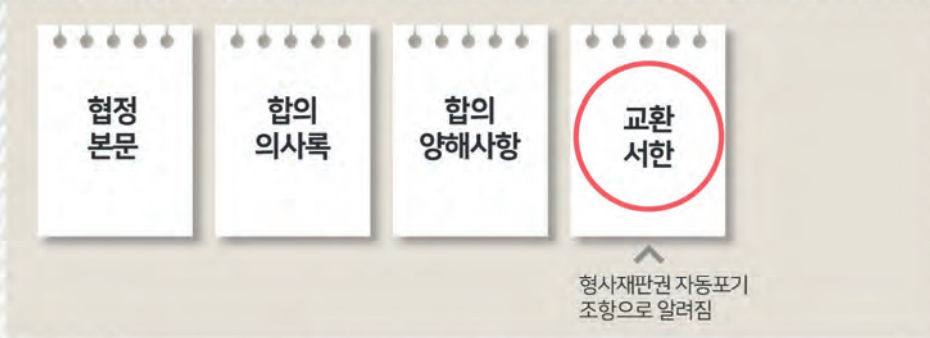
	한미 SOFA	미·일 SOFA	미·독 SOFA
재판관할권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군간의 범죄, 공무집행 중의 범죄는 제외하고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SOFA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공무중에 발생한 살인·강도·강간 등 중요 범죄를 제외하고는 미측이 1차재판권행사</li> </ul>
신병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개 주요범죄에 대해서 기소시 신병인도</li> <li>살인·강간의 경우 우리측이 미군피의자 체포시 계속 구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소시 신병인도</li> <li>일측이 미군피의자 체포시 중대범죄에 대해 계속구금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고집행시 신병인도</li> <li>계속구금권 불보유</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OFA에 환경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보호 특별 양해각서를 별도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규정 부재 (환경선언 채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3년 개정시 환경관련 규정 신설</li> </ul>

※ 출처: 외교부, 「SOFA 주요 관심 사항 관련 일문일답」(2002.11.).

77) 「SOFA 주요 관심 사항 관련 일문일답」(2002년 11월), 외교부.

### SOFA의 구성 문서들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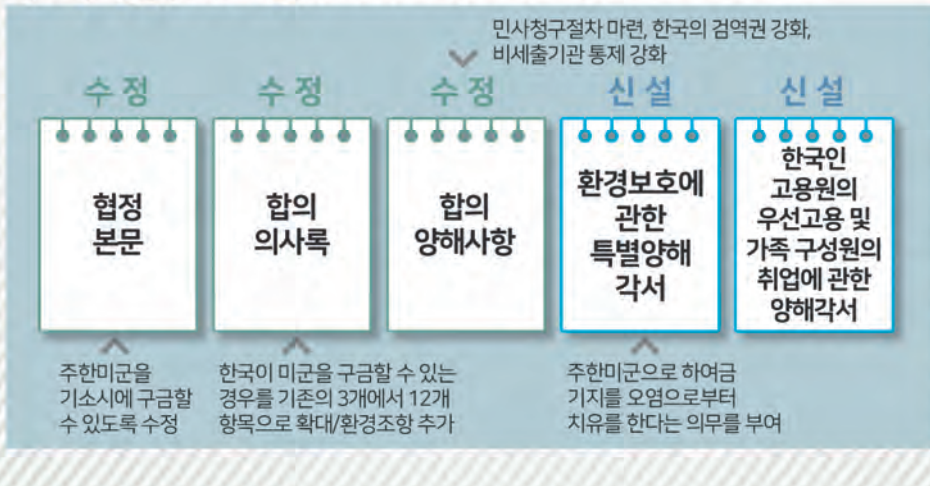
#### SOFA 체결(1966년) >>>



#### 제1차 개정(1991년) >>>



#### 제2차 개정(2001년) >>>



## 한미 SOFA 및 미국이 당사자인 기타 SOFA

체결일	협정명
1942.7.27.	미국-영국 간 각서교환
1946.	미국-포르투갈 공군기지협정
1947.3.14.	미국-필리핀 군사기지협정
1951.1.11.	미국-라이베리아 협정
1951.6.19.	미국-사우디 기지협정
1951.6.19.	NATO SOFA
1952.2.28.	미국-일본 행정협정
1952.8.28.	NATO-독일 협정
1954.8.13.	미국-네덜란드 SOFA
1954.10.22.	미국-대서양연합군(SACLANT) 보충협정
1959.8.3.	서독 보충협정
1960.1.19.	미국-일본 SOFA
1963.5.9.	미국-호주 SOFA
1963.7.5.	주유럽동맹군(SHAFE)·이태리 협정
1965.8.31.	미국-중화민국 SOFA
1966.7.9.	한미 SOFA
1967.3.13.	주유럽동맹군-서독 협정
1967.5.12.	주유럽동맹군-벨기에 협정
1991.1.12.	미국-이스라엘 SOFA
1991.2.1.	한미 SOFA 제1차 개정
1995.11.21./23.	NATO-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SOFA
1995.11.21.	NATO-크로아티아 SOFA
1995.12.14.	NATO-유고슬라비아 SOFA
1995.12.18.	NATO-슬로바키아 협정
1997.5.14.	미국-헝가리 협정
1999.6.25.	NATO-알바니아 협정
2001.1.18.	한미 SOFA 제2차 개정

※ 출처: Dieter Fleck, *The Handbook of the Law of Visiting For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xi~xxiii.

## 제2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기지환경 개선

### 1. 주한미군 기지 형성(1945~1980년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하고, 반환된 미군기지는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sup>78)</sup> 기지 이전의 필요성은 1988년 정부 차원에서 처음 거론되었으며, 2004년에 공식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2017년 7월 11일 미 제8군사령부의 신청사가, 2018년 6월 29일 주한미군·연합사령부 신청사가 개관하였다. 그리고 2022년 11월 15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 44주년 및 이전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용산 시대를 접고 평택 시대를 알렸다.<sup>79)</sup> 주한미군 기지 이전 30년의 여정에는 군사·경제·여론은 물론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사항들이 작용하였다.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는 1945년 해방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일본군이 사용하던 기지와 시설을 접수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일본 오키나와 주둔 제24군단 예하 7사단 병력이 미 극동군사령관 일반명령 제1호에 따라 한국으로 이동되면서 용산에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일부 기지들만 사용하게 되었는데, 서울의 캠프 서빙고와 부평의 애스컴시티(ASCOM City: Army Service Command City)가 그 예다.



〈사진 2-9〉 애스컴시티(1950년대)

※ 출처: 인천광역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이 다시 한국에 전개하자 기지들이 신설되었

78)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 기지 역사: 반환기지를 중심으로』(서울: 국방부, 2015), pp.11-28.

79) “미 8군사령부 이전...주한미군 평택 시대 개막,” 『KBS News』(2017.7.11.); “주한미군, 73년 만에 용산 시대 마감하고 평택 시대 개막,” 『국방일보』(2018.6.29.); “한미연합군사령부 평택 시대 본격 개막,” 『국방일보』(2022.11.15.).

다. 물론 전쟁 초기에는 텐트를 치며 숙영을 하고 학교 건물을 전투사령부로 사용하는 등 당시의 기지들은 기본적인 설비만을 갖추었고 장기적 사용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었다.<sup>80)</sup>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기지가 신축되거나 일본군이 쓰던 기지를 미군이 다시 접수하면서 오늘날의 주한미군 기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전쟁 중 대구 K-37, 춘천 K-47 비행장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대구의 캠프 헨리(Camp Henry)는 1921년에 지어진 일본군 기지였으며, 정전협정 이후 헨리 중위(Frederick Henry)의 공을 기념하여 캠프 헨리로 명명되었다.<sup>81)</sup> 부평의 캠프마켓(Camp Market)은 1941년 5월 5일 일본이 개창한 인천육군조병창을 1945년 8월 광복부터 1948년 이한할 때까지 미군이 임시로 보급기지로 활용하다가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재탈환하여 건설한 애스컴시티의 일부이다.<sup>82)</sup>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38도선 일대의 안정화로 후방지역에 반영구적 캠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 캠프들 대부분이 전후 캠프가 된다. 파주의 캠프 하우스(Camp Howze)와



〈사진 2-10〉 미군의 텐트 막사(1951)

※ 출처: 트루먼 대통령기념관

캠프 게리오웬(Camp Garry Owen), 그리고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Camp Long)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up>83)</sup>

한편 1950년대에 미군시설 건설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57년 7월 1일 미 육군 극동 공병단(FED: Far Eastern District)이 서울 동대문 근처에 창설되었다.<sup>84)</sup> 1960년대 초반에 주한미군의 생활여건 개선이 이루어졌다. 도서관, 화장실, 막사, 식당 등이 새롭게 지어지고, 1965년부터 1968년까지 군산 등 5곳에 항공기 관제 및 경보(AC&W: Aircraft Control and Warning) 통제소가 세워졌다. 또한 군

산, 오산, 광주, 대구, 수원에 활주로를 개설하고, 비행장에는 방공호가 지어졌다.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에는 군항이 건설되었다. 용산에는 121후송병원이 새로 건설되어 1971년 6월에 부평에서 이전했고, 새로운 매점과 교회도 지어졌다. 육군은 보급 및 수송창인 캠프 에드워드(Camp Edward)를 새롭게 지었다.<sup>85)</sup>

80)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역사』, p.13.

81) Military OneSource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Installations(USAG Daegu In-depth Overview), Department of Defense.

82) 역사(캠프마켓의 어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83)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역사』, pp.75, 82, 92.

8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역사』, pp.12-17.

85)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역사』, pp.17-18; 역사(캠프마켓의 어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유엔 및 미 제8군 지하전투사령부가 1970년에 완공되었고, 기존의 기지도 보완되었다. 1972년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는 비행기 격납고, 호크 미사일 지원시설, 의무실 및 숙소 시설 등에 대한 신설·개선 작업이 진행되었다. 캠프 워커(Camp Walker), 캠프 에임스(Aims), 캠프 캐롤(Carroll) 그리고 용산에는 콘크리트 막사 건물과 식당이 지어졌다. 한편 1970년 11월 15일 캠프 카이저(Camp Kaiser)가 폐쇄되어 한국군 제5군단에 반환되었고, 1971년 3월 27일 미 제7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캠프 세인트 바바라(Camp St. Barbara), 캠프 알렉스 윌리엄스(Alex Williams), 캠프 실(Seal), 캠프 버몬트(Bermont) 등이 잇달아 폐쇄되었다.<sup>86)</sup>

캠프 건설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80년대 중반이었다. 이 시기에 모든 병력을 임시 막사나 기타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1985년에서 1991년 사이에 클럽, 피엑스(PX), 볼링장, 오락시설 및 의료시설이 개장하였다. 캠프 케이시(Camp Casey)의 경우 새로운 의료센터가 1985년 4월, 매점은 1987년 2월, 그리고 1989년에는 새로운 클럽을 개장하였다. 한편 1970년에서 1991년 사이 125개의 미군 캠프가 한국으로 반환되었고, 75개의 캠프와 비행장이 미 측 관할로 남게 되었다.<sup>87)</sup>

## 2.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합의 과정

주한미군 기지와 훈련장은 대체로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경기 북부와 서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환경 문제 유발과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와 제14조에 의하여 주한미군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시설규제를 가능하도록 해서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갖가지 개발 제한이 적용되었다.<sup>88)</sup> 대표적으로 동작대교의 경우 이러한 법조항에 따라 최초 계획이 수정되었다. 초기에는 동작대교가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것을 구상하였으나, 미 제8군의 골프장을 관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로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sup>89)</sup> 이로 인해 1987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도심지역 군사시설을 교외로 이전하여 주민의 생활공간을 확대하기로 공약하였다.<sup>90)</sup>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인 1988년 3월 노태우 대통령

86)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역사』, pp.19-21.

87)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역사』, pp.21-22.

88) 「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3497호(1981.1.1. 시행).

89) “미군 기지 이전은 빨리 매듭지어야,” 『조선일보』(1988.9.27.).





〈사진 2-11〉 동작대교 북단이 미8군 골프장 부근에서 잘려있는 모습

※ 출처: 『조선일보』(1988.8.14.).

은 서울의 도시계획, 교통문제, 시민 편의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하였다. 노 대통령은 1988년 6월 8일 방한한 칼루치(Frank Carlucci) 미 국방장관과 1988년 7월 18일 방한한 쉘츠(George Schulz) 미 국무장관에게도 미군기지이전 문제를 직접 제기했으며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동의하였다.<sup>91)</sup>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정치·문화적 상징으로 발전시키고 주한미군 시설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미감정 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현대화계획도 고려되었다. 둘째, 반환된 부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을 넓히고 교통문제 등을 해소하여 용산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한다.<sup>92)</sup>

1990년 6월 25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 제8군 사령부를 서울 도심지역으로부터 이전시키기 위한 「기본합의각서」와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sup>93)</sup> 1991년 7월 19일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997년까지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오산 미 공군기지 및 평택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94)</sup> 국방부는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이전비용의 최소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산 및 평택 미군기지로 결정하였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이고 미 제7공군사령부 및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어 군사작전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존 기지로 이전함으로써 기지를 새로 만들 때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sup>95)</sup>

90) 노태우, 『밝은 미래와의 노태우 약속(13대 대통령선거 공약)』(서울: 민주당의당, 1987), pp.178-179.

91) “용산 미8군 지방 이전,” 『매일경제』(1988.8.13.).

92) 국방부, 『국방백서 1989』(서울: 국방부, 1989), pp.165-167.

93) 「서울 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간의 합의각서」, 『오마이뉴스』(1990.6.25.); 박용하·이정호 외, 「군부대 주둔 및 이전부지의 환경관리: 정책토양·지하수 환경을 중심으로」(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pp.62-67.

94) “용산기지 오산·평택 이전,” 『매일경제』(1991.7.20.).

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편년사(1991~1997)』(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pp.179-180.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높은 비용부담과 평택 주민들의 이전 반대 운동 등으로 인하여 무기한 보류되었다.<sup>96)</sup> 국방부는 1993년 6월 평택의 부지 매입계획을 중단하였다.<sup>97)</sup> 1997년 7월 23일 국방부 관계자는 막대한 이전비용과 북한의 전쟁 위협이 노골화된 상황을 이유로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무기한 유보되고 있다고 밝혔다.<sup>98)</sup> 이후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로 인해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고, 용산기지 이전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이후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미국도 2000년 들어 새로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을 추진하면서 용산기지 이전 논의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01년 12월에는 용산기지 내 미군 아파트 건립문제로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sup>99)</sup> 양국은 2002년 12월 12일 용산 문제를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전사업의 재추진을 시작하였다.<sup>100)</sup>



〈사진 2-12〉 주한미군기지이전계획  
※ 출처: 『조선일보』(1991.7.20.).

### 3.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의 전략적 배경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사항들이 작용하는데, 특히 테러와 같은 새로운 위협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파악 능력이 강조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군의 현대화, 그리고 전군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합동성·통합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한미동맹의 성격도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96) 이종원, “용산 미군기지이전 보류검토,” 『조선일보』(1993.5.10.);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이전백서: YRP사업 10년의 발자취』(서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2018), p.109.

97) “용산 미군기지이전계획 차질,” 『매일경제』(1993.6.16.).

98) 김도형, “용산 미군기지이전 백지화,” 『한겨레』(1997.7.24.).

99) “미군 용산기지에 아파트건설 추진,” 『연합뉴스』(2001.12.7.).

100) “용산기내 아파트 건축논의 한·미 고위정책협의회 구성,” 『한국경제』(2001.12.12.).

1995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환경, 마약, 테러, 해적 행위 등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비군사적인 문제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능력의 중요성을 명기하였다. 아울러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101)</sup> 1998년 국방부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국방 부문은 극심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선진 군대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다.<sup>102)</sup>

2002년 국방부는 능력에 기초한(Capability-Based) 군으로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로 발전하여야 하는데, 전장 상황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창의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정보화·과학화된 C4I체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통합전력 발휘가 극대화되도록 군·기능별로 균형된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군기지에 관하여서는 주한미군의 병영시설 노후화, 관사 부족 등의 문제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03)</sup>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동북아 번영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하며, 한미동맹을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104)</sup> 2003년 8월 15일 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전력이 약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부대의 재조정을 추구할 것이며, 용산기지는 가능한 최단 시일 안에 이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05)</sup> 2003년 5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여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주한미군을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강 이북 미군 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 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논의하였다.<sup>106)</sup>

2004년 3월 1일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 핵문제는 물론 냉전 종식

101) 국방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서울: 국방부, 1995), pp.3-8, 34-36, 54-62.

102) 국방부,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1998-2002)』(서울: 국방부, 1998), pp.13-17, 22-23.

103)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2002), pp.25-28, 39-40.

104) 대통령기록관, 「제16대 대통령 취임사」(2003.2.25.).

105)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대통령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사」(2003.8.15.).

106) 자유아시아방송, 한미정상회담(2003.5.14.).

이후 부상한 군사·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재조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주둔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연합 군사 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국방위 역할을 담당하여 새로운 국제 안보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sup>107)</sup>

한편 미국도 1980년대 말부터 주한미군의 변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1989년 8월 2일 미 상원에서 의결되고 1989년 11월 29일 대통령이 승인한 회계연도 1990·1991년 「국방법안」은 한국에서 주한미군과 현지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이전, 한국 방위에 있어 주한미군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하는 역할로의 전환에 관한 타당성,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저비용으로 유지하는 방안, 주한미군의 부분적·점진적인 감축 등에 관한 세부적 검토를 미국 정부에 요구하였다.<sup>108)</sup>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1990년 4월에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을 발간하여 주한미군이 주도적인 역할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기 위해 지휘체계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의 감축을 3단계에 걸쳐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하면서 중단되었다.<sup>109)</sup>

1990년 3월에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구소련 진영의 혼란, 선진국 간의 무역마찰, 지역분쟁, 마약, 난민 등 안보지형에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10)</sup>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 미 국방부는 「국방태세에 관한 검토보고서(BUR: Bottom Up Review)」를 발표하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미군을 좀 더 저비용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1)</sup> 이후 1996년 미 합동참모본부는 「합동비전 2010(Joint Vision 2010)」을 발표하여 21세기에 미군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로 합동성과 다국적 작전 수행능력을 강조하였다.<sup>112)</sup> 또한 1997년 5월에 발표한 미국의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는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는 군사기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기지)들

107)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 평화변영과 국가안보』(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pp.16, 40-44.

108) S.1352: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s 1990 and 1991.

109)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 Report to Congress: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April 1990, pp. 11-12.

110)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rch 1990," pp.15, 23, 26.

111) Les Aspin, *Report on the Bottom 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1993).

112)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10*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1996).

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113)</sup> 기동성, 합동성, 정보력, 비용 효율적 운용(비용절감) 등은 미 국방부가 2001년과 2002년 사이 작성한 기타 문서에서도 강조되었다.<sup>114)</sup>

2002년 9월에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서(NSS)」는 테러를 중대하고 세계적인 위협으로 상정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지역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명기하였다.<sup>115)</sup> 이후 2004년 9월 23일 미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을 통해 동맹국 전력 현대화, 지역 안보, 능력 위주 군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116)</sup> 이 내용은 2004년 10월에 발간된 미국의 「국방개혁 보고서(Elements of Defense Transformation)」에서 재강조되었다.<sup>117)</sup>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2006년에 조직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사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한미군기지 대부분은 6·25전쟁 와중이나 정전협정 이후 설치되었다. 무기체계의 발전과 한미 군사전략의 변화, 한국사회의 민주화 진전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부 주한미군의 일탈로 인한 비판 여론과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로 인한 불편함, 재산권 침해를 겪는 주민들도 국토의 회복을 기대하며 재배치를 지지한다는 사실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sup>118)</sup>

#### 4.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이행

한미 양국은 2002년 3월 29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rogram)」을 체결하였다.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보다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반도

113)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May 1997.

114)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30 September 2001; Transformation Study Group, "Transformation Study Group Report: Transforming Military Operational Capabilities," 27 April 2001, Homeland Security Digital Library; Office of Force Transformation, *Military Transformation: a strategic approach*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2), pp.6, 30.

115)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September 2002, pp.7, 1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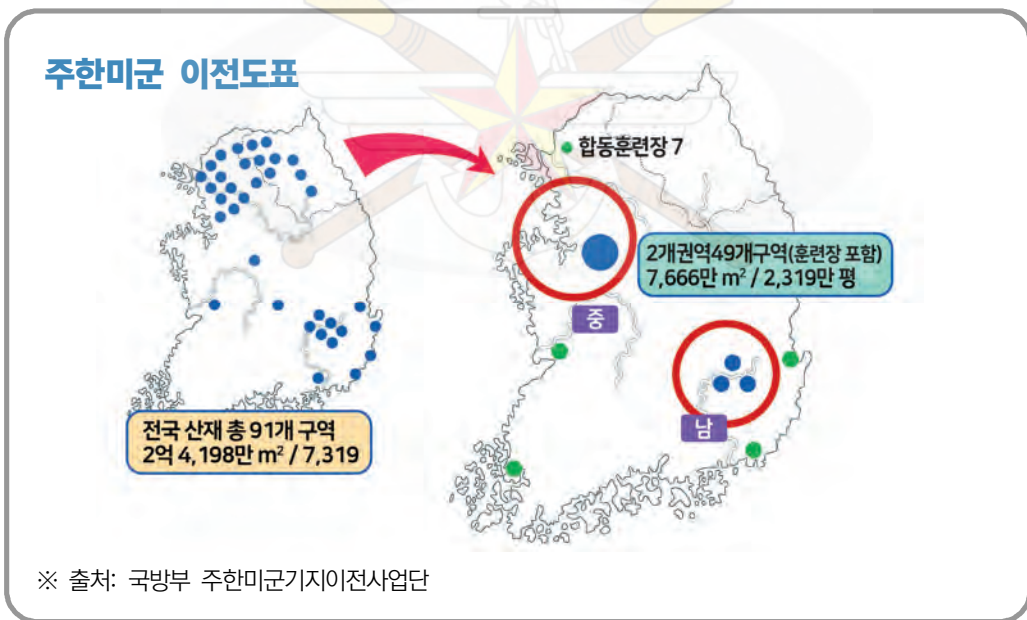
116)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The Global Posture Review of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Stationed Overseas, 23 September 2004*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5).

117) Office of Force Transformation, *Elements of Defense Transformat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04).

118)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이전백서: YRP사업 10년의 발자취』, p.119.

안의 미합중국의 군대·시설 및 구역을 통합하여 부대방호를 향상하고 준비태세를 증진하는 한편 대한민국 토지의 균형된 개발 및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4개의 미군기지를 폐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sup>119)</sup>

2002년 12월 5일 열린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을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응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을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sup>120)</sup> 이에 따라 2003년 4월 9일부터 2004년 9월 12일까지 12차례에 걸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이 장차 한반도 내외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기지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기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이후 2004년 10월 26일 「용산기지이전협정(YRP: Yongsan Relocation Plan)」에 반영되었다.<sup>121)</sup>



11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2002.3.29. 서명; 2002.10.31. 발효).

120)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2.12.5.).

121)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제1차 회의 결과」(2003.4.9.);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제3차 회의 결과」(2003.7.25.);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제2차 회의 결과」(2003.6.6.);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제7차 회의 결과」(2004.2.14.);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 결과」(2004.8.3.).

2004년 4월 18일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를 전담할 ‘미군기지 이전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sup>122)</sup> 2004년 10월 26일에는 「LPP 개정 협정」과 용산에 주둔하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반 원칙과 조건을 정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서명되었고, 동년 12월 17일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sup>123)</sup>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위한 절차, 추진 일정, 비용처리 절차, 환경 조치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행합의서」는 2004년 10월 28일에 서명되고 12월 17일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sup>124)</sup> 이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사(UNC), 한미연합사(CFC), 주한미군사령부, 미 제8군 사령부 및 관련 부대를 2008년 12월까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한다. 일부 부대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원활한 연락을 위해 서울에 잔류한다. 둘째, 한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시설은 한국이 현물로 제공하며, 미국은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기술양해각서」와 「시설종합계획서」를 작성한다. 넷째, 경기 북부에 위치하던 미 제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 제2사단이 사용하던 캠프 롱(Camp Long), 캠프 케이시(Camp Casey), 캠프 호비(Camp Hovey),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 캠프 스탠리(Camp Stanley), 캠프 잭슨(Camp Jackson) 등 6개 기지는 폐쇄한다. 참고로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스탠리는 2014년 체결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에 따라 기지 이전이 보류되었다.

이후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평택시의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이 2004년 12월 18일 국회의결을 거쳐 12월 31일 공포되었다.<sup>125)</sup> 또한 2006년 7월 21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United States Forces Korea Relocation Office)’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sup>126)</sup> 2006년 9월 4일에는 「미군공여구역법」을 시행하여 전국 미군기지 주변 지역 및 철수(반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의

122) “국방부 미군기지 태스크포스 가동,” 『연합뉴스』(2004.4.18.).

123)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2004.10.2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2004.10.26.).

12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2004.10.28.).

125)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04.12.31.).

126)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2006.7.21.).

복리 증진을 위해 공장의 신·증설, 외국인 투자지역지정 개발, 학교 이전과 외국 교육기관 설립, 고용안정사업 지원, 기지 및 주변 환경오염대책 추진 등을 허용하였다.<sup>127)</sup>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미군이 평택에서 새로 사용할 부지를 확보해야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설 철거 및 현지인들의 이주가 필요했고,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 체결 이후 4년간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7년 2월 13일 이 주민을 위한 보상 및 각종 시설 설치 등 생계지원에 관한 24개 항에 전격 합의하였다.<sup>128)</sup>

나아가 시설 건축 및 부대의 이사를 위한 전체적인 사업의 종합 관리, 출입통제, 환경문제, 민원접수, 현장 응급상황 관리, 군사시설 보안 유지 등 복잡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사업관리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CH2M HILL과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을 관리한 건원엔지니어링,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한 유신 코퍼레이션과 ITM 코퍼레이션, 주택·산업·공공시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토팩엔지니어링 등 대규모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경험이 풍부한 업체들로 구성된 사업관리 컨소시엄(PMC: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과 2007년 6월 7일 계약을 체결하였다.<sup>129)</sup>

〈표 2-10〉 평택기지 요약

평택기지는 여의도의 3.7배인 총 1,465만㎡의 거대 미군기지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제8군 사령부 등 지휘 시설과 소화기, 사격장 등 훈련시설, 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평택기지는 원래 항공수송, 통신, 의무, 헌병,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지원기지였으나 주한미군의 핵심 지휘부가 주둔하는 기지로 탈바꿈했다. 평택기지는 1919년 일제가 조성한 평택 비행장이 그 기원이며, 해방 이전까지 일제의 공군기지로 사용되었다. 6·25전쟁 중에는 미 해병항공대와 제614전술통제단이 주둔하면서 K-6로 명명, 1962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제6수송 중대의 벤저민 험프리스 준위(CW2 Benjamin K. Humphreys)의 이름을 따서 캠프 험프리스로 불리게 되었다. 2022년 12월 현재 평택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기지다.

※ 출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이전백서: YRP사업 10년의 발자취』(서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2018), pp.126-127, 145; US Army Garrison Humphreys (History), US Army.

1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6.3.3. 제정; 2006.9.4. 시행).

128) “평택 미군기지 주민 이주 합의,” 『KBS News』(2007.2.13.).

12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이전백서』, p.140.



2007년 11월 13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 기공식이 열렸다.<sup>130)</sup>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업이 평택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국에 흩어져 있는 35개의 기지들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부대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sup>131)</sup> 이에 더하여 김장수 국방부장은 평택기지 이전을 통해 주한미군은 보다 안정된 주둔 여건 속에서 통합된 지휘체계를 갖추게 되며 효율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한미 양국이 혈맹의 기반 위에 협력적 동반자로서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래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132)</sup> 용산기지의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은 2013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최초 이동부대는 미 제94헌병대대로 2013년 1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전하였다.<sup>133)</sup>

이전사업은 한국이 미국 국방부 기준에 따라 시설을 건설하여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였다. 따라서 양국의 이해 당사자의 다양성, 적용법규의 복잡성, 의사결정의 특수성 등이 중첩된 매우 난해한 사업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군시설 건축을 위해 국산 자재 활용을 적극 독려·관철하여 약 1,8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진 2-13〉 한미연합사 창설·이전 기념식

※ 출처: 『국방일보』(2022.11.15.).

하였다. 또한 국내업체가 미군기지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미군의 엄격한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경험 하면서 건설사의 관리 능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134)</sup> 이 밖에도 친환경 사업관리를 통해 환경 민원을 방지하고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행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와 솔부엉이의 이주작전을 펴기도 하였다.<sup>135)</sup> 한편 건설비용은

130) “평택 미군기지 건설공사 의미,” 『국방일보』(2007.11.14.).

131) 「평택 미군기지 기공식 축하 메시지」(2007.11.13.), 대통령기록관.

132) 「김장수 국방부 장관 평택 미군기지 이전 기공식 기념사」(2007.11.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33)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이전백서』, p.166.

13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역사』, pp.24-25;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이전백서』, pp.152, 156.

135)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이전백서』, pp.141-142, 149, 158.

2004년 국회 비준 시 발표했던 4조 4,470억 원에서 5,8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외 사업 지원비를 포함한 8조 9,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주로 물가상승과 한미가 협의한 예비비가 증가한 결과였다.<sup>136)</sup>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특성상 양국의 법령, 기술 규정과 규격을 적용해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초 계획 당시 2008년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8년에야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되었다. 협의와 합의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한미동맹의 안보태세를 견고히 유지하고 군사적 공백 없는 이전계획에 따라 부대 이동이 이뤄지고, 미군의 엄격한 시설기준 및 이사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기한이 늘어났다.<sup>137)</sup>

2022년 11월 15일 한미연합사는 완공된 평택기지에서 창설 제44주년 및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연합사가 부대 이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평택시대를 알리는 행사였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합사의 평택시대 개막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가 캠프 험프리스에 함께 위치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력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역시 연합사의 주소는 바뀌었지만 철통같은 한미 유대관계는 변함없다고 역설하였다.<sup>138)</sup>

136) 주한미군기지가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이전백서』, pp.135-137, 141-142, 149, 158, 169.

137) 주한미군기지가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이전백서』, pp.139-140.

138) “한미연합군사령부 평택 시대 본격 개막,” 『국방일보』(2022.11.15.).

## 제3절 자조(自助)·상호원조 및 방위비 분담

### 1.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전 주한미군 지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에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다.<sup>139)</sup> 1991년도 이전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대부분의 군사시설 건설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종전과 함께 미국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경제력이 계속 신장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1945년 해방과 함께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한 미군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왔었다. 예를 들어 1950년 1월 26일 한국과 미국은 대한민국 군·경의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설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고문단을 위한 생활비 성격의 특별수당, 주택과 사무소의 수리유지비용, 국내 출장비 및 의료지원 등 각종 수당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고문단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문단을 위해 일하는 한국인 직원(통역, 서기, 노무자 등)에 대한 보수, 비품비 및 국내교통비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sup>140)</sup> 군사고문단을 위한 각종 수당과 혜택 이외에 대한민국은 서울의 캠프 서빙고와 부평의 애스컴시티(ASCOM City) 등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자조(self-help)와 상호원조(mutual aid)에 따라 공동의 방위력을 증강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동시에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이 한국 영토 내에 배치되는 것이 허용

<sup>139)</sup>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156.

<sup>140)</sup>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 제5호(1950.1.26. 서명; 1949.7.1. 소급발효).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에 관한 제반 규정이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공식화되었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SOFA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41)</sup> SOFA 본문 제5조에 따르면 미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게 필요한 시설과 구역(제2조), 각종 면세 혜택(제9조 및 제14조), 미국 공용 항공기·선박의 한국 비행장·항구의 무료 이용(제10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sup>142)</sup>

한편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1969년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였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점차 증가하였다.<sup>143)</sup> 1971년 3월 31일 한미는 한국이 M-16 소총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문에 따라 한국에 M-16 소총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7,260만 달러 중 미국이 4,200만 달러까지 한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무상원조가 공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sup>144)</sup> 1972년 5월 12일에는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무상 군사원조 및 초과 군수품 가격의 10%를 원화로 미국에게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은 이를 승인하였다.<sup>145)</sup> 또한 1974년 11월 25일에 체결된 「재래식 탄약 합의각서」를 통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재래식 탄약 저장고의 검사 및 재산계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sup>146)</sup>

1974년 한미 연합방위전력의 증강을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 한미 연합지휘 및 통제기구, 한미연합 조기 경보 체제, 탄약 및 유류 저장 등과 관련하여 양국이 공동투자하는 시설 지

141) 국방부, 『방위비 분담 1988』(서울: 국방부, 1989), p.32.

14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1966.7.9. 서명; 1967.2.9. 발효).

143) 닉슨은 1969년 7월 25일 기자회견과 1969년 11월 3일 연설에서 미국이 아시아 안보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아시아인들이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시아의 안보는 우선 아시아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Informal Remarks in Guam With Newsmen, 25 July 1969, UC Santa Barbara;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War in Vietnam, 3 November 1969, University of Virginia Miller Center).

144) 「M16 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1971.3.31. 및 1971.4.22. 서명; 1971.4.22. 발효).

14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대한미군원 10퍼센트의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1972.5.12. 서명; 1972.2.7. 발효).

146) 「대한민국 내에서 재래식 탄약 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간의 합의각서」(1974.11.25. 서명; 1974.11.25. 발효).

원 사업인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을 시작하였다.<sup>147)</sup> 1976년부터는 합동군사지원단(JUSMAG-K: Joint Military Assistance Group)의 운영비를 한국이 직접 부담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 군사원조는 1977년 종결되었다.

1983년부터는 한미연합사 운영비의 일부를 양국이 분담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83년 12월 2일 체결된 「연합사령부의 민감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각서」에 따라 한국은 폭파, 굴착, 볼팅 및 레깅, 기타 특수정보시설(SCIF: Specialized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건설 이전에 필요한 작업을 포함하여 터널 확장 공사에 필요한 자금 및 공사를 담당하고, SCIF 내의 한국 측 보안통제장교실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제공하도록 합의하였다(제5조).<sup>148)</sup> 1988년 말 기준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하여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한 직·간접비는 22억 1,900만 달러였다.<sup>149)</sup>

1980년대 후반 미국은 이른바 쌍둥이 적자(재정 적자 및 무역수지 적자)와 국방예산 축소에 시달리게 되면서 동맹국들의 고도 경제성장을 감안하여 해외주둔 미군의 인건비 외 주둔비용, 즉 운영유지 경비의 일부를 분담해 줄 것을 동맹국에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7년 미국은 일본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87년 5월 7일 미국은 제1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 논의를 공식 제기하면서 한미동맹이 동반자 관계이며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능력에 유의한다고 강조하였다.<sup>150)</sup> 1988년 5월 11일 오자복 국방부장관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up>151)</sup> 이에 따라 1988년 6월 9일 진행된 제20차 SCM에서 양국은 한국이 연간 CDIP 사업비로 3,400만 달러를 투자해오던 것을 수백만 달러 늘리고 동북아에서 활동 중인 미 해군 항공기 정비지원(용역)비로 수백만 달러를 추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sup>152)</sup>

이후 1989년 7월 19일 제21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체니(Richard Cheney) 국방장관은 한국이 자국 방위를 위한 책임을 증대시켜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1990년도 CDIP를 위해 1988년에 약속된 4,000만 달러에

147) 국방부, 『방위비 분담 1988』(서울: 국방부, 1989), p.69.

148) 「한미 연합사의 탱고 지휘소 SCIF 개선에 관한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의 합의각서」(1983.12.2.)(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2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3), pp.52-58.).

149) 국방부, 『방위비 분담 1988』, p.35.

150) 제1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87.5.7.).

151) “미 방위비 분담요구 수용 미군 단계 철수 여론 경계해야,” 『동아일보』(1988.5.11.).

152) “방위비 분담 합의,” 『매일경제』(1988.6.9.).

추가하여 3,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4,000만 달러를 지출하고 1992년에도 5,000만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체니 국방장관은 양국이 공동방위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sup>153)</sup>

1989년 8월 2일 미 상원에서 「넌·워너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안은 한국이 국고의 많은 양을 국방비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고 주한미군을 위해 더 많은 직접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sup>154)</sup> 1989년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공동방위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늘려 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155)</sup>

### 1987년~1989년 주한미군 지원 요약

연도	총액	직·간접비	
		직접비	간접비
1987	19억 610만 달러	직접비	16억 1,850만 달러
		간접비	2억 8760만 달러
1988	22억 1,950만 달러	직접비	19억 4260만 달러
		간접비	2억 7,720만 달러
1989	26억 2,200만 달러	직접비	22억 1,900만 달러
		간접비	4억 300만 달러

주한미군 지원형태는 CDIP, 카투사 봉급, 한미연합군 시설공사비 등과 같이 제반 비용을 한국이 직접 지불하는 ‘직접비’와 주한미군을 위한 면세 및 감면 혹은 한국군시설제공과 같은 ‘간접비’로 분류되어 있었다.

※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1988』(서울: 국방부, 1988), p.132; 국방부, 『국방백서 1989』(서울: 국방부, 1989), p.170; 국방부, 『국방백서 1990』(서울: 국방부, 1990), p.172.

1990년 2월 15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미국은 다시 한번 한국의 현저한 방위비 분담증액을 기대하였고, 한국은 능력 범위 내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와 성장,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방위비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sup>156)</sup> 이후 한국은 1990년 11월 15일 제22차 SCM에서 주한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153) 제2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989.7.19.).

154) S.1352: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s 1990 and 1991, 2 August 1989.

155) 「전진의 동반자: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미관계(노태우 대통령 미국 의회 연설)」(1989. 10.18.), 대통령기록관.

156) “공동 발표문,” 『조선일보』(1990.2.16.).

급여 및 주한미군 군사건설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1991년도에 1억 5,000만 달러를 직접 비 형태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sup>157)</sup> 이것이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으로 귀결되었다.

양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국회의 요구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앞서 언급한 1991년도 방위비분담액을 1991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였다. 1990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당시 강금식 평민당 의원은 방위비 분담의 적정성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58)</sup> 1990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 1991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김태식 평화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무인 임금에 대한 대미 지원금을 헌법 제60조를 위반하여 계산했다고 주장하였다.<sup>159)</sup> 헌법 제60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체결·비준에 대한 권한과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었다.<sup>160)</sup> 즉, 김태식 의원은 방위비 분담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1991년 1월 25일에 서명하였다.

이렇듯 한미동맹 형성 이후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공식 체결되기 전부터 한미 간의 역할 배분이 진행되어왔으며, 한국이 부담하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지원-피지원 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왔음을 의미하며, 한국은 점차 대미 의존 자세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증대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특히 한국의 경제·군사적 성숙으로 인하여 상호 호혜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한미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상호 군사·경제적 이익이 확대되도록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한국이 어려운 경제, 사회적인 여건하에서도 방위비 분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와 의회 등에 홍보하여 방위비 분담 압력의 완화를 추구하고 한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부담액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161)</sup>

157) 제2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0.11.15.).

158) 대한민국 국회, 제151회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1990.12.11.), p.120.

159) 대한민국 국회, 제151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9호(1990.12.18.), p.23.

160) 「대한민국헌법」(1987.10.29. 개정, 1988.2.25. 시행).

161) 국방부, 『국방백서 1989』(서울: 국방부, 1989), pp.156, 169-171.

## 2.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이후 방위비분담금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서명하면서 한국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이 부담할 실제 액수는 매년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1년 2월 21일 발효되었다.<sup>162)</sup> 이에 따라 한국은 네가지 종류의 비용분담을 하게 되었는데, ① 기존에 지원해왔던 CDIP, ②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③ 군수지원비(탄약저장, 장비정비, 수송, 장비·물자, 시설유지 등), ④ 군사건설비(막사·창고·훈련장·작전시설·정보시설 등)에 관한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WBC: Won-Based Cost)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국이 향후 제공하여야 할 액수에 관해서는 1992년도에 1억 8,000만 달러를 제공하며, 1995년도까지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의 1/3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 부담하기로 1991년 11월 21일 제23차 SCM에서 합의하였다.<sup>163)</sup> 이는 제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이 무엇을 부담할지 좀 더 명확하게 하였다.<sup>164)</sup>

1991년 10월에 국방부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책임, 역할, 위험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각국의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담하는 협력 관계로 방위비 분담을 정의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국방예산 축소로 해외 미군 주둔 정책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하여 경제력 신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상응하여 방위비 분담증대를 요구해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지원하는 위치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한국의 책임과 역할증대가 불가피하며 방위비 분담이 증가할 것을 전망하였다. 또한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의 경제·재정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방위비 분담은 궁극적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하였다.<sup>165)</sup>

16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1991.1.25.).

163) 제2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991.11.21.).

164)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1209호(1993.11.23.).

165)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서울: 국방부, 1991), pp.200-201.



한미 양국은 1991년 제23차 SCM에서 원화지출경비의 1/3을 부담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원화지출경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세부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분담비용 총액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한국이 지급해야 하는 정확한 액수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한국 사회의 비판으로 방위비 분담액 산정 방식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일정지표(INDEX) 방식으로 변경하였다.<sup>166)</sup> 이에 따라 1995년 11월 3일 제27차 SCM에서 양국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연도별 분담금을 1995년 분담액 3억 달러를 기준으로 전년도 분담금에 국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씩 증액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sup>167)</sup> 이에 따라 1995년 11월 24일에 서명된 제3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1996년(3.3억 달러), 1997년(3.63억 달러), 1998년(3.99억 달러)에 지급할 분담금을 제2조에 명시하였다. 동시에 분담금이 100% 현금이 아닌 현금과 현물로 지급된다는 원칙이 추가되었다.<sup>168)</sup>

1997년도 말에는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 등 경제난에 따른 극심한 환율 불안으로 제3차 협정대로 이행 시 한국 측에 엄청난 규모의 환차손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2일에 제3차 협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합의되었던 분담액 3억 9,900만 달러를 3억 1,400만 달러(1.75억 달러와 2,033억 200만 원)로 개정하였다. 참고할 점은 최초로 분담금이 달러와 원화(비율 57%) 혼합된 형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다.<sup>169)</sup>

양국은 제4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분담금을 GDP 변동률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합한 비율로 증액시키기로 하였다.<sup>170)</sup> 제5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전년 대비 8.8% 증가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deflator)만큼의 증가액을 합한 증가율로 결정하고, 원화 지급 비율을 88%로 확대하였다.<sup>171)</sup> 제5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경우 부속서인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이 함께 서명되었는데 여기에는 2001년에 발효된 개정 SOFA의 환경조항에 비추어 주한미군은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제6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분담금 액수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되, 원화지급률을 100%로 하기로 합의하였다.<sup>172)</sup> 제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전전년도 소비자

166) 김광진(국방위원회)·정청래(외교통일위원회), 「2013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황과 쟁점」(2013.10.), p.5.

167)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995.11.3.).

168)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1327호(1995.11.24.).

169)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 조약 제1457호(1998.6.2.).

170)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1480호(1999.2.5. 서명; 1999.1.1. 소급발효).

171)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1592호(2002.4.4. 서명; 2002.1.1. 소급발효).

172)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1738호(2005.6.9. 서명; 2005.1.1. 소급발효).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sup>173)</sup>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2010년 이후부터는 최대 4%를 초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아가 이전까지는 방위비분담금 항목을 인건비, 군사건설비, CDIP, 군수지원비 4개 항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군사건설비와 CDIP를 통합하여 3개 항목으로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기존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오던 군사건설비의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제외한 전액을 2009년부터 3년 동안 현물지원체제로 전환(2009년 30%, 2010년 60%, 2011년 88%)하기로 합의하였다.<sup>174)</sup>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여 분담금이 모두 필요한 사업에 의미있게 소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up>175)</sup>

한미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2019년 말까지 한국이 1조 389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최초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현물지원 또한 강화되었다.<sup>176)</sup> 이 협정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분담금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차기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이 협정은 2019년 9월 양국 간 협상이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타결되어 2021년 4월 8일에 체결, 동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로써 2020년부터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 이 협정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전격 타결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증명하고 있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이었고,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이었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한국

173)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1844호(2006.12.22. 서명; 2007.4.2. 발효).

174)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1928호(2009.1.15. 서명; 2009.3.5. 발효).

175)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2190호(2014.2.2. 서명; 2014.6.18. 발효).

176)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2412호(2019.3.8. 서명; 2019.4.5. 발효).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협상 기간 중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하였음에 주목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였다.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노력(endeavor)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나아가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도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의장을 종전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 부처 참석을 명문화하였다.<sup>177)</sup>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한국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은 한국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건비는 모두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와 모든 군수지원비는 한국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미국 측이 제기한 군사건설 사업 목록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조정 및 추가 사업 제안 권한을 규정하는 등 방위비분담금집행 과정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는 등 주한미군에 소속된 한국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sup>178)</sup>

177)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2484호(2021.4.8. 서명; 2021.9.1. 소급발효); 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2021.3.10.).

178)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p.156-7.

〈표 2-11〉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요약

(단위 : 억 원)

구분	연도	분담액	비고
제1차 1991.1.25. 서명 1991.2.21. 발효	1991	1,073 (1.5억 달러)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부담” 연도별 분담액은 매년 협상
	1992	1,305 (1.8억 달러)	
	1993	1,694 (2.2억 달러)	
제2차 1993.11.23. 서명 1994.1.1. 발효	1994	2,080 (2.6억 달러)	분담목표를 1995년 3억 달러로 설정 주한미군 경비의 “공정”한 부담을 합의 주둔비용의 1/3 분담 목표로 점진 증액
	1995	2,400 (3억 달러)	
제3차 1995.11.24. 서명 1996.1.1. 발효	1996	2,475 (3.3억 달러)	전년도 분담금 기준 매년 10% 증액 합의 최초로 3개년 분담금 일괄 결정
	1997	2,904 (3.63억 달러)	
	1998	3.99억 달러	
제3차(개정) 1998.6.2. 서명 1998.6.19. 발효	1998	4,082 (1.75억 달러+ 2,033억 200만 원)	IMF 쇼크로 분담액 3.99억 달러에서 3.14억 달러로 하향 조정
제4차 1999.2.25. 서명 1999.1.1. 발효	1999	4,411 (1.41억 달러+ 2,575억 원)	실질 GDP 및 CPI(소비자물가지수) 고려하여 분담액 결정
	2000	4,684 (1.55억 달러+ 2,825억 원)	
	2001	4,882 (1.67억 달러+ 3,045억 원)	
제5차 2002.4.4. 서명 2002.1.1. 발효	2002	6,132 (0.59억 달러+ 5,368억 원)	고정 증가율 8.8% + 전전년도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분담액 결정
	2003	6,686 (0.65억 달러+ 5,910억 원)	
	2004	7,469 (0.72억 달러+ 6,601억 원)	

제3절 자조(自助)·상호원조 및 방위비 분담

구분	연도	분담액	비고
제6차 2005.6.9. 서명 2005.1.1. 발효	2005	6,804	분담금을 100% 원화로 지급 분담금을 6,804억 원으로 동결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고려
	2006	6,804	
제7차 2006.12.22. 서명 2007.4.2. 발효	2007	7,255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2.2%) 반영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을 상향조정 : 10%
	2008	7,415	
제8차 2009.1.15. 서명 2009.3.5. 발효	2009	7,600	물가상승률 4% 상한선 설정 CDIP와 군사건설비 항목 통합 군사건설비에 대한 단계적 현물 지원체제 전환 - 2009년 30%, 2010년 60%, 2011년 88% - 미국은 사업선정 및 설계, 한국은 업체 선정 및 공사집행 추가협정 서명 <sup>179)</sup>
	2010	7,904	
	2011	8,125	
	2012	8,361	
	2013	8,695	
제9차 2014.2.2. 서명 2014.6.18. 발효	2014	9,200	제도개선 교환각서 채택 물가상승률 4% 상한선 적용
	2015	9,320	
	2016	9,411	
	2017	9,507	
	2018	9,602	
제10차 2019.3.8. 서명 2019.4.5. 발효	2019	10,389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 반영 현물지원 강화 SMA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신편
제11차 2021.4.8. 서명 2021.9.1. 발효	2020	10,389	제10차 협정액과 동일 <sup>180)</sup>
	2021	11,833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 SMA제도 개선 합동실무단을 국장급으로 격상
	2022	12,472	
	2023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하여 산정
	2024		
	2025		

※ 출처: 국회도서관, “한눈에 보기(특별호): 한미 방위비분담금,”(2019.10.1.); 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2021.3.10.).

179)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 제1939호(2009.1.15.).

180) 2020년은 협정이 부재하였지만, 제11차 협정문에서 2020년 협정액은 제10차 협정액과 동일(10,389)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방위비 분담, 관련 한국 지원 종류의 변천

연도	지원 종류	법적근거
1953~1990	① 부동산	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② SOFA 제2조(시설·구역), 제5조(경비·유지), 제8조(출입국), 제9조(통관·면세), 10조(선박·항공기), 제14조(조세·과세 면제), 제17조(노무지원), 제23조(손해배상 청구)
	② 인력	
	③ 운영유지비	
	④ 연합방위력개선(CDIP) 사업	
	⑤ 군수지원	
	⑥ 한국군 시설 제공	
	⑦ 감면 혜택	
1991~2008	① 인건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제1차~제7차)
	② 군사시설 개선	
	③ CDIP	
	④ 군수지원	
2008~현재	① 인건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제8차~제11차)
	② 군사시설 개선(CDIP와 통합)	
	③ 군수지원	



### 연도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요약



※ 출처: 국회도서관, “한눈에 보기(특별호): 한미 방위비분담금,”(2019.10.1.); 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2021.3.10.); e-나라지표, “방위비분담금 현황,”(2023.1.10.).

Alliance for the Future  
한미동맹 70주년









제Ⅲ부

#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제1장 연합방위체제와 군사협력

제2장 북한 위협 관리

제3장 작전통제권 전환

## 제1장 연합방위체제와 군사협력

한미는 다양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국 간의 안보 현안문제를 협의해왔다. 대표적으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를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한미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비롯하여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설치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대북억제력과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해 왔다. 국군은 창설 초기 미군의 군사교리를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래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고유한 교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1절 한미안보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

#### 1. 한미안보협력체제의 구성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이라는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를 실현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다양한 동맹현안의 적시적 조율과 협의를 위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 등의 한미안보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정책을 협의함으로써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한미안보협력체제는 1966년 7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 1991년 11월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A: War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 체결 등으로 더욱 제도화되었다.<sup>1)</sup>

한미는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196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SCM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해결하고 있다. 또한 1978년에는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MC를

1)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서울: 국방부, 1995), pp.103-107.

설치하여 한미연합사에 주요 전략지침과 지시를 하달하고 있다.

### 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1)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설치 배경과 구성

SCM은 한미 간의 각종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의 협의기구이다. 한미 양국은 1968년부터 매년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SCM을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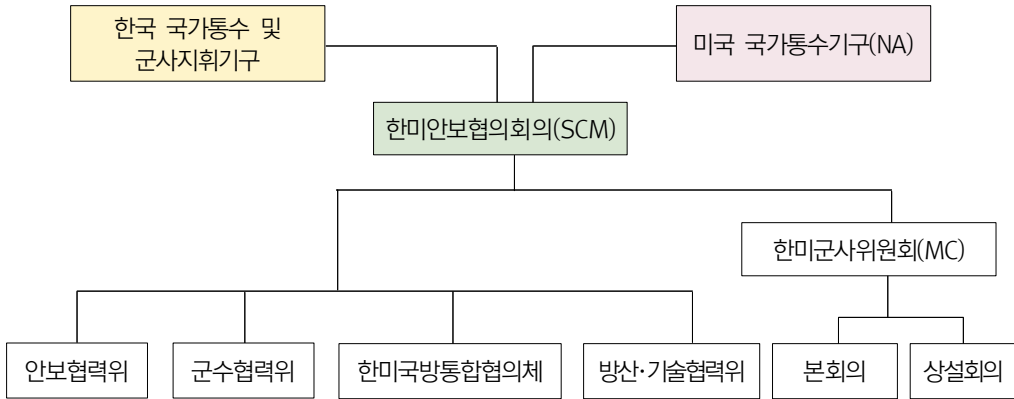
1968년 2월 12일, 밴스(Cyrus R. Vance) 미 국무장관이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 특사로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한하였다. 당시 1·21 청와대 기습미수 사건,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베트남전쟁 파병에 따라 한미 간에는 우호적인 군사협력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따라 한미는 양국 간의 안전보장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급 연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1968년 4월 17일,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시 이를 구체화하여 1968년 5월, 제1차 한미국방각료회담을 워싱턴에서 갖게 되었다. 한미국방각료회담은 1968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4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1971년 제4차 회의 때부터는 명칭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바꾸면서 외교부도 참여하는 안보 차원의 최고 회의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2)</sup> SCM의 구성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회의 기간은 제1차~제17차(1968~1985년)까지는 2일을, 제18차~제23차(1986~1991년)까지는 3일을, 제24차~제28차(1992~1996년)까지는 다시 2일로 조정되었다가 1997년 제29차부터 현재까지는 1일간 실시하고 있다. 회의 장소는 미국과 한국에서 격년씩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2)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FRUS Korea, 1969-1972*, Vol. XIX, pp.187-189.

〈그림 3-1〉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구성



※ 출처: 국방부 제공자료(2023.1.).

SCM을 보좌하기 위한 실무분과위원회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안보협력위원회(SCC: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군수협력위원회(LCC: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Defense Technology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등 4개가 있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SCM 개최 이전 의제 선정 및 협상 방향을 상호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1〉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위원회별 기능

구분	기능	공동위원장	
		한국 측	미국 측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주요 동맹 현안을 고위급에서 조정·통제 한미 공동의 지침 논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안보협력위원회(SCC)	안보지원 분야 협의 (FMS 지위 향상, 수출허가, 군원업무 등)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국방부 국방안보협력본부 운영국장
군수협력위원회(LCC)	군수협력 분야 협의 (전시지원 협정, 한미탄약 등)	국방부 군수관리관	국방부 획득운영유지 차관실 품목지원 부차관보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방산·기술 협력사항 및 첨단 군사과학 기술자료 교환	방위사업청장	국방부 획득운영유지 차관

※ 출처: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강군』(서울: 국방부, 2013), pp.71-73; 국방부 제공자료(2023.1.).

## 2)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기능과 역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한미 양국의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협의, 한반도 및 국제 안보환경 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양국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조정 및 전달,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 및 운용방안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SCM은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기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군사위원회에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인사와 외교부의 고위관계관이 참석하여 양국의 공동 안보 관심사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이를 통해 한미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함은 물론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SCM은 1990년대부터 한미 안보 관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그 성격과 기능이 발전적으로 조정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 재천명과 한국 군사력 증강 계획에 대한 지원 약속을 공표(公表)하는 등 선언적 역할에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는 점차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 북한의 핵 문제, 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분담 등 한미 간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고 있다. 또한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협의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sup>3)</sup>

SCM은 1979년 10·26사태로 1980년 실시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개최하여 한미안보협력을 증진해 왔다.<sup>4)</sup> 그 결과 SCM은 한미 국방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 왔다. SCM 개최현황과 주요 내용은 부록 '3'에 정리되어 있다.

### 나. 한미군사위원회(MC)

#### 1) 한미군사위원회(MC)의 임무와 기능

한미군사위원회(MC)는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에 따라 양국 간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여 설치된 군사기구이다. 즉, MC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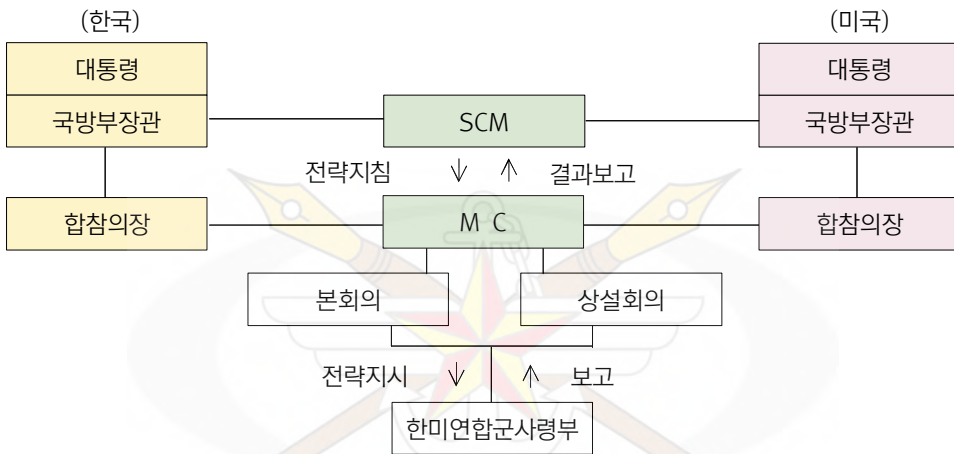
3)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p.88-89.

4) 제12차 SCM이 1979년 10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제13차 SCM은 1981년 4월 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1978년 7월 제11차 SCM 합의에 따라 한반도 방위문제를 관장하는 합참의장 간 군사협의 기구로 설치되었다.<sup>5)</sup>

MC는 한국의 방위를 위하여 한미 양국이 상호 발전시킨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제공하고 한반도 방위문제를 관장하는 양국의 국가통수기구의 실무적인 최고 군령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MC는 한미 군사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 주재하에 매년 SCM과 같은 시기에 MCM을 개최하고 있다. 한미군사위원회의 지휘 관계는 아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한미군사위원회(MC)의 지휘 관계



※ 출처: 합동참모본부, “한미군사위원회회의의 어제와 오늘,” 『합참 업무소개』(서울: 합동참모본부, 1997), p.218.

## 2) 한미군사위원회(MC)의 구성과 역할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MCM)** MC는 본회의(MCM)와 상설회의(PMC: Permanent Military Committee)로 나뉜다. 본회의는 한반도의 군사위협 분석과 군사대비책을 협의하고 연합전투력 발전실태를 포함한 연합사 연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연합군사전략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합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와 전략지침을 제공한다.<sup>6)</sup>

본회의는 한미 양국 합참의장, 양국 의장이 지명한 대표 각 1명 및 양국을 대표하는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본회의는 SCM과 같은 시기에 개최하며, 회의결과를 SCM에 보고하고 양국 장관으로부터 추가 지침을 받는다. MCM은 1978년부터 2022년까지

5) 국방부,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의의와 성과』(서울: 국방부, 2003), pp.13-14.

6) 국방부, 『국방백서 1990』(서울: 국방부, 1990), p.161.

총 47회 개최되었다.

특히, 1994년 10월 개최된 제15차 MCM에서는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새로운 임무 지시를 위한 「전략지시 2호」에 양국 합참의장이 서명하였다. 이후 한미연합군사령관에 대한 관련약정을 제26차 SCM에 상정하여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양국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7)</sup> MCM 개최현황과 주요 내용은 부록 '3'에 정리되어 있다.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PMC)** 상설회의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긴급상황에 적시적인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한미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양국의 대표이다.

PMC에서는 양국 지휘계통으로 결정된 시안에 대해 논의하며 합의각서 형태로 기록을 남긴다. PMC 합의각서에는 한미 군사문제에 관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78년 제1차 한미군사위원회 PMC 합의각서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제11차 SCM에서 부여된 권한위임 사항을 명시하였다.<sup>8)</sup> 또한 한미는 PMC를 통하여 한미 국가통수기구 및 군사지휘기구의 승인(1980.3.11, 제2차 상설회의), 한미 제1군단사령부를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 Combined Field Army)로 개칭(1980.3.10.), 한미연합군사령부 장성 보직 변경, CFA 해체 및 CFA 관련 모든 협정 폐기(1992.5.19, 제9차 상설회의), 연합해병대사령부(CMFC: Combined Marine Forces Command) 창설(1992.10.2, 제10차 상설회의),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지상구성군사령관 임무 수행, 미군 육군 중장인 한미연합군사령부 참모장이 지상구성군부사령관 임무수행 관련 사항 등을 합의(1992.12.1.)하였다.<sup>9)</sup>

7) 국방부, 『국방부사』 제4집(서울: 국방부, 1997), pp.74-75.

8) 「제1차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합의각서」(1978.10.23., 발효일: 1978.10.23.).

9) 「제2차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합의각서」(1980.3.11. 서명, 1980.3.11. 발효); 합동참모본부, 『합참사』(서울: 합동참모본부, 1994), p.99; 「제9차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합의각서」(1992.5.19. 서명, 1992.5.19. 발효); 「제10차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합의각서」(1992.10.2. 서명, 1992.12.1. 발효); 「제10차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각서 제2호」 별지(1992.12.1.).

#### 다. 주요 실무·차관급 협의체: FOTA, SPI, KIDD, EDSCG, NCG

2001년 이후 한미는 기존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 외에 주요 실무·차관급 협의체를 운용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다양한 동맹 현안이 제기되자 한미는 안보 현안과 미래발전 과제를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통합 국방협의체(KIDD)」 등 실무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주한미군과 국군의 임무 및 역할을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라 상호합의하에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 1)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페이스(Douglas J. Feith)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02년 11월 6일 이준 국방부 장관을 예방했을 때, “보다 강력해진 한국의 지위에 걸맞은 성숙한 관계에 대해 진정한 협의를 기대한다. 한국의 증대된 자원과 능력을 감안하여 3~5년간 한미동맹에 대해 함께 검토를 희망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02년 12월 5일, 제34차 SCM에서 「미래한미 동맹정책구상(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공동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sup>10)</sup>

FOTA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관련약정에 의하며 협의 범위는 ① 지·전략적인 군사적 상황 변화, ② 미래 역할·임무·기능·구조 및 지휘 관계, ③ 한미 군의 현대화 및 연합군사변화, ④ 위협에 기초한 전력에서 능력에 기초한 전력으로의 전환, ⑤ 남북화해단계 이후 한미동맹의 당위성 등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2003년 제35차 SCM에서는 동맹관계 미래에 대한 조치계획을 건의하는 예비보고서를, 제36차 SCM에서는 완성된 보고서를 양국 장관에게 제출하고, 회의는 최소 분기별 1회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하였다.<sup>11)</sup>

FOTA 협의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한미 양국은 군의 임무가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행되었다. 주요 의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군사 임무 전환, 연합 군사능력 강화, 연합지휘체계 발전 관련 사안 등이었다. FOTA 협의는 국방부 주관으로 준비하되 외교통상부가 참여하고 NSC와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다. 미래한미

10)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2.12.5.).

11)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3.11.17.); 제3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4.10.22.).



동맹구상팀은 미국 측과 협상에 앞서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대미 협상 방향을 토의하고,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 간담회를 통해 대미 협상 방향에 대한 설명과 추가 사항 관련 토의를 했다. 미국 측과 협상 후에는 NSC 상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안건을 준비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FOTA 제1차 협의는 2003년 4월 8~9일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국방부 정책실장(차영구),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심윤조) 그리고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Richard P. Lawless), 미 국무부 전담대사(Christopher Lafleur)를 비롯한 양국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무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FOTA 협의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12회가 개최되었다. FOTA 협의 일정과 주요 내용은 부록 '3'에 정리되어 있다.

## 2)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개최되었던 FOTA는 용산기지를 비롯하여 미 제2사단 재배치와 같은 한미 간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이에 한미 양국은 FOTA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 발전시키고,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미동맹 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을 다룰 수 있는 유사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그 결과 2004년 10월 22일, 제36차 SCM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미동맹의 비전 공동연구(JVS: Joint Vision Study)'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한미는 한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도에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sup>12)</sup> 이에 따라 양국은 한미 국방·외교 당국 간 협의체인 SPI를 통해서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과 관련된 의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SPI 회의에서 한미는 한미동맹의 비전 연구, 포괄적 안보 상황평가, 한미 안보협력 증진 및 공조 방안, 주한미군 재배치 및 훈련여건 개선, 한미 지휘관계 연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북정책 공조, 연합작전계획 발전, 우주·사이버·대확산 협력, 지역·범세계 안보협력 등 다양한 동맹 현안과 미래발전 과제를 논의하였다. SPI 회의 시 양국의 대표단으로 한국 측은 국방부 정책실장이 수석대표 임무를 수행하고 청와대, 외교부, 합참 등에서 관련자가, 미국 측에서는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

<sup>12)</sup> 제3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4.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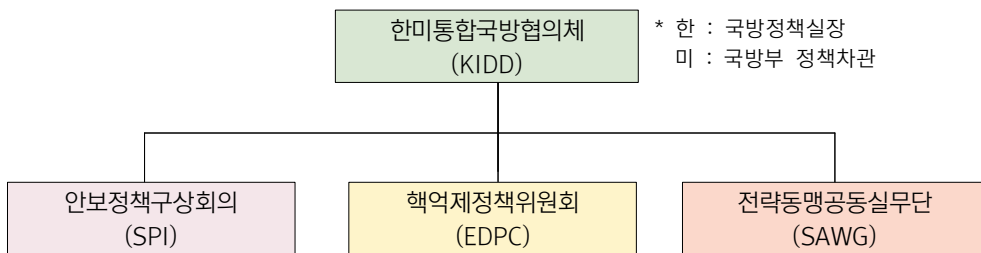
부, 합참, 주한미군사령부 관련자 등 한미 각각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SPI는 SCM으로부터 회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받았으며, 필요시 결과를 SCM에 보고하고 동맹 현안, 한미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 양측 관심 사안을 협의하였다.<sup>13)</sup> SPI는 2~3개월 주기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였으며, 2011년 9월까지 29차례 개최되었고<sup>14)</sup>, 2012년부터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의 하부 협의체로 통합되었다. SPI 개최현황 및 주요 내용은 부록 ‘3’에 정리되어 있다.

### 3)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Barak H. Obama)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하여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동맹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11년 제43차 SCM에서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들을 포괄하는 통합 협의체로서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sup>15)</sup> KIDD 회의는 동맹의 협력수준과 깊이가 한 차원 격상됨을 의미했다.<sup>16)</sup>

2012년 출범 당시 KIDD는 <그림 3-3>과 같이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전략동맹공동실무단(SAWG: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3> 최초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구성



\* 한 : 국방정책실장  
미 : 국방부 정책차관

\* 한 : 국방정책실장 - 미 : 국방부 차관보급

13)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강군』(서울: 국방부, 2013), pp.74-75.

14) SPI 개최현황과 주요 내용은 ‘부록 3’ 참조.

15)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1.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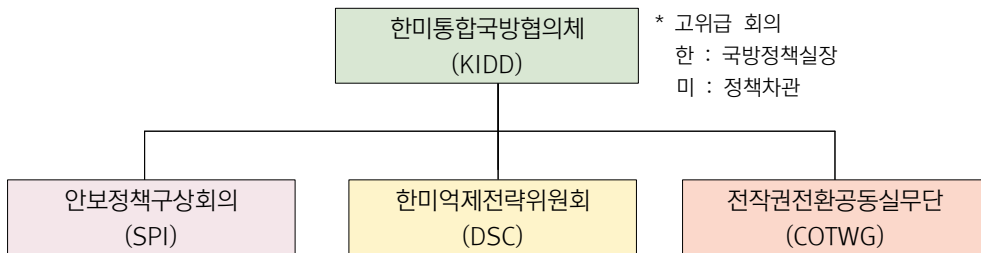
16) 국방부 보도자료,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및 성과”(2012.4.27.).

EDPC는 북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기구로는 나토(NATO) 이외 지역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SAWG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미 간 현안을 다룬 「전략동맹 2015」의 세부계획 작성 및 이행 점검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였다. SAWG는 「전략동맹 2015」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 핵심군사능력과 미국 보완 및 지속 능력, 한미 C4I 상호운용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4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sup>17)</sup>가 통합되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로 바뀌었다. DSC는 북핵·WMD는 물론 주요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억제·대응방안과 미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효성 보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6년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 개최된 DSC에서는 북핵·WMD 위협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다양한 억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6년 5월 제9차 KIDD 회의에서 2014년 4월 한미 양국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 노력을 이행하기 위해 SAWG를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KIDD의 구성은 고위급회의,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으로 개편되었다. 현재의 KIDD 구성은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개편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구성



17)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는 2012년부터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였는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전력 발전 소요를 도출하는 협의체이다.

한미는 2012년 4월 제1차 KIDD 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4월 제22차 KIDD 회의를 개최하였다. KIDD 회의 개최 시 한미는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였다. DSC는 북핵·WMD 위협 대비와 도발 억제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로서, 한미는 북핵·WMD 위협 공동평가,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등을 논의하였다.

2022년 11월 3일 한미는 제54차 SCM에서 DSC 예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 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한미 간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였다. 한미는 제1차 CMWG 회의를 2022년 11월 18일 한국 측 국방부에서 개최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 국방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한미는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W)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전환 이행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KIDD의 개최현황과 주요 내용은 부록 ‘3’에 정리되어 있다.

#### 4)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확장억제는 억제자가 동맹이나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의 적에 대해 억제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한미는 1978년 SCM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sup>19)</sup>이라고 명시하였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10.9.) 직후 개최된 제38차 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가 최초로 명시되었다.<sup>20)</sup> 이후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제41차 SCM에서는 확장억제 수단을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로 더욱 구체화하였다.<sup>21)</sup> 또한 2018년 제50차 SCM에서 확장억제 수단 중 ‘핵우산’을 ‘핵능력’으로 변

18)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서울: 박영사, 2019), pp.149-155.

19)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8.7.27.).

20)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6.10.20.).

21)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9.10.22.).

경하였다.<sup>22)</sup>

한미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2016년 10월 19일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장관회의와 같은 해 10월 20일 제48차 SCM에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회(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sup>23)</sup> 이어서 한미는 2017년 양국 외교·국방(2+2) 당국 간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sup>24)</sup>

EDSCG 회의는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기구로서 한미는 EDSCG를 통해 확장억제수단을 군사(M)에 한정하지 않고 외교(D)·정보(I)·경제(E) 영역까지 확대하여 북한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sup>25)</sup> EDSCG 회의는 2018년까지 두 차례의 고위급회의가 열렸으나 이후 중단되었다가 2022년 9월 제3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sup>26)</sup> 한미 간 EDSCG 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 내용은 부록 ‘3’에 정리되어 있다.

### 5) 한미핵협의그룹(NCG)

2023년 4월 한미는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치하여 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워싱턴선언」에 따라 창설되는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동맹 간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체계, 협의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다. 한미 간 북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북핵 위협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가동할 것이다. 또한 정례적으로 확장억제 수단 토의식 연습(TTX)과 핵 대응 도상연습(TTS)을 실시하고,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

22)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8.10.31.).

23)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6.10.20.); 국방부 보도자료,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 회의 개최 결과 공동보도문”(2016.12.21.).

24) 국방부·외교부 공동보도자료,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 방안 합의”(2017.9.5.).

25)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161.

26) 국방부 보도자료, “제3차 한미 고위급 EDSCG 공동성명”(2022.9.17.).

비할 수 있도록 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한미 NCG는 한미 국방 당국이 차관보급에서 주도하고,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한다. NCG 관련 내용은 부록 '3'에 정리되어 있다.

## 라. 전시군수지원체제

한미 간 군수지원은 기본적으로 자국군 지원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 태세 유지의 효율성·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연합군수지원체제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왔다. 이를 위해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A)」,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WRSA: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전쟁물자 이외의 미국 소유 '평시 운용 재고물자 및 전쟁비축물자(FOMOA: WRSA 후속 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of the ROK and the Government of the US)' 등을 마련하고 있다.<sup>27)</sup>

### 1)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A)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A)은 위기 또는 전쟁 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군의 수용과 이동 및 전쟁 지속을 위해 제공하는 군사 및 민간자원의 지원이다. 이는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미군 증원부대가 필요로 하는 군수지원사항을 사전에 규정해 돕으로써 증원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개와 배치를 촉진하고 유사시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WHNSA는 미국의 국방예산 축소와 함께 우방국들에 전쟁비용 분담을 요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걸프전쟁 시 사태 발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라크 군을 격파할 수 있는 전력을 파견하는 등 미군의 긴급배치 능력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한미 WHNSA는 조기경보 시간이 중동보다 훨씬 짧고 전장중심(戰場縱深)도 짧은 한반도에서의 분쟁 발생 시 이에 대비한 한미 양국 간 즉응 작전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한미 WHNSA는 1985년 제17차 SCM에서 미국의 제의로 처음으로 논의<sup>28)</sup>되었으며,

<sup>27)</sup>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2013), p.182.

<sup>28)</sup> 제1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85.5.8.).

1987년 제19차 SCM에서 양국이 양해각서에 서명<sup>29)</sup>했다. 이후 1991년 6월 최종안을 마련한 후 1991년 11월 제23차 SCM에서 협정을 체결했고<sup>30)</sup>, 1992년 11월 국회의 비준을 거쳐 같은 해 12월 23일부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 강령」을 체결하여 전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도착, 이동 및 전투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협정으로서, 미국은 유사시 증원군을 파견하고 한국은 미국의 군수부대가 전개 및 배치될 때까지 가용자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군을 지원한다. 그 비용은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분담하고, 평시에는 ‘한미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를 두어 전시에 대비한 준비와 연습을 한다.

WHNSA는 미 행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한국의 전시지원 의지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태 발생 시 미국의 증원군 파견을 위한 정치적·군사적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을 수반하는 분쟁 발발 시 미국은 한국과의 각종 조약 및 협약과 미국 내 여론 등에 의해 당연히 파병할 것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헌법상 절차와 실제 투입능력 등의 문제로 인해 그 같은 군사지원의 적시성과 규모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 협정에 따라 유사시 미국은 전투병력 위주의 증원군을 신속히 전개 배치하고, 한국은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분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전시에 대비한 긴급 물자의 사전비축 확대와 유사시 물자와 병력의 수송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sup>31)</sup>

## 2)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WRSA)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WRSA)’는 미국이 전시에 대비해 평시에 동맹국 내에 비축해 두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탄약, 유류, 장비와 기타 물자들이다. 비축된 전쟁예비물자는 기본 휴대물자와 함께 평시에 확보되어 전시에 즉각 보급될 수 있는 물자로서, 전쟁 초기 단계에서 국내 생산이나 조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적기에 지원할 수 없거나 해외로부터 획득이 곤란하여 제한이 예상되는 품목이 비축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WRSA는 1974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 군의 요구로 한국 내에 도입되어 30년 이상 전쟁

29) 제1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987.5.7.).

30) 제2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991.11.21.).

31) 「한미전시지원에 관한 협정(WHNSA)」(1991.11.21);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4), pp.60-61.

역제에 이바지해 왔다. 비축물자의 99% 이상은 탄약이며, 일부 장비와 수리 부속이 포함 되어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미국은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외에 배치한 재래식 탄약 유지예산 감소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미국은 WRSA 프로그램 종결 서한을 한국 국방부에 통보했고, 2005년 12월에는 WRSA 이양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발효되었다. WRSA 탄약은 한국군 전쟁비축탄약 보유량의 60% 규모였다. 더구나 전시 국내·외로부터의 탄약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많은 양의 탄약을 인수하지 않을 때는 군 탄약 지속능력이 심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었고,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재래식 탄약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미국은 재래식 탄약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한국은 독자적인 탄약 지속능력 유지를 위해서 WRSA 탄약확보가 필요했으므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탄약 양도(讓渡) 협상을 벌였다. 2007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 6차례 협상한 결과 2008년 10월 17일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각서에 서명했고, 11월 26일부로 발효되었다. 이 합의각서에 따라 WRSA 탄약 52.5만 톤 중 성능이 검증된 탄약 25.9만 톤(49%)은 한국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2009년부터 미국 본토로 반출하였다. WRSA 합의각서는 2010년 2월 4일부로 종료되었다.

한편, 긴급사태 시 WRSA 물자로는 유사시 필요한 물자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WRSA에 추가하여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물자의 한국판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 3월 7일 한미는 WRSA 후속 합의각서(FOMOA: Follow-on Memorandum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평시 비축해 두는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 외에도 유사시 추가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품목들의 목록인 ‘소요부속품 목록(CRDL: Critical Requirements Deficiency List)’을 작성·유지했다. 그러다가 CRDL 절차의 비실효성 및 비현실성을 이유로 2004년 5월 울포위츠(Paul D. Wolfowitz) 미 국방부 부장관이 종결통보 서신을 보내움으로써 2004년 12월 31일부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CRDL 절차만 종결되었을 뿐 WRSA 후속 합의각서는 여전히 미군 전용탄 등의 이양 근거로써 현재에도 유효하다.<sup>32)</sup>

32)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국방』(서울: 국방부, 2013), pp.86-94.



## 3)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한미 정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of the ROK and the Government of the US)」은 전·평시 연합연습 및 훈련, 작전 및 합동임무 기간 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소요 발생 시 한미 양국 간 상호군수 지원을 목적으로 1988년 6월 제20차 SCM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간에 체결한 협정이다.<sup>33)</sup>

이 협정을 체결할 때 양국 장관은 한미 연합군을 지원하는 군수지원체제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투능력 개선과 전쟁 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지속하여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과 「현행 탄약 현대화협정」의 연장 및 확대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태평양 국가가 되었다.

상호군수지원의 절차는 어느 일방의 요청 시 지원하고, 사후에 동종의 물자 및 용역 또는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보급품 및 용역 등을 포함한다.<sup>34)</sup>

MLSA는 전문과 총 6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1년, 2004년 각각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MLSA 개정안에는 한미 양국 군대 간의 상호 군수지원품목 및 용역 등 약정의 협상권자 변경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한국군의 해외파병 시 미국이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군의 안정적인 군사 활동 보장은 물론 미군 측으로부터 군수 지원·보급품 및 용역을 우선 지원받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게 되었다. MLSA의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에서는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군수 협력의 강화를 통한 양국 군사력의 합리화, 상호운용성, 준비태세 및 효율성 증진을 희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조 적용 범위에는 쌍방 간의 군수지원·보급품 및 용역의 상호 공급에 대한 지역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정의에는 협정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기본조건에는 상대국의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 요청 충족을 위한 노력과 시행 약정, 지급방식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에는 가격 산정 시 제외되는 부과로 조세감면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제5조에는 해석 및 개정, 제6조에는 발표일 및 종료일이 규정되어 있다.<sup>35)</sup>

33) 제2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988.6.9.).

3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1988.6.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2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3), pp.236-248.

3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2집, pp.236-240.

## 2. 한미연합방위체제 형성과 발전

### 가. 한미연합방위체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 평화의 기본 축으로 지역 안정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적 수단인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도발할 경우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의 긴밀한 협조하에 자국의 계획에 따라 꾸준히 조정되어 왔다. 양국의 중복노력을 지양하기 위하여 미국은 평시에 초전 대응 필수전력의 점차적인 보강과 유사시를 대비하여 해·공군 전력 중심의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전력을 현대화하고 증원전력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한국은 한미연합전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한 취약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력을 보완해 왔다.

한미연합군사령부(CFC)는 연합방위체제의 중추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연합방위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체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평화수호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세계 최초의 사단급 연합부대인 한미연합사단 창설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 한미연합사 창설 이전

#### 1) 한미 제1군단(집단) 「I Corps (ROK/US) Group」

**창설 배경 및 경과** 1960년대 말 미국은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이른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시아 국가의 방위문제는 자국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점차 철수하였고, 한국에서는 미 제7사단이 1971년 3월 27일 미 제8군사령부 본부에서 고별식을 갖고 철수하였다.<sup>36)</sup>

미 제7사단의 철수로 미 제2사단이 동두천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의 임무를 인수하고, 1971년 3월 10일 국군 제1사단이 미 제2사단 작전지역(20마일)을 인수하였다.<sup>37)</sup>

36)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발자취』(의정부: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1979), pp.5-6.

37)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687.

한국에서 미 제2사단과 제7사단을 지휘하고 있던 미 제1군단은 제7사단이 철수함에 따라 해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던 미 제1군단의 존속과 한국 주둔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의 입장 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미 양국은 미 제2사단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한국군과의 연합작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휴전선 서부지역에 배치된 미 제1군단을 한미 혼성군단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사진 3-1〉 한미 제1군단  
(집단) 부대 마크

1970년 7월 11일부터 시작된 한미 군사실무회담 7개월 만인 1971년 2월 6일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 및 감군 보완책인 한국군 현대화계획 등에 완전히 합의했다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sup>38)</sup> 이로써 미 제1군단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군단사령부 편성 요원의 조정과 군단운영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한국 정부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육일명 제43호」(1971.6.29.)에 의해 1971년 7월 1일 사상 최초로 한미연합군단인 한미 제1군단(집단)을 창설하였다.<sup>39)</sup>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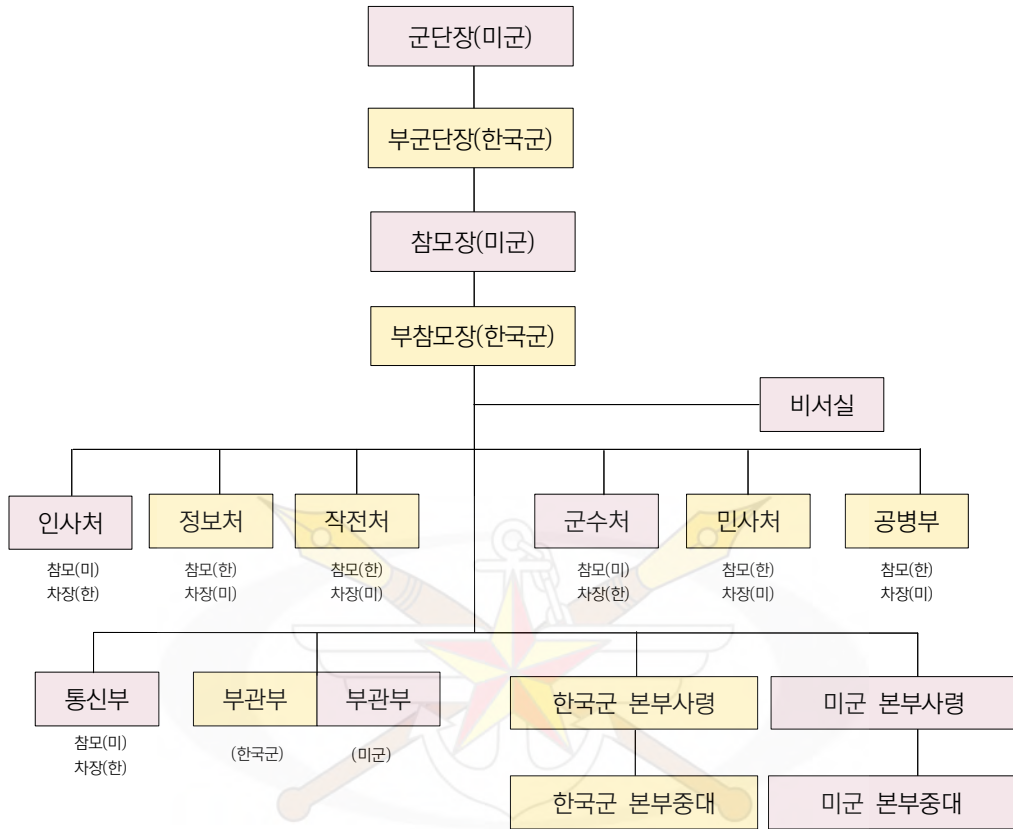
우니(Edward E. Rowny) 미 제1군단장이 초대 한미 제1군단장에 취임하였으며, 부군단장에는 이재전 소장이 임명되었다.

**임무 및 편성** 한미 제1군단(집단)의 임무는 중전의 미 제1군단이 담당하는 책임 지역을 그대로 인수하여 한국의 서부지역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한미 제1군단(집단)은 한미 간 절반씩으로 혼합 편성되었다. 일반참모 중 정보·작전·민사참모는 한국군으로, 인사·군수참모는 미군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참모부는 60% 정도가 한국군 장교와 병사로 편성되었고, 전체 편성은 미 제1군단의 2/3규모로 구성되었다. 군단사령부 및 예하 부대편성은 다음 〈그림 3-5〉와 같다.

38)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사』, pp.365-366.

39) 한미 제1군단(집단)은 주한미군 제2사단, 한국군 제1군단, 제6군단, 제25사단, 제2해병여단, 태국군 1개 중대(1972.6.23. 한국 철수) 등을 통제하는 자유 진영 최대의 육군군단이 되었다.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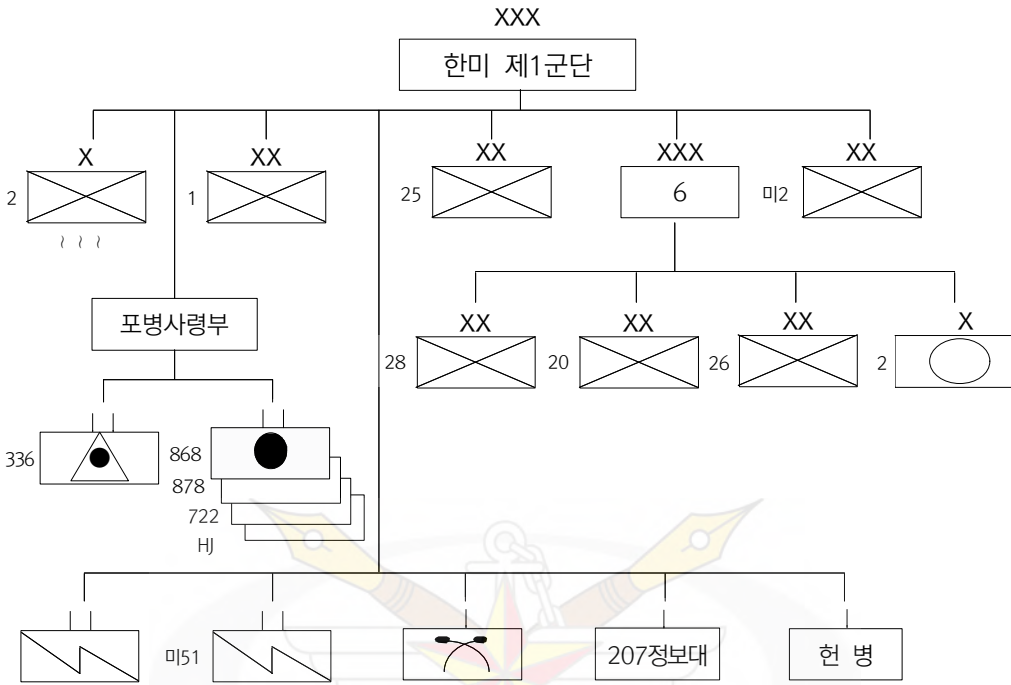
〈그림 3-5〉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편성(1971.7.1.)



※ 출처: 육군본부, 『육군조직발전사』(논산: 육군본부, 1997), p.177.

**지휘관계** 한미 제1군단(집단)은 미 제8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 한미 제1군단(집단)은 미 제2사단을 지휘하고, 한국군 제6군단(제20·26·28사단, 제2기갑여단), 제1·25사단, 제2해병여단을 작전통제하였다. 1973년 3월 1일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5호」(1973.2.7.)에 의해 한국군 제1군단사령부가 경기도 가평에서 벽제로 이동했고 3월 27일부로 제1군단과 예하의 제1·9·25사단을 한미 제1군단(집단)이 작전통제하였다. 이어서 1973년 7월 1일부로 제5군단을 추가로 작전통제하게 됨으로써, 한미 제1군단(집단)은 3개 군단(제1·5·6군단)과 13개 한미군 사단을 작전통제하는 야전군사령부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 개의 군단을 작전통제하였기 때문에 명칭도 한미 제1군단은 ‘집단(Group)’으로 불렸다. 한미 제1군단(집단) 창설 시 작전통제부대 현황은 다음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한미 제1군단(집단) 작전통제부대(1971.7.1.)



※ 출처: 국방부, 『국방사』 제4집, p.690.

1973년 7월 제3군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중서부 전선에 대한 방어책임이 조정되고, 예하 군단에 대한 작전통제는 재설정되었다. 즉, 제3군사령부가 평소 3개 군단을 지휘하되, 전시 작전통제는 한미 제1군단(집단)이 실시하도록 했다. 한미 제1군단(집단)은 미 제8군의 지휘를, 제3군사령부는 육군본부의 지휘를 각각 받으면서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제3군사령부는 예하 군단에 대한 교육훈련과 인사·행정·군수지원 책임을 맡게 되었고, 한미 제1군단(집단)은 전시 작전계획 수립, 지휘소훈련·기동훈련·통신훈련 등의 계획과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75년 8월 1일 수도군단이 창설되자 한미 제1군단(집단)은 다른 군단과 같은 개념으로 수도군단을 작전통제하였다.<sup>40)</sup>

부대 창설시 한미 제1군단(집단)의 명시된 임무는 서울 방어를 포함하여 적 공격을 저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연합참모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었다. 예하 부대로 한국군 1개 군단, 2개 독립사단, 미 1개 사단, 그리고 한국군 해병 1개 여단

40) 국방부, 『국방사』 제4집, pp.687-691.

을 두었다. 그리고 한미 제1포병여단 예하에 5개 포병대대와 한국군 공병단의 전투 지원을 받았다.<sup>41)</sup>

한미 제1군단(집단)의 운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자주국방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미 제1군단(집단)의 창설로 한반도 작전 운용에 한국군이 부분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둘째, 유엔군 주도의 한반도 방어체제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제1군단(집단)이 창설됨으로써 한미 간의 협조체제가 극대화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유엔사 주도의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상호의존적인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sup>42)</sup> 셋째, 주한 미 제2사단의 후방지역 이동으로 인해 인계철선 기능의 약화 우려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한미 제1군단(집단)이 서부 축선 전제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작전적 수준의 인계철선 역할을 지속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2)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



〈사진 3-2〉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 부대 마크

한미 제1군단(집단)은 중·서부 지역에 있는 국군 수도·1·5·6군단을 작전통제하였다. 한미 제1군단(집단)이 실질적으로 군사령부 기능을 하게 되자 한미 양국은 이 군단을 명실상부한 야전군사령부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에 의거 1980년 3월 14일부로 한미 제1군단(집단)을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한미야전사)로 승격·개칭하였다.<sup>43)</sup> 초대 사령관으로 포레스터(Eugene P. Forrester) 미 육군 중장이 임명되었고, 부사령관에는 김광돈 육군 소장이

임명되었다. 한미야전사의 임무는 한국의 서부지역을 방어하는 것이었고, 편성도 한미 제1군단(집단)과 유사하였다. 지휘체계 역시 변동이 없었다. 한미야전사의 지휘체계는 〈그림 3-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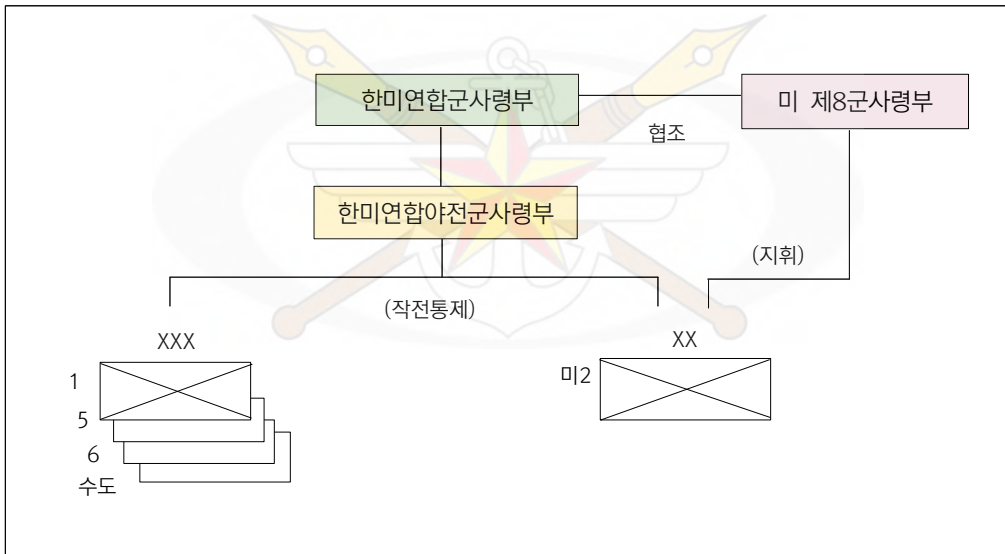
41) HQ I Corps(ROK/US) Group, "Annual History Supplement," Mar 20, 1973.

42)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의 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유엔군사령부(UNC)에서 주도하였다. 국군이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은 15년의 시간이 경과한 1968년 국방각료회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43) 육군본부, 『제30야전군사령부 변천사(창설~2018)』(계룡: 육군본부, 2019), p.325.

한미야전사는 1983년 6월 1일부로 수도·제1군단의 작전통제권을 제3군사령부에 이양하고, 기타지역에 대한 임무는 계속 수행했다.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T)」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0년 11월 제12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1992년 말까지 한미야전사(CFA)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5월 28일까지 ‘한미합동기획연구단’의 연구와 토의를 거쳐 1992년 7월 1일부로 한미야전사가 해체되었다. 한미야전사의 임무와 지휘권은 MCM 합의각서에 따라 한국군 제3군사령부로 이양되었다.<sup>44)</sup> 제3군사령부는 CFA로부터 지휘권을 인수한 이후 1992년 을지포커스렌즈(UFL: Ulchi Focus Lens) 연습을 통하여 지휘통제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서부지역에 대한 작전 수행은 제3군사령부가 책임지게 되어 한국방위의 자주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sup>45)</sup>

〈그림 3-7〉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의 지휘체계



※ 출처: 육군본부, 『제30야전군사령부 변천사(창설~2018)』, p.325.

44) 국방부, 『국방부사』 제4집(서울: 국방부, 1997), pp.80-81; 육군본부, 『육군사』 제24집(서울: 육군본부, 1983), pp.767-770.

45) 육군본부, 『제30야전군사령부 변천사(창설~2018)』, p.327.

## 다.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창설

### 1) 창설 배경과 경과

**창설 배경** 한미연합군사령부(약칭, 한미연합사)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처하고, 주한미지상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며,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1978년에 창설되었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군사적인 요소가 작용하였다.

첫째, 한국의 방위역량이 향상되면서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령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국력이 괄목할 만큼 신장하였고, 대부분의 방위비를 자체 부담하게 되면서 이에 상응한 권리를 요구했다. 미국



기본 방패모양	한국 방위 상징
중앙 태극	대한민국 상징
상부 13개 별	미국 상징(독립 당시 최초 13개 주)
하부 월계수 결속	한미 유대강화 및 평화 상징
하부 리본 모형	방위 임무의 명예 상징
색상(청, 홍, 백)	양국 국기의 기본 색상
바탕색(하늘색)	영원한 평화 상징

도 한미관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8년 10월 15일 주한 미 제8군사령부 내에 ‘한미연합기획참

〈사진 3-3〉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 마크

모단’이 구성되었다. 1969년 「닉슨독트린」에 의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계획에 따라 1971년 3월 27일 주한 미 제7사단이 철수하면서 생기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71년 7월 1일 한미 양군으로 균형 편성된 ‘한미 제1군단’이 창설되었다. 한미 양국은 한 제1군단 사령부 운영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연합군사령부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 ‘8·18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을 겪으면서 미군으로만 편성된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절감했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sup>46)</sup>

둘째, 유엔군사령부의 탈(脫) 유엔화이다. 1972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회원국 중 마지막 남은 태국군이 철수함으로써 유엔군에는 미군만 남게 되었다. 또한 6·25전쟁 시 유엔의 적대국이었던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됨으로써 더는 유엔군이라는 명분이 어려웠다. 그리고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 공산 측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했고,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존속과 관련한 상반된 2개의 결의안<sup>47)</sup>

46) 류병현,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 2007), pp.63-73; 류병현, 『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 류병현 회고록』(서울: 조갑제닷컴, 2013), pp.193-213.

47)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한 공산 진영 측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체제 이전까



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군의 계속 주둔과 정전협정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선임 미군 장성 지휘하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이 관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셋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이다. 이는 한미연합사 창설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결정 후 1977년 5월부터 한국과 감축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의 '선(先) 보완, 후(後) 철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감축 일정에 융통성을 기하고, 감축에 선행 또는 병행하여 보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런 보완조치 중에 한미 간 합의사항으로 한국방위의 효율화를 위한 한미연합사 창설이 포함되었다.<sup>48)</sup>

**창설 경과** 1974년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공산 측의 고질적 요구사항인 유엔사 해체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對)유엔 전략의 일환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대안으로 미국은 1974년 4월 28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 선임장교에게 이양하고 유엔사(UNC)를 대체하는 연합사령부(CC: Combined Command)를 창설할 것을 한국에 제의했다.

미국 측의 제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74년 5월 1일, 연합사령부 상부기구로 군사위원회(MC)를 설치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을 한미 양국군 부대 목록을 양국의 합의로 결정하며, 1954년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을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1975년 5월 28일 미국 정부는 연합사령부 구성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상당 수준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 연합사령관에 미군 대장을 임명한다. 둘째, 유엔사의 작전통제하에 있는 한국군은 연합사령관이 계속 작전통제한다. 셋째,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적의 무력공격 시 전투부대를 제공한다. 넷째, 한국 정부가 제의한 군사위원회는 일부 변경할 것을 고려한다.

1975년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한국 측 입장을 외무부장관 서신으로 주한미국대사에게 발송하였다. 첫째, 지극히 애매한 '상당 수준의 미군' 대신 '현 수준 또는 양국이 합의한 수준'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 연합사령관에 미군 대장을 임명한다. 둘째, 한미 양군을 작전통제하는 것이 연합지휘체제의 기본개념에 합치되므로 부대 목록은 양국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셋째, 군사위원회의 구성·형태·기능은 쌍방의 합의로 한다.

한편 1976년 5월 14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 연합지휘체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한국

지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명시한 서방측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593-594.

측 안을 제9차 SCM 시 미국에 제의하도록 지시했다. 첫째, 소수의 주한미군을 가진 미군 장성이 한국군을 일방적으로 작전통제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계획작성 및 작전통제권 행사 과정에 한국군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과거 베트남은 분리된 각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주베트남 미군의 철수가 쉬웠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산화의 촉진을 초래했다. 한미 연합지휘체제를 유지할 경우 양국이 연합사령부 해체를 합의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결정 후 최소한 1년간의 소요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확보될 것이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기본 지침에 따라 한국은 1976년 5월 26일 제9차 SCM에서 연합지휘체제에 대한 한국 측 안을 제시했다. 그 뒤 한미 양국 정부는 외무부와 미 대사관을 통해 현 수준 또는 상당 수준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 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으로 하며, 군사위원회(MC)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형<sup>49)</sup>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스틸웰(Richard G. Stilwell) 대장과 후임인 베시(John W. Vessey, Jr.) 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에 입각한 한국의 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군 합참의장이었던 류병현(한미연합군사령부 초대 부사령관) 장군은 스틸웰 사령관에게 유엔군사령부나 미 제8군사령부에 한국군 참모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NATO와 유사한 연합작전 통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스틸웰 사령관도 이에 동의하였다.<sup>50)</sup>

한미 양국은 1977년 7월 26일 열린 제10차 S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한미 고위장교로 구성된 창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약 1년 동안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작성하였다. 1978년 4월 19일 국방부는 국방부훈령 제27호를 통해 ‘연합사 창설에 따른 업무 및 지휘 관계’를 규정하였다. 동년 7월 27일 열린 제11차 SCM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기능·조직에 대한 「관련약정(TOR: Terms of Reference)」<sup>51)</sup>을 승인했다. 이튿날인 7월 28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와 지휘 관계를 규정한 「전략지시 제1호」를 하달하였다.<sup>52)</sup>

49) 나토(NATO)의 군사위원회(MC)는 정치정책조직의 지침, 지시를 나토사령부나 예하 부대에 하달하는 중간기구 기능을 갖고 있으며, 계통상 군사조직 최상위에 있으나 나토사령부나 예하 부대에 대한 직접 지휘권은 없다.

50) 류병현, 『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 류병현 장군』, pp.222-226.

51) 관련약정(TOR)은 군사위원회(MC) 및 한미연합군사령부(CFC)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MCM과 CFC의 임무, 기능, 편성 등을 포함하면서 UNC와 CFC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UNC는 정전협정의 준수만을 담당하고 필요시 연합사령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위임받아 한국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UNC는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남고, UNC의 모든 기능과 권한은 CFC로 전환되었다.

52) 한미연합군사령부, 『연합업무수행을 위한 미국과 미군에 대한 이해』(서울: 한미연합군사령부, 2006),

〈표 3-2〉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 및 전략지시 제1호(요약)

구분	관련약정(TOR)	전략지시 제1호
체결 일시	1978.7.27.(제11차 SCM) * MCM에 전략지침 및 지시 하달	1978.7.28.(제1차 MCM) * CFC에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 하달
대표	한국 : 노재현 국방장관 미국 : 브라운 국방장관	한국 : 김종환 합참의장 미국 : 존스 합참의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CM의 임무·기능·편성</li> <li>• 연합사의 임무·기능·편성 및 사령관과 부사령관 기능</li> <li>• 유엔사와 연합사의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군사령관 임무</li> <li>• 전평시 연합사와 예하 구성군 간 지휘 관계</li> <li>• 전평시 현합사 작전통제부대 목록</li> </ul>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 p.393.

1978년 10월 17일 한국 측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국대사 사이에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가 교환되었고, 이어서 한미군사위원회는 10월 23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명령을 하달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과 「전략지시 제1호」는 〈표 3-2〉와 같다. 이에 따라 1978년 11월 7일 서울 용산 유엔군사령부 연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한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한미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식이 거행되었다.

## 2) 임무·편성 및 지휘체계

**임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는 양국의 통합된 군사 노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분쇄하는 데 있다.

**기능**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기능은 한국 합참과 긴밀한 협조하에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위기관리를 하면서, 북한 군사력의 지속 관찰 및 평가,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의 유지 및 향상, 연합작전계획과 증원부대 전개계획 및 전시 군수계획 등의 전시대비계획 발전, 연합 및 합동연습을 통해 한미 양국이 제공하는 한미 연합전력 운용을 향상시켜 한국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주한미군 선임 장교로서 미국 합참의장을 대신하여 MCM의 미국 대표로 한국 합참의장의 파트너가 되어 한미 군사문제를 협의하고, 필요시 이를 합의각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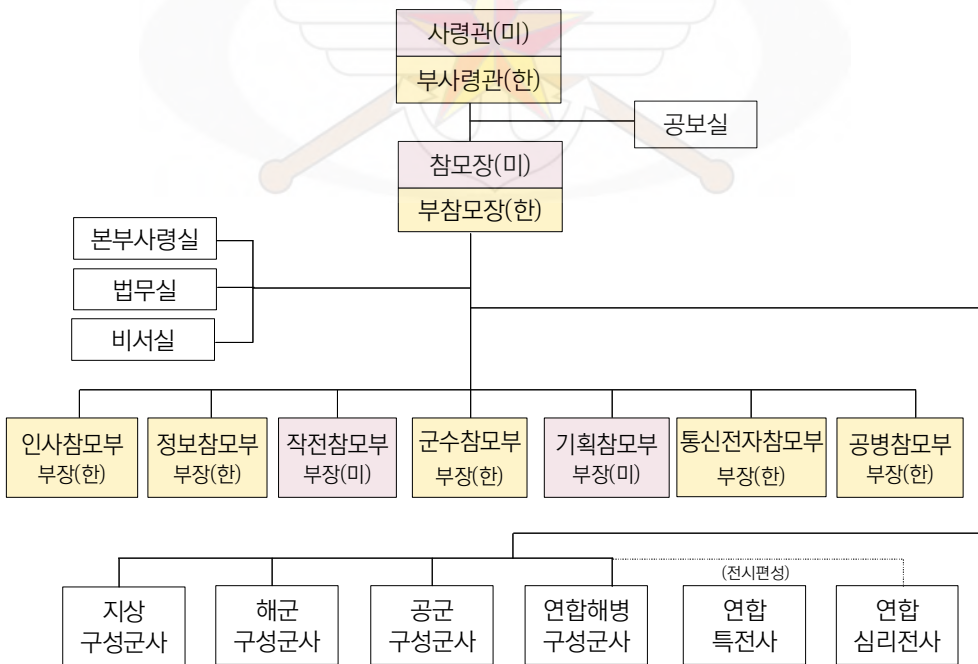
pp.271-273;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pp.50-71;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서울: 국방부, 1991), p.195.

교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편성**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서, 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유엔군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부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있으며, 참모 조직도 한미 간 균등한 배분 원칙에 따라 편성되어 있다. 즉, 어떤 참모부의 부장이 한국군 장성이면 차장은 미군 장성이고, 반대로 부장이 미군 장성이면 차장은 한국군 장성으로 편성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미연합사 예하에는 지상·해상·공군구성군사령부 등이 구성되며 이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기구도는 <그림 3-8>과 같다.

각 구성군사령부는 1957년 7월 1일, 유엔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하면서 주한 미 육·해·공군구성군사령부를 설치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주한미군 각 구성군사령부 창설은 「주한미군사령부 일반명령 제19호」(1957.10.9.)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명령에 따르면, “1957년 7월 1일부로 소급하여 미 8군사령관을 주한미군의 지상구성군사령관에, 주한해군사령관을 주한미군의 해군구성군사령관에, 그리고 미 제314 비행사단장을 주한미군의 공군구성군사령관에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sup>53)</sup>

<그림 3-8> 한미연합군사령부 기구도



※ 출처: 한미연합군사령부 제공자료(2022.12.).

53)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일반명령 제19호」(1957.10.9.).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 창설 시 예하 각 구성군사령부는 제11차 SCM 및 제1차 MCM의 결정에 따라 「연합사 창설 명령 제1·2·3호」에 의해 연합사 창설과 동시에 창설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미군 장성으로 2023년 현재 32대째를 맞이하고 있다. 초대 한미연합군사령관에는 제16대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미 육군 대장 존 베시 2세가 취임했고, 부사령관에는 한국군 육군 대장 류병현이 임명되었다. 2023년 6월 31일 현재 연합군사령관은 2021년 7월 부임한 미 육군 대장 라카메라(Paul J. LaCamera)이다.<sup>54)</sup> 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면서 통상 2~4년간 근무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초대 류병현 육군 대장에서부터 2022년 5월 부임한 안병석 육군 대장에 이르기까지 30대에 이르고 있으며, 1992년 김동진 부사령관 이후부터는 종전에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겸직하던 지상구성군사령부(GCC)의 사령관직을 겸직하고 있다.

미 제8군사령관은 1950년 8월 13일 한국에 사령부를 개설한 이후, 6·25전쟁기와 전후 약 4년간은 미 제8군사령관의 직함만을 갖고 있었다. 1957년 7월 1일 일본 도쿄에 있던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사령부가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제7대 미 제8군사령관인 텍커(George H. Decker) 미 육군 대장으로부터 제21대 리스카시(Robert W. RisCassi) 육군 대장까지는 미 제8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했다. 그러다 1992년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가 해체되면서 편제가 변경되어, 크라우치(William W. Crouch) 육군 중장부터는 미 제8군사령관이 연합사 참모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은 한국군 육군 장성으로 보임되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부터 2023년 현재까지 33대째를 맞이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은 한미연합작전 및 기획에 정통한 장군들이 보임되어 한미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1991년 3월 25일부터 미군 장성이 맡아왔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인 한국군 장성(당시는 황원탁 육군 소장)이 맡게 되면서 한국군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sup>55)</sup>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주요 직위자는 부록 ‘4’에 정리되어 있다.

**지휘체계** 앞에서 살펴본 「관련약정(TOR)」과 「전략지시 제1호」에 따라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6·25전쟁 이후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오던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유지 임무만 수행하고 그 밖의 모든 기능과 권한은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양되었다.

54) 남정옥, 『대한민국과 함께 한 국군과 주한미군 70년』(서울: 청미디어, 2021), p.231.

55)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8집(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pp.101-102.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종전에는 미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 → 미합참의장 → 유엔군사령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연합사 창설 이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한미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의 전략지침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결정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지시를 직속 상부 기관인 한미군사위원회(MC)를 통해 하달받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 시기부터 미국은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를 국가통수(NA)로 부르고 있다.<sup>56)</sup>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상호지원 및 협조 관계이나, 정전업무에 관해서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 즉, 침투, 습격 혹은 각종 공격행위 등 북한의 도발은 일차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서 이는 곧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이를 즉각 저지할 대응수단(전투력)이 제한된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장관의 군령 보좌 기능을 수행하면서 MC를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와 임무를 부여한다.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평시(정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1994년 10월 6일 제16차 MCM에서 「전략지시 제2호」를 하달하고, 이튿날인 10월 7일 제26차 S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을 체결함으로써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정전 시에도 전쟁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억제 실패 시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받기 위해, 평시에도 한국 합참의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에 대해서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계속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연합방위체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했다.<sup>57)</sup> 위의 「관련약정(TOR)」 및 「전략지시 제2호」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 관계를 요약하면 <표 3-3>, <그림 3-9>와 같다.

56) 당시 미국은 NCMA로 칭하였으나, 럽스펠드 국방장관 때부터 군 통수권(대통령)을 지칭하는 NA(National Authority)로 칭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통합사령관을 ‘CINC(Commander in Chief)’라고 칭했으나, 이때부터 대통령만을 ‘CINC’로 칭하고 통합사령관은 ‘Commander’로 칭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166.

57) 연합권한위임사항뿐만 아니라 DEF-III, 또는 DEF-III 이전이라도 필요시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합권한 위임 6개 분야는 전쟁 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정보관리, C4 상호 운용성이다.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p.51.

〈표 3-3〉 1994년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 및 전략지시 제2호

구분	관련약정(TOR)	전략지시 제2호
체결 일시	1994.10.7.(제26차 SCM)	1994.10.6.(제16차 MCM)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이병태 국방장관</li> <li>• 미국 : 페리 국방장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이양호 합참의장</li> <li>• 미국 : 샬리캐시빌리 합참의장</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권한위임사항 내용 추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사령관 : 정전 시 연합권한 위임사항 행사</li> </ul> </li> <li>• 연합군사령부 지휘 관계 재정립 (정전 시, 전시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군 작전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 시 : 한국 합참의장</li> <li>- 전 시 : 한미연합사령관</li> </ul> </li> <li>•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FCON-III 시</li> <li>- DEFCON-III 이전에도 요청 및 승인하 작전통제 전환 가능</li> </ul> </li> </ul>

※ 출처: 국방부 제공자료(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

〈그림 3-9〉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체계



※ 출처: 한미연합군사령부 제공자료(2022.12.).

### 3) 창설 의의와 성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은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제도적으로 공고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종래의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됨으로써 6·25전쟁 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당시에는 ‘작전지휘권’으로 명시)이 부분적으로나마 한국군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의 의의와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연합사 창설은 주한미군 부분 철수에 따른 군사적 공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한미 연합작전 수행 보장과 아울러 한미 간에 보다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평시 미국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 및 정찰(C4ISR) 지원과 유사시 미국 육·해·공군의 직접적인 지원 및 전쟁지속에 필요한 군수물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구축했다.

둘째, 한미연합사의 창설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대한(對韓)방위공약을 구체화하고 상징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前文)에 명시된 “당사국 국 중 어느 일국(一國)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한다.”라는 내용은 한미연합사의 창설 목적과 부합하고 있다.

셋째, 부분적이거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이다. 6·25전쟁 당시 한국 정부는 효율적이고 통합된 작전을 위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후 한국군은 미 합동참모본부의 전략지시에 따라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창설은 군사위원회의 공동 당사자로서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준비태세 유지, 작전계획 작성, 지휘 결심 과정 등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곧 한미연합작전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지휘체제가 수평적 관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한미 양군이 한미연합사라는 공동사령부를 구성함으로써, 기획·계획 능력과 참모협조 기능을 증진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C4ISR 등 고도의 과학장비 운용과 체계적인 조직관리기법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국군의 정보분석, 지휘체계 발전, 작전 수행능력 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곧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역할 변경 시 국군이 작전통제권을 인수할 수 있는 체제와 기반을 갖추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다.

## 라. 한미연합사단

한미연합사단은 세계 최초의 사단급 연합부대로 한미 양국의 여단급 병력이 단일지휘체제를 공유하며 하나의 사단으로 편제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시부터 연합참모부를 구성하여 함께 근무하면서 한미상호 간에 이해도를 높이며 전술제대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은 하나의 팀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단 창설은 2012년 2월 김상기 육군참모총장과 에드워드 카돈(Edward Cardon) 미 제2사단장이 연합사단 편성을 논의한 후 2014년 2월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에 연합사단 편성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 7월 11일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연합사단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전시가 아닌 정전 시 두 개의 다른 국가 군대 간 군사적 지휘관계를 체결하기 어렵다는 국방부의 법무검토에 따라 육군본부는 연합사단협조단을 제3야전군사령부 직할부대로 창설하였다. 이후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연합사단협조단의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 Capability) 달성평가를 거쳐 한미연합사단을 2015년 6월 3일 창설하였다.

한미연합사단은 미 육군 창설 이래 반세기 이상 해외에서 주둔한 유일한 전투부대인 미 제2사단을 모체로 하여 창설되었다. 2023년 창설 8주년이 된 한미연합사단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한미연합사단은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편성된 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용되는데 미육군 소장인 연합사단장이 한국 육군 준장인 연합사단협조단장을 통해 한 측 참모부를 지휘한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상시에는 연합연습, 교리발전을 통해 전시 임무 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에는 작전계획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시부터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up>58)</sup>

연합사단의 주축이 되는 미 제2사단의 전력은 1개의 순환배치여단과 제2전투항공여단, 제210포병여단 및 사단지속지원여단 등으로 구성된다. 미 제2사단에는 국군 사단 편제에

<sup>58)</sup>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108.

는 없는 아파치 공격헬기와 수송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투항공여단이 편성되어 있다. 전시에 작전통제 되는 국군 1개 여단은 미 제2사단 전력의 일부로 임무를 수행한다. 미 제2사단 예하 3개 여단 중 2개 여단은 평시에 미국 본토(Fort Lewis, Washington)에 주둔하다가 전시에 한국으로 증원되어 운용된다. 즉, 미 제2사단의 3개 여단전투단(BCT: Brigade Combat Team)이 9개월 단위로 1개씩 순환하면서 한국에 주둔한다. 순환배치되는 여단전투단은 기갑여단전투단(ABCT: Armored BCT) 또는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 Stryker BCT)이 전개된다. 주요 장비는 한국에 있고 인원만 순환하는 형식이다. 1개의 스트라이커전투여단은 스트라이커 대대 3개, 기병대대 1개, 포병대대 1개, 공병대대 1개, 지원대대 1개로 구성된다.



〈사진 3-4〉 한미연합사단  
부대 마크

성공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사단은 전입 장병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락드릴(ROCK-DRILL·작전개념 예행연습), 예하 부대 현장방문, 화생방 훈련 등의 전입 간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처음 전입해 온 미군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정보 등도 제공한다. 상호운용성 향상과 작전 수행능력 증진, 인적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연합사단 내 한국 측 장병 외에 다른 부대와 제대별 연합전술토의, 주로 대대급 이하 부대와의 연합훈련, 부대 방문 등의 교류 활동도 시행하고 있다.<sup>59)</sup>

한미연합사단 편성은 우리 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연합사단에 참가하는 한 측은 평시부터 미 제2사단과 같은 배틀 리듬(Battle Rhythm)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군에게도 제공되지 않았던 미 평문 정보통신망(NIPRNET: Non-classified Information Protocol Router)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활용하면서 작전계획 및 예규발전, 연합정보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sup>60)</sup> 한미연합사단에 우리 군의 우수한 자원들이 각 기능별로 사무실에 1~2명씩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연합작전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안정과

59) 최한영, “한미동맹·연합방위태세 상징 ‘한반도 평화’ 향해 함께 전진,” 『국방일보』(2020.6.11.).

60) 맹수열, “전투력 두 배”... 한미 연합사단 공식 출범,” 『국방일보』(2015.6.4.).

평화보장이라는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를 실현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또한 북한이 중·러와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각각 체결하여 양국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원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러가 후원세력이 된다는 현실적인 점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제2절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

### 1.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변천 과정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sup>61)</sup>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발전시켜 왔다. 한미 양국은 연합작전계획을 기초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2008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2019년 ‘연합지휘소훈련’, 2022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으로 명칭 변경),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2008년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2019년 ‘동맹연습’, 2020년 ‘연합지휘소훈련’, 2023년 ‘자유의 방패 연습’으로 명칭 변경), ‘팀스피리트 연습’ 등을 실시해 왔다.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 현황은 <표 3-4>와 같다.

<표 3-4>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현황

연습·훈련명	형태	목적	주요 훈련 내용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1976~2007)	전구급 지휘소 연습 + 정부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연합방위체제하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li> <li>•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안정화, 전쟁지속능력 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위기관리 절차 연습</li> <li>• 전시전환절차 연습</li> <li>• 전시 작전계획 시행 연습</li> </ul>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2008~2018)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2019~2021)	전구급 지휘소 연습	* UFL, UFG, UFS시 정부연습 병행, 총무계획 시행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2022~현재)	전구급 지휘소 연습 + 정부연습		

61) 연습(演習, Exercise)은 작전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작전계획, 교리, 전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훈련(訓練, Training)은 개인이나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과 전투기술을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말한다. 합동참모본부, 『'22년 연합 및 합동 연습·훈련 편람』(서울: 합동참모본부, 2022), p.1.

제2절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

연습·훈련명	형태	목적	주요 훈련 내용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1995~2001)	전구급 지휘소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동원, 군수 지원 절차 등 숙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증원군 이동관리 및 부대 추적절차 연습</li> <li>전시지원(WHNS) 절차연습</li> <li>양륙공항·항만, 연합 선박통제</li> <li>한국 선박동원절차 연습</li> <li>전투력 복원 훈련</li> </ul>
RSOI/FE 연습(2002~2007)			
KR/FE 연습(2008~2018)			
동맹연습(2019)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CPT)(2020~2022) 자유의 방패(FS)연습(2023~)			
독수리(FE)연습(1961~2018)	야외기동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합 특수작전 및 후방지역작전 능력과 공·지·해 합동작전 능력 향상(2019년 이후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특사 작계시행훈련</li> <li>후방지역 작전 및 통합방위작전 연습</li> <li>군단급 FTX 및 연합·합동상륙훈련</li> </ul>
팁스피리트(TS) 연습(1976~1993)	야외기동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1994년 이후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구급 연합 및 합동훈련</li> <li>공중강습, 도하훈련</li> <li>사단급 기동훈련</li> <li>항모전개훈련, 항공기 비상 이·착륙훈련</li> </ul>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170; 국방부 『2022 국방백서』, 합동참모본부, 『22년 연합 및 합동연습·훈련 편람』을 토대로 정리.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54~1960년대

6·25전쟁 직후의 연합연습 태동기로, 1954년 주한미군사와 유엔사가 주관하여 포커스렌즈(Focus Lens) 지휘소 연습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1961년부터 소규모 후방지역 방호훈련인 독수리(FE: Foal Eagle)연습이 시작되었다. 1968년에는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대응책으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전쟁연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68년 7월에 정부 차원의 전쟁연습인 ‘태극연습’을 시작하였고 1969년 연습명칭을 ‘을지(Ulchi)’ 연습으로 변경하였다. 을지는 고구려의 명장으로 수나라 양제의 침략군을 물리친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사진 3-5〉 포커스 레티나 훈련

※ 출처: 국방일보 DB

련에 투입함으로써 사상 최장 최대의 공수작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sup>62)</sup>

1969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한미연합 공수기동훈련인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망막의 초점) 훈련’이 실시되었다.<sup>62)</sup> 포커스 레티나 훈련은 1968년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삼척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자 1969년 3월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이 훈련은 미국 본토에서 완전무장병력 2,500명

이 31시간 이내에 한반도로 공수되어 훈련에 투입함으로써 사상 최장 최대의 공수작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sup>63)</sup>

#### 나. 1970~1980년대

이 시기는 남북관계 긴장 고조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연합연습·훈련이 확대 시행되었다. 1971년에는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와 관련하여 ‘프리덤 볼트(Freedom Bolt: 자유의 도약) 훈련’이 시행되었다. 프리덤 볼트 훈련은 1971년 3월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에 앞서 북한 측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방위 의지를 과시하고 전략적 시험을 위해 유엔군사령부가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오산 북방 일대가 북한 게릴라의 침투로 마비됐다는 시나리오 아래 적의 수중에 들어간 아군 비행장에 미국 본토에서 공수된 특전요원 1,000명을 투입, 공중교두보를 확보하는 내용의 훈련으로 한반도가 미국의 1일 작전권 내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sup>64)</sup>

62) Roland A. Paul, *American Military Commitments Abroad*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73), p.96.

63) 동아일보사, 『철저 해부 주한미군』(서울: 동아일보사, 1990), pp.76-77; 『전우신문』(1969.3.8.).

64) 동아일보사, 『철저 해부 주한미군』, p.77.

1976년 한국 정부의 을지연습과 유엔사의 포커스 렌즈 연습을 통합하여 을지포커스 렌즈(UFL: Ulchi Focus Lens)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을 최초로 시행했다. 1976년 대규모 한미 야외기동연습인 팀스피리트(TS: Team Spirit) 연습을 최초로 실시했다. 1978년 제11차 SCM에서 각종 연합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은 물론,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합의하여 작성하도록 결정했다.<sup>65)</sup> 1978년에는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어 한미연합연습은 유엔사 대신 연합사가 주관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2월 15일 한미 간에 연합연습 및 통제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책무와 절차를 규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sup>66)</sup>함으로써 한미 연합연습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팀스피리트 연습은 북한 측의 항의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가 1982년부터 매년 팀스피리트 연습계획을 북한 당국에 사전 통보해왔고, 훈련을 참관하도록 초청함으로써 팀스피리트 연습이 ‘침략연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팀스피리트 연습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미 육군교육사령부(TRADOC: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는 연간 약 27억 달러를 들여 각종 전략과 전술 교리를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를 팀스피리트 연습과 같은 각종 훈련에 적용하여 시험평가하고 있는데, 국군은 이 같은 새로운 전술 교리를 팀스피리트 연습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지 전투’(Airland Battle)라는 입체적인 전투개념을 미군에게서 도입한 것이다. 만약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이 교리를 연구 개발하려면 약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훈련에 참여하는 병력도 한국군이 미군보다 2배 많은 규모의 병력을 참가시키면서도 훈련 비용은 미군 측의 3분의 1가량만 분담한 것도 한국군에게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큰 것으로 입증되었다.<sup>67)</sup>

이 밖에 1987년 포커스 클리어(Focus Clear) 지휘소 연습<sup>68)</sup>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나, 1991년부터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에 통합되었다.

65)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8.7.27.).

66)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1979.2.15.).

67) 동아일보사, 『철저 해부 주한미군』, pp.79-80.

68) 포커스 클리어(Focus Clear) 연습은 종전의 맹룡연습(포커스 드래곤), 전술군수연습, 전투준비태세 연습을 통합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주관하여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1회씩 실시되었다. 제1부에서는 작전계획 5047, 제2부에서는 작전계획 5027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9박 10일간 실시하였다. 제2차 연습인 1988년부터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워게임 모델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2011), pp.474-476.

## 다. 1990년대

1990년대 초기는 제1차 북핵 위기와 관련하여 연합연습이 조정되었다. 즉, 197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던 팀스피리트 연습이 1994년 중단되었고, 연합연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한국군 독자적 연습인 ‘군단급 FTX(Field Training Exercise)’와 ‘호국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최초로 한국군 독자의 ‘태극연습’이 시작되었다.

## 라. 2000년대 이후

2002년부터는 연합전시증원 연습과 독수리연습을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RSOI/FE)연습’으로 통합하여 전반기에 실시하고, 후반기에는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시행하는 체제로 연합연습이 정착되었다. 2006년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환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어 2007년 2월 23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전작권전환추진단’을 편성하고, 전작권 전환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합참은 한미연합사와 함께 연합연습을 전작권 전환의 추진동력으로 삼아 ‘한국군 주도, 미국 지원’ 하의 전구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계획으로 전환준비 기간 새로운 연습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연습명칭도 변경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Ulchi Freedom Guardian) 연습으로,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을 키리졸브 및 독수리(KR/FE)연습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연습명칭 변경은 2006년 12월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한 측 주도로,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은 미 측 주도로 진행되었다. 한 측에서는 연합사 한 측 장교단, 각 구성군 및 야전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연습인 ‘을지(Ulchi)’라는 명칭을 살려 신 연습명칭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결정했다. 미 측에서는 ‘Balance Point(균형점)’ 등 10개의 명칭을 검토했으며, 토의 끝에 ‘Key Resolve’라는 이름으로 최종 선정하여 키리졸브 및 독수리(KR/FE: Key Resolve / Foal Eagle) 연습으로 변경했다.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부터 신 연습명칭을 공식 사용하기로 하고, 2008년 연습부터 새로운 연습명칭을 적용하였다.<sup>69)</sup>

69)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p.154-155;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81;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78-79.



제2절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

키리졸브(KR)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고, 독수리연습은 후방지역 방호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야외 기동훈련이었다. 키리졸브 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도에 종료(2019.3.2.)하고 ‘동맹연습’을 진행하였다. 한미연합연습은 2019년도부터 ‘연합지휘소 연습(CCPT: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을 실시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로 연습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sup>70)</sup>

이러한 연습의 변화는 단순히 연습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습 목적과 방식, 규모 등에 있어서 개념적 변화를 추구한 것이었다. 궁극적으로는 한미연합사의 전투 준비태세 유지와 동시에 전작권 전환 이후 운용될 한국 합참과 ‘(미래) 주한미군사령부’의 전구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 및 배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림 3-10〉 한미 연합연습 명칭 변천



※ 출처: 합동참모본부, 각 군 제공자료(2023.1.) 종합정리.

70)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166.

## 2. 주요 연습 및 훈련

### 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은 크게 지휘소 연습과 야외기동연습 및 훈련으로 나뉜다. 지휘소 연습으로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키리졸브(KR) 연습 등이 실시되었고, 야외기동연습·훈련으로는 팀스피리트(TS) 연습, 독수리연습, 포커스 레티나훈련 등이 실시되었다.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한국방위를 위한 전쟁 지도 및 전쟁 수행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지휘소 연습으로서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습은 1954년도부터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시행되던 포커스렌즈(FL) 연습과 1968년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 이후 정부 주관으로 시행하던 을지연습을 한미 간 협의를 거쳐 1976년부터 통합하여 실시해 온 한미 연합연습이다.<sup>71)</sup> 이 연습은 1978년 11월 7일 「전략지시 제1호」에 의하여 군사 분야 연습은 한미연합사가 주관하고, 민간 분야 연습은 정부(비상기획위원회, 현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연습은 정부 행정기관과 한미 주요사령부가 참가하여 정부의 전쟁 지도, 충무계획과 법규의 시행절차를 검토하고, 군사 분야의 작전 운용 및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키고 한미 간 협조 및 이해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습은 주로 전쟁 초기 정부 위기관리 및 한미 연합위기관리 절차와 함께 작전단계별 상황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는 과학적 연습기법을 도입하여 위게임 모델에 기반한 지휘소 연습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연합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1990년대부터는 정부의 전쟁 지도 및 지원계획과 법규의 시행절차를 검토하고, 군사작전계획의 시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왔다. 연습은 2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제1부 연습은 정부·시·군·구 이상의 전 행정기관과 동원지정업체, 한미 양국의 주요 작전사령부(육군 지작사 군단급 이상, 2작전사 및 수방사 사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급 이상, 공

71)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매년 8월, 키리졸브(KR) 연습은 매년 2~3월에 실시된다. 이는 통상 지휘관 및 참모 보직 이동이 미군은 6월에, 국군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직 이동 후 이들 연습을 통해 조기에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이 연습은 1976~2007년까지는 'UFL 연습', 2008~2018년까지는 'UFG(Ulchi Freedom Guardian) 연습'으로 시행되었다.

군의 비행단급 이상 부대)가 참가하여 정부와 군사 분야의 통합연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2부 연습은 한미연합사 주관하에 군사연습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연습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일시적으로 정부 연습과 군사연습을 분리하여 실시되다가 1994년 이후



〈사진 3-6〉 을지 자유의 방패 로고

부터는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연습은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총무계획과 연계하여 전면전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보완·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정부 연습이 한미연합연습과 분리되었고 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하여 ‘을지태극연습’으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전시 연합작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를 숙달하는데 제한이 되었다. 또한 ‘을지태극연습’ 간 정부 연습은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되어 전시 국가역량 통합을 통한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22년 하반기 연합연습부터 정부 연습과 연합연습을 통합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를 매년 후반기에 정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체제 아래에서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지 도발 및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72)</sup>

〈표 3-5〉 자유의 방패(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차이점

연습명	형 태	목 적	내 용
자유방패 (FS: Freedom Shield)	전구급 연합 지휘소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연합방위체제 하 전구 작전지휘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li> <li>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안정화, 전쟁지속능력 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위기관리</li> <li>전시전환</li> <li>전시 작전계획 시행</li> </ul>
을지 자유방패 (UFS: Ulchi Freedom Shield)	전구급 연합 지휘소 연습 + 정부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FS는 정부연습과 군사연습 통합 시행으로 국가 총력전 수행체계 숙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FS 시 정부 연습 병행, 총무계획 시행</li> </ul>

※ 출처: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354.

72)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p.166-169.

## 나.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연습

### 1)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연합전시증원(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연습은 전시 한반도에 증원될 미 증원군의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전장으로 통합(Integration)되는 일련의 절차와 경계 등을 포함하여, 이를 지원하는 국군의 전시지원, 상호 군수지원, 동원 및 국군의 전투력 복원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하여 컴퓨터 모의를 통해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수용(R)은 전략적 또는 내부 전개 단계에서 바다, 공중, 지상양륙지점으로 병력, 장비, 물자를 인수하고 하역한 후 정렬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S)는 전방이동 준비를 위해서 도착하는 병력, 물자, 전투지속 물자를 조립하고, 체류시키며 재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방이동(O)은 하역장소나 수용시설 또는 대기지역으로부터 전술 집결지로 병력과 장비를 이동하고 재배치하는 것이다. 부대통합(I)은 작전적 통합을 위해 지휘관에게 증원전력의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sup>73)</sup>

연합전시증원 연습은 걸프전 이후 미군의 ‘전력투사’(Forces Projection)라는 전략개념 발전에 따라, 유사시 미군 전력을 보다 신속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4년부터 한미연합사 주관하에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2008년부터는 ‘키리졸브(KR) 연습’으로 연습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개념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 2) 키리졸브(KR) 연습

키리졸브 연습에는 국군의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급 부대가 참가하고, 미군의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미 증원부대 등이 참가한다. 키리졸브 연습은 미 증원군의 지휘소 전개훈련, 부대 방호 및 추적 훈련, 전시지원품목 인수인계 절차훈련, 해상 병참선 방호훈련 등 실제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 연습을 통해 전시지원계획을 검증 및 보완하고, 한미 상호 군수지원절차를 숙달하며,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sup>74)</sup>의 임무 수행절차와 후방지역 방호절차를 보완하고, 해상 방호능력과 한국군의 전투력복원 능력을 크게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3) 합동참모본부, 『연합·합동작전 군사용어사전』(서울: 합동참모본부, 2020), p.195.

74) 미 증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간에 필요한 경계 및 전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책임 지역 내의 제 작전요소에 대한 협조, 조정 및 통제 책임을 부여받은 특정 지휘관이나 참모를 말한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p.198.

## 〈미 증원전력〉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미 증원전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전시 작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유사시 초전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면, 미 증원전력은 위기 및 전시에 결정적이고 신속한 승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미 증원전력은 미군의 전략기동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전략기동이란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군대와 장비를 운반하는 것으로 전구(theater)와 전구 간의 수송을 말하며, 주요소로는 항공수송, 선박수송, 분쟁 예상지역에 대한 장비와 전쟁 지속물자의 사전배치 등이 속한다. 계획상의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 규모이다.<sup>75)</sup> 미 증원군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육군 사단, 최신에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전투단, 전투비행단, 오키나와 및 미 본토의 해병기동군(MEF: Marine Expeditionary Force)을 포함하고 있는 전력이다.

미 증원전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신속억제방안(FDO)은 전쟁 억제에 목표를 두고,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위기 시에 시행되는 정치·경제·군사적 방안으로써 약 13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감시·정찰용 전력의 운용이 포함된다. 둘째, 전투력증강(FMP: Force Module Package)은 신속억제방안 등의 통합 전쟁 억제에 실패할 때를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로, 주요전력으로는 항모전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실제 전쟁이 발생할 때 신속억제방안과 전투력 증강전력을 포함하는 시차별부대전개지원(TPFDD)에 의한 증원전력이 있다. 이는 전쟁 발발 시 전개하도록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전력들로서, 그 종류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In-Place)과 상황 발생 시 시차별로 전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전력(Pre-Planned), 그리고 요청 시 추가로 전개되는 전력(On-Call) 및 국외 지원전력(Off-Peninsula)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군의 이러한 증원전력에는 유사시 개전 초기 전방에 밀집한 적 포병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 최신에 전투기를 탑재하고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수 개의 항모 전투단, 공중우세 확보, 방공, 적지 타격을 위한 공중전력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전 미 해군의 40% 이상, 미 공군의 50% 이상, 미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출처: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pp.56-57.

75)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48.

### 3) 독수리(FE)연습

독수리연습은 한반도에서 전쟁 역제를 위해 한미 간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연합 및 합동 작전태세 완비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연습이다. 1961년부터 시작된 독수리연습은 1개 도(道) 지역에서 한국군 1개 대대와 미군 1개 지역대가 소규모 비정규전 형태로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1961~1974년(14년간) 기간에 소규모로 9회를 실시했고, 1975년에는 미군의 불참으로 한국군 단독으로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로 북한의 도발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1976년부터 훈련 명칭을 ‘폴 이글(Foal Eagle<sup>76</sup>)연습’으로 명명하여 정규전에 대비한 후방지역 방호작전으로 그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sup>77)</sup>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이후인 1979년 한미 간에 양해각서가 교환되었고, 이 근거에 의해 연습지역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1982년부터는 정규전 개념을 적용한 쌍방훈련을 하였으며,



(사진 3-7) 독수리연습

※ 출처: e영상역사관

특히 1986년과 1988년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대테러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했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한국군의 군단급 야외기동훈련(FTX)과 함께 실시했고, 2002년부터는 연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합전시증원 연습과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독수리연습은 개전 초기 한국의 후방지역에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침투하는 것에 대비하는 훈련과 군단급 야외 기동훈련, 여단급 쌍방 야외 기동 훈련 및 한미 해병대, 해·공군에 의한 연합상륙 훈련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습에는 한미 양국 군 이외에도 지역 내 행정관서와 예비군, 미 본토로부터 전개되는 일부 증원전력이 참가하였다.

한미 양국은 독수리연습을 통해 후방지역 및 특수작전 전반에 걸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76) Foal(나귀 새끼)은 미 제1공수특전단과 Eagle(독수리)은 제1공수특전단의 별칭으로 각각 부대 별칭의 첫 글자를 따서 훈련 이름으로 정하였다. 이후 참가 부대의 명칭이나 규모, 방법이 바뀌어도 Foal Eagle은 처음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변천사(창설~2018)』(계룡: 육군본부, 2019), p.89.

77) 1976년 연습 시 한국군은 6개의 특전대대, 함정 5척, 항공기 10소터 전력이 참가했고, 미군은 2개의 특전단(-), 항공기 4대가 참가했으며, 이후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다소 증가한 전력이 참가했다. 이 연습은 1961년 이후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되었으나, 1962년, 1965년, 1968년, 1972년, 1978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1977년에는 팀스피리트 연습과 함께 실시하기도 하였다.

향상하고, 한미 간 군사적 결의를 과시함과 아울러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998년부터 한미 여단급 쌍방 야외 기동훈련 시 레이저 빔을 이용한 마일즈 장비(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활용함으로써 실전과 유사한 쌍방 교전훈련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독수리(FE) 연습은 2019년 키리졸브(KR) 연습과 함께 종료되었다.

#### 다. 팀스피리트(TS) 연습

팀스피리트(TS) 연습은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력을 위해 한미 간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연합 및 합동 작전태세 완비를 위해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한 대규모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 연습이다. 이 연습은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한의 도발위협이 상대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한미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1976년 6월에 최초로 실시했다. 팀스피리트 연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 측 실천 의지의 강력한 표상이었으나 북한은 북침 핵 공격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1976년 최초로 시행된 팀스피리트 연습에는 한미 양국 군 4만 6,000여 명이 참가했다.<sup>78)</sup> 이후 카터 행정부는 1977~1978년 주한미군 철수정책의 보완책으로 팀스피리트 연습을 계속 시행하였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시 팀스피리트 연습을 비롯한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한미 집단방위체제 강화에 매우 유용하다는 결론을 맺고 매년 연습을 계속할 것에 합의했다.<sup>79)</sup>

팀스피리트 연습은 한국과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의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 및 미군 부대와 협조하여 실시하는데, 연습은 전략적 전개, 운용, 복귀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는 순수한 방어 위주의 연습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연습을 ‘북침을 위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자, 1982년부터 연습계획을 사전에 북한과 주변국, 유엔사 중립국 감시 위원회에 통보하고, 희망 시 참관을 허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참관을 거부하고 이 연습에 대한 비판과 대응 강도를 높였다. 1983년에는 최초로 이 연습에 대하여 ‘준전시 상태’ 돌입 명령을 하달했고, 이후 1984년, 1986년, 1988년에는 ‘전투 동원태세’ 돌입명령을, 1989년에는 ‘전투 동원’ 명령까지 하달하기도 했다.<sup>80)</sup>

78) 동아일보사, 『철저 해부 주한미군』, p.77.

79)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1978.7.27.).

80) 박용욱, “팀스피리트 훈련과 남북회담,” 『군비통제』 제9집(1992), p.4.



〈사진 3-8〉 팀스피리트 1983연습

※ 출처: e영상역사관

연습 기간도 최초 10여 일이던 것이 나중에는 70~8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참가병력 규모도 최초 4만 6,000명 규모에서 1983년 이후엔 미 제1군단을 비롯하여 미 본토 전력을 포함해 한미군 2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기동연습으로 발전했다. 1986년 이후부터는 2개 군단급 연습에서 2개 야전군급 연습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1년 연습은 미국의 걸프전 참전으로 인해 미 제1군단을 포함한 미 본토 지상군이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 개발 위협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팀스피리트 연습의 중단을 요구했다.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자, 1992년 1월 6일 미국의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핵사찰 협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받아들이고 관련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면 그해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할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날 북한 외교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핵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밝히자 최세창 국방장관은 같은 날 1992년 팀스피리트 연습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1992년도 연습은 잠정 중단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IAEA 핵사찰 수용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한미 양국은 1992년 10월 제24차 SCM에서 축소된 규모로 1993년도 팀스피리트 연습을 재개하기로 합의<sup>81)</sup>하고, 야외기동연습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지휘소연습을

81) 제2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2.10.8.).



포함하는 형태로 실시하였다.

1993년 7월 제네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IAEA 핵사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IAEA와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1994년 3월까지 IAEA와 북한 간 핵사찰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미는 1994년 팀스피리트 연습 시행 여부 결정을 보류해 왔다. 이후 1994년 10월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미·북 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팀스피리트 연습은 또다시 중단되었다. 1995년 2월 2일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미북 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사항의 원만한 이행 및 남북대화를 전제로 1995년도 팀스피리트 연습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25일 북한이 제네바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미 양국은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후 이 연습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팀스피리트 연습이 중단됨으로써 한미 양국은 본 연습에 포함된 주요 훈련을 다른 연습에 분산 시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95년부터 독수리연습에 야외 기동훈련이 포함되었다.

### 3. 기타 훈련

#### 가. 환태평양훈련(RIMPAC)

환태평양훈련(RIMPAC: Rim of the Pacific)은 환태평양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하여 국제 분쟁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절차를 훈련하는 일종의 야외기동훈련(FTX)과 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을 결합한 대규모 다국적 해군의 연합기동훈련이다. 이 훈련은 1974년 미국·캐나다·호주 3국 간의 해군훈련으로 출발하였으나, 참가국의 범위와 전력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오늘날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일본·호주·캐나다·칠레·페루 등의 환태평양 연안국뿐만 아니라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와 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해군 연합훈련으로 발전되었다.

이 훈련은 매 짝수년 6~8월에 하와이 근해에서 미국 제3함대사령부(샌디에이고 소재) 주도하에 대규모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한 달여 동안 실시한다. 한국은 1990년 최초 참가한 이래 매 격년제로 꾸준히 이 훈련에 참여해 왔다. 최초에는 2척의 호위함(1,500톤급)만을 파견했지만, 오늘날에는 세계 해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최신예 전투함, 대형수송함, 잠수함, 항공기 등 입체전력을 파견하고 있다.

## 나. 군별 연합연습·훈련

각 군에서는 미군과 연합연습·훈련을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국군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한미 간의 연합연습과 훈련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군별 연합연습·훈련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진 3-9〉 2023 코브라 골드훈련

※ 출처: 국방일보 DB

육군은 미 현지 연합소부대훈련 등 25종, 해군은 코브라 골드(Cobra Gold) 훈련 등 48종, 공군은 레드 플래그(Red Flag-Alaska) 훈련 등 18종, 해병대는 한미연합 상륙훈련 등 8종, 합동부대는 한미연합 통신망 구성훈련 등 4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습과 훈련은 미국과 단독으로 혹은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는 형태로 국내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전술세대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sup>82)</sup>

82) 합동참모본부, 『'22년 연합 및 합동 연습·훈련 편람』, p.총론 3-7.

## 제3절 군사교육과 교리발전

### 1. 미 군정기와 창군기의 군사교육

1945년 8월 광복 이후부터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군정 기간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미국 문화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식 교육의 도입으로 일제강점기에 붕괴한 한국사회의 교육체계를 단기간에 정립시켰다.<sup>83)</sup> 미국식 교육은 군사교육에서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일본식 군사교육과 군사문화에 익숙했던 국군에게 미군은 국방경비대의 창설에서부터 철저하게 미 군사교육과 교리를 적용했다. 미 군사교육의 시행은 미군정 시기에 국방사령부의 「뱀부계획(Bamboo Plan)」과 미군 철수 이후 군사고문단의 활약에서 찾을 수 있다.<sup>84)</sup>

〈표 3-6〉 뱀부계획(Bamboo Plan)의 세부 내용

- 첫째, 남한 8개 도에 8개 중대를 설치하되, 편성은 중화기가 없는 미군 보병중대를 기준으로 장교 6명, 사병 225명으로 정하고 장교는 중앙에서 양성한다.
- 둘째, 미군은 경찰예비대를 육성하기 위해 미군 장교 2명, 사병 4명으로 구성된 군사훈련단을 배치하여 부대편성과 건물확보 및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 셋째, 각 도 중대를 편성할 때는 정원의 20%를 초과로 편성하되 단기훈련이 끝나면 그 초과 병력을 기간으로 다음 중대를 추가 편성한다.
- 넷째, 중대를 확대 편성하여 대대 수준이 되면 대대본부와 본부 중대를 설치하고, 이를 기간으로 다시 제2, 제3대대를 편성하여 각 도에 1개 연대를 편성한다.
- 다섯째, 각 도의 지휘관은 미군 장교와 한국군 장교를 동시에 임명하여 한국군 장교는 부대편성 및 교육훈련 등의 군사업무를 견습한다.

※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p.260-261.

미군정은 국방경비대 요원에 대한 군사교육 시행을 통해 미국 육군의 교리와 전술, 교육방식, 군대 문화를 한국군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 한국군의 장

83)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서울: 민영사, 1992), pp.215-276.

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 pp.429-441.

교들은 기존 익숙했던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군대 문화를 고수하고자 하여 다소 마찰이 존재했다. 그러나 미 고문관들의 노력과 한국군의 열의로 뱀부계획을 완성하여 최종적으로 한국군의 창군을 가져왔다.<sup>85)</sup>

미 군사교육은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교육에서 출발하였다. 미군정 시기 장교양성 과정에서 영어교육은 군사교육의 선결과제였다. 미군정의 국방사령부는 미 군정 요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군사영어학교(Military Language School)를 설립하고, 1945년 12월 15일 1차 60명 선발을 시작으로 18차까지 총 233명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국방경비대와 해방병단 간부로 임관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건군의 주역이 되었다.<sup>86)</sup>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을 정식으로 창군하는 과정에서도 미군의 군사교육은 국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49년 미군이 철수하자,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이 구성되어 군사교육을 담당하였다.<sup>87)</sup> 군사고문단의 군사교육은 단기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6·25전쟁 발발로 체계적인 교육 및 교리적용은 어려웠다.<sup>88)</sup>

창설 초기 국군은 미 군사고문단에서 제공한 군사 교범과 군내 인사들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수집한 일본군 군사 교범을 참고로 하여 일부 교범을 번역하여 학교 교육과 부대훈련을 위한 교재로 활용하였다. 특히 초창기 국군의 작전방식이나 전투 수행에는 일본군의 전투 수행 교리인 『작전요무령』이 주로 활용되었다.<sup>89)</sup> 미 군정은 이러한 일본식 군사교리를 대체하여 미군의 야전교범을 훈련소와 각 부대에서 국군의 군사교리로 활용했다.<sup>90)</sup>

군사고문단은 각 부대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면서 미군의 군사교리를 번역하여 교보재로 활용했다. 이때 핵심적인 전투수행교리로 번역된 것이 미군의 야전교범(FM: Field Manual)이었다. 건국 이후 육군본부 작전교육국(교육과)은 교리연구와 교범 편찬 사업을 담당하였는데, 먼저 미군의 각종 군사교리 및 교범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전개했다.<sup>91)</sup>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 I』, pp.75-78.

86) 육군본부, 『창군전사』(서울: 육군본부, 1980), pp.305-312.

8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1950.1.26. 서명, 1949.7.1. 소급발효),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58-63.

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 I』, pp.187-189.

89) 육군본부, 『육군교리 50년 발전사』(논산: 육군본부, 2000), p.39.

90)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5), pp.67-72.

## 2. 6·25전쟁 시기 군사교육

군사고문단은 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지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950년 1월 체결된 「한미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과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sup>92)</sup>으로 500명 규모로 발족했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기 때문에 외교관 특권이 부여되었으며, 미국의 한국 군사원조의 집행과 감독, 미군 무기의 이양과 사용법 교육, 한국군 편성과 훈련지원, 군사교육기관의 정비·강화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군사고문단은 6·25전쟁 기간 중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전투부대에 파견되어 한국군 부대의 훈련과 전투부대의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0명 규모로 확대되었다.<sup>93)</sup> 군사고문단은 전쟁 기간 중 야전의 군단 및 사단사령부는 물론, 대대급까지 배치되었다. 국군이 20개 사단으로 증강되면서 야전군사령부, 군단사령부가 창설될 때에도 미 군사고문단의 역할이 컸다. 1953년 12월 제1군사령부가 원주에, 1954년 10월 제2군사령부가 대구에서 창설될 때에도 해당 한국군 창설 요원들이 미 제10군단에 파견되어 6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1950년 7월 27일에는 주한공군군사고문단이, 1952년 2월 7일에는 주한해군군사고문단이 창설되어 한국 해군과 공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군사고문단은 장교들에 대한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병사 충원과 부대훈련에 깊이 관여했다. 1951년 1월 제주도 모슬포에 제1신병훈련소가 창설된 뒤, 신병훈련소의 운영뿐만 아니라 신병 배출 인원의 조절에도 관여했다. 즉, 전선의 추이와 미국의 한국군 증강계획에 따라 훈련 기간 연장 및 인원조절이 이루어졌다.

1951년 6월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미 제8군사령관은 군사고문단장에게 특기병에 대한 교육 강화를 지시하였다. 군사고문단은 신병들의 전투병과와 특기병과의 교육 분리를 통하여 특기병의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군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기존 배속병에 대한 재교육을 위해 1951년 8월 4일 야전훈련사령부(FTC)를 창설하고 한국군 부대들의 전투능력과 사기를 양양시켰다.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은 한국군의 교

91) 육군본부, 『육군교리 50년 발전사』, p.39.

9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1950.1.26. 서명, 1950.1.26. 발효),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64-69.

93)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 MAG in Peace and War*, p.161.

육훈련과 관련한 체계 정비는 한국군의 자질향상과 지휘체계의 공고화라는 성과를 거두었다.<sup>94)</sup>

군사고문단에 의한 한국군의 작전·교육·군수지원은 궁극적으로 국가재건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군의 장기적인 증강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여,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증강을 지원하는 기획업무도 병행했다. 당시 국군은 무기와 장비지원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정책에 따라 국군의 증강계획이 수립되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현상 유지를 희망하였지만 전쟁의 장기화로 미군의 손실이 증가하고, 정전협상을 반대하며 전력증강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국군 증강을 재검토하였다. 1951년 12월 20일 NSC-118/2에서 미국은 정전 성립 시 한국군의 조직, 훈련, 장비를 강화하며, 한국의 방위와 안보를 담당하도록 신속하게 한국군을 발전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했다.<sup>95)</sup> 한국군 증강계획 수립은 미 군사고문단이 담당하였고, 1952년 3월 한국군 부대기준표를 작성하여 미 제8군사령부에 제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계획을 승인하면서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으로 실현되었다.<sup>96)</sup>

국군은 군사고문단의 협조를 받아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위해 1951년 8월 1일, 부산에 교육총감부를 창설하고,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소속의 정보훈련소를 제외한 모든 군사교육기관을 감독·통제했다.<sup>97)</sup> 이어 훈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보병학교, 포병훈련소, 통신훈련소를 통합하고, 1952년 1월 6일 1만 5,000명 수용 규모의 육군훈련소(일명, 상무대)를 설립했다. 장교후보생은 보병학교에서 10주간 기본교육과 각 병과학교에서 14주간의 병과 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 기간이 18주에서 24주로 연장되었다.<sup>98)</sup>

6·25전쟁 기간 초급장교들의 희생이 많이 발생하자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전선에 투입된 소대장, 중대장들의 전투기량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국군 장교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미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밴 플리트 사령관은 “한국군의 전력향상은 군사교육에서 출발한다.”는 신념으로 취임 직후 신병훈련소 설치를 지시하고, 신병훈련소를 점차 확대 개편하여 보병학교, 포병학교, 통신학교 등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 I』, pp.282-288.

95)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President, *FRUS 1952-54*, Vol. XV. part 1, pp.185-186.

96) 국방부, 『국방사』 제2집(서울: 국방부, 1987), pp.335-337.

97)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변천사』(계룡: 육군본부, 2019), p.72.

98)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전투발전종합사』(대전: 육군교육사령부, 1984), p.49.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군사고문단을 한국군 교육기관에 파견하였다.

벤 플리트 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한국군 교육훈련 체계의 정비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던 군사고문단은 장교 교육의 틀을 마련한 뒤 4년제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10월 30일 진해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재창설되어 1952년 1월 2일 개교하였다.<sup>99)</sup> 1951년 10월 28일 고급장교의 재교육을 위해 육군대학이 설립되어 미 지휘참모대학과 같은 교과과정이 적용되었다.<sup>100)</sup> 군사고문단에 의한 한국군 교육체계의 강화는 교육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군사고문단은 1951년 전선이 고착되고 정전회담이 실시되면서 군사교육 체계·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교육일선에서 교육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sup>101)</sup> 한국군 교육훈련 책임자였던 챔페니(Arthur S. Champeny)는 한국군 장교들을 미 군사학교에 유학시키고, 국내의 군사학교에 군사고문단 수를 늘려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1952년 6월 군사고문단은 1,953명의 인원을 야전부대의 참모부에 배치하여 전투력 운용과 전투 수행을 지원하고, 교육총감부(교육총본부)·육군훈련소·보병학교·포병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 실무를 담당하여 한국군의 초기 군사교육 체계를 정립시켰다. 또한 각종 교보재와 교육이론 차원에서 미군 교리를 소개하여 교리발전에 이바지하였다.<sup>102)</sup>



〈사진 3-10〉 도미 군사유학생 환송식

※ 출처: e영상역사관

이 시기 국내의 교육훈련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군 장교단의 도미(渡美) 군사유학이 시행되었다.<sup>103)</sup> 군사고문단은 1950년 11월 1952년 회계연도에 미 군사학교의 교육을 이수할

99)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60년사』(서울: 육군사관학교, 1996), pp.133-185.

100) 육군대학, 『육군대학 30년사』(진해: 육군대학, 1981), p.43.

101)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1953),”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1). p.220.

102)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p.161.

103) 이승만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장교 50명을 선발하여 미국 각 병과학교에 입학시켜 교육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장교 미국에 파견의 건」(1951.5.30.).

한국군 장교 인원을 결정해 주도록 미 육군성에 요구했다. 군사고문단의 추가 요구가 반영되어, 한국군 장교들은 보병학교, 포병학교 등 초급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미군 학교에 도미 유학의 기회를 얻었다.

군사고문단이 계획한 군사학교육은 20주간의 특별기본과정으로 조지아주의 보병학교(Fort Benning, 150명),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포병학교(Fort Sill, 100명) 등 한국군 장교들을 유학시켜 리더십을 갖춘 전문적인 핵심 장교단을 양성함에 있었다. 1951년부터 1953년 10월까지 계속된 도미 군사유학은 초등군사반 과정의 초급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중견 장교들은 이미 일본식 교육을 받아 미국식 사고방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초급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104)</sup>

미 보병학교에서 공용화기·전술학·참모학 등을, 미 포병학교에서 포술·측지·기상학 등의 과목을 전투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통해 교육받았다. 군사고문단은 한국군 초급장교들이 미 군사학교의 교육제도를 단기간에 익히고 한국의 군사교육 기관에 배치되어 교관으로서 군사교육체계의 정립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한국군 장교들은 전선에 곧바로 투입되어 북한군 및 중공군과 싸워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 유학을 통해 실전적 교육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된 지휘관과 참모의 활약으로 국군의 전·사상자가 격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105)</sup>

6·25전쟁은 미군 군사교리가 실전적으로 전투현장에서 적용된 전쟁이었다. 군사고문단은 명목상 고문관이라는 이름으로 각 부대에 파견되어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했지만, 일부 전황이 긴박할 경우는 작전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였다.<sup>106)</sup> 미군의 군사교리를 번역하여 교육받은 한국군은 전투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사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미 군사고문단은 후방에서는 미군의 군사 교범과 교리가 적용된 군사교육을 시행하였으나 전선에서는 군사작전을 지원하거나 통제하였다.

초기 도미 군사유학을 경험한 국군 장교들은 주한미군사고문단과 함께 군사교육의 현장에서 교육훈련 임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사고문단에 의한 미군의 군사 교범과 교리 교육이 아니라, 국군에 의한 군사교리 교육과 적용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긴박함과 짧은 교육 기간으로 인한 국군의

104) 김민식,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군사』 제98호(2016.3.), pp.285-321;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1953,” 『군사』 제63호(2007.6.), pp.213-265.

1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142.

106)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1953),” p.174.



미군 군사교리 이해 및 적용은 미군 군사교범을 번역하여 급하게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sup>107)</sup>

### 3. 6·25전쟁 이후 군사교육의 발전

#### 가. 군사교육과 한미 군사교류

초기에 군사 유학하였던 장교들은 교육부서에 배치되어 미국식 군사교육을 국군에 정착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차 군 중요 보직으로 확대되어 향후 국군의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교들의 미국 군사유학은 단순히 군대의 전후 정비 차원을 넘어서 1950~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군대의 우수한 기술인력 및 사회 중심적 역할과 궤를 같이 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추진에 빛과 그림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한미동맹의 군사교류 방식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sup>108)</sup>

국군의 도미 군사유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후 군사유학의 기회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사유학을 경험한 장교의 수는 1954년 1,000명을 넘어서 1973년까지 총 2만 2,144명에 달하였다. 군사유학의 기회 확대는 인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군사유학생의 계급이 영관급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군사유학의 분야도 초기의 보병학교와 포병학교에서 점차 확대되어 다른 병과까지 시행되었다. 일례로 1960년대 베트남전쟁 기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미 육군 특수전학교(Fort Bragg)에서 많은 장교가 특수전 교육을 받았다.<sup>109)</sup>

전쟁 기간 중 시행되었던 위관급 장교들의 미국 전투병과학교 파견 교육은 전후에 영관급 장교의 유학으로 확대됐다. 다수의 국군 영관 장교가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CGSC: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에 도미 유학하였는데,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의 교육계획은 미 육군 소령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미 해·공군·해병대 및 예비 군 장교, 그리고 100명 정도의 외국군 장교를 포함하여 1,000여 명이 함께 교육을 받았다.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에서는 군사학뿐만 아니라 외국 장교들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식견을 넓히고 교육을 마친 후 귀국한 영관급 장교들은 이들과의 지속적인 친교를 유지·발전시켜 군사외교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07) 육군본부, 『육군교리 50년 발전사』, pp.49-52.

108) 김민식,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pp.285-321.

109)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 상(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01), pp.97-105.

도미 군사유학의 대상 교육기관도 고급과정으로 확대되어 각 군 대학원(War College) 과정<sup>110)</sup>,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산하의 NWC(National War College)와 ICAF(Industrial College of Armed Forces)<sup>111)</sup>로 아래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661명의 국군 장교가 군사유학을 다녀왔다.

<표 3-7> 국군의 미 군사교육 기관 수료(졸업) 인원 현황(2022년 기준)

구분	육군 대학원	해군 대학원	공군 대학원	MCWC	지휘참모 대학	NWC	ICAF (ES)	계
육군	14	196	52	-	95	3	21	381
해군	-	21	-	-	97	8	2	128
공군	-	-	124	-	-	7	-	131
해병대	-	-	-	2	19	-	-	21
계	14	217	176	2	211	18	23	661

※ 출처: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제공자료 종합(2023.4.).

도미 군사유학을 통해 군사 지식을 습득한 유학생은 한미동맹에서 연합작전능력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50~1960년대 유학생들은 귀국 후 병과학교나 각 군 대학에서 새로운 교리와 전술, 작전술과 전략을 교육하면서 후진 양성에 헌신하였다. 1970년대 이후 도미 군사교육을 수료한 장교 대부분은 한미 제1군단(I Corps ROK/US),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 한미연합군사령부(CFC), 미 제7공군사령부 그리고 공군 작전사 등에 근무하면서 동료인 미군 장교들과 함께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을지포커스렌즈(UFL) 등 연합연습을 통해서 연합작전능력을 제고시켰다.<sup>112)</sup>

도미 교육 경험이 있는 고급장교들은 대미업무를 관장하는 정책부서인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에서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협의체로서 1968년부터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개최되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장교들이 한미 국방부와 합참 간 안보 및 군사협력 활동을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sup>110)</sup> 육·해·공군 대학원(War College)과 해병대 전쟁대학(MCWC: Marine Corps War College)이 있다.

<sup>111)</sup> ICAF는 ES(Eisenhower School)로 개칭되었다.

<sup>112)</sup> 김민식,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pp.285-321.

국군의 도미 교육뿐만 아니라 미군의 수탁교육도 꾸준히 시행되어 군사교류를 발전시켜 왔다. 미군 장교의 수탁교육은 1972년부터 육군대학에서 시작되었고 해군대학과 공군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국방대에 입교하였다. 이들은 교육 기간 중 한국군 장교들에게 미군의 전술과 전략을 소개하고 양국 군 장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왔으며, 졸업 후에도 한국 관련 부서에 보직되어 양국 군사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72년부터 2022년까지 미군이 국군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인원 현황은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미군의 국군 교육기관 교육 수료 인원 현황(2022년 기준)

구분	국방대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계
인원	14명	98명	31명	12명	155명

※ 출처: 국방부 제공자료(2023.4.).

#### 나. 초기 미 군사교리의 도입과 적용

군사교리는 군대가 경험한 전쟁과 군사환경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결정되는데 국군은 창군에서 6·25전쟁, 전후복구, 각종 군사분쟁 등 일련의 군사 경험을 통해 미군의 군사교리를 번역하여 적용하였다.

1953년 7월 정전 이후 국군의 도미 유학은 미군의 군사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도미 유학생들이 국군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군의 군사교리 발전을 주도하였다. 특히 국군의 각종 부대를 창설할 때 미 고문관들이 참모로 관여하면서 국군의 편제에서부터 각종 전투 수행, 군수체계, 군사기획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군의 군사교리가 국군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군의 군사교리는 군대의 규모와 전쟁 수행 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군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국군은 일차적으로 미군의 군사교리를 적극적으로 번역하여 습득함과 동시에 국군의 특징에 부합하는 국군의 군사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 다. 한국식 군사교리 발전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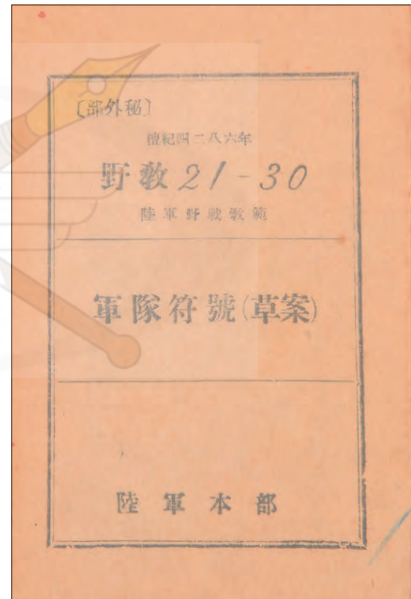
군사교리는 군부대나 그 구성원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적용해야 할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행동의 기본 원리·원칙과 전술, 전기, 절차, 용어 및 부호를 말한다. 교리 문헌은 이러한

교리와 교리적 참고 자료를 기술한 간행물이다.<sup>113)</sup>

교리는 구성원에게 전쟁과 전쟁방식에 대한 논리적 관점을 제공하고, 작전 수행에 공통으로 필요한 군사용어 및 부호와 참조 틀을 제공하며, 작전과 교육훈련을 인도하는 원리와 지침을 제공해 효율성을 증진한다. 즉, 교리를 담은 교리 문헌은 작전 수행과 교육훈련을 위한 군인의 교과서이며 주된 교재이다.<sup>114)</sup>

이러한 측면에서 국군은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미군의 교리발전을 모방하여 국군에 적용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군의 비약적인 군사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군사교리의 정립은 부족하였다. 국군은 1950년대 후반 미군의 각종 군사교리와 교범을 번역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군의 규모와 작전환경에 적합한 전술개발과 교리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베트남전쟁에서 최초로 한국군 군사교리가 성립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즉, 미군 교리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국군의 특성과 예상되는 전장의 모습을 고려한 군사교리의 발전이 있었다.<sup>115)</sup>

1960년대 말,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국군은 미군의 작전개념과 다른 ‘중대 전술기지’ 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전술 책임 지역 방위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는 데 기본적인 작전목표를 두고 부대를 배치하되, 중대 단위 전술 기지를 설치하여 기지 주변의 전투정찰과 탐색을 하는 것으로 공세 및 방어에 유용한 개념이었다.<sup>116)</sup> 이 전술은 전면방어의 한 형태로서 적의 활동 중심지를 장악하여 적의 활동을 경계하고 책임 지역 내로 적의 침투를 봉쇄하며 적의 연대 규모 공격에 48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도록 진지를 준비하고 우군의 포병 지원 거리 내에 설치된 중대급의 작전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sup>117)</sup> 파병 전까지만 해도 미군 군



〈사진 3-11〉 초창기 국군의 교범  
※ 출처: 전쟁기념사업회

113) 육군본부, 『육군 교리 발전사』(계룡: 육군본부, 2021), p.1.

114) 육군본부, 『육군 교리 발전사』, p.2.

115) 신상구,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미군 유격 교리의 수용 과정,” 『군사연구』 제149집(2020), pp.285-318; 신상구,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대게릴라전 경험의 수용 과정,” 『군사연구』 제150집(2020), pp.137-171.

116) 채명신, 『채명신 회고록』(서울: 팔복원, 2006), pp.177-186.

사교리에 100% 의존하던 국군이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군대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sup>118)</sup> 국군 맹호부대(수도사단), 백마부대(제9사단), 청룡부대(제2해병여단) 등이 이러한 군사교리 및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대만에서는 중대 전술기지 개념과 야간 침투 작전의 한국군 군사교리를 습득하고자 하였다.

미군의 군사교리 변화는 국군의 교리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군사력 운용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1973년 육군교육사령부(TRADOC)를 창설했다. 교육사령부는 군사교리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여 1976년 육군이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야전교범 100-5 『작전』을 발간하면서 ‘적극방어(Active Defense)’ 개념을 발표하였다. 적극방어의 핵심은 전자전, 대공 무기, 항공기, 정밀무기 등 첨단무기체계 운용개념을 반영한 전장 중심화(Deepening)로써, 침입해 들어오는 적의 제1선 부대에 대한 타격뿐만 아니라 장거리 첨단기술(high-tech) 무기를 활용하여 후속 제대를 동시에 타격한다는 개념이었다. 이 교리는 기존 기동전 모델보다 적극방어가 소모전 성격을 띠며 초기 전투 외 차기 작전에 대한 개념 미발전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82년 야전교범 100-5 『작전』의 개정판에서 적진 후방 깊숙한 곳에 대한 공습, 공세 행동, 기동, 그리고 기습의 역할을 추가하였다. 즉, 중심 전투(Deep Battle), 광역 전장(Extended Battlefield), 공지 전투(Airland Battle) 등 개념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sup>119)</sup>

1990년대 사막의 폭풍작전(Desert Storm) 작전 교훈이 반영되어 공지작전(Air Land Operations)으로 발전하였다. 미군은 첨단기술을 전장에 직접 적용하고 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작전 운용의 기본개념은 물론, 군사교리나 군사전략 등 국방운영 전반에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추진하였다. 1996년 미 합동참모본부는 『합동 비전 2010』을 발간했는데, 이 문서는 기술 변화가 군사작전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수준의 수행능력을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미래의 군사 효율성의 핵심을 정보 우위로 보고 우세 기동, 정밀 교전, 전 차원의 방호, 그리고 집중 병참이라는 네 가지 작전개념을 강조하였다.<sup>120)</sup>

미군은 21세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계와 작전개념, 전력구조를 변화

117) 육군본부, 『파월 육군 종합전사』 제1권(서울: 육군본부, 1969), pp.102-104.

118) 채명신, 『채명신 회고록』, p.506.

119) 새로운 교리의 등장은 새로운 세대의 무기를 개발하고 획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공지 전투 교리적용 이후 AH-64 아파치 공격헬기, 퍼싱-2 탄도미사일, 다연장로켓체(MLRS), 육군전술미사일체계(ATACMS), 포퍼헤드 야포 발사형 정밀유도무기를 개발했다.

120) 토머스 G. 맨켄, 김수빈 역, 『궁극의 군대』(서울: 미지북스, 2018), p.271.

시켰다. 일례로 1999년 미 대서양사령부(Atlantic Command)를 합동군사령부(JFCOM: Joint Forces Command)로 개편하여 합동 개념 발전 및 시행, 합동훈련, 합동 상호운용성 및 통합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2000년대에 미군은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비전 2020』을 마련하여 미군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조하였다.<sup>121)</sup>

미군의 전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리의 발전과 변화는 국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군은 미군의 혁신에 기반한 군사교리 발전에 『군사 기본교리』를 한국적 군사 사상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노력하였다.<sup>122)</sup> 1990년 한국국방연구소(현재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 국군의 『군사 기본교리』를 최초로 연구하였으며, 합동참모대학의 연구와 각 군 교육기관, 주요 간부들의 검토를 거쳐 1994년 12월 합동 교범 0-1 『군사 기본교리(초안)』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미군의 군사교리를 모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군은 5차에 걸쳐 개정작업을 하여 2022년 8월 합동 교범 0 『군사 기본교리』를 발간하였다.<sup>123)</sup>

개정된 『군사 기본교리』는 전쟁의 기본고려사항 8대 요소를 선정하여 국가가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함에 있어 개념적으로만 인지하던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적 고려사항을 국군의 사상과 여건에 맞도록 명시화했다. 또한 국군의 총력방위 수행체제를 민·관·군 통합방위 개념에 의한 총력전 방위 수행체제로 체계화하였으며, 기존 합동 작전 계획 수립 시 적용하였던 미군의 합동작전 기획 및 시행체계(JOPES: Joint Operation Planning and Executive System)를 대신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밀기획 절차와 각 군 계획수립절차를 종합하여 국군 실정에 맞는 합동전력계획 수립 절차를 재정립하였다.

현재 국군은 합동성을 강조하여 합참 및 각 군



〈사진 3-12〉 군사 기본교리  
※ 출처: 합동군사대 제공자료(2023.1.).

121)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2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122) 노훈 외, “미군의 군사교리 혁신개념과 한국군의 접근 방향,” 『국방논집』 제42호(1998 여름), pp. 219-223.

123) 합동군사대학교, 『합동 교리 회보(23-1호)』(논산: 합동군사대학교, 2023), pp.14-17.

별 특색있고 연계된 교리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합참은 합동 교리의 연구발전에 노력하며 군사 기본교리의 한 축으로서 합동기준 교범, 합동 운용 교범, 합동 참고 교범 등 합동 교리의 체계를 갖추고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합참지침 및 합동 작전계획 수립 등 군사행동의 기준, 합동군 운용 및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에 지침 제공, 합동군 사과의 동일화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 신개념 및 기술을 시험·평가·운용하기 위한 근거, 미래 전쟁에 대비한 합동군 발전 및 전략구상의 출발점 제공이라는 합동 교리의 역할에 부합된 교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각 교리 문헌의 정의는 아래 <표 3-9>와 같다.

<표 3-9> 국군의 교리 문헌 정의

교리 문헌	정 의
합동 교리	합참의장이 승인한 최상위 군사교리로서 2개 군 이상의 군사력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공한다. 합동 교리는 군사 기본교리, 합동기준 교리, 합동 운용교리로 구분한다.
군사 기본교리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발전된 최상위 군사교리로서, 합동기준 교리와 합동 운용교리 및 각 군 교리에 군사력 운용의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공한다.
합동기준 교리	합동참모본부의 편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분류한 교리로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제 요소들의 노력과 효과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공한다.
합동 운용교리	합동기준 교리를 근거로 작전 형태 또는 분야별로 분류한 교리로서, 합동작전 수행 및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공한다.
합동 교범	합동 교리를 수록하여 합참의장이 승인한 간행물로서, 합동 기본 교범, 합동기준 교범, 합동 운용 교범, 합동 참고 교범 등이 포함된다.
합동 참고 교범	합동 교범을 적용하는 데 참고할 사항 또는 합동 교범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사항 등을 기술한 간행물을 말한다.
각 군 교리	군사 기본교리의 개념을 토대로 합동기준 교리와 합동 운용교리의 원칙과 지침, 그리고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된 교리를 말한다.

※ 출처: 합동참모본부 제공자료(2023.1.).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서는 군사 기본교리를 토대로 교범을 발간하여 운용하고 있다.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합참에서는 기본 교범인 『군사 기본교리』 1종과 『합동 인사』 등 기준 교범 6종, 『합동 의무지원』 등 운용 교범 28종, 『합동군대부호』 등 참고 교범 2종을 발간하여 운용하고 있다. 육군은 야교 0 『육군』 등 기본교범 6종, 『지휘 통제』 등 기준 교

범 7종, 『국지도발대비작전』 등 운용 교범 129종, 『전술 통신체계』 등 참고 교범 96종 등 총 238종을 발간하여 운용하고 있다.

해군은 기본 교범으로 『해군 기본교리 0』과 『해군인사』 등 기준 교범 6종, 『대함작전』 등 운용 교범 28종, 『전투 및 작전 스트레스 관리』 등 세부 운용 교범 146종, 『해군 군대 부호』 등 참고 교범 6종, 『해군교리연구 실무지침서』 등 참고도서 22종 등 209종을 발간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군은 기본 교범인 『공군 기본교리 0』과 『인사』 등 기준 교범 6종, 『의무』 등 운용 교범 27종, 『공군 군사용어 사전』 등 참고 교범 2종, 『KAOC 운영』 등 전술 교범 100종 등 총 136종을 발간하여 운용하고 있다.<sup>124)</sup>

해병대는 기본교범인 『해병대 기본교리 0』, 『해병대 인사』 등 기준교범 5종, 『해병사단』 등 운용교범 32종, 『상륙전사』 등 참고교범 6종 등 44종을 발간하여 운용하고 있다.<sup>125)</sup>

육군은 교육사령부 예하에 교리 발전부를 두고 교리 분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육군 교리 발전부는 교리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교리와 교범의 연구 및 학교 교리사업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중점사항으로 교리·교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야전과 연계된 교리발전을 도모하며, 교리발전을 선도하는 군사학술연구체제를 정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교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리발전체계, 야전교범체계, 기술교범체계 등의 교리 교범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상군 기본교리』를 『육군 기본정책서』와 연계시켜 교리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1963~1998년까지 『작전요무령』을, 1999~2004년까지 『지상작전』을,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상군 기본교리』를 지상 작전의 기본이 되는 육군의 최상위 교범으로 삼아 지상 작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지상군 관점에서 작전환경 변화 및 위협을 분석하고, 한반도에서의 도발 양상 및 전쟁 양상을 전망함으로써 지상 작전 수행개념, 작전범주별 지상 작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육군은 합동성과 미래전장에 대비한 교리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발전단계를 구체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교리발전의 영향요소 및 소요를 파악한 후 육군의 교리정책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상정했다. 첫째, 미래전 대비 교리의 연구·발전이다. 세부적으로 지상전 개념 구현을 위한 교리, 군구조 개편과 연계한 교리, 새로운 작전 수행개념 발전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 교리를 구축한다. 둘째, 전투력 운용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교리발전이다. 남북대치 상황 및 국제

124)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리정보센터 제공자료(2023.4.).

125) 해병대사령부 제공자료(2023.5.).



정세의 변화 등 현존위협 대응 교리를 발전시키고,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리, 그리고 육군이 익숙한 교리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통해 전투력 운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리를 발전시킨다. 셋째, 교리발전을 위한 제도 보완이다. 교리발전소요 창출을 체계화하고, 교리발전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키며, 육군에 적합한 교리연구를 담당할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육군의 고유 교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육군교육사령부는 미 육군교육사령부와 1984년부터 전투발전회의를 통해 양국 간 교리, 리더십, 전력, 교육훈련 분야의 전투 발전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2015~2019년간 육군교육사령부와 미 육군교육사령부 간 연례교리발전회의 시행 현황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대한민국 육군과 미 육군 간 연례교리발전 회의 개최 현황

제목	핵심내용	
	한 측	미 측
제29차 한·미 연례회의 (2015,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체계 및 학교교육 혁신 소개</li> <li>• 군 리더십 및 군대윤리 집중 교육 소개</li> <li>• 교리발전 체계 및 현황 소개</li> </ul> * 참가: 교리부장 등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Army University’ 소개</li> <li>• ‘Human Dimension(인간영역)’ 소개</li> <li>• 교리 2015 평가</li> </ul> * 참가: 7명
제30차 한·미 연례회의 (2016,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교리의 상호 운용성 향상</li> <li>• 지상작전 기준(기본) 개념 소개</li> <li>• 비대칭전 수행방안</li> <li>• 사단급 LVC 통합훈련 방안</li> </ul> * 참가: 교육사령관 등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측 교리발전 절차 및 연합교리 발전</li> <li>• 임무형지휘의 과거, 현재, 미래</li> <li>• 미 육군운용개념 소개</li> <li>• 비대칭전단(戰團) 소개</li> </ul> * 참가: 6명
제31차 한·미 연례회의 (2017,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투발전 소요기획 체계소개</li> <li>• 교리 평가체계 소개</li> <li>• 대대장 리더십코칭 소개</li> <li>• 한국군 부사관 교육체계 소개</li> </ul> * 참가: 교리부장 등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투발전체계(능력을 위한 개념) 소개</li> <li>• 미 FM 3-0 「작전」 소개</li> <li>• 미 육군 연례 리더십 수준분석 소개</li> <li>• 부사관 2020 소개</li> </ul> * 참가: 5명
제32차 한·미 연례회의 (2018,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봇 전투발전체계 및 Next Game Changer 소개</li> <li>• 육군 과학화훈련체계 소개</li> <li>• 도시지역작전 소개</li> </ul> * 참가: 교육사령관 등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육군 미래사령부 소개</li> <li>• 미래 작전환경분석(G-2 기능) 소개</li> <li>• 다영역작전 소개</li> </ul> * 참가: 7명
제33차 한·미 연례회의 (2019,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단급 과학화 전투훈련체계</li> <li>• 교리발전 / 활용성 개선</li> </ul> * 참가: 교리부장 등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가시티 작전</li> <li>• 미 학습개념서(CALL) 체계</li> <li>• 미 미래사령부</li> </ul> * 참가: 6명

※ 출처: 육군교육사령부 제공자료(2022.11.).

해군은 1995년 전투발전단을 창설하여 해군교리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교육사령부에서 본격적인 해군교리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기준교리 발전 등을 주도했다. 해군 교리체계는 기본교리, 기준교리 운용교리, 참고교리, 기술교리 등으로 구성된다. 해군은 해양안보 환경 분석과 전망을 통하여 활동영역과 역할이 확대되는 미래 해군의 임무와 역할을 식별하고 미래지향적 한국 해군의 작전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교리를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군은 최상의 항공우주력 운용을 보장하는 교리발전을 위해 교리발전전문연구센터를 운영하여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교리발전전문연구센터의 운영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군사선진국의 교리발전 추세, 전쟁 경험, 위게임 및 전투 실험 결과, 합동성, 최신 과학기술 발전 추세 등을 반영한 항공 우주력 교리를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병대는 1987년 해병대사령부 재창설과 동시에 교리업무를 주관하는 교리과가 편성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전투발전실을 신편하여 교리를 포함한 전투발전 업무 전반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2009년부터 해병대는 합참, 미 해군·해병대 교리와 연계된 전투발전 업무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해 한국 해군·해병대 간 교리발전세미나를 격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고려한 상시 준비된 전략기동부대로서 역할에 수반하는 교리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 및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간 교리 분야의 발전은 상호 교류를 통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실천적 훈련에 접목하여 점검하고 숙달시키는 노력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육군교육사령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연례회의 약정을 체결하여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미 교육사령부의 개념·교리·번역에 관련된 요소 및 훈련계획을 공유하고 있다. 한미 간 정책, 전략, 교리 등 다양한 수준별 교류와 공유노력을 통해 국군의 독자적인 교리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한미 간 전투력 발전 및 동맹 정신을 높이고 있다.

국군은 6·25전쟁기와 1950~1960년대 번역 중심의 미군 교리 도입기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교리체계를 형성하였으며, 1970~1980년대 미군 교리체계의 변화를 주목하여 국군의 성격에 맞도록 모방하였다. 1990년대 이후 번역과 모방의 수준을 넘어, 국군 고유의 교리체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여 일정 수준의 독자적인 교리체계를 갖추었다. 국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을 바탕으로 합동성이 강화되고 군사환경 변화에 적합한 국군의 교리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제2장 북한 위협 관리

북한은 1993년과 2003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1차·2차 북핵위기를 일으켰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한미 양국은 동맹관계와 6자회담을 통해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켰다.

### 제1절 북핵위기와 한미공조

#### 1. 제1차 북핵위기와 한미공조

##### 가. 제1차 북핵위기와 미·북 고위급회담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처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2호가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된 직후였다. 이 위성사진으로 북한이 1987년 이후 자체적으로 설계해 가동 중인 5MW급 연구용 원자로 외에 50MW·200MW급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을 새로 건설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sup>1)</sup>

북한이 비밀리에 건설한 영변의 핵시설이 공개되자 미국은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안전조치협정」<sup>2)</sup>에 가입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하라고 촉구하였다. 북한은 이미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했고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sup>3)</sup>에도 가입한 바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1)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3.

2)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협정」은 세 가지 협정으로 나뉜다. 「부분안전조치협정」은 특정 시설이나 공장만을 대상으로 체결되고, 「전면안전조치협정」은 국가 전체의 모든 핵연료주기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자발적 안전조치협정」은 핵보유국이 IAEA와 자발적으로 체결해 지정된 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이해와 실제』(서울: 국방부, 2018), p.84.

핵시설이 국제적으로 공개되자 북한은 1990년 2월 IAEA 이사회에 「안전조치협정」 가입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그 전제조건은 핵보유국의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위협 금지,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철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이었다. 1990년 11월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주한미군 핵과 동시 사찰 시 IAEA의 사찰을 수락하겠다.”라고 밝혔다.<sup>4)</sup>

남북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으며, 1992년 1월 20일 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발효시켰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체결되고 NPT 의무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거세지자 북한은 1992년 1월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다.<sup>5)</sup>

4개월 후인 1992년 5월 4일 북한은 보유한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IAEA는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근거해 1992년 5월 25일부터 1993년 2월 6일까지 6회에 걸쳐 임시사찰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북한이 처음 IAEA에 제출한 핵시설 리스트에는 가장 중요한 재처리시설이 누락되어 있었다. IAEA가 미식축구장 두 개 크기의 거대한 핵시설을 신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자, 북한은 뒤늦게 이 핵시설을 ‘방사화학실험실’이라는 명칭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와 임시사찰 결과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Significant Discrepancy)’가 발견되었다. 북한은 영변의 5MW 원자로의 훼손된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신고하였다.<sup>6)</sup> 이에 대해 IAEA는



〈사진 3-13〉 영변의 5MW 원자로  
※ 출처: 『2020 국방백서』

3) 핵확산금지조약(NPT)은 5대 핵무기 보유국(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을 제외한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도입·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평화적인 핵 이용은 허용하고 있다.

4) 이강래, 『핵보유국 북한』(서울: 폴리티쿠스, 2014), pp.97-98.

5)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서울: 외교통상부, 2009), pp.143-147.

6)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에는 상당한 양의 연소되지 않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다. 핵개발국은 재처리공정을 통해 이를 화학적으로 분리한 다음 금속화과정을 거쳐 핵무기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함형필,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서울: 한국군방연구원, 2009), p.17.

추출한 플루토늄이 그램(g) 단위가 아니라 킬로그램(kg) 단위이며, 횟수도 1회가 아니라 3회(1989·1990·1991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초보고서에 누락된 미신고시설 두 곳을 지적하고, 이곳이 재처리한 핵폐기물 저장소로 의심된다면서 특별사찰을 요청하였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끝까지 거부하자 한미 양국은 1992년 1월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서명과 IAEA 사찰 수용에 맞추어 중단했던 팀스피리트(TS) 연습을 1993년 3월 초에 강행하였다. 북한은 예전부터 이 연습을 “북침을 위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으며 매년 팀스피리트 연습 기간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해 왔었다. 1993년에 팀스피리트 연습이 재개되자 북한은 3월 8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4일 뒤인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sup>8)</sup> 같은 날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은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서 ‘3월 12일부로 NPT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sup>9)</sup>

〈표 3-11〉 북한의 핵개발과정(1950년대~1990년대 초반)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소, 조·중 원자력협정 체결</li> <li>• 소련 ‘두브나 핵연합연구소’에서 핵관련 기술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변 원자력 단지 조성착수</li> <li>• 연구용 원자로 도입</li> <li>• 영변 임계로 (제1원자로) 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의 정련-변환-가공기술 집중연구</li> <li>•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을 자체 기술로 달성</li> <li>• 5MW 원자로 (제2원자로) 착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실용화, 핵개발체계에 완성 에 주력, 우라늄 정련변환시설 운용 시작</li> <li>• 태천에 200MW급 원자로 착공</li> <li>•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시설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 완성</li> <li>• 핵무기 1-2개 제조 분량의 플루토늄 추출 추정</li> </ul>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219.

7) 이강래, 『핵보유국 북한』, p.99.

8)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원광군사논단』 제3호, 2007, pp.100, 257.

9) 외교부장 김영남,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1993.3.1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pp.129-130.

## 1) 제1·2단계 미·북 고위급회담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당시에 탈퇴 번복의 조건으로 팀스피리트(TS) 연습의 영구 중지, 남한 내 미군의 핵무기·핵기지 공개, 북한에 대한 핵위협 해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 등을 제시했었다. 즉,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도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3월 29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촉구하였다.<sup>10)</sup>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 핵비확산체제 유지의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북 직접협상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1993년 4월 22일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과 NPT 탈퇴선언으로 야기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북한과의 회담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북한은 4월 22일 미국의 고위급회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sup>11)</sup>

미국과 북한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먼저 1993년 5월 17일과 5월 21일 제1·2차 예비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6월 2일~11일에 뉴욕에서 제1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제1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5개 항의 공동발표문에 합의하였다. 합의사항은 ①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위협 및 사용금지 보장, ② IAEA 전면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 보장, 상대방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③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 ④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지속, ⑤ 북한의 NPT 탈퇴 효력 발생의 임시 정지 등이었다.<sup>12)</sup> 북핵문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달는 상황에서 미·북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이 발효되기 하루 전에 NPT 탈퇴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데 합의했던 것이다.<sup>13)</sup>

제2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은 1993년 7월 14일~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IAEA 사찰문제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새로운 안건으로 현재 가동 중인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전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sup>14)</sup> 제2단

10)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15.

11) Department of State, “DPRK/US: Let’s Talk(1993.4.22.)”, 박명림·박용수 편, 『북핵문제사료집』II (서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2019), pp.133-134.

1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p.47.

13)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258.

14) 원자로는 중성자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재, 노심을 냉각시키고 증기를 생산하는 냉각재, 중성자수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감속재와 냉각제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원자로 형태를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감속재와 냉각재로 경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수로형 원자로’(LWR), 중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중수로형 원자로’(HWR), 그리고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할 경우에는 ‘흑연감속 원자로’라고 불린다.

계 회담 결과 양국은 경수로 도입, IAEA 안전조치 이행, 남북대화 재개 등 5개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2단계 미·북회담에서 북한이 핵사찰 관련 IAEA 사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IAEA와 협상할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NPT 잔류가 기정사실화되었다. 또한 북한·IAEA 협상과 남북대화가 미·북회담 지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됨으로써 IAEA의 대북사찰단 파견과 남북 간 특사교환 논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sup>15)</sup>

제2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에 따라 1993년 8월 3일~10일 IAEA 사찰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핵시설 감시장비를 재보수했지만, 북한이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8월~9월에 북한과 IAEA 사이에 사찰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북한이 IAEA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IAEA는 1993년 9월 23일 정기이사회와 10월 1일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IAEA 사찰활동 제한으로 「안전조치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에 전면적인 임시사찰·일반사찰 수용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10월 5일~8일로 예정된 IAEA와의 사찰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북한의 거부로 IAEA의 사찰이 제한되자 유엔총회는 11월 1일 「안전조치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IAEA에 즉각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였다.<sup>16)</sup> 12월 6일 한스 블릭스(Hans M. Blix)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안전조치협정」이 더 이상 북한 핵의 평화적 사용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하였다.<sup>17)</sup>

미국 정부는 1994년 3월 19일 더 이상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21일 긴급 개최된 IAEA 특별이사회도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의하였다.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영국·프랑스·러시아 등과 협의했고, 결국 3월 31일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대체해 북한의 IAEA 사찰 허용을 촉구하였다.<sup>18)</sup>

또한 유엔 제재와 미국의 조치에 대해 북한이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고려해, 미 국방부는 6월 중순에 한반도에 전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994년 6월

15)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pp.47-50.

16)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pp.64-65.

17) Department of State, “Principal’s Committee Meeting on North Korea, White House Situation Room(1993.12.6.)” 박명림·박용수 편, 『북핵문제사료집』II, pp.160-162.

18)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259.

16일 북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과 국무·국방장관, 합참의장, 중앙정보국장 등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샬리카시빌리(John Shalikashvili) 합참의장은 대북제재와 병행해 실시할 한반도 전력증원 3개 방안을 보고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토의를 하고 있는 중에 카터(James E. Carter Jr.) 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방문에 관한 긴급연락이 도착하였다. 이를 계기로 군사적 조치 논의는 보류되었고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sup>19)</sup>

## 2)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

1994년 5월~6월에 북핵문제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급반전되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6월 15일~18일에 직접 판문점을 건너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는 평양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일성이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영변의 모든 핵활동을 동결할 것과 협상은 북한 핵위협의 영구 제거를 위한 것 이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카터와 김일성은 6월 18일에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제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완전한 핵투명성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 사찰은 미국의 경수로 제공 약속과 핵무기 불사용 보장 시 논의가 가능하며, 미·북대화가 계속되는 한 IAEA 사찰관과 사찰장비의 북한 잔류를 허용하고, 제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을 6월 22일 개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sup>20)</sup>

카터-김일성의 회담 결과를 토대로 1994년 7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이 시작되었으나 7월 8일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미 국무부는 7월 9일 정보분석을 통해 김정일이 기존의 경제정책과 미·북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의 입장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sup>21)</sup> 그로부터 보름 뒤인 7월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북대화와 남북대화를 별개로 진행시켜야 하며 미국에 다시 한번 제네바에서 회담을 재개해 일괄적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2)</sup>

19) 윌리엄 페리 외 저, 박건영 외 역, 『예방적 방위전략: 페리 구상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서울: 프레스 21, 2000), pp.195-196.

20)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261.

21) Department of State, “DPRK: Death of Kim Il Sung(1994.7.9),” 박명림·박용수 편, 『북핵문제사료집』II, pp.241-242.

22) Department of State, “DPRK: In His Farther’s Shoes(1994.7.25),” 박명림·박용수 편, 『북핵문제사료집』II, pp.248-250.



이후 양국은 8월 5일 제네바에서 다시 제3단계 1차 미·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했고 8월 12일 주요사안의 포괄적 타협안에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은 미북 연락소 설치, 경수로 지원, 폐연료봉 밀봉 보관, 대체에너지 보장 등 4개 항이었다. 9월 23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된 제3단계 2차 미·북 고위급회담에서는 협상과정을 거쳐 좀더 진전된 타협이 이루어졌다.<sup>23)</sup>

북한은 카터와 합의한 대로 미·북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개발을 중단하는 데 이미 동의한 상태였다. 제네바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한 양측은 이전에 논의된 합의사항에 따라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영구적 해결책의 핵심은 북한이 현대적인 경수로를 제공받는 대신에 흑연감속제를 사용하는 중수로시설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의 협상 쟁점은 북한 핵시설 전반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수용 여부와 경수로를 제공받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기존 원자로 가동 중단으로 초래될 에너지 부족분에 대한 보상책이었다.<sup>24)</sup>

미국과 북한은 3개월이 넘는 협상 끝에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미·북 기본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10월 21일 「미·북 기본합의문」의 내용을 보고받고 협상 대표단에게 서명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하였다.<sup>25)</sup> 제네바 합의문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양측에 구속력을 갖는 의무조항이 포함된 사실상의 조약이었다.<sup>26)</sup>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2〉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요내용(1994.10.21.)

분야	합의내용
핵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은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을 경수로발전소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력한다.</li> <li>•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 2,000MW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다.</li> <li>• 그 대가로 북한은 기존 원자로(5MW 원자로와 건설 중인 50MW, 200MW 포함)와 관련시설(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며 그 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지속적인 감시를 허용한다.</li> <li>• 5MW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 후 핵연료봉은 경수로 건설기간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이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li> <li>• 미국은 경수로 발전소가 가동되기 전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한다.</li> <li>•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를 완료한다.</li> </ul>

23) 돈 오버도퍼 저, 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서울: 길산, 2002), pp.511-512; 조민·김진하, 『북핵 일지 1955~2009』(서울: 통일연구원, 2009), p.13.

24) 돈 오버도퍼 저, 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 pp.512-513.

25) Department of State, “DPRK: Green Light for Signing(1994.10.21.),” 박명림·박용수 편, 『북핵문제사료집』II, pp.265-267.

26) 돈 오버도퍼 저, 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 pp.518-519.

분야	합의내용
정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아간다.</li> <li>• 양측은 합의 3개월 내에 통신 및 금융거래에 관한 제한을 포함해 무력 및 투자제한을 완화해 나간다.</li> <li>• 양측은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장차 대사급으로 격상시킨다.</li> </ul>
비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li> <li>•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li> <li>•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li> </ul>
비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은 국제적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li> <li>•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li> <li>• 경수로 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IAEA의 정기·비정기사찰을 재개한다.</li> <li>• 북한은 경수로의 중요부분 완공 후 핵심부품 도착 이전에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li> </ul>

※ 출처: 「미·북 기본합의문」(1994.10.21.).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은 1995년 3월 9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북한이 흑연감속로 2기를 동결하는 대가로 1,000MW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KEDO는 경수로 1기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대체 에너지로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는 임무, 북한의 폐연료봉 처리 임무, 기존 핵시설의 해체에 관한 임무도 담당하였다.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1995년 9월 3일 미국의 원자로기술단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도착해서 북한 기술단과 만나 재처리문제를 협의하고 경수로사업을 시작하였다.<sup>27)</sup> 그리고 KEDO와 북한은 1995년 12월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1996년 4월 IAEA 감시하에 8,000여 개의 사용 후 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을 개시하였다. 1997년 8월 함경남도 신포지역에 경수로 부지공사가 착공되었고, 2000년 2월부터 한국형 원자로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2002년 10월까지 약 40%의 공정을 보였다.<sup>28)</sup>

27) Department of State, “US Spent Fuel Team in North(1995.9.5.),” 박명림·박용수 편, 『북핵 문제사료집』II, pp.278-279.

28)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261.

제1차 북핵위기의 해결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은 양자(兩者)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는 1994년 10월 미·북 양국이 서명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였고, 두 번째는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핵심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1995년 3월에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였다. 양국은 이 양자관계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핵문제에 대한 단계별 이행절차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냈다. 이 규칙의 핵심은 당사자 중 한쪽이 신뢰형성 조치를 취하면 다른 한쪽이 뒤이어 신뢰형성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 규칙은 이후 제2차 북핵위기의 해결과정에서 다시 적용되었다.<sup>29)</sup>

#### 나. 제1차 북핵위기 시 한미공조

한미 양국은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하기 약 3년 전인 1990년 11월 13일~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IAEA의 안전조치 체제하에 두기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991년 1월 17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보장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비핵국가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하였다. 1991년 9월 27일 미국의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은 전 세계에 배치된 지상·해상발사 전술핵무기<sup>30)</sup>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31)</sup>

한미 양국은 1990년 중순부터 북한의 핵문제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연결시켜 그 해법을 도모하였다. 즉,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과 핵사찰 수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을 추진하였다. 1991년 미국의 전술핵 폐기 선언과 소련의 상응조치에 따라 국제적으로 핵감축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런 가운데 1991년 11월 8일

29) 라몬 파체코 파르도 외 저, 권영근 외 역, 『북한 핵위기와 북·미 관계』(서울: 연경문화사, 2016), p.75.

30)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처음 배치한 것은 1957년 12월이다. 이때 최초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승인 아래 주한미군의 어네스트 존(Honest John) 미사일과 280mm 장거리포에 핵탄두를 장착했다. 1970년대 초에 베트남이 패망의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핵무기를 증강해 1972년 당시 한국에 최대 규모인 763개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한 카터 행정부 시기에 250개로 감축되었고, 1989년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에는 약 100개로 감축되었다. 돈 오버도퍼 저, 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 pp.384-386.

31) 돈 오버도퍼 저, 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 p.388.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사자 간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5일에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 간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뒤이어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2월 18일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국 내 핵부재를 천명하였다. 우리 측의 핵부재선언에 호응해 북한은 12월 26일 제1차 핵 관련 대표접촉에서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 결과 남북은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약칭,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직후 북한은 IAEA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의사를 표명하였다.<sup>32)</sup>

〈표 3-1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내용(1991.12.31.)

-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비핵화 8원칙
-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에너지를 이용함
-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 금지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실시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출처: 김계동 외, 『한미관계론』(서울: 명인문화사, 2012), p.390.

한편 북한은 1993년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핵위기를 조성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지금까지 대결 위주의 남북관계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33)</sup>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김영삼 정부는 북핵문제가 민족내부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사안이라는 양면성을 감안해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과 함께 미국 등 핵심 우방국가들과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특히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의 NPT 복귀, IAEA 사찰의무의 완전한 이행,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압력과 설득의 양면전략을 구사한다는 기본전략을 수립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입각해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3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pp.10-11.

33)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44.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동참하되 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34)</sup>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미국과 직접협상을 요구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라는 중대한 안보현안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전제로 핵문제에 한해 미·북 간 직접협상을 인정하였다.<sup>35)</sup>

또한 김영삼 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북협상을 포함한 모든 대화창구를 활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다만 정부는 미·북 고위급회담이 핵문제 논의에 국한되어야 하며 미·북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였다.

한미 양국은 1993년 6월에 개최될 제1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을 NPT체제에 일단 잔류시키고 IAEA 핵사찰 지속의 근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구체적인 태도변화에 따라 대북 유인조치를 취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한다는 기본목표를 유지하되 북한의 NPT체제 잔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미 양국의 기본목표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협상 시 북한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채택하였다.<sup>36)</sup>

미국과 북한은 1993년 7월 14일~19일에 제네바에서 제2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을 가졌고, 이 회담에서 북한이 IAEA 핵사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IAEA와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NPT 잔류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IAEA의 협상과 남북대화가 미·북회담 지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됨으로써 IAEA의 대북사찰단 파견과 남북 특사교환 논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제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이 예정되었던 9월 하순까지 IAEA의 대북사찰과 남북 대화에 진전이 없자 제3단계 미·북회담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1993년 11월 12일 미국에 북한 핵문제와 미·북관계 개선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package deal)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미·북회담에서 포괄적 해결책에 입각할 경우 남북대화가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였다. 이후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3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IAEA의 대북사찰과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3단계 미·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34)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pp.91-92.

35)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47.

36)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p.94.

점에 합의하고 북핵문제를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다시 1993년 12월 7일 전화협약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목표와 원칙은 확고히 견지하되,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북한이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포함한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허용하고 남북 대화에 응할 경우, 1994년도 팀스피리트(TS) 연습을 중지하고 제3단계 미·북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sup>37)</sup>

한미 양국은 1994년 2월 21일 IAEA 정기이사회의 개최 시점을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의 마지막 시한으로 합의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승주 외무부장은 2월 9일~13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Warren M. Christopher) 미 국무장관 등 고위관리들을 만나 북한을 위협하기보다는 유인하는 대응전략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북한은 1994년 2월 15일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승주 외무부장은 다시 2월 17일~19일 미국을 방문해 남북대화과 제3단계 미·북회담의 일정과 주요안건을 협의하고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2월 18일 “북·미 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IAEA의 핵사찰이 충실하게 실시되고 남북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구두친서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 친서에서 “그동안 한미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대화 노력에 의해서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양국 간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진전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진전이 IAEA의 대북사찰과 함께 제3단계 미·북회담의 전제조건임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8)</sup>

미국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였다. 1994년 4월 20일 페리(William J. Perry) 미 국방장관은 이병태 국방부장과 만나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북제재와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sup>39)</sup>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페리 국방장관은 4월 20일 청와대 회담에서 북한과

37)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pp.96-98.

38)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pp.104-105.

39) Department of State, “SECDEF Meeting with ROK Minister of Defense Rhee(1994.4.20.),” 박명림·박용수 편, 『북핵문제사료집』Ⅱ, pp.203-204.

대화를 통한 해결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강조하였다.<sup>40)</sup>

한편 미국은 한국·일본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2단계 대북 제재안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북한은 6월 13일 “IAEA에서 즉각 탈퇴하고, NPT 특수지위 하에서 안전조치의 연속성 보장 불가, 대북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선언하였다. 3일 후 IAEA는 북한에 대한 모든 기술지원을 중단했고, 미국은 6월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접한 북한은 1994년 5월~6월을 기점으로 위 기상황을 재해석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새로운 평화회담을 제안하였다.<sup>41)</sup>

이후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타결함으로써 1993년 6월 제1단계 미·북 고위급회담 이래 19개월에 걸쳐 진행해온 핵협상을 일단락하였다. 제네바 합의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미·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한반도의 냉전이 사실상 종식되고, 이처럼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한 대립구도의 해제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1,000MW 경수로를 공급하기 위해 1995년 3월 19일 국제전소시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서명 이후 북한과 6개월 이내에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노형 선정과 재원 분담문제로 인해 14개월이 지난 1995년 12월에야 북한과 KEDO 사이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를 선정하고 재정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재원의 70%를 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KEDO 총사업 비용 중 일본은 20%, 유럽연합(EU)은 일정분을 기여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은 중유 제공비용과 기타 소요자금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sup>42)</sup>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는 KEDO의 사업 공정이 개시되고 북한의 핵시설 동결이 유지됨으로써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8년에 들어서 북한이 민간수용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금창리 지하시설이 사실상 핵시설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미국은 8월에 이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청하면서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였다.<sup>43)</sup>

40) Department of State, “Official-Informal(1994.4.20.),” 박명림·박용수 편, 『북핵문제사료집』 II, pp.218-221.

41) 윤영관·신성호 엮음,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p.262.

42)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p.147-148.

43) 이현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52-54.

1998년 8월에 금창리 핵의혹 시설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의회는 클린턴 행정부에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이에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해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가 개시되었다. 1998년 2월에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에 근거해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을 수립했고, 이 방안이 페리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였다.<sup>44)</sup>

또한 한·미·일 3국은 대북정책조정그룹(TCOG)<sup>45)</sup> 회의를 창설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목표로 대북정책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였다.

이러한 한·미·일 3국의 공동노력을 바탕으로 1999년 9월에 개최된 ‘미·북 베를린회담’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moratorium)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긴장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이어서 10월 12일에 페리 프로세스의 결과물인 「페리 보고서(Perry Report)」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본격적인 대북관계 개선 노력이 전개되었다. 「페리 보고서」는 제네바 합의를 넘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경제지원, 안전보장, 미·북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 대북 접근을 위한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였다.<sup>46)</sup>

## 2.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 가. 제1~4차 6자회담과 한미공조

제2차 북핵위기는 2002년 10월 3일~5일 켈리(James A. Kelly)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

44)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p.148-149.

45)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은 페리 프로세스가 개시되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되었으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위협 억제와 궁극적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목표로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조율했다.

46)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49. 「페리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해결을 위해 미국 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5개 정책을 건의했다. 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 채택, ② 대북정책 수행을 위한 체제 강화, ③ 대북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미·일 고위조정그룹(TCOG) 존속, ④ 미국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⑤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 대비. 이현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pp.57-58.



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sup>47)</sup>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비롯되었다.<sup>48)</sup>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은 1992년 남북 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다. 미국은 2002년 10월 16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제네바 기본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25일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미·북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sup>49)</sup>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북한의 제네바 합의 위반을 이유로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sup>50)</sup> 이에 반발해 북한은 12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감시·봉인장비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동결되어 있던 영변 핵시설의 가동과 기존에 중단된 핵시설의 건설 재개를 선언하였다. 12월 21일~26일 북한은 동결된 영변 핵시설 중 5MW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사용 후 연료봉 보관수조 등 4개 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 작동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3년 1월에는 IAEA 사찰단원 추방과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준비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IAEA 특별이사회는 2003년 1월 6일 북한의 핵시설 봉인·감시장치 복원과 사찰관 복귀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마침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2월 26일 영변의 5MW 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4월 18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8,000여 개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선언하였다.<sup>51)</sup> 결국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선언으로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한지 약 10년 만인 2003년 1월 10일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다.

47)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광산에서 채광된 우라늄 원석을 잘게 부수어 우라늄과 나머지 광석을 분리하는 제련공정을 거친다. 둘째, 제련공정을 거친 우라늄을 화학물질로 녹인 다음, 용액 속에 우라늄만 침전시켜 추출하는 정련공정을 거친다. 셋째, 침전된 우라늄을 건조해 산화우라늄 결정체인 ‘옐로우 케이크(Yellow cake)’를 만든다. 넷째, 옐로우 케이크를 화학처리해서 원자로의 핵연료봉과 원심분리기의 농축재료를 제조한다. 함형필,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p.112.

48)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57.

49)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264.

50)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57.

51) 조민·김진하, 『북핵일지 1955~2009』, pp.33-34.

## 1) 제1~3차 6자회담

한미 양국은 1993년 3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지속된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북 직접 협상과 한미 정부 간 협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공조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3년 1월 제2차 북핵위기 발생 당시에 한미 양국은 모두 6자회담이라는 다자대화의 틀에 공동으로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공조체계의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켰다.



〈사진 3-14〉 영변 핵시설의 내부모습

※ 출처: 『2022 국방백서』

6자회담에 앞서 북한·중국·미국은 2003년 4월 23일~25일 북경에서 3자회담과 미·북 간 비공식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에 다자회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쳐 5월 25일 한국·일본·러시아가 포함된 다자회담의 수용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미국·일본은 6월 12일~13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와 7월 2일~3일 3자합의에서 다자회담을 확대해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마침내 8월 1일 북한이 6자회담 수용 입장을 최종 발표함에 따라 제1차 6자회담이 2003년 8월 27일~29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6자회담 결과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발표했는데, 회담 참여국들은 ① 6자회담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②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인하며, ③ 6자회담 과정을 지속한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sup>52)</sup> 그러나 북한은 제1차 6자회담 종료 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선(先) 핵포기’ 주장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상황악화 조치로 6자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10월 2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은 핵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어 우방국(吳邦國)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 시 북한이 6자회담 후속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6자

<sup>52)</sup>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266.

회담이 재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53)</sup>

제2차 6자회담은 2004년 2월 25일~28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6자회담에서 각국은 논의수준을 심화시켜 북핵문제 해결원칙, 대북 안전보장, 핵동결 대 상응조치, 실무그룹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회담 참가국들은 ①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공감하고, ② 북핵문제와 관련 관심사에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으며, ③ 차기회담 일정과 실무그룹 구성 등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최초의 서면합의였다.

제3차 6자회담은 2004년 6월 23일~26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초기조치와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3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①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and 초기조치의 조기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② ‘말대 말 및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③ 대화과정의 지속과 차기회담 일정을 합의하고, ④ 실무그룹회의의 조속한 개최와 관련 세부사항(범위·기간·검증·상응조치)을 구체화해서 차기 회담에 건의하기로 합의하였다.<sup>54)</sup>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진행된 제1·2·3차 회담은 6자회담 중에서 참여국 간에 일종의 탐색기였다. 세 차례 회담을 통해 각국은 협상의 틀을 형성하고 이후 논의될 비핵화와 보상방안과 관련해 원칙적 수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기간 중 최대 현안은 한·미·일 3국이 제2차 회담에서 제안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의 핵폐기 원칙<sup>55)</sup>과 관련한 논쟁이었다. 북한은 모든 ‘핵 활동’이 아닌 ‘핵무기’ 개발계획만 포기할 것이며 평화적 핵 활동의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한(Complete)’ 폐기보다 ‘포괄적(Comprehensive)’ 폐기라는 표현을 고수하였다.

한·미·일 3국은 제3차 회담에서 ‘CVID’ 용어 표현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적 검증하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53)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58.

54)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p.267-268.

55)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에서 ‘완전하다(Complete)’는 것은 1차 북핵위기 당시 「제네바 기본합의」와 같이 북한의 핵활동을 동결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미진한 부분을 향후 해결과제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검증 가능하다(Verifiable)’는 것은 합의 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였고, ‘돌이킬 수 없다(Irreversible)’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인적·물적·기술적 하부구조와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뜻이었다. 김계동 외, 『한미관계론』(서울: 명인문화사, 2012), pp.408-409.

투명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제3차 6자회담 이후 미국의 대선 정국 진입을 계기로 회담 재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제4차 6자회담 개최를 지연시켰다.<sup>56)</sup>

## 2) 제4차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제3차 6자회담 이후 북한은 2004년 7월 24일 미국의 ‘선 핵포기 방식(일명, 리비아식 해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8월 16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와 ‘상응조치’ 참여를 주장하고, 10월 22일 6자회담에서 ‘남한 핵물질 실험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제4차 6자회담을 지연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5년 1월 18일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발언했으며 1월 19일 부시 대통령도 2기 취임연설에서 ‘전세계적인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 등의 발언으로 대북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2월 10일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하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일련의 추가조치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3월 10일에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한국내 핵무기 배치를 명분으로 6자회담이 남북 핵무기의 핵군축회담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4월 21일에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북제재시 선전포고로 간주할 방침임을 피력하였다. 5월 11일에는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000개의 인출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sup>57)</sup>

이는 제네바 합의 파기 이후 2003년 1월부터 2년 이상 가동한 5MW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인출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북한은 2005년 8월 이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함으로써 2003년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확보한 플루토늄에 더해 추가로 플루토늄을 확보하였다.<sup>58)</sup>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관련국들과 협력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sup>59)</sup>

6자회담 관련국들의 설득과 2005년 5월~6월 미·북접촉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① 주권 국가 인정, ② 불침 의사, ③ 6자회담 내 미·북 양자회담 수락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김정일은 6월 17일 정동영 특사 방북 당시 “미국이 북한을 인정·존중할 의사

56)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59.

57)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269.

58)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분열성 물질(플루토늄·우라늄)의 확보, 기폭장치의 개발, 핵실험, 투발 수단(미사일 등)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59)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p.159-160.

가 확고하다면 7월 중이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 7월 9일 미·북 간 북경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북한이 다시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은 미국이 6월 22일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자제하고 5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대북 비료·식량 지원 등을 제안함으로써 회담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었다.

약 1년 동안 난항을 거듭한 이후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는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회담에서 합의된 주요내용은 ①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을 담은 공동문건 채택의 필요성 공감, ② 문건내용 관련 비핵화,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 일부 합의 도출, ③ 본국 보고와 이견 절충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후회를 결정하되, 차기 회담은 2005년 8월 29일에 재개하기로 한 것이었다.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는 2005년 9월 13일~19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후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sup>60)</sup>

〈표 3-14〉 「9·19 공동성명」의 주요내용(2005.9.19.)

합의주제	합의내용
북핵 폐기와 대북 안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기로 약속</li> <li>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재래식무기로 북한을 공격·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li> <li>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li> <li>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 논의</li> </ul>
관계정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 존중, 평화적 공존, 관계정상화 추진</li> <li>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과거사·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관계정상화 추진</li> </ul>
국제적 대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교역·투자분야에서 양자·다자간 경제협력을 증진</li> <li>중국·일본·러시아·한국·미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li> <li>2005년 7월 한국의 200만kw 대북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li> </ul>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북아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수단 모색</li> <li>직접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li> </ul>
이행원칙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함</li> </ul>

※ 출처: 김계동 외, 『한미관계론』, pp.412-413; 외교통상부, 『2006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6), pp.33-34.

60)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p.269-270.

제4차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도출한 회의였다.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행동 대 행동’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다른 5개국이 취해 나갈 단계적 조치를 규정하였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을 시행할 것을 공약하였다. 북한의 핵포기 공약에 대한 상응조치로 경제적으로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정치적으로는 미국·일본의 대북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미국은 한국 내 핵무기 부재와 핵무기·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이 핵보유 논거로 주장하는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sup>61)</sup>

#### 나. 제5~6차 6자회담과 한미공조

##### 1) 제5차 6자회담과 「2·13 합의」

제4차 6자회담의 결과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은 다시 위기에 빠졌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15일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련된 거래를 문제 삼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은행을 미국 「애국법(Patriot Act)」 제311조에 의거해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였다.<sup>62)</sup>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2005년 11월 9일~11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에 참가한 북한은 BDA은행 관련 조치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BDA은행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sup>63)</sup> 특히 이 회의에서 북한은 ‘선 대북제재 해제, 후 6자회담 참가’를, 미국은 ‘선 6자회담 복귀, 별도채널에서 금융제재 해제 논의’를 주장하였다.<sup>64)</sup>

6자회담이 진척되지 않자 북한은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였

61)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60.

62) 미국의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조치는 BDA은행 도산을 우려한 예금자들의 대규모 인출사태로 이어졌고, 이에 마카오 당국은 BDA은행 계좌인출을 중단하였다. 북한이 반발한 이유는 계좌인출 중단 조치에 따라 BDA은행 내 북한 관련 계좌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63)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60.

64)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271.

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는 9월 13일 「북한 비확산법」을 통과시켜 북한을 압박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10월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후 10월 9일 마침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에서 실시된 이 핵실험은 진도 3.58 규모 지진파를 기록했는데, 이는 1kt 미만의 폭발력을 보임으로써 부분적인 성공으로 평가되었다.<sup>65)</sup>

미·북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국제사회는 양측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정부는 2006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이라크 상황 악화, 이란 핵문제 등 대내외 정치상황을 고려해 제재·압박정책에서 대화·협상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심각한 에너지·식량·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미국·북한·중국은 10월 31일 북경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는 2006년 12월 18일~22일 개최되었다. 2005년 11월 이후 18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6자회담이 어렵게 개최되었으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 고수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참가국들은 이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 단계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sup>66)</sup> 한편 BDA은행 문제는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미·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에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sup>67)</sup>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007년 2월 8일~13일 북경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과 BDA은행 문제와 관련해 폭넓은 합의를 도출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해 「2·13 합의」를 채택하였다.<sup>68)</sup>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담고 있었으며 이행방안을 최초로 구체화한 합의였다. 참가국들은 「2·13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감시요원을 복귀시키며 핵프로그램 신고를 위해 관련국들과 신고목록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상응해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에 중유 5만 톤을 긴급 지원하고 미·북과 일·북 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13

65)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271.

66)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273.

67)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61.

68)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p.273-274.

합의」는 초기조치 다음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였다. 북한은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며, 다른 국가들은 이에 상응해 중유 100만 톤(초기조치 5만 톤 포함)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sup>69)</sup>

## 2) 제6차 6자회담과 「10·3 합의」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는 2007년 2월 13일 제5차 6자회담에서 타결된 「2·13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은 2007년 2월 2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평양으로 초청함으로써 초기조치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3월 1일~6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기간 중 미·북 간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은 미·북관계 정상화 실무그룹(W/G) 회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미·북 간 외교관계 수립,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5개 분야 실무그룹을 조직했으며 이후에 실무그룹회의를 각각 개최해서 분야별 협의를 진행하였다.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는 5개 분과별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기초로 2007년 3월 19일~22일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동결자금의 송금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한반도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와 상응조치 이행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실질적인 진전 없이 종료되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 합의」를 이행하는데 또 다시 BDA은행 문제에 부딪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미국 내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BDA은행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였다. 4월 10일 미국 재무부와 마카오 당국은 BDA은행 동결자금을 전액 해제한다고 발표했으며, 6월 25일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협력으로 BDA은행 내 북한자금의 송금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BDA은행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sup>70)</sup>

한국 정부는 BDA은행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우선 「2·13 합의」에 따른 중유 5만 톤을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북한에 지원하였다. 북한은 7월 14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 통보와 함께 IAEA 사찰단의 입북을 요청하였다. IAEA 감시·검증단은 7월 14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봉인조치와 감시카메라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처럼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가운데 7월 18일~20일 제6차 6자회

69)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p.161-162.

70)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p.275-276.



담 수석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참가국들은 이 회의에서 비핵화 다음 단계인 신고·불능화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8월 말 이전에 5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9월 초 북경에서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제2차 5개 분야별 실무그룹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다.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는 5개 분야별 실무그룹회의를 토대로 2007년 9월 27일~30일에 개최되었다. 참가국들은 이 회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신고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이행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sup>71)</sup>와 「대적성국 교역법」<sup>72)</sup> 종료 절차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국들은 합의내용을 담아 「10·3 합의」를 채택하였다.<sup>73)</sup>

2007년 제5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2·13 합의」가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비핵화의 1단계 조치였다면, 제6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10·3 합의」는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비핵화의 2단계 조치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 합의에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한 시한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2·13 합의」에 따른 미·북관계 정상화와 일·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약과 대북 중유 지원 이행 공약을 재확인하였다.<sup>74)</sup>

「10·3 합의」에 따라 10월 11일~18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 불능화 전문가대표단은 영변의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완료하였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각 시설의 구체적인 불능화 방법과 분리·제거된 물질의 북한 내 보관·봉인·감시방법을 규정한 「불능화 조치 관련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불능화 실무팀에 의해 불능화 조치가 실제로 11월 5일부터 개시되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이 같은 불능화 조치는 그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비핵화영역으로서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한 북핵시설의 동결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불능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sup>75)</sup>

71) 북한은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여객기(KAL기) 폭파사건 이후 1988년 1월 20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며, 20년 만인 2008년 10월 21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배정호 편저,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서울: 통일연구원, 2009), p.115.

72)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은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가하는 일종의 경제제재로서 1917년에 제정되어 나치 독일에 처음 적용되었다. 주요내용은 전쟁 상대국에 대해 수출·수입·투자 등 경제관계 전반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의 무역·투자·금융 등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외교통상부, 『2008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8), p.28.

73)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p.277-278.

74)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62.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당사국 사이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부분적인 성과도 달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종료된 이후 2009년부터 6자회담 거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발표, 제2차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실험 등을 통해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무력화하였다.<sup>76)</sup>

북한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2003년 8월 처음 개최되었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2009년 이후 북한의 핵문제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발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핵·미사일 위협으로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통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모든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 대응하였다.

〈표 3-15〉 6자회담의 전체 진행과정(2003~2008년)

회차	개최시기	합의내용	중단기간
제1차 회의	2003.8.2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비핵화</li> <li>•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li> <li>• 6자회담 지속 합의</li> </ul>	최초회의
제2차 회의	2004.2.2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li> <li>• 대북 안전보장</li> <li>• 핵동결 대 상응조치</li> <li>• 「의장성명」 채택: 최초 서면합의</li> </ul>	7개월
제3차 회의	2004.6.2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의 초기조치 조기이행</li> <li>• ‘말 대 말 및 행동 대 행동’ 원칙</li> <li>• 실무그룹회의 조속 개최</li> </ul>	3개월
제4차 1단계 회의	2005.7.2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회담의 목표·원칙 채택 공감</li> <li>• 비핵화·안전보장·관계정상화 일부 합의</li> </ul>	1년 1개월
제4차 2단계 회의	2005.9.1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9 공동성명」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 폐기, 대북 안전보장</li> <li>- 미북관계·일북관계 정상화</li> <li>- 대북 에너지 지원</li> <li>-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li> </ul> </li> </ul>	1개월

75)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pp.278-279.

76)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63.

제1절 북핵위기와 한미공조

회차	개최시기	합의내용	중단기간
제5차 1단계 회의	2005.11.9.~11.	• BDA은행 문제로 합의 없이 종료	2개월
제5차 2단계 회의	2006.12.18.~22.	•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 재확인 •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 단계적 조치 • 「의장성명」 채택	1년 1개월
제5차 3단계 회의	2007.2.8.~13.	• 「2·13 합의」 채택 - 실무그룹 가동 개시 - 영변 핵시설 봉인, IAEA 사찰관 복귀 - 긴급 에너지 대북 지원 - 미북·일북 양자대화 개시	3개월
제6차 1단계 회의	2007.3.19.~22.	• BDA은행 북한 동결자금 송금문제로 합의 없이 종료	1개월
제6차 2단계 회의	2007.9.27.~30.	• 「10·3 합의」 채택 - 북한의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 미국의 대북제재조치 단계별 해제 - 미북관계·일북관계 정상화 - 중유 100만톤 등 경제·에너지 대북 지원	6개월
제6차 수석대표 회의	2008.7.10.~12.	• 한반도 비핵화 검증체제 수립 • 6자회담 틀 내에 감시체제 수립 • 핵 포기과 경제지원을 위한 시간계획 작성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논의	10개월
제6차 수석대표 회의	2008.12.8.~11.	• 비핵화 검증인증서 도출 협의 • 성과 없이 종료	최종회의

※ 출처: 조민·김진하, 『북핵일지 1955~2009』(서울: 통일연구원, 2009)를 토대로 재구성.

## 제2절 핵·미사일 위협과 확장억제

###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 가. 핵·미사일의 고도화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 핵전력(nuclear force)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였다. 핵전력은 핵무기, 운반(투발)수단, 핵전력 운용에 필요한 정밀보조체계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핵무기는 단순 핵분열탄(원자폭탄), 증폭 핵분열탄, 핵융합탄(수소폭탄), 중성자탄으로 구분된다.<sup>77)</sup> 핵무기를 투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탄도미사일인데,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 운반하려면 핵무기를 1톤 미만으로 줄이는 소형화·경량화 기술이 필요하다.<sup>78)</sup>

북한은 2000년대부터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를 단순 핵분열탄에서 핵융합탄(수소폭탄)으로 고도화하고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최대사거리와 이동속도를 급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북한은 1999년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P-1·P-2 타입) 완제품과 설계도를 입수하였다.<sup>79)</sup> 2001년에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지에서 농축시설의 핵심인 우라늄 입출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02년 말에는 러시아에서 고강도 알루미늄관 140톤을 도입하였다. 이는 약 2,600기의 원심분리기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으로, 가동 시 연간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었다. 2003년에는 독일에서 약 200톤의 알루미늄관 수입을 시도하다가 독일 당국에 적발되었는데, 이는 원심분리기 3,500개를 제작할 수 있는 양이었고 이를 가동한다면 연간 2~3개의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가능하였다.<sup>80)</sup>

77) 핵폭탄은 크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으로 나뉜다. 원자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이용해 폭발에너지를 얻는 반면, 수소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1차로 핵분열시킨 뒤 2차로 핵융합시켜 폭발에너지를 얻는다. 기본적으로 원자폭탄의 파괴력이 킬로톤(kt) 단위라면 수소폭탄은 그 1,000배인 메가톤(mt) 단위이다. 서균열, “북한 6차 핵실험, 위력과 의미는?,” 『통일한국』 (2017.10.1.).

78) 전경만 외, 『북한 핵과 DIME 구상』(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p.25-26.

79)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서울: 백산서당, 2019), p.31.

또한 북한은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기 1년 전인 2002년 10월 5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였다.<sup>80)</sup> 같은 해 12월 24일~27일에는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봉인되었던 5MW 원자로, 폐연료봉 저장시설,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재가동하였다. 2003년 10월 2일에는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하였다.

2005년에 2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의 하나로 지목하자 북한은 2월 10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5월 11일에는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모두 인출하였다. 그리고 2006년 5월 3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7월 5일 스킨드미사일, 노동-1호, 대포동-2호를 시험 발사했으며, 마침내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sup>82)</sup>

북한은 2003년부터 NPT 탈퇴 재선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2006년 1차 핵실험 등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급속히 고도화하였다. 이후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은 2007년 3월 19일~22일에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 「2·13선언」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7월 15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을 미국에 통보했으며, 9월 27일~30일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이후에는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기 위해 폐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에 들어서 다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4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운반로켓이라고 주장하는 ‘은하-2호’를 발사하였다. 미국은 이를 ‘대포동-2호’ 미사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뒤이어 북한은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6월 12일 대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를 채택했으며,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할 것이며 현재 폐연료봉의 1/3 이상이 재처리되었고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2009년 9월 3일에는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은 무기화되고 있고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주장하였다. 두 달 후인 11월 3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무력화되었던 영변 핵시설을 원상 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재처리시설을 가동시켰으며,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8월 말까지 끝냈고, 추

80) 한국안보문제연구소,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서울: 북코리아, 2014), p.134.

81)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p.157.

82) 한국안보문제연구소,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pp.133-135.

출된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sup>83)</sup>

2010년 5월 12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보도를 통해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끝나 북한식의 독특한 열핵반응장치를 설계·제작했으며,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새 에너지 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렸다고 주장하였다.<sup>84)</sup> 11월 9일~13일에는 미국 스탠퍼드대학 해커(Siegfried Hecker) 교수 등 미국 전문가를 북한으로 초청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이 시설을 2009년 4월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10년 당시 2,000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sup>85)</sup>

2011년에 들어서 북한은 통치체제의 급변사태를 맞이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 아래 핵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미국과 직접 접촉도 유지하였다. 2012년 2월 23일~24일 미국과 북한은 북경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2·29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북한은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지역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이와 관련된 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24만 톤 규모의 ‘영양 지원’을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2012년 4월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대에서 ‘은하-3호’를 시험 발사함으로써 「2·29선언」의 합의사항 이행이 무산되었다. 이 로켓은 발사 후 약 2분 만에 폭발했으며 북한도 실패를 자인하였다. 북한은 다시 12월 12일 우주발사체 ‘은하 3-2호’를 발사해 “인공위성의 궤도에 진입시켰다.”라고 발표하였다.<sup>86)</sup>



〈사진 3-15〉 ‘은하-3호’ 발사(2012.4.)

※ 출처: 『2012 국방백서』

83) 한국안보문제연구소,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pp.135-136.

84) 한국안보문제연구소,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p.136.

85) 외교통상부, 『2011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11), p.27.

86) 한국안보문제연구소,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p.137.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실험 이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핵실험을 진행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sup>87)</sup> 두 달 뒤인 4월에는 영변 5MW 원자로의 재가동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2013년까지 3회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실질적인 제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sup>88)</sup>

#### 나. ‘핵무력 완성’과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은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핵무기를 제조하는 방법은 90% 이상 고농축한 우라늄(U235)을 사용해 우라늄탄을 만드는 방법,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화학 처리한 후 추출해낸 순도 95% 이상의 플루토늄(Pu239)을 사용해 플루토늄탄을 제조하는 방법, 우라늄·플루토늄을 핵분열시킨 후 다시 핵융합시켜 수소탄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북한은 2023년까지 이 세 가지 핵무기 개발을 모두 추진하였다.

첫째, 북한은 1985년 영변에 재처리시설을 착공해서 1989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다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제2연구용 원자로를 1986년부터 가동해오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가지고 재처리시설을 이용해 플루토늄을 추출해왔다. 북한은 1989~1991년에 재처리를 실시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북한은 플루토늄탄의 핵심기술인 내폭실험을 거쳐 이미 기폭장치(핵뇌관)의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sup>89)</sup>

북한은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 때까지 이 같은 재처리시설을 가동해 총 7~22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재처리시설은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가동되었으며, 2016년 말까지 북한은 45~55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문가들은 영변의 5MW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할 경우 매년 6~8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북한은 69~83kg의 플루토늄을 보유했으며 이를 모두 핵무기로 만들 경우 17~20기의 플루토늄탄을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북한은 1980년대부터 우라늄 농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 파키스탄

87) 『조선중앙통신』(2013.9.11.).

88) 한국안보문제연구소,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p.137.

89) 한웅섭, 『북한 핵의 운명』(서울: 박영사, 2018), pp.47-49.

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기술을 전수받았다. 북한은 1990년대에 영변에서 45km 떨어진 평안북도 구성군의 공군기지 부근에 실험실 규모의 원심분리공장을 건설하고 매년 50kg 정도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였다. 또한 영변에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는 제1우라늄농축공장을 건설해 2009년부터 가동해왔다. 제1농축시설을 전면 가동할 경우 북한은 매년 15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IAEA는 2016년에 북한이 영변에 제2우라늄농축공장을 건설해 가동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 2개의 고농축우라늄공장을 가동할 경우 북한은 매년 300kg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20kt의 우라늄탄으로 환산할 경우 2020년 당시 60~80개의 우라늄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북한은 2010년 5월 수소탄 제작의 기본기술인 “자체 핵융합기술을 개발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18일 “증폭 핵분열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발표하였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직후에는 “첫 수소탄 시험이 완전히 성공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 모든 실험이 수소탄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정보를 얻었고 이를 이용해 2017년 9월 3일 150~250kt의 폭발위력을 가진 수소탄에 대한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평가하였다.<sup>90)</sup>

핵무기 개발과 함께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회의 핵실험을 통해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을 실험하였다.<sup>91)</sup> 2016년 3월에는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모형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이 자리에서 이 탄두를 소형화·경량화·표준화<sup>92)</sup>를 통해 다양한 운반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각국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최소한 탄두 무게 1톤 이하, 직경 90cm 이하의 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sup>93)</sup> 총 6회의 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핵무기의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94)</sup>

90) 한용섭, 『북한 핵의 운명』, pp.49-52.

91) 한용섭, 『북한 핵의 운명』, p.56.

92) 소형화·경량화는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을 뜻하며, 표준화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핵탄두를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이해와 실제』, p.63.

93) 문성묵, “북한 핵개발 실태와 대외정책,”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2016), p.68.

94) 국방부, 『202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p.28.



〈표 3-16〉 북한의 핵실험과정(2006~2017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규모	3.9mb	4.5mb	4.9mb	4.8mb	5.0mb	5.7mb
위력	약 0.8kt	약 3~4kt	약 6~7kt	약 6kt	약 10kt	약 50kt

※ 출처: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339.

한편 2011년에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으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한편으로 핵무력을 강화·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건설에도 주력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었다.<sup>95)</sup>

북한이 2013년에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새로 채택한 것은 핵무기 개발에 따른 대외적 고립상황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자체적인 군사력으로 타개하려는 의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사실상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노선’이었다. 이미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함으로써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의 지위」에 관한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핵보유를 국내법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96)</sup>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는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핵보유국 법령」과 「우주개발법」을 채택했으며,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신설을 결정하였다.<sup>97)</sup>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장시간에 걸쳐 연료 주입이 필요한 액체연료 탄도미사일 대신 미리 고체연료를 주입한 이후 이동식 발사장치에서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지속하였다.<sup>98)</sup>

95) 권숙도,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국가안보와 전략』 제15권 3호 (2015), p.43.

96) 장철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변화와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 『KINU Online Series』 제 21-11호(2021), p.3.

97) 「핵보유국 법령」의 정식명칭은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이다. 『조선중앙통신』(2013.4.1.).

98)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28.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절정에 달한 시점은 2017년이였다.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한 2016년 한 해 동안 탄도미사일을 14회 시험 발사했고, 2017년에도 14회에 걸쳐 시험 발사하였다. 이것은 김정일 집권시기(1998~2011년)에 11년 동안 시험 발사한 것보다 더 많은 횟수였다.<sup>99)</sup>



〈사진 3-16〉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2016.4.)

북한은 2017년 3월 18일 대출력의 ‘백두산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이

※ 출처: 『2016 국방백서』

를 ‘3·18혁명’이라고 불렀다.<sup>100)</sup> 그해 7월에는 백두산엔진 1개를 장착한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마침내 2017년 11월 29일 백두산엔진 2개를 장착한 화성-15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에 공식적으로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sup>101)</sup>

2018년부터 북한은 ‘완성’을 선언한 국가 핵무력의 포기를 협상카드로 사용해 남북관계 개선, 미·북 수교, 체제 안정을 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김정은은 2018년 초부터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2018년 4월 20일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2013년 3월에 채택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5년 만에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도 중지한다고 선언하였다.<sup>102)</sup>

2018년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새로운 미·북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했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2019년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북한이 일부 핵시

99) 조성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서울: 백산서당, 2021), p.206.

100) ‘백두산엔진’은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국영 우주로켓제조업체인 유즈마쉬에서 생산한 RD-250엔진을 개조한 액체연료 사용 엔진이다. 현재 세계 최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러시아 SS-18 사탄 핵미사일의 엔진이 RD-250계열이다.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pp.44-45.

101) 조성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p.206.

102) “북 노동당 규약서 핵 병진노선 빼고 자력갱생 경제건설 추가,” 『한겨레신문』(2021.6.1.); 조성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p.226.

설 폐쇄를 대가로 경제제재의 완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최종합의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직후에 다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5월부터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하기 시작했으며<sup>103)</sup>, 2020년까지 신형 전술유도무기,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극성-3형 SLBM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였다.<sup>104)</sup>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정책은 2021년에 장기계획이 수립되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조선로동당은 2021년 1월에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5개년계획에서 북한은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는 ‘①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② 초대형 핵탄두 생산, ③ 15,000km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④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도입, ⑤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⑥ 핵잠수함과 핵탄두 수중전략탄도탄(彈道彈) 보유, ⑦ 군사정찰위성 운영, ⑧ 500km 전방 중심까지 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등이었다.<sup>105)</sup>

북한은 5개년계획의 1차년도인 2021년 1월~3월에 신형 순항미사일과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 발사하였다. 또한 2021년 9월에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신형 반항공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화성-8형’ 등 새로 개발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였다.<sup>106)</sup> 북한의 모든 ICBM은 시험 발사 당시 고각 발사로 진행되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비행능력을 보여주었다.<sup>107)</sup> 그러나 정상각도로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을 입증하는 ICBM 핵심기술의 확보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03) 조성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pp.206-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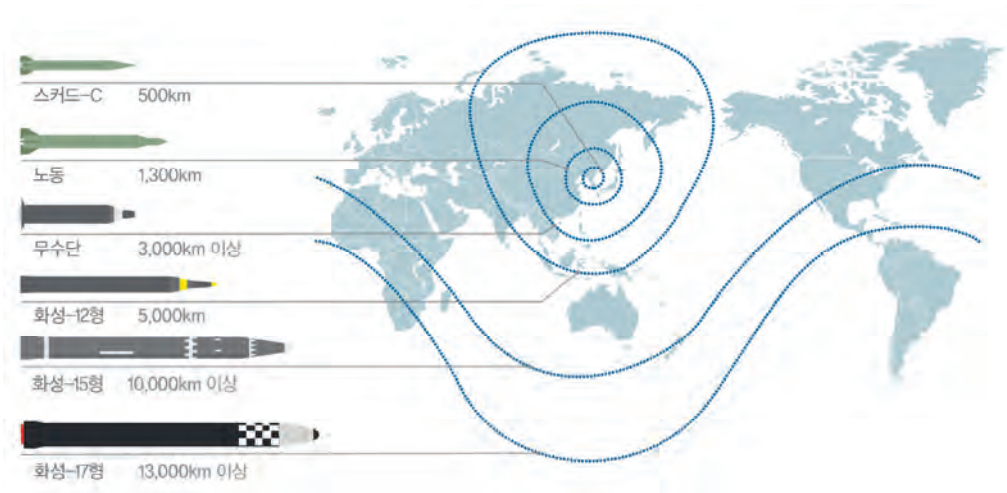
104) 장철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변화와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 p.3.

105) “북, 무기개발 5개년계획,” 『뉴시스』(2021.9.16.).

106) 『2021년도 북한 군사력·군사전략 변화 평가 및 전망』, pp.181-183.

107)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의 5,000km 이상 사거리를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3단계 로켓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견뎌야 하며, 탄두가 타지 않고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기술이 필요하다. 박종철, 『북·미 미사일 협상과 한국의 대책』(서울: 통일연구원, 2001), p.32.

〈그림 3-11〉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이와 함께 북한은 2019년부터 작전운용상 액체추진 탄도미사일보다 유리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을 기반으로 에이태킴스형, 고중량 탄두형, 근거리형 등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발사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차륜형·궤도형·철도기동형·잠수함발사형 등 다양한 플랫폼을 발전시켰다.

무엇보다 북한은 2022년 2월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지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2022년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빠르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9월 8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공세적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했고,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의 질량적 갱신·강화’와 ‘비핵화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sup>108)</sup>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해서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공식화한 이후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동해·서해상으로 발사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미사일 1발을 의도적으로 NLL 이남 26km 공해상에 발사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으며, 12월에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형 고체모터 연소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개발하고 있다.<sup>109)</sup>

핵무기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북한의 시도는 2022년 말에 들어서 조선로동당의 공식적인

108)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p.21, 30.

109)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p.30-31.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노동당은 2022년 12월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였다. 이 전략을 통해 공세적 핵전략에 기초한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을 2023년 국방 분야의 중심방향으로 강조했으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중점과업으로 제시하였다.<sup>110)</sup>

2023년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3차년도였다. 김정은은 2022년 12월 26일~31일에 개최된 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의 개발,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급속한 확대를 요구하였다.<sup>111)</sup> 그러므로 북한은 2023년 이후에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에 입각해 핵무기의 소형화·전술무기화와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수중전략탄도탄(SLBM)의 시험 발사, 군사정찰위성·무인정찰기의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sup>112)</sup>

〈표 3-17〉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제원

구분	스커드-B/C	19-1 SRBM	19-4 SRBM	19-5 SRBM	스커드-ER	노동	무수단	대포동-1호
미사일 성격	단거리	단거리	단거리	단거리	준중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중거리
사거리 (km)	300~500	약 600	약 600 미만	약 400	약 1,000	1,300	3,000 이상	2,500
탄두중량 (kg)	1,000	미상	미상	미상	500	700	650	500
구분	대포동-2호	북극성	북극성-2형	북극성-3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화성-17형
미사일 성격	대륙간	잠수함 발사	준중거리	잠수함 발사	중거리	대륙간	대륙간	대륙간
사거리 (km)	10,000 이상	약 1,300	약 1,300	약 2,000	5,000	10,000 이상	10,000 이상	15,000
탄두중량 (kg)	500~1,000	650	650	미상	650	미상	1,000	2,000

※ 출처: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297; 『연합뉴스』(2022.11.18.).

110)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21.

111) 이승열·이승현,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3년 남북관계 전망,” 『이슈와 논점』 제2048호(2023), p.3.

112)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에 따라 300km 이하의 근거리미사일(CBRM), 300~1,000km의 단거리미사일(SRBM), 1,000~3,000km의 준중거리미사일(MRBM), 3,000~5,500km의 중거리미사일(IRBM), 5,500km 이상의 장거리미사일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구분된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사정거리는 2,000~4,000km 정도이다.

## 2.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대응

### 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뜻한다.<sup>113)</sup>

미국은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대한민국에 군사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에 핵우산(Nuclear Umbrella)<sup>114)</sup>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천명하였다.<sup>115)</sup>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미국은 SCM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모든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함께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한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sup>116)</sup>

2000년대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수위를 높여가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켰다. 미국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20일 제38차 SCM에서 ‘확장억제’를 최초로 언급했으며, 냉전시대에 한국에 적용해왔던 ‘핵우산’ 제공을 ‘핵우산+알파( $\alpha$ )’의 ‘확장억제’ 제공으로 발전시켰다. 이로써 억제수단의 범주를 ‘핵우산’뿐 아니라 재래식 타격능력과 거부적 억제력인 미사일 방어



〈사진 3-17〉 제2차 KIDD 회의(2012.9.)

※ 출처: 『2012 국방백서』

113)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160.

114) 핵우산은 핵보유국이 핵전력이 없는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사시에 핵능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115)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브라운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8.7.27.).

116) 제2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89.7.19.); 제2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5.11.3.); 제3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0.9.21.).

전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우주·정보·사이버 등)으로 확장하였다.<sup>117)</sup> 또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2009년 10월 22일 제41차 SCM에서 확장억제 제공수단(핵우산·재래식타격·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북한의 위협 대응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였다.

한미 양국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발하고 합의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역맞춤형 억제체제를 추진한 직후인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등이 발생해 안보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2011년 제43차 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발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2년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 2일 제45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sup>118)</sup>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은 일반적인 ‘확장억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된 전략개념이었다.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위기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미 양국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억제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고, 이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2013년 이후부터 한미는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해 모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 양국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 4월에 개최한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제6차 KIDD 합의에 따라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차관보급 정례 협의기구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켰다.

201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동맹의 방어·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개최된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서는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억제·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sup>119)</sup>

117)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6.10.20.).

118)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1.10.28.);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3.10.2.).

119)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57; 외교부, 『2016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특히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진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는 2019년 9월 개최된 제9차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9년 11월 제51차 SCM에 보고되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가 확장억제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향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sup>120)</sup>

한미는 전·후반기에 각각 개최하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확장억제수단의 운용연습<sup>121)</sup>을 실시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 위협 평가, 지역 안보협력, 능력 발전, 전략적 소통, 연합연습 등 6개 분야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양국은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확장억제수단을 군사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교·정보·경제영역까지 확대해 억제·대응 효과를 배가하였다. 2018년 1월 제2차 EDSCG 고위급회의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의 효과적인 한반도 순환배치 방안, 확장억제 협력체계 발전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군사 방안을 논의하였다.<sup>122)</sup>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보여준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2022년 10월에 발간된 미국의 「2022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이다. 한미는 2022년 NPR 작성 초기단계부터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메시지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등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작성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은 2022년 NPR을 통해 ‘미국,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이러한 핵공격은 북한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계산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핵전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동맹이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의 보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략핵잠수함의 항구 방문과 전략폭격기의 전개 등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높이는 실행력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표명하였다.<sup>123)</sup>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Joseph R. Biden Jr.)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확장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제2차 회의 이후

2016), pp.64-65.

120)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p.59-60.

121) 운용연습은 가상의 시나리오 상황 아래 미국의 확장억제수단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연습(Table Top Exercise)을 뜻한다.

122)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51-52.

123)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162.



중단된 고위급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핵·재래식무기·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공약을 확인하였다.<sup>124)</sup>

특히 한미는 2022년 8월 제13차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이 북한의 핵·WMD 위협의 대응에 실효적이고 강력한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같은 해 8월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CMWG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예하의 실무협의기구로 운영되며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태세의 강화와 연계된 협력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CMWG에서 논의한 결과는 KIDD, SCM 등에 정례적으로 보고된다. 아울러 한미는 2022년 10월부터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 신행미사일 위협의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한 반도에 맞춤형 미사일 방어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양국은 2022년 9월 16일 워싱턴에서 제3차 고위급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개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했으며,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위급 EDSCG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제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은 2022년 11월 3일 개최한 제54차 SCM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최초로 반영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실행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다양한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제55차 SCM 이전까지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따른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는 2023년 2월 미국의 핵 관련 시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개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높였으며 동맹의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sup>125)</sup>

<sup>124)</sup> 대통령실,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2.5.21.).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서 핵억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립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는 양국의 범정부적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최초로 도입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양국은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한층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sup>126)</sup> 핵협의그룹(NCG) 회의는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사진 3-18〉 제1차 핵협의그룹 회의(2023.7.18.)

※ 출처: 국방부

한미는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양국은 이 선언에서 확장억제 협력방안을 정보공유, 공동기획·실행, 협의체계 등 분야별로 구체화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하였다.<sup>127)</sup> 「워싱턴선언」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전환점이었으며, 이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동맹으로 진화하였다.<sup>128)</sup>

#### 나. 미사일 대응전략과 한국형 3축체계 구축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으로 대비하는 개념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일명 4D 작전개념)’이다. 여기서 ‘포괄적’이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의 모든 분야(4D)에

125)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p.161-165.

126)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2023.4.26.).

127) 외교부,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보도참고자료」(2023.4.26.).

128)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울: 대통령실, 2023), p.31.

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한다는 의미이다.<sup>129)</sup>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을 승인하였다.<sup>130)</sup>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은 전략적 수준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연계해 정립된 작전적 수준의 대응개념이었다.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다.<sup>131)</sup>

한미는 ‘4D 작전개념’을 합의한 이후 2015년 11월 2일 제47차 SCM에서 ‘4D 작전개념’에 기반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수행과 능력향상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반영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이행지침(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였다.<sup>132)</sup>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한 「이행지침」의 승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한미 양국의 대응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sup>133)</sup> 2016년 이후 한미는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동맹의 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훈련, 능력발전 등 5개 분야에 대한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sup>134)</sup>

2019년 제9차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는 ‘4D 작전개념’을 작전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4D 작전수행개념’<sup>135)</sup>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4D 작전수행개념’을 기존의 ‘4D 작전개념’과 통합해서 ‘4D 전략’으로 명명하기로 합의했으며, 「4D 전략 및 이행지침」을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수행개념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작전수행절차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갔다.<sup>136)</sup>

한편 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우리 군의 공격·방어·응징보복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형 3축체계는 거부적 억제 차원의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응징적 억제 차원의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개념으로

129)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53.

130)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4.10.23.).

131)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57.

132)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5.11.2.).

133) 외교부, 『2016 외교백서』, p.65.

134)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53.

135) ‘4D 작전수행개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작전수행 단계로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로 구성된다.

136)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p.60-61.

구성되었다.<sup>137)</sup>

첫째, 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사용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였다.<sup>138)</sup>

킬체인의 운용체계를 보면 먼저 정찰위성·정찰기·조기경보레이더 등 연합·합동자산을 이용해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위협의 진위를 정확히 평가해 공격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모든 탐지정보를 종합해 공격여부를 결정하고, 표적에 따라 가장 유효한 효력의 무기를 선별해 일제히 공격한다.<sup>139)</sup>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찰능력이다. 국군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심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전역의 핵심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초소형위성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상·해상·공중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를 활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를 탐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신호정보를 보다 빨리 탐지하기 위해 기존 신호정보 수집체계에 대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140)</sup>



〈사진 3-19〉 국군의 F-35A 스텔스기

※ 출처: 『2022 국방백서』

특히 한미 양국은 2010년 9월부터 약 2년에 걸쳐 긴밀히 협의한 후, 2012년 10월 7일 「개정 미사일지침(RMG)」<sup>141)</sup>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국군은 「2012년 개정 미사일지침」

137)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57.

138)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57.

139) 최현수 외, 『한반도에 사드를 끌어들이는 북한 미사일』(서울: 경당, 2017), pp.259-260.

140)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58.

141)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은 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개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의 정책선언이다. 1979년 10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에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사거리 18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미만으로 제한되었다. 2001년 1월 17일 1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가 300km 이내로 늘어났고, 2012년 10월 5일 2차 개정 당시 사거리 800km 이내, 탄두 중량 사거리에 반비례, 무인항공기의 탄두 중량 2,500kg 이하,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300km 이내,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 11월 7일 3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의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으며, 2020년 7월 28일 4차 개정 당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다. 「미사일지침」은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완전히 종료되었다.

을 통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탄두 중량과 무인항공기의 탄두 중량에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으며, 북한의 도발시 핵·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sup>142)</sup>

나아가 한미는 2020년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지침」을 새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액체연료는 물론 고체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해 민용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협력무대를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하였다.<sup>143)</sup>

둘째, 국군은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발전시켰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우리 측으로 발사된 다양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방어체계이다.<sup>144)</sup> 킬체인이 북한의 주요전력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라면,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킬체인에서 살아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우리 측 미사일로 방어하는 개념이다.<sup>145)</sup>



〈사진 3-20〉 국군의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

※ 출처: 『2022 국방백서』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스킵계열 미사일과 노동미사일 등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구축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한반도의 중심이 좁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4~5분 뒤에 한국 상공에 도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기 직전에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이었다.<sup>146)</sup>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탄도탄(彈道彈)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탐지해 탐지된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142) 외교부, 『2013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13), pp.52-53.

143) 외교부, 『2021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21), p.77.

144)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59.

145) 최현수 외, 『한반도에 사드를 끌어들이는 북한 미사일』(서울: 경당, 2017), p.259.

146) 장철운, 『남북한 미사일 경쟁史』(서울: 선인, 2015), p.135.

분석하고 최적 요격포대에 전달하면, 요격명령을 받은 포대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sup>147)</sup> 국군은 태세강화 측면에서 기존의 수직적(고도) 차원에서 수평적(거리) 차원으로 미사일 방어개념을 확장하고 있으며, 능력강화 측면에서 미사일 조기탐지와 다층화된 요격능력 확보, 첨단기술에 기반한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sup>148)</sup>

셋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와 더불어 국군은 북한이 핵·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경우 국군의 고위력·조정밀 타격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을 응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를 위해 국군은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북한의 핵사용 억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조정밀 타격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sup>149)</sup>

한편 한미는 2017년 3월부터 주한미군에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40~150km 고도에서 방어하는 사드체계(THAAD)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sup>150)</sup> 사드체계는 40k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북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sup>151)</sup>를 비롯해 중거리·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요격 성공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sup>152)</sup> 사드체계는 2017년 9월에 잔여 발사대의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작전운용능력이 구비되었다.<sup>153)</sup>

이와 함께 국군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전력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는 국군이 보유한 조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능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관련역량의 전력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사일·사이버전력과 우주·전자기스펙트럼 전력, 특정한 상황에서 전략적 억제·대응에 필요한 전력을 점진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147)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59.

148)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59.

149)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p.60-61.

150) 최현수 외, 『한반도에 사드를 끌어들이는 북한 미사일』, pp.246-247.

151) 사드가 적의 미사일을 40~150km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라면, 패트리엇은 10~20km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저고도(低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이다. 패트리엇(PAC-2)은 1975년부터 노후된 나이키 허큘리스와 호크 미사일을 대체해서 대공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최현수 외, 『한반도에 사드를 끌어들이는 북한 미사일』, pp.251-255.

152)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62.

153) 외교부, 『2018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18), p.43.

국군은 먼저 1단계로 2023년 1월 합참 ‘핵·WMD대응센터’를 ‘핵·WMD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2단계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휘통제기반을 구축하며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다.<sup>154)</sup>



<sup>154)</sup>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62.

## 제3장 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은 6·25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라 제한적 개념인 작전통제권으로 정립되었으며,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78년 11월 7일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다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1990년대에 냉전이 해체되고 국군의 작전능력이 신장되자 국군은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한미 양국은 1990년대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했으며, 전환시기를 특정해서 추진하다가 2015년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제1절 작전지휘권 이양의 배경과 과정

####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작전지휘권의 변화

국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up>1)</sup> 문제에 대한 역사적 기원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시작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1948년 8월 11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 이양 및 미국 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해방 이후 남한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남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다.<sup>2)</sup>

1)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다른 개념이다. 작전지휘권은 지휘관이 전반적인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지휘기능이다.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에 비해 제한된 개념으로 작전계획·작전명령에 명시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작전지휘권에는 행정·군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포함되지 않으며, 작전통제권에는 행정·군수·군기·내부편성·부대훈련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군사용어대사전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서울: 청미디어, 2016), p.606.

2)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과 협의한 후 통치 기능을 인수할 것임”을 존 하지(John R. Hodge)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통고하였다.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 이양 및 미국 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1948.8.11.).



이승만 대통령과 존 하지(John R. Hodge) 주한미군사령관은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협정(약칭, 잠정적 군사안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미군정청 남조선과도정부<sup>3)</sup>의 행정부서가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다. 9월 3일에는 남조선과도정부의 경무부가 대한민국 내무부로, 9월 13일에는 과도정부의 26개 부처가 대한민국 정부로, 9월 15일에는 과도정부의 통위부(統衛部)가 대한민국 국방부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권 이양절차가 완료되었다. 그 결과 1945년 9월 9일부터 약 3년에 걸친 미군정의 통치행위는 종료되었다.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문제는 바로 정부 수립 직후인 8월 2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잠정적 군사안전협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작전지휘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잠정적 군사안전협정」의 제1조와 제2조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급(及)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 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예하군대의 한국철퇴와 동시에 종료한다.

〈제2조〉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에 부합된다고 간주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전(全)경찰, 해안경비대 급(及) 현존하는 국방경비대로서 된 대한민국 국방군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양하기를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동 국방군 지휘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다. 또한 1947년 11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해 통과된 결의 112(II)호 제4절(C)항(동 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C)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한 90일 이내에 그들의 군대를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기 위해 점령군과 규정한다」에 의해 예기된 바 미군 철수의 완료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해 또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이케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과견대를 포함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

〈Article 1〉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agrees that, pursuant to directives from his government and within his capabilities, he will continue to organize, train and equip the Security Forces of the Republic

3) 남조선과도정부(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는 1947년 5월 17일 미군정청에 신설되었으며,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을 통치하는 입법·행정·사법부문 등 미군정청 아래에 있는 한국인 기관을 뜻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109-110.

of Korea now in being, provided that his obligation shall cease upon the completion of withdrawal from Korea of forces under command.

〈Article 2〉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agrees to transfer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ively, and as rapidly as he deems compatible with common security,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ion of the Security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isting of all Police, Coast Guard and Constabulary units now in being, and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s to accept progressively,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ion of these forces. It is further agreed that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shall retain until completion of withdrawal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as contemplated in part 4(C) of Resolution No.112(II) pass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4 November 1947 (which reads as follow: “(C) arrange with the occupying powers for the complete withdrawal from Korea of their armed forces as early as practicable and if possible within 90 days”) **the authority to exercise such over-all operational control of Security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including the Constabulary and Coast Guard and such National Police detachments as may be stationed in critical areas) as he deems necessary in the interests of common security, or to facilitate the organization, training and equipping of the Security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sup>4)</sup>

「잠정적 군사안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USAFIK)<sup>5)</sup>는 국군을 조직·훈련·무장시킬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남한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국군에 대한 일체의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령관(CG, USAFIK)이 보유한 작전지휘권은 미군이 철수를 완료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도록 규정되었다. 이 협정은 체결 당일인 8월 24일에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이양된 날은 1948년 8월 24일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34-37.

5) 주한미군사령부(USAFIK: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는 1945년 9월 9일 서울에서 발족되었으며, 남한에 진주한 미 육군 제24군단 사령부와 그 예비부대로 구성되었다. 제24군단장 존 하지 중장이 1945년 9월 10일 주한미군사령관(Commanding General, USAFIK)으로 취임하였다. 현재의 주한미군사령부(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와 다른 성격의 기구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p.81.

이었다. 다만 이 협정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한 한시적 협정이었기 때문에 작전지휘권 문제는 미군의 철수시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49년 1월 15일 주한 미 제24군단은 해체절차를 밟기 위해 일본으로 철수했으며, 그 대신 미 제32보병연대와 제7기계화정찰부대 요원들만 잔류해서 새로 창설될 미 제5연대 전투단의 예비병력이 되었다. 주한미군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PMAG) 단장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였다.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은 1948년 8월 15일에 조직되었으며 고문단의 인원은 편성 당시 100명에서 1948년 후반기에는 241명으로 증가하였다.<sup>6)</sup>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949년 6월 30일까지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결론 내렸다. 주한미군사령부(USAFIK)는 미 육군부로부터 6월 30일까지 철수를 완료하라는 훈령을 받았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주한미군 제5연대 전투단은 1949년 6월 29일에 철수를 완료하였다.<sup>7)</sup>

주한미군 부대가 철수를 완료하자 주한미군사령부는 1949년 6월 30일부로 해체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PMAG)은 1949년 7월 1일부로 정규조직인 주한미군사



〈사진 3-21〉 무기를 검열하는 로버츠 고문단장(1949.9.)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고문단(KMAG)으로 개편되었다. 정원 500명으로 편성된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주한미대사관 및 경제협조처(ECA) 지역사무소와 함께 주한미사절단(AMIK)의 하부기관이 되었으며, 미 극동군사령부로부터 미 육군성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에 속하였다.<sup>8)</sup> 주한미군사령부가 해체됨에 따라 국군의 작전지휘권은 1949년 7월 1일부로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양되었다. 이후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었다.

6) 로버트 소이어 저, 이상호 외 역, 『주한미군사고문단사』(서울: 선인, 2018), p.52.

7)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유엔군전사 제1집)』(서울: 육군본부, 1968), p.7.

8) 로버트 소이어 저, 이상호 외 역, 『주한미군사고문단사』, pp.62-63.

## 2. 작전지휘권의 이양과정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변화하게 된 계기는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이었다. 개전 초기 한국 정부는 유엔에 북한군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1950년 7월 7일 결의안 제84호를 채택해서 유엔군을 지휘할 통합군사령부를 발족시켰다. 이 결의안에서 유엔 안보리는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한국에서 싸우는 유엔군을 지휘할 사령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단일한 지휘체제 아래 둘 것을 지정하였다.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해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미 합동참모본부를 자신의 대행기구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미 합동참모본부가 유엔을 대신해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콜린스(Joseph L. Collins) 육군참모총장을 합동참모본부의 대표로 임명해서 한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유엔군의 작전지휘권은 안보리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된 후 미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미 육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미 육군이 유엔군의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sup>9)</sup>

미 합동참모본부는 통합군사령관으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을 추천했으며, 7월 8일 공식적으로 그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건의를 승인하고 같은 날 임명을 공표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7월 10일 통합군사령관인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임명한다는 지시서를 극동군사령부에 발송하였다.<sup>10)</sup> 이로써 맥아더 장군은 7월 10일 유엔 안보리에서 위임된 통합군 지휘권을 보유한 유엔군사령관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곧이어 미 육군성은 7월 12일 맥아더 장군에게 상세한 지침을 하달해 “우리의 작전임무는 국제정치상 어디까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장군은 우선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7월 24일에 유엔군사령부(UNC)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인력 부족 문제로 유엔군사령부의 참모는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진이 그대로 임명됨으로써

9) 육군본부 역, 『정책과 지도(유엔군전사 제3집)』(서울: 육군본부, 1974), pp.144-145.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한국전쟁(미국합동참모본부사 제3집)』(상)(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pp.110-111.



〈사진 3-22〉 맥아더 장군에게 전달되는 유엔기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루고 있는 지상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인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워커 장군은 7월 7일 미 제8군사령부(EUSAK) 참모들에게 최대한 빨리 한국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으며, 제8군 참모들은 한국에 도착한 다음 7월 9일 오후 1시 대구에 미 제8군 전방지휘소를 설치하였다.

7월 12일 미 제24사단이 금강방어선에서 철수하자 맥아더 장군은 7월 13일 00:01시부로 워커 장군에게 구두명령을 통해 “한국에 있는 미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워커 장군은 7월 13일 한국에 도착했으며 같은 날 국군 육군본부도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하였다. 이전까지 주한미군사령부의 참모 역할을 수행해온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ADCOM: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in Korea) 장교들은 미 제8군 전방지휘소가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도쿄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미 제8군사령관은 전쟁에 참가하는 유엔군 지상군부대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게 되었다.<sup>11)</sup>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맥아더 장군이 7월 10일부터 전쟁에 참가하는 모든 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국군의 작전지휘권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국군은 군별로 이미 미군의 각 군과 연합작전을 실시해 왔으며 육군본부가 7월 13일 대구로 이전해 미 제8군사령부와 합동회의를 가짐으로써 이때부터 사실상 국군도 통합작전체제에 편입되었다. 한국 정부는 7월 13일 워커 장군이 미 제8군사령관 겸 유엔군 지상군사령관으로 한국에 부임하자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3일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정일권 총참모장을 불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미군과 협조해 전황

11) 육군본부 역, 『정책과 지도』, pp.145-146.

12)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58.

을 타개할 것을 당부하였다.<sup>13)</sup>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한다는 공식서한을 작성했으며 무쵸(John J. Muccio)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7월 15일 맥아더 장군에게 전달하였다. 이 서한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맥아더 장군 귀하.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연합의 공동군사노력에 있어 한국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중인 국제연합의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감(鑑)해,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오며, 여사(如斯)한 지휘권은 귀하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예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국민과 정부도 고명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토의 독립과 보전에 대한 비열한 공산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제연합의 모든 군사권을 받고 있는 귀하의 **전체적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려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심후하고도 따뜻한 개인적인 경의를 표하나이다. 이승만. 1950년 7월 14일. 부산.

Dear General MacArthur. In view of the common military effort of the United Nations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all military forces, land, sea and air, of the United Nations fighting in or near Korea have been placed under your operational command, and in which you have been designated Supreme Commander United Nations Forces, I am happy to assign to you **command authority over all land, sea and air forces of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such command to be exercised either by you personally or by such military commander or commanders to whom you may delegate the exercise of this authority within Korea or adjact seas.

The Korean Army will be proud to serve under your command, and the Korean people and Government will be equally proud and encouraged to have the **overall direction** of our combined combat effort in the hands of so famous and distinguished a soldier who also in his person possesses the delegated military authority of all the United Nations who have jointed together to resist this infamous communist assault on the independence and integrity of our beloved

13) 정일권, 『정일권회고록』(서울: 고려서적, 1996), pp.168-171.

land. With continued highest and warmest feelings of personal regard, Sincerely yours, Syngman Rhee. July 14, 1950. Pusan, Korea.<sup>14)</sup>

한국 정부는 이 서한을 통해 참전하고 있는 유엔군의 모든 군대를 유엔군사령관이 지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7월 14일부로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양하며, 이양된 지휘권을 맥아더 사령관과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공한을 전달받은 맥아더 사령관은 7월 16일 이에 대한 답신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대통령 각하.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을 위임한 7월 14일부 귀하의 서신에 관한 맥아더 원수의 다음과 같은 회신을 전달함을 본관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sup>15)</sup>

“7월 15일 자 공한에 의해 이 대통령이 취하신 조치에 대해 본관의 충심(衷心)으로부터의 감사와 심심한 사의를 그에게 표해 주심을 바라나이다. 한국 내에서 작전 중인 국제연합군의 통솔력은 반드시 증강될 것입니다. **용감무쌍한 대한민국군을 본관 지휘하에 두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나이다.** 이 대통령의 본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적 찬사에 대한 사의와 그에 대해 본관이 또한 가지고 있는 존경의 뜻도 아울러 전달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우리들의 장래가 고난하고 요원할지도 모르겠으나 중국적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므로 실망하지 마시도록 그에게 전언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맥아더.”

본인의 변함없는 존경과 함께. 존·무초. 1950년 7월 16일. 대구.

Dear Mr. President. I am happy to transmit to you the following message from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with reference to your letter of July 14 in which you designated to him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ver the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resent hostilities.

“Please express to President Rhee my thanks and deepest appreciation for the action taken in his letter of 15 July. It cannot fail to increase the coordinated

14)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공한(公翰)은 7월 14일에 작성되었으며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7월 15일 맥아더 장군에게 전달되었다. “이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공한(1950.7.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629-630.

15) 이 내용은 무초(John J. Muccio) 주한 미국대사가 작성한 내용이다.

power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operating in Korea. **I am proud indeed to have the gallant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my command.** Please tell the President I am grateful for his generous references to me personally and how sincerely I reciprocate his sentiments of regard. Tell him also not to lose heart, that the way may be long and hard, but the ultimate result cannot fail to be victory. MacArthur”

With assurances of my ever continued highest regard, I remain. Sincerely Yours,  
John J. Muccio. July 16, 1950. Taegu, Korea.<sup>16)</sup>

7월 14일자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과 7월 16일자 맥아더 장군의 회신에 따라 국군의 작전지휘권은 7월 14일부로 유엔군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이양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7월 17일 한국에서 작전 중이던 미 제8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재이양해서 한국군 지상군의 작전도 통제하라고 명령했으며 보유하고 있던 유엔기를 대구의 미 제8군사령부에 전달하였다.<sup>17)</sup> 이와 동시에 한국군 해·공군의 작전지휘권도 각각 미 극동군 해·공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 결과 한국군 지상군은 미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해·공군은 미 극동군 해·공군사령관으로부터 작전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과 맥아더의 회신은 7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안보리에 제출됨으로써 사후 공식화되었다.

한편 유엔기가 대구의 미 제8군사령부 광장에서 게양된 7월 17일 육군총참모장<sup>18)</sup> 정일권은 육군본부 참모회의를 소집하였다. 정일권 장군은 참모들에게 작전지휘권의 이양이 유엔군과의 작전을 통일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제1군단장 김홍일 장군과 제2군단장 김백일 장군에게도 작전지휘권 이양의 의미를 강조해서 전달했으며 각 사단장들에게도 이 사실을 즉시 하달하였다.<sup>19)</sup>

워커 중장은 7월 17일 「미 제8군 일반명령 제3호」를 통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이양된 국군 지상군의 작전을 지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하달하였다. 미 제8군의 공식 명령이 하달되자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은 예하부대에 미 제8군의 지휘를 따르라고 지시하였다.<sup>20)</sup>

16) 맥아더 장군의 회신은 7월 16일에 작성되었으며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7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맥아더 장군의 회한(回翰)(1950.7.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629-631.

17)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59.

18) 현재의 육군참모총장에 해당한다.

19) 정일권, 『정일권회고록』, p.171.

20)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59.



## 제2절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1. 작전지휘권의 변화

국군의 작전지휘권은 1950년 7월 14일 이양된 이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실제 전투에서는 미 제8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육군을 지휘했으며, 미 극동군 해·공군사령관이 한국군의 해·공군을 지휘하였다. 즉, 미 제8군사령관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요청하면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이 예하 부대에 이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육군부대가 미군부대에 직접 배속된 경우에는 지휘계통이 달랐다. 국군 제1사단과 제17연대는 1950년 9월에 각각 미 제1군단과 제10군단에 배속되었는데<sup>21)</sup>, 국군 총참모장을 거치지 않고 제1군단·제10군단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았다.

3년 동안 유지된 국군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계기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이었다. 한국 정부는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할 때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의 체결로 3년간의 전쟁이 정지되고 정전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전시가 아닌 평시(平時)의 경우 작전지휘권을 누가 보유하는가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한미 양국은 일련의 논의를 거친 후 1954년 11월 17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을 체결해서 작전지휘권 문제를 합의하였다. 「한미합의의사록」 가운데 작전지휘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그의 정책으로 삼는다. 1. 한국은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 2.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해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It is the intention and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1.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in its efforts to unify Korea, including possible efforts through

21)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59.

the United Nations to secure this objective; 2. Retain Republic of Korea forces **under the operational control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while that Command has responsibilities for the mutual and individual interest would best be served by a change.<sup>22)</sup>

한미 정부는 유엔군사령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에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 1954년 11월 17일 양국이 합의한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6·25전쟁 당시 이양된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라는 제한된 개념으로 명확히 정립되었다. 이로써 국군의 전시·평시작전통제권은 모두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한미는 양국이 합의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음으로써 작전통제권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아울러 유엔군사령부가 1957년 7월 1일부로 일본 도쿄에서 대한민국 서울로 이전됨에 따라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지휘계통이 재정립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은 미 제8군사령관을 통해 한국군의 육군을, 주한미공군사령관을 통해 한국군의 공군을, 주한미해군사령관을 통해 한국군의 해군과 해병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다.<sup>23)</sup>

## 2. 작전통제권의 변화

국군의 작전통제권(作戰統制權)이 첫 번째로 변화한 시점은 1961년이었다. 1961년에 발생한 5·16군사정변 당시 일부 국군 부대는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 단독 결정에 따라 부대를 이동시켜 군사행동을 단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유엔군사령부가 보유한 작전통제권의 범위와 행사조건에 대해 한미 양국 사이에 논란이 제기되었다.

양국은 5·16군사정변 이후 10일 동안 협의를 진행했으며, 1961년 5월 26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의 유엔군사령관 복귀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

22) 영문 명칭은 1950년 7월 14일 이양 당시에 작전지휘권을 뜻하는 ‘command authority(한국측)’과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미국측)’으로 쓰였으나,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부터 작전통제권을 뜻하는 ‘operational control’로 변경되었다.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1954.11.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164-165.

23)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서울: 매봉, 2022), p.77.

다. 이 공동성명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1년 5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모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귀속시키며, 유엔군사령관은 **그 작전통제권을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 데만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2. 유엔군사령관은 전방 방어를 위한 이전의 군사력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현재 서울에서 활동중인 제1해병여단과 제6군단 포병부대에 대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할 것을 지시한다. 3. 유엔군사령관은 제30·33예비사단, 제1공수특전팀 및 5개의 추가 헌병중대를 **그의 작전통제로부터 해제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이양한다.**

Seoul, Korea, May 16, 1961(UNC/USFK/8A)-The following Joint statement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was issued today; 1.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nnounces that it has returned **operational control of all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to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Who will use his operational control only to defend Korea from Communist aggression.** 2.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has directed the return to former positions of the First Marine Brigade and the VI Corps Artillery units now on duty, in Seoul to restore the strength that formerly defeded this front. 3.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has released to the control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the Thirtieth and Thirty-Third Reserve Divisions, the First Airborne Combat Team and five additional Military Police Companies from forward unit.<sup>24)</sup>

이 공동성명은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세 가지 결정사항을 담고 있었다. 첫째, 군사정변에 투입되었던 제1해병여단과 제6군단 포병부대가 원래의 주둔지로 복귀해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으로 귀속되었다. 둘째, 제30·33예비사단, 제1공수특전팀, 5개 헌병중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1950년 7월 14일 작전지휘권 이양 이후 최초로 국군에 귀

24) 이 성명의 국문 제목에는 ‘작전지휘권’이라고 쓰여 있고, 국문 본문에는 ‘작전통제권’이라고 적혀 있다. 영문 본문에는 작전통제권을 뜻하는 ‘operational control’이라고 쓰여 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작전지휘권의 유엔군사령관 복귀에 관한 성명(UNC and SCNR Issue Joint Statement)」(1961.5.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705.

속되었다. 셋째,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한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데만 행사한다.”라는 단서조건에 의해 처음으로 제한되었다. 이 공동성명에 의해 일부 국군 부대의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정부로 환수되었으며,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제한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변화한 특수 사례는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과 1968년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이었다. 한미 양국은 베트남에 파병된 국군 부대에 대해 1965년 9월 6일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해제하는 「한미군사실무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전쟁에서는 같은 전역 내에서 국군과 미군이 동일한 전쟁을 수행했지만, 국군은 독자적인 지휘체계 아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1968년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 당시 무장간첩의 침투에 대한 대응조치가 지연되자 한미 양국은 1969년 「한미합의각서」를 체결해서 평시 대침투작전에 한해 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하였다.<sup>25)</sup>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이 두 번째로 변화한 시점은 1970년대였다. 미국은 1969년 7월 아시아 방위에서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971년 3월 주한미군 제7사단 병력 2만 명이 철수하였다. 한국은 그 보완책으로 1971년부터 미국으로부터 특별 군사원조 7억 5천만 달러와 미군장비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을 수립해 자주국방을 추진하였다.<sup>26)</sup>



〈사진 3-23〉 주한미군 제7사단 철수식(1971.3.)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닉슨독트린」에 의해 주한미군 제7사단이 철수하면서 한국에는 미 제2사단과 그 상급부대인 미 제1군단만 남게 되었다. 그러자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제1군단을 한미연합군단으로 개편해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양국 합의에 따라 1971년 7월 1일 한미 제1군단이 창설되었다. 한미 제1군단은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이전까지 미 제1군단이 책임지고 있던 지역을 그대로 인수해 군사분계선 서부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25)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 p.78.

26) 국방부, 『국방백서 1992~1993』(서울: 국방부, 1993), pp.116~117.

국군은 1973년 7월 1일 경기도 용인에 제3야전군사령부를 창설했고,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 제1군단과 역할분담이 필요하였다. 당시 한미 제1군단은 미 제2사단과 함께 한국군 제1·5·6군단과 제2해병여단 등 한국군 3개 군단 이하 11개 사단의 작전을 통제하는 야전군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양국의 협의 결과 제3야전군사령부는 한국군 제1·5·6군단과 제2해병여단을 지휘해 평시 대침투작전을 담당했고, 한미 제1군단은 전·평시 작전통제와 함께 정규전에 대한 작전을 계속 담당하였다.<sup>27)</sup>

1970년대 초반부터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체제가 변화하자 한미 양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미국은 1974년 4월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작전을 통제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창설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75년 5월에 유엔사 해체 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통제할 상부기구로 군사위원회(MC)를 설치하고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한국군·미군의 부대목록을 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양국은 1976년 5월 제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나토(NATO)형으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sup>28)</sup>

양국 정부는 1977년 7월 제10차 S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과 구체적인 권한위임사항에 합의하였다.<sup>29)</sup> 이에 따라 한미 고위장교로 구성된 창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약 1년 동안 세부 시행계획을 작성하였다. 1978년 4월 국방부는 「훈령 제27호」를 통해 ‘연합사 창설에 따른 업무 및 지휘관계’를 규정하였다.<sup>30)</sup> 4개월 뒤인 1978년 7월 27일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해롤드 브라운(Harold Brown) 국방장관은 제11차 S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0.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한국 방위의 작전효율의 증진을 위하여 1978년 내에 설치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한·미 군사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하면서, 양국 정부는 동 기구의 운용을 한·미 간에 수시로 공동 검토함으로써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성을 계속 증대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 대표단은 양국 정부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설치와 동시에 군사위원회의 효율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sup>31)</sup>

27)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 pp.79-80.

28) 김열수, 『한미동맹 70년 한미역사 140년』(서울: 법문사, 2023), pp.258-259.

2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77.

30) 김열수, 『한미동맹 70년 한미역사 140년』, p.259.

31)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서」(1978.7.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양국은 한국 방위의 작전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1978년 안에 새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제11차 SCM에서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78년 7월 28일 개최한 제1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와 지휘관계를 규정한 양국 국방장관 차원의 「전략지시 제1호」를 하달하였다. 이후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국대사는 양국의 합의사항을 조약 차원으로 승격시키는 외교적 최종절차로서 10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하였다.<sup>32)</sup> 그 결과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sup>33)</sup>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중서부전선에서 야전군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해 온 한미 제1군단은 1980년 3월 14일부로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로 개편되었다. 이 개편에 따라 한미야전사는 한국군 제5·6군단과 미 제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으며, 국군 제3야전군사령부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전통제 아래 국군 제1군단과



〈사진 3-24〉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식(1978.11.7.)

※ 출처: 주한미군사령부

수도사단의 작전을 통제하였다. 이후 한미야전사는 국군에 전술교리 운용방법을 공유하고 통합전투기술을 전수했으며 국군의 취약부분을 미 제2사단 전투력을 차용해 보강하였다.<sup>34)</sup>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은 국군의 작전통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그 준수여부를 통제·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국 방어에 관한 작전을 통합적으로 지휘하였다.<sup>35)</sup> 이에 따

pp.773-776.

32)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1978.10.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548.

33) 국방부, 『국방백서 1988』(서울: 국방부, 1988), p.120.

34)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는 1992년 6월 30일에 해체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1일부로 한국군 제3야전군사령부가 중서부전선 전체를 담당했고, 1953년 12월에 창설된 제1야전군사령부가 계속해서 동부전선을 담당하였다. 이후 2019년 1월 1일부로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가 통합되어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모든 전선 지역을 담당하였다.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 pp.82-89.

35) 유엔군사령부는 국제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 군사기구이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간 양자협정에 의해 설립된 군사기구이다.

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모든 부대는 전시·평시에 모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전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즉,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78년 11월 7일부로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로 국군의 작전통제권에 대한 지휘계통도 변화했다.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 작전통제는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에서 시작해 미 합참의장, 유엔군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협요소와 전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도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한국방어계획 중 미군의 전시증원계획이 불명확했으며, 전쟁지도방침은 유엔군사령부의 이름 아래 미군만으로 편성된 작전통제체제 때문에 미 태평양사령부와 미 합동참모본부를 거쳐야 수정할 수 있었다.<sup>36)</sup>

그러나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미국에 의한 수직적 관계에서 한미 양국이 함께 작전통제에 관여하는 보다 수평적 관계로 발전되었다. 즉, 국군은 양국의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국가통수기구(NCA: National Command Authority), 양국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되는 한미군사위원회(MC)를 거쳐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작전통제를 받게 되었다.<sup>37)</sup> 한미연합사는 한미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한국 방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와 동시에 임무에 필요한 연합군사력을 한미군사위원회에 건의하고 작전통제부대의 연합연습·합동연습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역할을 맡았다.<sup>38)</sup>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미국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직접 전략지침을 받아 평화유지와 정전협정 업무만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별개의 법적·군사적 기구로서 상호지원과 협조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선별적으로 지정된 미군·한국군의 전투부대를 작전통제하였다.<sup>39)</sup> 특히 연합군사령부의 작전통제 대상인 미군·한국군 부대의 목록은 양국이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는 필요에 따라 특정부대를 작전통제 관계에서 해제할 수 있었다. 평시 부대운용의 핵심 중 하나인 대침투작전은 이미 1969년부터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관계없이 한국군이 단독으로 실시해왔다.<sup>40)</sup>

36)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서울: 재향군인회, 2007), pp.49-50.

37) 한국국방안보포럼 엮음,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서울: 플래닛미디어, 2006), pp.45-46.

3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p.278.

39) 국방부, 『국방백서 1988』, p.122.

40) 국방부, 『국방백서 1989』(서울: 국방부, 1989), p.153.

### 3.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과정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한미 연합안보체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근간으로 형성되었다. 첫째,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장관 수준에서 중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셋째,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이다.<sup>41)</sup>

한미 양국은 미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던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체제를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개혁하는 방안을 1975년부터 공동으로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협의결과가 반영되어 1978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만들어졌다. 연합군사령관이 부재 중일 경우에는 부사령관이 대리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79년 10·26사태 당시 연합군사령관(미군)이 미국 출장으로 부재하자 부사령관(한국군)이 「전투준비태세 3호」를 발령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지휘기구를 통해 통수기구에 보고하면서 미 합동참모본부·태평양지구사령부와 필요한 군사조치를 협의하고 처리하였다.<sup>42)</sup>

양국이 1975년부터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체제의 변화를 추진한 이유는 1969년 7월에 발표된 「닉슨독트린」에 따라 한반도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닉슨독트린」 이후 1970년대 중반에 수립한 총체전력개념(Total Forces Concept)을 발전시켜 지역방위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핵심은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것과 미국·동맹국 군대의 연합전력을 토대로 소련을 봉쇄하고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대소(對蘇)전략태세를 유지하면서 동맹국과 공동방위분담을 추진하였다.<sup>43)</sup>

닉슨 행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통해 주한미군 지상군의 완전 철수를 추진했으며, 한반도 안보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의 당사자 원칙’을 강조하였다.<sup>44)</sup> 이에 따라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지원 아래 국군을 현대화하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탈냉전의 흐름이 격화되고 국군의 작전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5년 제17차 SCM에서 처음으로 연합지휘체계의 개선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

41)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서울: 국방부, 1992), p.187.

42)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pp.75-86, 115-116.

43) 국방부, 『국방백서 1989』, p.48.

44) 김수광, “닉슨-포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연구,” 서울대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2008), p.341.



다.45)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80년대 말부터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함께 협의하였다. 양국의 군사당국자들은 먼저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였다.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1987년 8월 ‘작전통제권 환수’와 ‘용산기지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합참의 기능과 위상을 장차 환수될 작전통제권 행사기구로 격상시키기 위해 이른바 ‘8·18계획’을 입안해서 1990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도 1988년부터 냉전 해체 시작에 따른 해외미군 감축의 필요성과 ‘5·18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반미감정 등과 관련해 작전통제권 이양의 가능성을 행정부와 의회의 인사 등을 통해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8월에는 미 국방예산 감축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안을 담은 「년·워너 수정안」이 상·하원 공동법안으로 입안되면서 작전통제권 환수가 논의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실제로 이 법안에 따라 1991년 5월에 발표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D)」에는 1990년대 후반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46)

미국 의회는 「년·워너 수정안」에서 ① 미국은 동아시아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력의 위치·전력구조·임무를 재평가하고, ② 한국은 안보를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③ 한미는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같은 정책판단을 바탕으로 미 행정부에 주한미군에 관한 철수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 4월까지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변경하고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한미 군사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47)

또한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따라 1990년 이후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추진되자 그동안 주한미군이 수행해 오던 역할이 점차 국군에 이양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3월에는 군사정전위원회(軍事停戰委員會) 수석대표가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되었고, 그해 10월에는 미 제2사단이 담당하던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유엔군측 ‘을’구역의 경계책임과 경계초소(GP)

45) 정용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 연구,” 경기대 외교안보학과 박사학위논문(2006), p.67.

46) 한국국방안보포럼 엮음,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p.62.

47)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272.

2개소 중 1개소를 한국군이 인수하였다. 1992년 말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미군 병력 100명이 한국군으로 대체되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서울 북방의 야전군사령부로서 주요한 방위역할을 담당해 오던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를 1992년 7월 1일부로 해체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연합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던 지상구성군사령부(GCC) 사령관을 1992년 12월 1일부로 한국 측 장성으로 보임하였다.<sup>48)</sup>

1988년부터 시작된 한미 간 논의에서 양국 군사당국자들은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한국 내 반미정서와 미국 내 정치사정을 고려해 평시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이양한다는 입장 아래 1990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1991년 1월 1일부 이양 방안’을 한국 측에 전달하였다.<sup>49)</sup>

이후 한미 양국은 1991년 11월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에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1996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미 간 협의 끝에 1992년 10월 제24차 SCM에서 양국은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늦어도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국군에게 인계’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그리고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 시행지침과 구체적인 환수시기를 1993년 제25차 SCM에 건의하도록 지시하였다.<sup>50)</sup>

이에 따라 1993년 한미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연합사 안(案)을 기초로 양국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연구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8월~12월에 한미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였다. 1993년 11월 3일~4일에 개최된 제2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제1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을 보고받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보유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sup>51)</sup>

한미 양국은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합군사령관에게 부여할 연합 권한위임사항(CODA)<sup>52)</sup>에 대해 논의했으며, 1994년 9월 23일 합참 작전부장과 연합사 기획참모부장이 래피드썬더(Rapid Thunder) 연습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해 합의하

48) 국방부, 『국방백서 1993~1994』(서울: 국방부, 1994), pp.102-103.

49) 한국국방안보포럼 엮음,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pp.62-63.

50) 제2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2.10.8.).

51) 제2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3.11.4.).

52)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전시 작전통제되는 한국군 부대에 대해 평시부터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연합군사령관에게 위임한 권한이다. 위임사항은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실시,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정보 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 6개 분야이다.

였다. 양국의 국방당국은 이 기본합의서에 의거해 평시작전통제권 관련 근거문서인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을 개정하고 「전략지시 제2호」를 새로 작성하였다.

1994년 10월 6일~7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26차 SCM과 제16차 MCM에서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양국 정부에서 필요한 내부절차를 완료한 후 1994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



〈사진 3-25〉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신고(1994.12.1.)

※ 출처: 국가기록원

미국대사는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의 합의사항을 조약 차원으로 승격시키는 외교적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서는 1994년 12월 1일부로 발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sup>53)</sup>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됨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작전통제권만 행사하였다.<sup>56)</sup>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후에 체결된 「교환각서」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1954년 11월 7일에 서명되고 1955년 8월 12일과 1962년 1월 30일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 및 1978년 10월 17일자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과 1978년 7월

다고 명시되었고, 이로써 양국의 공식적인 합의절차가 종료되었다.<sup>53)</sup>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11월 3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국무회의는 11월 14일 제48차 회의에서 이를 가결하였다.<sup>54)</sup>

이후 1994년 11월 30일에 한승주 외무부 장관과 레이니(James T. Laney) 주한

53)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4.10.7.).

54) 총무처 의정국, 「국무회의 의안처리전(제726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 개정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국무회의(1994.11.14.).

55)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1994.11.30.).

56) 국방부, 『200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4), p.92.

27일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94년 10월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정부 국방당국 간에 전술한 「관련약정」의 개정에 관한 합의 결과,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정전 시 수행하여 온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사항을 미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1994년 10월 7일자 「관련약정」은 각하의 같은 취지의 회답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여 199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며, 전술한 1978년 10월 17일자 각서와 1978년 7월 27일자 약정은 1994년 12월 1일부로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sup>57)</sup>

평시작전통제권이 1994년 12월 1일 00시부로 국군으로 환수됨에 따라, 1978년 11월 7일 「한미 정부 간 체결한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와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의 효력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후속조치로 1995년 3월 23일 합참 작전본부장 김동신 육군 중장과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프랭크스(Tommy R. Franks) 미 육군 소장이 「유엔사/연합사와 한국 합참 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 부대에 행사했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되었고, 동시에 한국군 장성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상구성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등 한국군의 지휘범위가 확대되었다. 이후 국군은 주도적으로 평시 경계임무, 초계활동, 부대이동, 군사대비태세 강화 등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국군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과 군사교리, 훈련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평시에 전시 작전계획상 지정된 부대에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직접 행사하거나 예하 지휘관을 통해 행사하였다. 정전협정 유지는 여전히 유엔군사령관의 책임하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상호지원과 협조관계에 있다.

57) 총무처, 「조약 제1258호」, 『관보 제12887호』(대한민국정부, 1994.12.10.), p.4.

## 제3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1. 시기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가.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8)

2000년 이후 한국은 국력 상승과 국군의 신장된 군사능력, 그리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확고한 한미 동맹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해 오고 있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새롭게 등장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등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을 포함한 미군 전체의 군사변혁을 추구해 오고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전환은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연합 군사지휘 구조를 수립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약칭, 전작권) 전환문제는 1987년 작전통제권 전환문제가 정부 내에서 제기되기 시작할 때 이미 개념상 포함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1990년과 1992년에 각각 ‘1995년과 1997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한다.’라고 검토했으며, 1995년에도 2000년 전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다.

한미 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미래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의하였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 개최된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을 공동으로 협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미 합참의장은 2002년 12월 10일 개최된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미래 역할·임무·기능을 고려한 한미지휘체계를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sup>58)</sup>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국방개념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대



〈사진 3-26〉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2002.12.)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8)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 p.85.

령과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2003년 5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미래비전으로 제시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대·심화시킴으로써 한미관계를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었다.<sup>59)</sup>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을 제시하면서 국군의 방위능력을 확대해 한반도 안보에 주체적 당사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개념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군사협력과 집단안보체제 등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하는 경우 이를 격퇴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구비한다는 것이었다.<sup>60)</sup>

2003년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공동으로 종합 평가하고,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공동으로 작성하며, 이에 기초해 미래지향적인 지휘관계를 연구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어 2003년 말에는 한국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 간에 한미지휘관계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에는 양국이 한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양국의 국방·외교 당국간 협의체인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과 관련된 의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2005년 9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작전통제권 문제를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하면서 양국 사이에 논의가 시작되었다.<sup>61)</sup>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02년 12월 제34차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수행해 온 일부 군사임무를 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뒤이어 2003년 11월 17일 제35차 SCM에서 미국은 10개의 군사임무를 국군으로 전환한다는 양국 간 합의를 확인하였다.<sup>62)</sup> 양국은 2004년 10월 22일 제36차 SCM에서 국군으로 전환되는 10대 군사임무의 현황을 검토했으며, 성공적인 군사임무전환을 통해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sup>63)</sup> 이후 국군은 2006년까지 9개 군사임무를 인수하고 2008년에 주·

59) 외교통상부, 『2005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5), p.36.

60) 국방부, 『2004 국방백서』, p.81.

61) 한국국방안보포럼 엮음,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p.63;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 p.85.

62)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3.11.17.).

63) 제3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4.10.22.).

야탐색구조 임무를 인수함으로써 10대 군사임무 인수를 완료하였다.<sup>64)</sup>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은 2005년 10월 21일 제37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2006년 3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로드맵 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 약정(TOR)」을 체결하고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긴밀한 협의 끝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작성하였다.<sup>65)</sup>

한미 양국은 2006년 9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같은 해 10월 20일에 열린 제38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으로 전환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것이었다.<sup>66)</sup>



〈사진 3-27〉 전략적 전환계획 서명  
(2007.6.28.)

※ 출처: 『2008 국방백서』

2005~2006년에 일련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 네 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는 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하고, ②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미 증원군 전개를 보장하며, ③ 정보자산 등 한국군의 부족전력은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④ 연합대비태세와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sup>67)</sup>

2007년 1월 한미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한미 지휘관계 연합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약정」<sup>68)</sup>을 체결하였고,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64)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87.

65)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89.

66)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6.10.20.).

67)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89.

68) 이 관련약정은 2007년 1월 19일 한미 양측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지휘관계의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목적·원칙·주체·일정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을 문서화해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이행실무단(CIWG)’이 구성되어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STP)」<sup>69)</sup>을 작성하였다.<sup>70)</sup>

이후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2007년 6월 28일 한미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서명했으며, 2007년 11월 7일 제39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sup>71)</sup>

2007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의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미래에 구축될 연합지휘체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시와 평시의 구분 없이 각각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병렬형 구조였다. 2007년에 합의된 병렬형 연합지휘체계의 기본 틀은 2013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sup>72)</sup>

#### 나. 이명박 정부 시기(2008~2013)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동맹의 가장 큰 변화는 양국이 2008년 4월 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2008년 8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협력범위를 안보·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킨다는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sup>73)</sup>

한미 양국은 2009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은 2009년 6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sup>74)</sup>

2009년 6월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69)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까지 추진과제와 일정 계획을 담은 한미 전략문서이다.

70)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66; 외교통상부, 『2007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7), p.44.

71)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7.11.7.); 외교통상부, 『2008 외교백서』, p.35.

72) 최용환,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32.

73) 외교통상부, 『2009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9), pp.30-31.

74) 외교통상부, 『2010 외교백서』, 2010, pp.33-34.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였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자유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과 군사·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호혜적인 신뢰동맹을 추구하였다. 또한 포괄적 전략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동맹을 지향하였다.<sup>75)</sup>

한미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17일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이후부터 매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STP)」의 이행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sup>76)</sup>

2009년 6월에 합의된 '한미동맹 공동비전' 중에서 국방 분야를 구현하기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2010년 10월 8일 제42차 SCM에서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한미 국방협력지침(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에 합의하였다.<sup>77)</sup> 양국은 이 지침을 통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지역과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동맹의 전략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 및 비대칭 위협과 관련해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sup>78)</sup>



〈사진 3-28〉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10.10.8.)

※ 출처: 국방부

또한 한미 양국은 전문가들로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2009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상태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 '정상추진'으로 보고되었다. 한미가 최초로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STP)」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당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 도출된

75)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62.

76)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8.10.17.).

77)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0.10.8.).

78) 「한미 국방협력지침」(2010.10.8.),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p.62-63.

보완소요를 기초로 해서 2010년 3월에 「전략적 전환계획 수정 2호」로 대체되었다.<sup>79)</sup>

그러나 한반도 안보상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에 대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등 연속적으로 군사도발을 일으켰으며, 화폐개혁의 실패와 김정일의 건강 악화 등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동북아 역내 여러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안보적 유동성이 높은 시기였다. 이처럼 변화된 안보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미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0년 6월 26일 양국 정상은 한미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sup>80)</sup>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기존의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대신해서 새로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제1차 한미외교·국방(2+2)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전략동맹 2015(Strategic Alliance 2015)」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2010년 10월 8일 제42차 SCM에서 「전략동맹 2015」에 서명하였다.<sup>81)</sup>

「전략동맹 2015」는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준문서, 즉 군사현안을 주로 다룬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전략동맹 2015」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까지 군사적 조치사항뿐만 아니라, 동맹 현안의 발전계획을 포함한 포괄적 성격을 가진 한미 공동의 전략문서였다. 이는 위상과 이행체계 측면에서 합동참모본부 차원을 넘어 국방부와 외교부를 포함한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하였다.

「전략동맹 2015」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양국 간의 각종 안보협의체를 통합·조정·감독하기 위해 2011년 10월 28일 제43차 SCM에서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관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012년 4월과 9월에 각각 제1차·제2차 KIDD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한미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전략동맹공동실무단(SAWG) 등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 협의 채널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한미외교·국방(2+2)장관회의·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안보·외교 분야 장관급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79) 국방부, 「2010 국방백서」, p.66.

80)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70.

81)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71.

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군의 능력 확대를 위한 「전략동맹 2015」와 「한미통합 국방협약체(KIDD)」로 대표되는 한미 간 협의회는 동맹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sup>82)</sup>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단’ 조직을 합참의장 직속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21일부로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단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단을 통합해 합참의장 직속으로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을 창설하였다.<sup>83)</sup> 추진단 창설 이후 국방부는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장이 주관하는 실무평가회의와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과제를 조정·관리하였다.<sup>84)</sup>

## 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가.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7)

2013년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함께 출범한 해이자 한미동맹이 60년을 맞는 해였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동맹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켰다.<sup>85)</sup>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5월 5일~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두 달 전인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방부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검토할 것을 2013년 5월 미국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주요 제의내용은 기존의 ‘시기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란 이전처럼 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이나 2015년 12월 1일과 같은 특정 시기로 정하지 않고 양국이 합의한 전환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전시작전통

82)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63; 외교통상부, 『2012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12), p.46.

83)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71.

84)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117.

85) 외교부, 『2014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14), p.52.

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 준비상태와 안보 상황 등을 조 건화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후 양국 국방장관은 2013년 10월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심각해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체 계적으로 이행됨으로써 강력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 다. 그 결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조건과 전환시기를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sup>86)</sup>

양국 정상은 2014년 4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을 고려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국방부는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SCM에서 현재의 한 미연합군사령부를 미래지휘구조 개념에 기초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미래사령부(가칭)’<sup>87)</sup> 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sup>88)</sup> 아울러 한미가 합의한 전환조건 중 능력 확보가 예상되는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판단 하고, 조건에 대한 평가 결과와 SCM의 건의를 기초로 양국 통수권자들이 적정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sup>89)</sup>

2014년 10월에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세 가지 전제조 건은 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은 보완·지속능력을 제공하는 것, ②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운용 하는 것, ③ 안정적인 전시 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을 관리하는 것이었다.<sup>90)</sup>

또한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SCM에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해 현재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2015년 제47차 SCM까지 공동으로 발



〈사진 3-29〉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4.10.23.)

※ 출처: 국방부

86)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3.10.2.).

87)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것과 달리 미래사령부는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88)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4.10.23.).

89)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119.

90)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132; 외교부, 『2015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15), p.65.

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필요한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위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sup>91)</sup>

2015년 11월 2일에 개최된 제47차 SCM에서 양국은 제46차 SCM 당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승인·서명하였다.<sup>92)</sup> 이 전환계획은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준문서인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문서였다. 그 핵심내용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전환조건 충족을 위해 군사적 준비 방향과 일정을 담은 포괄적 성격의 한미 연합이행계획이었다.<sup>93)</sup>

박근혜 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연합지휘체계 변경안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미래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이었다.<sup>94)</sup>

한미 양국은 2016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을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연습을 통해 군사능력을 평가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준비는 군사 전환분과위원회, 계획·정책분과위원회, 동맹관리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조정위원회,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연합이행감독체계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였다.<sup>95)</sup>

#### 나.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2)

2017년 한국과 미국에서는 새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Donald J. Trump)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30일에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작권이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91)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4.10.23.).

92)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5.11.2.).

93)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132.

94) 최용환,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p.35.

95)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133.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sup>96)</sup>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 10월 31일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문서에 합의하였다. 즉,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 구조를 계속 유지하되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미래지휘구조에 합의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를 승인하였다.<sup>97)</sup>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이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이행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연합방위지침」 등 4개의 전략문서에 합의하였다. 이 전략문서는 ①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지침」, ②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 ③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④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간 관계 관련약정(TOR-R)」이었다.<sup>98)</sup>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를 통해 양국은 미래연합군사령부를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사한 구조로 유지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sup>99)</sup>

한미 양국은 2019년에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sup>100)</sup> 무엇보다 한미는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세 가지 전환조건 충족에 노력을 집중해왔다. 이 전환조건은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사진 3-30〉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18.10.31.)

※ 출처: 『2018 국방백서』

96)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169.

97)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p.170-171.

98)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p.125, 133-134.

99) 최용환,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pp.37-38.

100)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125.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 주력하였다. 첫째, 양국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임무·역할을 규정하는 전략문서를 발전시켰다. 2019년 6월 양국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 기본안을 확정하였다. 나아가 한미는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역할·책임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2020년 10월 14일 제52차 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의 검증평가를 위한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합의했음을 확인하였다.<sup>101)</sup>

둘째, 국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약 300조 원의 재원을 반영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 평가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sup>102)</sup>를 개최해 전환조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5차례 개최해 한미가 공동으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인하였다. 2020년에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sup>103)</sup>

셋째, 한미 양국은 3단계 연합검증평가<sup>104)</sup>를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하였다. 양국은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연합검증단’을 편성해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였다.

한미 양국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2019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미는 기본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2019년 3월 연합연습 중에 예행연습을 실시해 한미

101)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170.

102)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 간의 4성급 군사회의체이다.

103)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p.170-171.

104)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연합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이다.

연합검증단의 평가능력을 향상했으며, 사전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상설군사위원회(PMC)를 통해 기본운용능력 평가에 대한 준비상태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관 주관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9년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중에 기본운용능력 평가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9년 11월 15일 제51차 SCM을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2020년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2020년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중에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병행하였다. 이처럼 한미 양국은 2019년 이후 안정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sup>105)</sup>

한편 한미 양국은 2016년 이후 5년 만인 2021년 3월 17일 서울에서 한미외교·국방(2+2)장관회의를 재개하였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sup>106)</sup>

뒤이어 2021년 12월 2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53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 부록·별지의 개정을 2022년 전반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때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sup>107)</sup>

#### 다. 윤석열 정부 시기(2022~현재)

한미 양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군은 미국 측과 긴밀한

105)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171.

106) 김도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의 주요내용과 쟁점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91호 (2021), p.7.

107)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21.12.2.).



공조 아래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평가 등 전작권 전환의 주요과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양국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2년에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기로 합의한 것에 근거해,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복원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2년 이후 한미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평가결과,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



〈사진 3-3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22.11.3.)

※ 출처: 국방부

으로 검토해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진행하는 등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sup>108)</sup>

또한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에 서명한 이후,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2년 8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

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목록을 확정했고, 각 능력별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립하였다.<sup>109)</sup>

한미 양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뒤인 2022년 11월 3일 제54차 SCM을 개최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 양국은 한미상설군사위원회(PMC)가 건의한 별지와 부침이 포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의 부록 완성본을 승인했으며,

<sup>108)</sup>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173.

<sup>109)</sup>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171.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평가결과를 승인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는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한미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sup>110)</sup>

현재 한미 양국은 상호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표 3-18〉 작전통제권의 변화·전환·논의과정

시기	주요 내용
1950.7.14.	이승만 대통령,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1954.11.17.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통제권 부여(한미합의의사록)
1978.11.7.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1994.12.1.	한국 합참의장,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6.9.16.	한미 정상,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최초 합의(전환시기: 2009.10~2012.3)
2007.2.23.	한미 국방장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합의
2007.11.7.	한미 국방장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략적 전환계획(STP)」 승인
2010.6.26.	한미 정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 합의
2010.7.21.	한미 외교·국방장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준문서 「전략동맹 2015」 합의
2014.5.7.	한미 정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재검토 합의
2014.10.23.	한미 국방장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2015.11.2.	한미 국방장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 서명
2017.6.30.	한미 정상,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속 추진 합의
2018.10.31.	한미 국방장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수정 1호」 승인
2022.11.3.	한미 국방장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수정 1호」 부록 완성본 승인

※ 출처: 『국방백서』를 토대로 종합 정리.

<sup>110)</sup>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22.11.3.).

Alliance for the Future  
한미동맹 70주년







# 제Ⅳ부

## 한미동맹과 국방협력

제1장 해외파병

제2장 포괄적 안보협력

## 제1장 해외파병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국군을 최초로 파병한 이후 다국적군 평화활동(MNFPO: Multi-National Forces Peace Operations), 유엔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 국방 협력활동(DCA: Defense Cooperation Activities) 등의 해외파병에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파병과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한국의 파병 의지와 노력이 미국의 직접적인 파병 요청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한국은 베트남전쟁 파병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던 한미동맹 관계를 상호 협의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국군현대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이 주도한 걸프·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에 국군을 파병해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미 간 신뢰를 돈독히 하였다.

### 제1절 베트남전쟁 파병

#### 1. 파병 경위와 규모

##### 가. 파병 배경

국군의 베트남전쟁<sup>1)</sup> 파병을 최초로 제기한 것은 이승만 정부였다. 미국의 반대로 성사되진 않았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베트남의 디엔비엔푸(Dien Bien Phu)에서 베트남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 ‘한국군 3개 사단 파병안’을 제시했다.<sup>2)</sup>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 제안은 ‘5·16군사정변’ 직후 다시 제기된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7월 26일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1) 당시 베트남은 ‘월남(越南)’이라고 지칭되었으나,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공식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베트남’이란 용어를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2003)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월남전쟁’ 대신 ‘베트남전쟁’이란 용어를 채택한 이후, ‘베트남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136-137.

“공산주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의 협력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 걸친 어느 지역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up>3)</sup> 1961년 11월 14일 케네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박 의장은 “미국의 승인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베트남에 한국군을 보낼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자유 세계 국가들이 통일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파병 의사를 밝히며 베트남 파병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sup>4)</sup>

당시 박정희 의장은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베트남전쟁 파병을 제의함으로써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sup>5)</sup> 하지만 파병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미국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sup>6)</sup> 한국 정부의 계속된 파병 제안에 대해 당시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함께



〈사진 4-1〉 한미정상회담(1961.11.14.)

중국·소련 등 공산권 국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군 파병을 위한 박정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에도 국군의 전투부대 파병 의사를 전달하여 파병을 위한 명분을 쌓았다. 1963년 말부터 박정희 정부는 국군의 남베트남 파병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던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론과 연계하였다. 정부는 국군을 남베트남에 보내겠다고 먼저 제안함으로써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보다 확고히 하려 하였다.<sup>7)</sup>

1963년 말부터 북베트남이 베트남전쟁에 직접 개입하자, 그동안 지상군 투입을 주저해 왔던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는 1964년 3월 17일 베트남전쟁에 적극 개입할 것

3) Telegram from Park Regarding President's Statement On Berlin, July 26, 19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1권.

4)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November 14, 1961, 3:30-4:50 p.m., "U.S.-Korean Relations," *Northeast Asia, FRUS, 1961~1963, Vol. XVII*, p.536.

5)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권 제1호(1995), pp.29-30.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p.351.

7) 김일영, “1960년대의 정치지형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서울: 백산서당, 1999), pp.328-329.

을 결정하였다.<sup>8)</sup> 이어 4월 23일 존슨 대통령은 ‘더 많은 깃발(more flags)’을 표방하면서 남베트남에 대한 우방국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존슨 행정부는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연합국가들의 지역 안보체제를 이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SEATO를 통한 미국의 베트남정책은 남베트남이 SEATO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프랑스와 파키스탄이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sup>9)</sup>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그 대안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할 우방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한 25개<sup>10)</sup> 우방국에 ‘남베트남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리 정부는 1964년 5월 9일 남베트남의 지원을 요청하는 존슨 대통령의 공한(公翰)을 접수하였다. 남베트남 정부도 1964년 7월 15일 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건군 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을 추진하게 되었다.

#### 나. 파병 과정과 규모



〈사진 4-2〉 제1이동외과병원 창설식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

1964년 미국 정부는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1개 이동외과병원의 파병을 요청했다.<sup>11)</sup>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정부가 요청한 ‘1개 야전병원’의 파병은 인도적 차원의 파병으로 ‘전투병력 파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해외파병에 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지원단 파병을 귀중한 기회로 삼았다. 남베트남 정부는 태권도교관단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1964년 7월 31일 장병 130명으로 구성된

8) Robert S. McNamara, *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 (Washington, D.C.: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1995), pp.160-163.

9) 외교부 외교문서, 문서번호-772-1338, 「월남 관계 비밀문서」, 1971년 6월, 필름 번호 A-0004, 미국의 월남전개입에 관한 문서(1963-1965) 공개, 1971(외교부 외교자료과).

10) Cable Circular(2043), Rusk to Lydman(1 May 1964), National Security File, Box 4, p.8. 서한 수령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독, 일본,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한국, 대만, 파키스탄, 그리스, 터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스웨덴 등이다.

11)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Seoul Embassy, July 3, 1964, Asia and the Pacific: National Security Files, 1963~1969, First Supplement, Microfilmed from L.B.J. Library No. 5-0649.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장교로 구성된 태권도교관단을 남베트남에 파견하는 파병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sup>12)</sup> 파병 준비를 마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은 9월 22일 국군 최초로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Saigon)에 도착하여 주월한국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베트남전쟁이 확대되자, 미국은 전쟁의 명분을 위해 더 많은 우방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아울러 후방지역에서 전쟁 복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던 남베트남군까지 전선에 투입되면서 후방지원 병력의 추가지원이 절실했다.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는 남베트남에서 후방지원을 담당할 비전투부대의 파병을 한국에 요청하였다. 미국이 요청한 병력은 공병 1개 대대와 수송 및 정비 요원 등 1,000여 명 규모의 병력이었다.

한국은 건설지원활동이 아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자체 경계를 위한 보병 1개 대대를 추가하여 2,000명 규모의 공병과 수송대 등으로 편성된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파병동의안을 1965년 1월 국회로부터 재가받았다.<sup>13)</sup> 건설지원단은 같은 해 3월 중순에 사이공 인근의 지안(Di An)에 주둔해 사이공 외곽도로 건설과 각종 건설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 4-3〉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 출처: 합동참모본부

한편 국방부가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 파병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던 1964년 8월 2일 ‘통킹만사건’<sup>14)</sup>이 발생했다. ‘통킹만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고, 미국의 지상군 파병은 현실화되었다. 대통령 선거 등 국내정치 일정에 따라 지상군 파병을 늦추고 있던 미국은 1965년 3월 8일 해병 2개 대대를 첫 번째 지상군 전투부대로 다낭(Da Nang)에 상륙시켰다. 이어서 미 합참은 1965년 3월 20일 “베트남에서 더욱 적극적인 작전을 위해서 미군 2개 사단과 한국군 1개 사단의 파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sup>15)</sup> 이를 계기로 국군의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12) 제44회 제13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4.7.31.).

13) 제47회 제1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5.1.26.).

14) 확전의 명분이 되었던 통킹만사건은 1964년 8월 2일과 4일, 통킹만에 정박 중인 미 구축함 매독스 호와 터너조이호가 북베트남군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한 사건이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선전포고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북베트남을 공식적인 적으로 간주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p.98-99.

15)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최종기 역, 『왜 월남은 패망하였는가』(서울: 광명출판사, 1976), pp.147-149.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65년 4월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전투병력의 파병을 요청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5월 17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1개 전투사단의 파병에 동의했고,<sup>16)</sup> 파병조건으로 제시한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타결되었다. 이동원 외무부장은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 대사와 협상 시 ① 파병 병력의 상한선은 5만 명 이내로 한다. ②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③ 북한의 침공시 미국이 즉각 출병할 수 있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한다. ④ 파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 ⑤ 남베트남에서 사용할 군수품 공급 등 한국의 남베트남 시장(市場) 진출을 보장한다 등의 파병조건을 제시했다.

6월 21일 남베트남 정부에서도 한국군의 전투부대 파병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8월 13일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전투사단 파병안’이 가결되었다.<sup>17)</sup> 의무부대나 비전투부대의 파병과 달리 국가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전투부대의 파병에 대한 신중론과 반대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투부대의 파병으로 국군의 장비현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부대의 증편으로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고, 베트남 전선은 한국의 휴전선과 직결된 제2의 전선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sup>18)</sup>

국방부는 합참에 ‘파병기획단’을 설치해 검토한 결과, 수도사단(-)와 제2해병여단을 파병부대로 선정하였다. 국방부는 1965년 9월 25일 파병부대를 통합지휘할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수도사단장 채명신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국군 최초의 합동군사령부가 탄생하였다.<sup>19)</sup> 1965년 10월 9일 제2해병여단(청룡부대)이 캄란(Cam Ranh)만에 상륙했고, 같은 달 22일 육군 수도사단(맹호부대)이 꾸년(Quy Nhon)에 도착했다.

1965년 7월 ‘베트남전쟁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던 미국 정부는 1965년 말까지 18만 4,300여 명에 달하는 미군을 남베트남에 파병하였다. 동맹국인 한국은 1개 사단을, 오스트레일리아는 1개 대대를 각각 파병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베트남 사태를 미국의 의도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병력 증원이 필요하였으나, 미국 내 반전여론이 비등하여 추가 파병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파병된 한국군의 활약을 주시하던 존슨 행정부는 게릴라전쟁에 잘

16) 이미 1964년 10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번디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에게 파병 의사를 나타냈다.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서울: 고려원, 1992), pp.105-107.

17) 제5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1965.8.13.) 표결 결과 전투부대 파병은 찬성 101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18) 국방부,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0), pp.348-349.

19) 주월한국군사령부는 「대통령령 제2226호」(1965.6.29.)와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1965.9.20.)에 따라 국방부 직속부대로 창설되었다. 최초 창설 인원은 장교 208명을 포함하여 총 398명이었다.

훈련된 한국군이 베트남의 작전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sup>20)</sup> 이에 존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국제전 성격을 부각하면서 미국 내 반전여론을 무마시키는 방안으로 한국군 전투부대의 증파를 요청하였다. 미국 정부의 추가 파병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긍정적이었는데, 1965년 1차로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부터 국군 파병 규모를 5만 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1)</sup> 또한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도 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단급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에 증파를 요구하고 있었다.

미국의 러스크(Dean Rusk) 국무부장관은 1965년 12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한국군 전투부대의 추가 파병을 공식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동원 장관은 제3차 파병 시 합의했던 한국군 장비현대화 등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선(先) 약속이행, 후(後) 증파’를 주장하였다. 반면 러스크 장관은 ‘선 증파, 후 약속이행’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sup>22)</sup> 정부는 전투병 추가 파병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국가안보에 대한 공약을 명확하게 재확인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즉,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에 대한 대가로 우리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였다.<sup>23)</sup>

1965년 12월 중순 존슨 행정부는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전투부대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고, 이듬해 1월 1일과 2월 22일 두 차례 방한한 험프리(Hubert H. Humphrey) 부통령도 한국의 안보와 지원을 약속하면서 증파를 요청했다. 국군의 추가 파병 관련 논의 끝에 1966년 3월 4일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는 이동원 외무부장관 앞으로 서한(일명, 「브라운 각서」)을 보내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에 관한 16개 항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위한 장비 제공, 병기창 확장 시설 제공, 군사원조 이관 중단,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원조, 차관 제공,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등이었다.<sup>24)</sup>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지원을 「브라운 각서」로 보장함에 따라 국군 전투부대의 추가 파병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1966년 3월 20일 국회는 제9사단과 수도사단 제26연대의 추가 파병안을 의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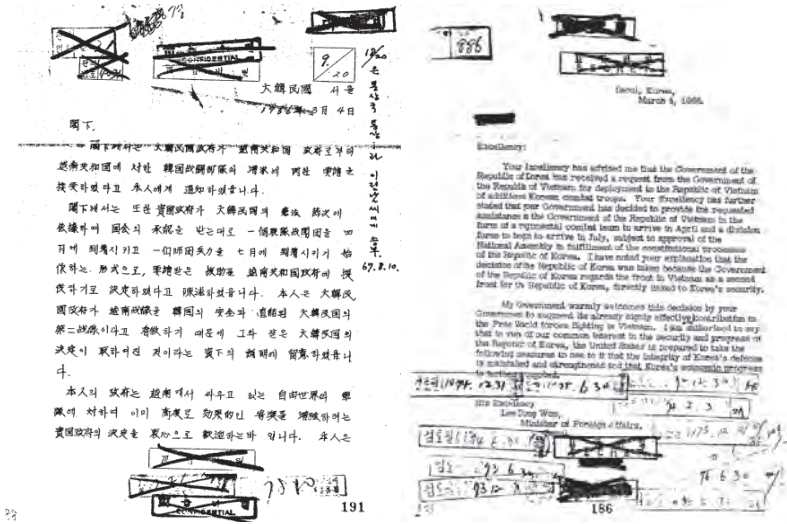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 p.359.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185.

22)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pp.105-110.

23)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서울: 광명출판사, 1996), pp.501-502.

24) 「브라운 각서」(1966.3.4.), 외교사료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연구총서』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8-10.



〈사진 4-4〉 「브라운 각서」 국문 및 영문

※ 출처: 외교사료관

추가 파병부대인 수도사단 제26연대는 1966년 4월 19일 궤년(Quy Nhon)에 상륙하였다. 제9사단(백마부대)은 10월 8일까지 닌호아(Ninh Hoa) 일대에 전개하였다. 이로써 주월한국군은 남베트남 중부 해안의 핵심지역을 담당하며 미군과 함께 베트남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제9사단의 파병에 따라 예하부대의 전투군수지원을 위해 수도사단 예하의 군수지원사령부를 모체로 제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를 창설하였다.<sup>25)</sup> 또한 해상수송지원을 위해 비둘기부대 예하의 해군수송분대를 해군수송전대(백구부대)<sup>26)</sup>로 개편하였으며, 근접항공지원 및 공중수송지원을 위한 공군지원단(은마부대)<sup>27)</sup>을 창설해 각각 주월한국군사령부 예하부대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주월한국군은 효율적인 지역평정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군단급 규모로 확장되어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

25) 제100군수사령부는 제9사단 파병에 따라, 1966년 6월 1일부로 수도사단 군수지원사령부를 모체로 증·개편되어 주월한국군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제1군수지원단은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 제2군수지원단은 제9사단을 직접 지원하였다. 제100군수사령부는 한국군 파병 기간 중 남베트남군과 미군 및 한국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았다. 1972년 제2해병여단의 철수에 따라 이를 지원하던 제11군수지원대대와 제1의무치료중대가 철수한 후, 1973년 한국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6년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하였다. 육군군수사령부, 『군사령부 50년 발자취』(대전: 육군군수사령부, 2010), pp.21-70.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121.

27) 1965년 수도사단과 해병여단 파병 당시 공군 전투부대 파병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대신 참모장교와 전술항공지원반과 공수지원반을 파견하였다. 1966년 제9사단의 추가 파병 및 베트남전쟁의 확대에 따라 1966년 10월 17일 제8공수 비행대대를 '은마부대'로 명명해 주월한국군 공수지원을 담당하게 하였다. 공군본부, 『공군사』 제4집(서울: 공군본부, 1977), pp.109-114.

었다. 베트남에 파병된 국군의 병력 규모는 1968년에 약 5만 명에 이르러, 태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미국의 동맹군 중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병한 국가가 되었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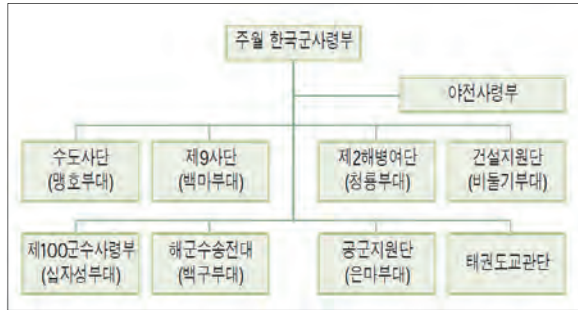
베트남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또다시 한 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1966

년 가을 한국을 방문한 존슨 대통령은 추가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현 병력 수준을 감축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한국을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sup>29)</sup> 정부는 미국의 요청과 별개로 3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는 제2해병여단의 병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4개 대대로 증편하고, 1967년 7월 해병대와 지원부대로 구성된 2,963명을 추가 파병하였다. 정부는 이 파병을 ‘병력 교대를 위한 파병’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파병하였다.

그 후에도 미국 정부는 한국군의 증파 요청을 위해 1967년 8월 클리포드(Clark Clifford)와 테일러(Max Taylor) 장군을 특사로 보냈다. 미국 정부의 파병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미국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파병 병력이 5만 명에 달했고,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과 같은 북한의 대남도발, 베트남 정세 악화, 미국 내 반전공세 등으로 더 이상 베트남전쟁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 파병을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1968년 상반기 중에 파병 예정이던 1만 1,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안은 중단되었다.<sup>30)</sup>

미국 정부는 1968년 1월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 Nation Liberation Front)<sup>31)</sup>이 감행한 ‘땃(Tet)공세’<sup>32)</sup>의 충격으로 베트남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였다.

〈그림 4-1〉 주월한국군의 편성 기구도



28) 이미 1964년 말 박정희 대통령은 국군의 파병 규모를 최대 5만 명 수준으로 구상했다.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pp.112-113.

29) 김영주(전 외무부차관), “박 대통령과 외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보』 4권(서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2005), p.8.

30)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 발전』(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p.309.

31)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은 일반적으로 ‘베트남공산주의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1960년 12월 20일에 결성된 무장세력을 포함한 구성요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미군과 한국군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을 베트남(Viet Cong)으로 칭했다. 약칭으로 ‘VC’로 표기하기도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33.

32) 땃(Tet)은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음력 1월 1일로, 예년과 같이 임시 휴전이 발효될 것으로 판단하여

1968년 3월 미국은 북베트남을 무력으로 굴복시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정책을 버리고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고 하였다. 그런 가운데 존슨 대통령은 1968년 4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추가 파병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월에 남베트남의 응우옌 반 티에 우(Nguyen Van Thieu) 대통령도 박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하는 공한(公翰)을 보내왔으나, 박 대통령의 추가 파병 불가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그 이후로 더 이상의 파병요구는 없었다. 베트남전쟁 파병의 주요 연혁과 연도별 파병 병력 현황은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1> 베트남전쟁 파병 주요 연혁

일시	주요 내용
1962.2.8.	미국, 군사원조사령부 창설
1964.5.9.	미국, 베트남 지원 요청
1964.7.15.	남베트남 정부 지원 요청
1964.7.31	한국, 최초 파병동의안 가결
1964.9.11.	제1차 파병[이동외과병원·태권도교관단]
1965.1.26.	한국, 2차 파병동의안 가결
1965.2.13.	제2차 파병[비둘기부대(한국군사원조단 → 건설지원단)]
1965.8.13.	한국, 3차 파병동의안 가결
1965.9.25. ~10.12.	제3차 파병[맹호부대(수도사단(-))·주월한국군사령부·청룡부대(제2해병여단)] - 맹호부대(1965.10.12.): 전투수행, 남베트남 귀년, 총인원 100,238명 - 주월한국군사령부(1965.9.25.): 남베트남 사이공, 총인원 11,814명 - 청룡부대(1965.10.3.): 전투수행, 총인원 40,056명
1966.3.15.	백구부대(해군수송전대) 파병 * 수송지원, 남베트남 사이공, 총인원 3,433명
1966.3.22.	한국, 제4차 파병동의안 가결
1966.4.11	맹호부대 제26연대(해산진부대) 파병
1966.6.1.	십자성부대(제100군수사령부) 파병 * 군수/건설 지원, 남베트남 나짱, 총인원 53,488명
1966.8.9.	제4차 파병[백마부대(9사단)] -전투수행, 남베트남 나짱/깎란, 총인원 88,551명
1966.10.17.	은마부대(공군지원단) 파병 * 수송지원, 남베트남 사이공, C-54 수송기 4대, C-45 수송기 3대
1967.7.	해병대 및 지원부대 파병 - 제2해병여단 증편, 총인원 2,963명

※ 출처: 국방부, 『국방사』 제3집, pp.343-355, 449-467.

남베트남군과 우방국 병력도 느긋한 휴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FL)과 하노이 정부군이 30일 새벽과 31일 새벽을 기해 남베트남 전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일제히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였다.

〈표 4-2〉 연도별 베트남전쟁 파병 병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정규군					기타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1964	140	140	140	-	-	-	-
1965	20,541	20,541	15,973	261	21	4,286	-
1966	45,605	45,605	40,534	722	54	4,295	-
1967	48,839	48,839	41,877	735	83	6,144	-
1968	49,869	49,838	42,745	785	93	6,215	31
1969	49,755	49,720	42,772	767	85	6,096	35
1970	48,512	48,478	41,503	772	107	6,096	34
1971	45,663	45,632	42,354	622	98	2,558	31
1972	37,438	37,405	36,871	411	95	28	33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196.

#### 다. 한국군 철수

1968년 1월 북베트남군과 NLF의 ‘땃(Tet)공세’ 이후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급격히 바뀌는 가운데 공화당의 닉슨(Richard M. Nixon)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닉슨의 베트남정책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서서히 철수하고, 그 공백을 남베트남군으로 메우는 것이었다. 닉슨은 ‘베트남에서 단계적 철군’을 발표하고, 1969년 7월부터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참전국들도 미군과 보조를 맞추어 주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요청으로 남베트남에 파병했던 연합군의 철수가 시작되자, 한국에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국군의 철수문제가 제기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남베트남으로부터 국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주한미군의 철수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적어도 국군이 남베트남에 파병되어 있는 동안은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70년 7월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의 철수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sup>33)</sup>

이세호 주월한국군사령관은 1970년 11월 현지정세 보고에서 다른 연합군의 철수계획을

33) 합동통신사, 『연합연감』(서울: 합동통신사, 1971), p.42.

감안하여 철수를 건의하였다.<sup>34)</sup> 박 대통령은 이세호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정세보고와 국내외의 여론 등을 검토한 결과 1971년 1월 11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철군 문제를 공식화하였다.

미국은 1968년 6월 54만 5,000여 명이던 주월미군을 1970년 43만 4,000여 명으로 줄였지만, 주월한국군은 즉각 철군을 단행하지 않았다. 미국과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신의를 지키면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시점에 주월한국군을 철수하고자 고심하였다. 정부는 미국 및 남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거쳐 1971년 11월 6일 국군의 제1단계 철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제1단계 철수부대로 제2해병여단과 해군수송전대 및 지원부대 일부 병력 등 1만 명을 7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이 병력은 1971년 12월 1일부터 1972년 4월 13일까지 해상으로 철수하였다.<sup>35)</sup>

제2단계 철수는 철수시기를 두고 한·미·남베트남 정부 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1972년 말까지 나머지 국군을 모두 철수시킬 방침이었으나, 미국은 국군의 철수를 1973년 전반기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sup>36)</sup> 남베트남은 1973년 말까지 계속 주둔해 달라고 요청했다.<sup>37)</sup> 국방부는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와 자주적 방위태세의 확립’이라는 목표하에 국내외 여론, 국군의 안전보장문제, 경제적인 요인, 대북관계, 대미관계, 대베트남관계 등을 고려하여 1973년 전반기 철수를 최종 방침으로 결정하였다.<sup>38)</sup> 주월한국군의 철수는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지만 한미 안보협력을 염두에 두고 철수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연합군의 명분을 살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1972년 말 기준으로 국군은 남베트남에 파병한 연합군 중 가장 많은 병력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고<sup>39)</sup> 주력부대는 1973년 1월 베트남전쟁 휴전 시까지 잔류하였다.<sup>40)</sup>

한편 1972년 9월 이후 베트남 평화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평화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킨다.”라는 평화협정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해 주월한국군을 신속히 철수시키는 「판문점계획」을 수립하였다.<sup>41)</sup> 이어서 1973년 1월 23일

34) 주월한국군사령부, 「정기 정세보고」(1970.11.11.).

35)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434-435.

36) 국방부, 「제2차 철군계획에 대한 연구」, 1972, 정부기록보존소 CA002752자료, p.233.

37) 외무부, 「티우 대통령과의 면담내용 보고」 정부기록보존소 CA004741자료, p.20.

38) 국방부, 「제2차 철군계획에 대한 연구」, 1972, 정부기록보존소 CA002752자료, pp.230-231.

39) 1972년 말 기준 남베트남 주둔 연합군 병력 현황을 보면, 한국 3만 7,438명, 미국 2만 9,655명, 태국 38명, 오스트레일리아 128명, 필리핀 49명, 뉴질랜드 53명, 타이완 31명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64.

40)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722.

41) 국방부, 『국방사』 제4집, pp.708-709.



「파리평화협정」이 조인되고 28일 발효됨에 따라 남베트남에 파병된 외국군의 완전한 철수가 시작되었다. 국군은 1973년 1월 30일 선발대 125명이 항공기를 이용해 철수했고, 11개 제대로 편성된 본대는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했다. 그리고 3월 23일 후발대 118명이 복귀하여 3만 8,239명이 철수함으로써 8년 6개월 동안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었던 국군의 철수가 완료되었다.



〈사진 4-5〉 제2단계 철수 장병(수원비행장)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 2. 주월한국군의 작전지휘체계와 한미 연합작전

### 가. 주월한국군의 작전지휘체계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2만 5,000명에 이르자, 이들을 통합지휘할 ‘주월한국군사령부’를 1965년 9월 25일 창설했다.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약 5만 명 정도의 주월한국군을 지휘하는 남베트남 주둔 국군의 최고사령부였다. 예하에는 수도사단(맹호부대)·제9사단(백마부대)·제2해병여단(청룡부대) 등 3개의 전투부대와 제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과 해군 수송전대(백구부대), 공군지원단(은마부대) 등의 지원부대가 편성되었다.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하기 시작하면서 미군 측은 미군·한국군·남베트남군 간의 지휘통일을 강조하면서 주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요구하였다.<sup>42)</sup> 미군 측은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주월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병 당시만 해도 한반도에서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군 장성인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에 국군이 파병될 경우 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당연히 미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국익에 부합된다고 믿고 미군 측에 작전권을 요구했다.<sup>43)</sup> 국군은 전술원칙상 지휘를 통합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군에 이양할 경우 공산 측이 내세우고 있는 ‘용병’ 논리를 합리화하게 된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 p.363.

43)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서울: 팔복원, 2006), pp.51-56.

다는 점과 독립국가의 위신과 군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군 측의 제안을 거절하였다.<sup>44)</sup>

미군 측은 “주월한국군은 미군 지휘하에 예속되어야 한다. 지휘의 일원화를 위해서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끈질긴 교섭 끝에 “주월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남베트남 및 한미 「군사실무약정서」를 1965년 9월 5일과 6일에 각각 체결했다.<sup>45)</sup> 이에 따라 국군은 독자적인 작전 계획에 의해 미군 및 남베트남군과 협조하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주월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문제는 3개국 군사대표로 구성되는 자유우방 군사원조정책회의(FWMAPC: Free World Military Assistance Policy Council)의 결정에 따라 한국군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sup>46)</sup> 작전지휘권을 가진 국군은 국군 특유의 ‘중대전술기지’ 전술을 개발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진 4-6〉 중대전술기지

※ 출처: 전쟁기념관 DB

미군은 ‘수색 및 격멸(Search & Destroy)’ 개념에 입각한 군사력 위주의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는 게릴라들이 은거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탐색해 그들을 찾아낸 후 강력한 군사력으로 격멸하는 정규전 방식의 작전이다. 반면 6·25전쟁 이전부터 북한군의 게릴라전을 경험했던 국군은 미군의 정규전 위주 작전개념을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개념의 작전을 구사했다. 즉, 주민들 속에 숨어있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을 주민과 분리하여 격멸하는 ‘분리(Separation)-차단(Interception)-격멸(Destroy)’의 3단계 작전이었다. 국군의 작전개념은 주민과 게릴라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 관계로 규정했던 마오쩌둥(毛澤東)의 유격 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NLF의 전술을 역이용한 것이었다.

파병 기간 국군은 <표 4-3>과 같이 주월한국군사령부 차원의 군단급 규모 작전 4회와 사단급 규모 작전 26회, 연대급 규모 작전 186회, 대대급 규모 작전 955회 등 총 1,175회

44) 국방부, 『국방사』 제3집, p.352.

45) 「주월 한미 군사실무약정서(1965.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250-2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181.

46) 이훈섭 증언(2001.10.25.), 최용호 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1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181.

의 대부대작전(대대급 이상)을 수행하였다. 중대 전술기지 단위로 수행된 분대~중대급 규모의 소부대 작전 실시 현황은 57만 6,302회였다.<sup>47)</sup>

〈표 4-3〉 대대급 이상 부대 작전 현황(파병 이후~1972.12.)<sup>48)</sup>

(단위 : 회)

구분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계	1,175	15	63	95	170	216	301	257	58
군단급	4	-	-	2	-	-	1	1	-
사단급	30	-	3	9	7	2	4	4	1
연대급	186	2	24	31	48	37	21	15	8
대대급	955	13	36	36	115	177	275	237	49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223.

#### 나. 한미 연합작전

동맹국 간 공식적인 협조기구인 ‘자유세계군사원조정체회의(FWMAFPC)’였다.<sup>49)</sup> 참전국은 정보를 공유했고 전역(戰役)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문서인 「연합전역계획(combined campaign)」을 작성해서 작전을 전개했다. 주로 한국군 주력인 맹호·백마·청룡부대 등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미군의 경우 주월 미 군사원조사령부(MACV: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의 기획처(J-5)가 작전을 담당하였다. 주월 미 군사원조사령부는 합참의 전략 및 작전 지시를 받으면서 태평양 전구(戰區)를 담당하고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전투지휘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예하 통합군사령부였다.<sup>50)</sup> 연합작전지역은 남베트남군 배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남베트남군은 행정구역 44개 성을 기준으로 북으로부터 남으로 제1군단에서 제4군단으로 분할하였다. 미군과 한국군은 주로 남베트남군의 제1군단과 제2군단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태국군과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군, 필리핀군 등은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제3군단 지역에 배치되었다.<sup>51)</sup>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223-224.

48) 1973년에는 대대급 이상 규모의 작전은 없었고, 중대급 이하 소부대 전투만 있었다.

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67.

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68.

한미 간에 이루어진 주요 연합작전으로는 청룡1호작전, 맹호6호작전, 짜빈동(Tra Binh Dong)전투, 베리아(Berrier)상륙작전, 안케고개(deo An Khe)전투 등이 있다. 먼저 1965년 12월 말 청룡1호작전 시 국군은 미 구축함의 함포 지원을 받았다. 당시 제2해병여단은 2개 대대 규모로 광활한 뚜이호아(Tuy Hoa)지역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높았지만 미군 측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우발사태 대비책을 보장하여 작전이 가능하였다.<sup>52)</sup> 청룡1호작전은 베트남전쟁 참전 이후 최초로 전개한 연대급 규모 작전으로, 뚜이호아 일대를 근거지로 암약하고 있던 NLF를 격파하고 꺾년으로 연결되는 1번 도로를 개통했다.<sup>53)</sup>

1966년 9월 하순부터 48일간 계속된 맹호6호작전 시에는 맹호사단 제26연대가 푸캣(Phu Cat)지역에서 NLF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이곳은 동굴이 많아 NLF가 은신하기 좋은 정글 지역이었다. NLF가 동굴로 도망가면 국군은 NLF가 보급이 떨어져서 항복할 때까지 포위망을 풀지 않았다. 이러한 전술로 제26연대는 1954년 이래 NLF가 준동했던 푸캣지역을 평정했다. 이때 국군은 미군으로부터 M48 탱크와 UH-1C 헬기 등을 지원받았다.<sup>54)</sup> 맹호6호작전은 당시의 시점에서 파월 국군의 최장기, 최대 규모의 작전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국군은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으로부터 작전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맹호6호작전의 성공으로 수도사단이 배치된 꺾년 일대 지역은 남베트남 내에서 가장 안정된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었다.<sup>55)</sup>



〈사진 4-7〉 맹호6호작전 시찰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짜빈동전투는 1967년 2월 중순 북베트남군 제2사단 2개 대대와 지방 게릴라 등 연대 규모의 병력이 추라이(Chu Lai) 남쪽 팡응아이(Quang Nai)성 짜빈동 마을에 위치한 제2해병여단 제3대대 11중대 기지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연대 규모 병력의 북베트남군은 아군보다 수적으로 15배 이상 우세하였다. 제11중대 장병들은 화력지원태세와 지원화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해병용사의 투혼을 발휘하였다. 비상대기 중이던 미 해병 제트 폭격

51) Lewis Sorley, A Better War (New York: Harcourt Books, 1999), p.13.

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p.240-241.

53) 해병대사령부, 『베트남전쟁 해병대 전투사』 제1권(화성: 해병대사령부, 2015), pp.64-117.

54) <http://www.army.mil/cmh/art/P-P/as-5/1966.htm>(검색일: 2023.3.1.).

55)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pp.321-337.

기와 헬리콥터는 도주하는 적의 퇴로를 차단했다. 제11중대가 연대 규모의 북베트남군 공격을 막아내며, 중대기지방어에 성공하자 주월미군사령부는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에 찬사를 보내며 그 타당성과 효과를 확실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대급 전술기지 명칭을 ‘화력기지(Fire Base)’로 명명하고, 미군의 전술에 도입했다.<sup>56)</sup>

1969년 9월 12일 감행한 베리아반도 상륙작전은 베트남전쟁에서 한미 해병대가 수행한 유일한 상륙작전이다. 제2해병여단 전술책임지역 동쪽 최남단에 위치한 베리아반도는 북쪽에서 강폭 1~2km의 쯔아다이강(江)(Song Cua Dai)이 흐르고, 서쪽에서 강폭 100~200m의 쯔엉지양강(江)(Song Truong Giang)이 흐르고 있어 주변과 분리되는 섬과 같은 지역이었다. 이곳은 연합군의 지상작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NLF에게는 성역과 같은 곳이었다. 베트남은 이 지역의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반도 일대에 훈련소, 보급 및 의료시설, 탄약과 부비트랩 제조창 등을 설치하여 그들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제2해병여단이 담당하고 있는 호이안(Hoi An)과 주이쑤옌(Duy Xuyen) 일대의 안전을 위해서는 베리아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이동호 제2해병여단장은 미 해병 제3상륙군사령부와 협조하여 베리아반도에서 한국 해병대 3개 대대와 미 해병대 1개 대대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상륙작전을 전개했다. 9월 23일 제2해병여단은 미 해병대가 상륙했던 베리아반도 남쪽까지 소탕한 후 베리아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중대전술기지를 설치함으로써 반도 일대를 장기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sup>57)</sup>

한국군은 1972년 4월 안케고개전투에서도 미군 팬텀기와 B-52를 지원받았다.<sup>58)</sup> 안케고개전투는 국군의 전투부대 파병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수도사단은 1972년 춘계 대공세의 일환으로 안케고개를 점령한 북베트남군 제3사단 제12연대를 16일간에 걸친 혈전 끝에 격멸하고, 안케고개를 되찾아 19번 도로를 정상화했다.

정규작전 외에도 국군은 NLF의 기습공격을 받은 미군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었고 한미관계는 최고 수위에 이르렀다. 리버스(Mendel L. Rivers)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을 베트남전쟁에서 제일의 우방으로 평가하였다.<sup>59)</sup>

56) 해병대사령부, 『베트남전쟁 해병대 전투사』, pp.353-381.

57) 해병대사령부, 『베트남전쟁 해병대 전투사』 제2-1권(화성: 해병대사령부, 2016), pp.487-516.

58) 김영두, 『안케패스 대혈전』(서울: 북코리아, 2018), pp.204-205.

59) 김영주, 『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 인사동문화, 2004), p.1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243-245.

### 3. 베트남전쟁 파병의 영향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에 걸친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은 국방안보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쳤다.<sup>60)</sup>

첫째, 한국은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수평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베트남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병력 부족에 시달리게 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2개 사단을 남베트남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같은 상황에서 결행된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약속받아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수 있었다.<sup>61)</sup> 그 과정에서 한국은 상당 수준의 대미 협상능력을 발휘하여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였던 한미관계’가 ‘상호의존도가 높은 협력관계’로 변화되었다.<sup>62)</sup> 한국 정부가 주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지 않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지휘통일의 원칙을 내세우며 주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은 미국을 설득시켜 이를 넘겨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베트남전쟁 파병을 계기로 미국의 두터운 신임과 신뢰를 받아 한국의 대미발언권이 강화되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베트남전쟁 파병을 계기로 한미 정상급 안보협력이 강화되었다. 1968년 1월 연이어 발생한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과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두고 선별적으로 대응한 미국의 미온적인 조치에 한국 정부가 주월한국군의 철수를 언급하며 반발하자, 미국은 한국 정부를 무마시키기 위해 1968년 2월 밴스(Cyrus Vance) 대통령 특사를 서울에 보냈다. 밴스 특사는 1억 달러의 추가 군사원조와 M-16 소총 생산공장의 건설 및 한미 국방각료급 연례회의 개최 등을 약속하였다. 1973년 3월 국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한미 간 정상급 회담은 세 차례나 열렸다. 1968년 5월에는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제1차 국방각료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1971년 제4차 회의부터는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개칭하고 양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하여 한미 안보 현안을 상호 협의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은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수단인 최고 수준의 안보협의체를 운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 pp.367-370.

61)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223-224.

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p.397-398.

## 제2절 다국적군 평화활동

### 1. 참여 배경 및 현황

냉전 종식 이후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국경, 인종, 종교, 자원문제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평화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 간 자체 해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유엔이 직접 주도하거나 유엔의 위임하에 특정 지역기구 또는 동맹국이 주도하여 이루어진다. 다국적군 평화활동(MNFPO: Multinational Forces Peace Operations)은 지역기구나 특정국의 주도로 다국적군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유엔의 위임 활동으로, 유엔이 직접 주도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평화유지군사령관이 지휘·통제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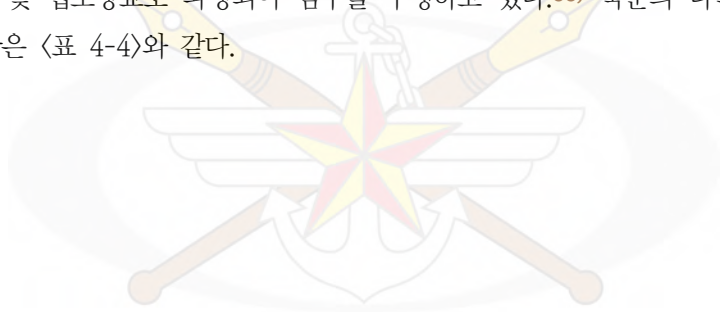
해외파병은 유엔평화유지활동으로 알려져 왔다. 한국은 1991년 유엔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상륙수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국군은 유엔 결의안에 근거한 파병 요청에 부응하여 분쟁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제안보환경과 분쟁양상이 다원화되면서 유엔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기구나 특정국가가 선도하는 다국적군 평화활동(MNFPO)이 활성화되었다. 해외파병이 PKO를 넘어서 MNFPO 영역으로 다원화되고 진화된 것이다.

탈냉전 이후 다국적군이 구성된 주요사례로는 1990년 걸프전쟁 다국적군, 1992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UNITAF: United Task Force),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쟁 간 나토(NATO) 주도의 다국적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t Forces), 2003년 이라크전쟁 다국적군, 2005년 아이티내전 당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임시군(MIF: Multinational Interim Force), 2011년 리비아내전 당시 나토군 등이 있다.

한국의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1991년 1월부터 시작된 걸프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병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2001년 ‘항구적 자유작전(OEF: Operation Enduring Freedom)’으로 명명된 아프가니스탄전쟁,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OIF: Operation Iraqi Freedom)’으로 명명된 이라크전쟁 등 미국 주도의 전쟁에 국군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미국의 직접적인 참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파병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기준 2만 6,726명이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참여하였으며,<sup>63)</sup> 이 중 부대단위 평화활동은 11개 부대에 2만 6,411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지역으로는 걸프 전쟁 지역에 2개 부대, 아프가니스탄전쟁 지역에 5개 부대, 이라크전쟁 지역에 4개 부대를 파병하였다. 이 중 의료지원 부대가 3개 부대(걸프전쟁 의료지원단, 아프가니스탄 동부 부대, 이라크 제마부대), 공병지원 부대가 2개 부대(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이라크 서회 부대), 보병지원 부대가 2개 부대(이라크 자이툰부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수송지원 부대가 4개 부대(비마부대, 청마부대, 다이만부대, 해성부대)였다.

또한 부대단위 다국적군 파병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참모 및 협조장교를 주요 지역에 파견하여 운영하였다. 개인단위로 파병된 다국적군 평화활동에는 315명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 6월 현재에도 미국 중부사령부에 3명, 미 아프리카사령부에 1명, 지부티 CJTF-HOA<sup>64)</sup>에 1명,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있는 쿠웨이트·이라크 다국적군 지원사령부(CJTF-OIR: Combined Joint TF-Operation Inherent Resolve)<sup>65)</sup>에 4명 등 총 9명의 장교가 참모 및 협조장교로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sup>66)</sup> 국군의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은 <표 4-4>와 같다.



63) 장절편성(제Ⅳ부 한미동맹과 국방협력)을 고려하여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 평화활동만 포함하였다.

64) 아프리카사령부에 있는 연합합동기동부대-아프리카 뿔(CJTF-HOA: Combined Joint Task Force-Horn of Africa)을 의미한다.

65) CJTF-OIR(Combined Joint Task Force-Operations Inherent Resolve): 임무지역 공개정보 수집 및 분석자료 작성, 정보작전 효과평가 등을 수행한다.

66)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201.



제2절 다국적군 평화활동

〈표 4-4〉 국군의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구분	기간	파병지역, 부대(임무단)	총인원(명)	
부 대 단 위 파 병	걸프 전쟁	1991.1.~1991.4.	사우디, 국군의료지원단	154
		1991.2.~1991.4.	UAE, 비마부대	160
	아프간 전쟁	2001.12.~2003.6.	싱가포르, 해성부대	823
		2001.12.~2003.12.	청마부대	1,245
		2002.2.~2007.12.	아프간, 동의부대	786
		2003.3.~2007.12.	아프간, 다산부대	1,329
	이라크 전쟁	2010.7.~2014.6.	아프간, 오쉬노부대	1,745
		2003.4.~2004.4.	이라크, 서희부대	952
		2003.4.~2004.4.	이라크, 제마부대	185
		2004.4.~2008.12.	이라크, 자이툰부대	17,708
		2004.10.~2008.12.	이라크, 다이만부대	1,324
	총계			26,411
	개 인 단 위 파 병	아프간 전쟁	2002.3.~2010.6.	아프간, CJTF 협조단
2002.3.~2007.1.			아프간, CFC-A 참모부	6
2008.4.~2010.7.			아프간, 한국 의료직업훈련팀	20
2009.9.~2013.8.			아프간, CSTC-A 참모부	16
2010.4.~2011.3.			아프간, 기지건설지원단	1
이라크 전쟁		2003.4.~2008.12.	이라크, CFLCC/CJTF-7 MNF-I 협조단	49
		2003.8.~2008.12.	이라크, CJTF-7 및 MNF/C-1 참모부	82
		2005.12.~2008.12.	이라크, RRT	4
대테러 작전		2003.3.~2012.12.	지부티, CJTF-HOA 참모부	15
		2019.12.~현재	쿠웨이트, CJTF-OIR 협조장교	5
		2022.8.~현재	이라크, CJTF-OIR 협조장교	2
지역 사령부		2001.11.~현재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57
		2016.3.~현재	독일, 미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4
		2008.12.~현재	지부티, CJTF-HOA 협조 장교	27
총계			315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p.209;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201; 국방부 제공자료(2023.6.).

## 2. 걸프전쟁 파병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합병하자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즉각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자산 동결을 선언하였고, 8월 6일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의 무력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661호」를 채택하였다. 한국 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지원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던 중 미국의 요청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에 국군의료지원단, 아랍에미리트(UAE)에 공군수송단(비마부대)을 파견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누아이라아병원에서 총 1,634명의 군인과 87명의 민간인을 진료하였고, 공군 비마부대는 37일간 국내 공수 임무 대비 3배에 달하는 323소티(sorties)의 화물·인원을 성공적으로 공수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다. 걸프전쟁 파병은 냉전 이후 최초의 파병으로, 동맹국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여 한미동맹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걸프전쟁 파병을 통해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전쟁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한 세대만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도약했다는 것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 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군의료지원단(1991.1.~1991.4.)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이라크에 대응하여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동맹국의 지원 확보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라크의 무력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경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1990년 8월 18일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받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9월 24일 ‘정부의 걸프 사태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걸프전쟁 비용 분담금으로 2.2억 달러를 지원하고 아울러 국군의료지원단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 10월 27일 유종하 외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0년 11월 29일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1991년 1월 15일 까지 철수하지 않을 경우 유엔 회원국에 모든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정부는 미국의 긴급한 요청으로 국군의료지원단을 파병하였으나 파병 1주일 만에 의료지원단 파병만으로는 다국적군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므로,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8억 달러를 지원하고 공군수송단을 추

가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합참 협조단은 1991년 1월 15일 알누아이리아병원에 도착하여 선발대 업무를 개시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성 및 외무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지위협정서」 및 「군사 실무협정서」를 체결했다. 국군의료지원단은 1991년 1월 21일 ‘국군의료지원단 파견안(案)’이 국회의 동의<sup>67)</sup>를 얻어 바로 창설되었다.



〈사진 4-8〉 응급 구조 활동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

국군의료지원단은 알누아이리아병원에서 1991년 1월 19일부터 그해 4월 7일까지 79일 동안 아랍 연합군 및 다국적군을 진료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은 합참 작전본부에 설치된 지휘통제반의 지휘를 받았고, 공군수송단 파병 이후에는 별도로 설치된 지휘통제본부의 지휘를 받았다. 파병 기간 중 국군의료지원단은 사우디아라비아군 969명, 이라크군 162명, 다국적군 503명 등 총 1,634명의 군인을 진료하였다.

〈표 4-5〉 국군의료지원단의 국적별 환자 진료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기타 다국적군
총계	1,634	969	162	503
내과	610	387	35	188
정형외과	372	219	66	87
일반외과	198	102	42	54
치과	183	95	3	85
기타	271	166	16	89

※ 출처: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료지원단 걸프파견 역사자료 II』(성남: 국군의무사령부, 1991), p.46.

#### 나. 아랍에미레이트(UAE) 비마부대(1991.2.~1991.4.)

비마부대(공군수송단)의 파병은 의료지원단이 파병된 후에 결정되어 의료지원단 파병추진위원회를 그대로 재가동하였다. 비마부대는 2월 7일 ‘공군수송단 파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sup>68)</sup>되자 2월 13일 김해기지에서 창설되었다. 비마부대는 공군대령을 단장으로 수

67) 제152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1.1.21.).



〈사진 4-9〉 비마부대 C-130 수송기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

기 가동률은 96%로, 미군의 8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마부대는 1991년 2월 26일 첫 임무를 수행한 이래로 4월 3일까지 37일간 323소터를 통해 총 461시간 57분의 비행시간 동안 약 24만km를 비행하면서 병력 1,405명과 화물 713.3톤을 공수하였다.

### 3. 아프가니스탄전쟁 파병

2001년 9월 11일 미국 중심부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하여 5,00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였다. 9월 12일 부시 대통령은 이 테러를 전쟁행위로 선언하였고 유엔 안보리는 「테러 규탄 결의 제1368호」를 채택하여 미국의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였다. 10월 18일 미·영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시작으로 ‘항구적 자유작전(OEF)’<sup>69)</sup>으로 명명된 대테러전쟁을 개시하였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였다. 정부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을 위해 2001년 12월 6일 국회 동의를 거쳐 국군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9·11테러 이후부터이다. 한국 정부는 ‘항구적 자유작전(OEF)’에 2001년 12월 해·공군 수송지원단인 해성·청마부대,

68) 제152회 제1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1.2.7.).

69) ‘항구적 자유작전(OEF: Operation Enduring Freedom)’은 미국이 9·11테러의 주범인 빈라덴과 알카에다 조직, 그리고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아프가니스탄을 응징하기 위해 2001년 10월 7일 개시한 대테러전쟁을 지칭하는 작전명이다.

2002년 2월 국군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를 파병하였다.

미국은 2002년 7월 군사작전 종료 후, 연합합동특수임무부대(CJTF: Combined Joint Task Forces), 아프가니스탄 연합사(CFC-A: Combined Forces Command-Afghanistan)를 창설하여 안정화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은 2003년 3월 다산부대를 추가로 파병하여 안정화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이미 파병된 해상·청마·동의부대와 함께 4개 부대가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에 참여하였다. 미국은 2006년 10월 CFC-A의 임무를 나토(NATO)군 주도의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t Forces)에게 이양하였다.

2007년 7월 샘물교회 사건<sup>70)</sup>으로 한국 정부는 계획하고 있던 파병부대의 철수를 2007년 12월까지 완료하였다.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필요한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의 지원을 각 동맹국에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는 2010년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을 설치하여 오쉬노부대를 파병하였다.

아프가니스탄전쟁 파병은 베트남전쟁 이후 한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 군이 참여한 한 최초의 파병이었다. 2001년 12월 18일 창설식과 동시에 출항한 해군의 해상부대, 3일 후인 21일부터 공중수송을 담당한 공군의 청마부대, 의료지원을 담당한 육군의 동의부대, 건설을 담당하는 다산부대, 한국 지방재건팀 경호를 담당하는 오쉬노부대 등 전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제평화활동이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하였다.<sup>71)</sup> 지원이 절실한 우방 미국에 대한 국군의 파병은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쟁으로 다져온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sup>72)</sup> 특히 2007년 2월 다산부대 8진



〈사진 4-10〉 故 윤장호 하사 시신을 동맹군과 함께 운구하는 모습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70) 2007년 7월 19일 분당 샘물교회 소속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및 봉사활동 간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2명은 살해당하고 21명은 협상을 통해 풀려나 사건이다.

71) 9·11테러 발생 직후인 2001년 9월 17일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원할 것이며, 국제연합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50.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p.351.

으로 임무수행 중이던 고(故) 윤장호 하사<sup>73)</sup>가 탈레반의 자살폭탄테러로 사망한 사건은 국군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미군을 비롯한 동맹군으로부터 국군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sup>74)</sup>

#### 가. 해군수송지원단 해성부대(2001.12.~2003.6.)

정부의 대테러전쟁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국방부는 2001년 9월 29일 해군의 상륙함(LST: Landing Ship Tank) 1척과 병력 171명으로 편성된 해군수송지원단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대는 2001년 12월 18일 진해 서해대에서 창설하였으며 고유명칭은 ‘해군수송지원단’으로, 상징명칭은 ‘해성(海星)부대’<sup>75)</sup>로 명명하였다.<sup>76)</sup> 부대의 임무는 미국의 ‘항구적 자유작전’을 지원하는 물자수송, 인도적 지원과 구조작전 등이었다. 최초 부대편성은 상륙함 1척으로 구성된 171명이었으나 제2진부터 제6진까지는 163명으로 편성되었고 3개월 단위로 임무를 교대하였다. 해성부대는 2001년 1월 27일 첫 임무항이면서 모항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부터 합참의 작전지휘를 받았으며,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는 전술통제를 제외한 작전지휘를 받았다. 전술통제는 싱가포르에 있는 서태평양 군수사령부(CTF-73)가 행사했다. 합참과 미 태평양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와 미국 제7함대사령부는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사진 4-11〉 해성부대 수송물자 적재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해성부대는 2001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해상수송 15회, 탐색 지원 2회 등 총 17회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5회의 해상수송을 통해 총 1억 7,259만 2,504km를 항해하면서 약 5,300여 톤의 물자를 성공적으로 수송하였다. 해군작전사령부 및 해성부대와 미 제7함대사령부 및 서태평양 군수사령부는 해성부대 임무 수행과정에 물자수송과 차

73) 당시에는 병장이었지만 하사로 1계급 추서 진급되었다.

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pp.304-304.

75) 해성(海星)부대는 “별을 보고 대양을 건너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라.”라는 의미에서 ‘해성부대’라고 명명하였다. 해군작전사령부, 『해성부대 임무 수행 결과』, 2003, p.2.

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p.83.

후 임무 관련 협조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동맹국으로서의 기여도를 금액으로 평가하면, 해성부대의 지원 부담금은 2001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총 478만 3,759달러(297억 4천만 원)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sup>77)</sup>

#### 나. 공군수송지원단 청마부대(2001.12.~2003.12.)<sup>78)</sup>

2001년 9월 국방부는 대테러전쟁의 수송 지원을 위해 C-130 수송기 4대를 포함한 150명 내외의 공군수송지원단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군은 2001년 10월 8일 부대 고유명칭을 ‘공군수송지원단’으로 정하고 상징명칭은 ‘청마부대(靑馬部隊)’로 결정하였다. 청마부대는 2001년 12월 18일 김해 공군기지에서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부대는 병력 78명, C-130 수송기 4대가 편성되었다.<sup>79)</sup> 부대는 임무를 개시한 이후 8개 진이 운용되었으며, 3개월 단위로 교대하여 운용하였다. 청마부대는 싱가포르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를 왕래하면서 주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였다. 이 부대는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공중기동작전 통제본부에서 전술통제를 받고 한국의 제5전술공수비행단의 지휘(전술통제 제외)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청마부대는 2001년 12월 21일부터 2003년 12월 13일까지 81회의 수송작전을 통해 미 태평양사령부의 동맹군 물자 310여 톤과 병력 600여 명을 수송하였다. 비행거리는 지구 둘 35바퀴 돈 것과 비슷한 14억 4,711만 2,884km였다. 걸프전쟁에서는 파병부대가 중동지역에서 미군 지원 하에 단기간 전술공수 임무를 수행했던 반면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는 한국이 모든 파병 비용을 부담하면서 약 2년간에 걸쳐 장거리 전략공수 임무를 수행하였다.<sup>80)</sup>



〈사진 4-12〉 청마부대 한미 합동 화물탑재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p.351.

78)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 해외 파병사』(계룡: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07), pp.223-283.

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pp.84-85.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p.354.

## 다. 동의부대(2001.12.~2007.12.)

2001년 12월 4일 국방부는 미군 기지가 있는 키르기스스탄에 의료지원단을 파병하기 위해 현지조사단 2명을 파견하였으며, 이들의 현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라 병력을 최초 130명에서 90명으로 축소 편성하고 전투근무지원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1년 12월 18일 특수전교육단에서 창설식을 거행하고, 부대 고유명칭을 ‘육군 제924의료지원단’으로 정하고 상징명칭은 ‘동의부대(東醫部隊)’로 명명하였다.<sup>81)</sup> 동의부대는 2002년 2월 17일부터 2007년 12월 11일까지 총 11개 진이 6~8개월 단위로 교대<sup>82)</sup>를 하며 임무를 수행하였다. 부대장도 제1진에서 제4진까지는 군의 병과 대령, 제5진부터는 의정 병과 중령을 각각 임명하였다. 경비대는 해병대 인원으로 편성되었다. 제4진부터는 민사반 10명이 편성되어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으로 재파견되었다. 동의부대에 부여된 임무는 지정된 대테러전쟁 참여 요원에게 유엔 Level-II<sup>83)</sup>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각종 예상위험으로부터 부대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며, 필요할 때 명령에 의거 대민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사진 4-13〉 다국적군 장병 진료활동

※ 출처: 『국방일보』(2002.4.13.).

동의부대는 제11진이 철수하기 이전까지 약 25만여 명의 동맹군과 아프가니스탄 군인 및 현지 주민을 진료하였는데, 진료인원은 1일 평균 180여 명에 달했다. 다국적군에 대한 의료 지원은 미 공군 제376비행단이 위치하는 마나스기지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기지에 근무하는 동맹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의부대 제1진의 주임무가 다국적군에 대한 의료지원이었다면 제2진 이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주로 하였다.

특히 한미는 대민지원 작전의 일환으로 연합군 작전지역 내의 격오지나 의료인력이 없는 지역에 대해 연합하여 대민진료를 지원하였다. 처음에는 한미연합의료지원 개념이었으나, 동의 제6진부터는 주체가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바뀌어 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sup>84)</sup>

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p.129.

82) 제1진~제8진 6개월 단위, 제9진~제10진 7개월 단위, 제11진은 8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다.

83) 유엔 기준에 따르면 Level-II는 하루 기본 수술 3~4건, 외래환자 40명 진료, 입원환자 10~20명 수용 등이 가능한 수준에 해당한다.

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pp.358-358.



## 라. 다산부대(2003.2.~2007.12.)

다산부대(茶山部隊)의 파병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바그람기지 복구를 위해 2002년 8월 한국 정부에 공병부대의 추가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부의 공병부대 파병은 2002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 후, 2003년 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sup>85)</sup> 다산부대는 2003년 2월 6일 특수전교육단에서 창설되었다. 고유명칭은 ‘제100건설공병대대’, 상징명칭은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인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본받기 위하여 ‘다산(茶山)’으로 정하였다. 다산부대는 2003년 2월 27일 파병되어 2007년 12월 철수 시까지 동맹군의 기지건설과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산부대의 임무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기지 안의 건축, 시설보수, 전기·기계설비, 토목공사 지원과 필요할 때 대민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부대편성은 150명으로 2003년 2월 27일 제1진부터 2007년 12월 11일까지 총 9개 진이 6~8개월 단위<sup>86)</sup>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진~제2진은 150명, 제3진은 147명, 제4진은 146명, 제5진~제8진은 147명, 제9진은 148명으로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sup>87)</sup> 다산부대는 다국적군으로부터는 아프가



〈사진 4-14〉 한미 공사현장 토의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니스탄 연합합동특수임무부대(CJTF) 예하 미 제36공병여단장의 작전통제를 받았고, 국군으로부터는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는 한국군 지원단장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산부대는 파병 5년여 동안 연 1,360명을 아프가니스탄 연합합동특수임무부대(CJTF)가 위치한 바그람기지에 파견하여 동맹국 기지 건설과 지역주민 생활시설 보수공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에 민사반을 파견하여 전쟁난민과 지역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국군 민사반은 제1진부터 제8진까지 지역조사, 공사 감독, 공사 관련 교육 등 총 1,327건의 민사업무를 추진하였다.

85) 제235회 제1차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2003.1.16.).

86) 제1진~제6진은 6개월 단위, 제7진~제8진은 7개월 단위, 제9진은 8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다.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pp.133-135.

### 마. 오쉬노부대(2010.5.~2014.6.)

2007년 동의부대와 다산부대가 철수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위한 지방재건팀의 소요가 증가하자 미국은 동맹국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2009년 10월 8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요청하여 수차례의 현지 실사를 거쳐 2009년 10월 민간 주도의 지방재건팀 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6월 민·관·군 통합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을 파르완주에 설치하였고, 군은 지방재건팀을 군사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전투병력이 포함된 오쉬노부대를 파병하였다.



〈사진 4-15〉 경호 작전 임무

※ 출처: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오쉬노부대는 정부가 민간주도의 지방재건팀 운용을 발표한 이후, 창설 준비 기간을 거쳐 2010년 5월 11일 창설식을 거행하고 부대 고유명칭을 ‘아프간 재건지원단’, 상징명칭을 ‘도와주는 친구, 동료’라는 뜻의 ‘오쉬노(Ashena)’로 명명하였다. 오쉬노부대 제1진은 321명으로 편성되었으나 2011년 4월 바그람기지 경비중대 창설을 계기로 335명으로 증원되었고, 제3진은 35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7월 1일 제1진이 임무를 수행한 이후부터 2014년 6월 25일 제8진이 철수할 때까지 약 4년 동안 각 진이 6개월 단위로 교대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진부터 제5진까지는 오쉬노부대가 별도로 건설된 차리카기지를 주둔지로 운용하여 많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였지만, 제6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미군기지인 바그람기지에 주둔하게 됨에 따라 부대편성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 결과 제6진은 61명, 제7진과 8진은 67명으로 편성되었다.

오쉬노부대는 NATO 주도 다국적군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예하부대로,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를 담당하는 동부지역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으로부터는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민간 주도의 한국 지방재건팀을 지원하였다. 오쉬노부대는 차리카기지 방호활동, 한국 지방재건팀 호송 및 경호 지원,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경계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민사활동은 다른 파병부대와는 달리 한국 지방재건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호송과 경호 임무를 위한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수준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오쉬노부대는 동맹군과 주기적인 첩보교류로 부대방호태세를 구축하였고, 동맹군과 업무협조 및 토의를 정례화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한국 지방재건팀에 전파함으로써 동맹군

및 한국 지방재건팀과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4. 이라크전쟁 파병

2001년 9·11테러 발생 이후 미국은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이라크 자유작전’(OIF)을 개시하였다. 2002년 11월 20일 미국은 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지원 의사를 문의하였다. 같은 해 12월 23일 우리 정부는 지원의사를 표명하였고, 2003년 3월 13일 미국은 구체적인 지원 목록을 제시하였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개시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원방안을 협의하였고 2003년 4월 2일 국회는 국군부대의 파병을 의결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3년 4월 공병·의료지원단인 서희·제마부대를 파병하였고, 2004년 이라크 평화지원단인 자이툰부대를 파병하였다. 서희·제마부대는 2004년 4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다국적군과 인도적 차원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면서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병행하였고 2004년 1월 이후에는 추가 파병된 자이툰부대에 통합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라크전쟁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동맹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이라크 자유작전이 유엔의 승인사항은 아니었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국군을 파병하였다. 미국 주도의 동맹군에 참여한 영국, 호주, 폴란드 등 일부 국가만 전투부대를 보내고, 다수의 국가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서희부대와 제마부대 등 지원부대를 최초로 파병한 국가가 되었다.

한국군의 파병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도록 영향을 끼쳤다. 6·25전쟁 당시 3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의 파병은 한미 간 동맹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이 군사전략의 변화로 주한미군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라크전쟁 파병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유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보상황과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다.<sup>88)</sup>

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56.

## 가. 서희부대(2003.4.~2004.4.)

서희부대는 2003년 4월 2일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2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파병을 준비하여 전개하였다.<sup>89)</sup> 서희부대는 2003년 4월 15일 창설식을 거행하고 부대 고유명칭을 ‘제1100건설공병 지원단’이라 하였고 상징명칭은 고려 시대 서희 장군의 이름을 따서 ‘서희부대’로 명명하였다. 서희부대는 총 572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진부터 제2진까지 6개월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진은 379명으로 축소 편성되었으며, 2004년 2월 23일 이라크 추가 파병부대인 자이툰부대가 창설되면서 서희부대 제2진은 2004년 4월에 자이툰부대의 직할대인 공병대대에 임무를 인계하였다. 서희부대는 미군 및 동맹군의 기지 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이라크 전후 복구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담당하였다.



〈사진 4-16〉 중간 급유소 방벽설치 지원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서희부대 제1진은 2003년 5월 본대가 도착한 후 초기에는 이라크전쟁 지도부인 동맹군 지상구성군사령부(CFLCC: Coalition Forces Land Component Command)의 지휘통제하에 있으면서 예하부대인 미 제1해병원정군의 통제를 받았다. 본대가 모두 도착하고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시점인 6월에는 동맹군 지상구성군사령부를 대체하는 동맹국 임시 통치기구(CJTF-7: Combined Joint Task Forces-7)가 창설되면서 그 예하 부대인 미 제265공병단의 작전통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주둔지 통합방호는 탈릴기지에 주둔하면서 외곽경계 책임부대인 미 제332비행단(AEW: Air Expeditionary Wing)의 통제를 받았으며 전투근무 지원은 기지 내에 주둔하는 미 제171군수지원단(ASG: Area Support Group)의 지원을 받았다. 서희·제마부대가 동일 지역에 주둔함에 따라 중복된 참모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군지원단을 편성하고 서희부대장이 한국군지원단장을 겸하여 제마부대를 작전통제하에 두었다.

서희부대의 재건활동은 주로 동맹군 기지건설 공사 지원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시설을 복구하여 지역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동맹군 기지건설 공사 지원은 총 34건 실시되었는데, 탈릴기지 영구기지화 추진계획에 맞추어 실시되었다. 서희부대는 미군의 장기 주둔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탈릴기지 근무지원단 및 미 제265공병단의 요청에 따라 미 제92공병대대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 pp.568-569.

주둔지 설치, 영내 도로보수, 시설물 보수, 배수로 정비, 부대방호 울타리 설치, 오수관로 교체, 기타 시설 보수공사 등을 지원하였다.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 재건공사는 서희부대의 자체 경계하에 실시하였으나 필요 시 동맹군의 경계를 협조하였다. 특히 폭발물처리반(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요원은 한미연합팀을 구성하여 나시리아 일대 및 탄약고 피폭지역, 탈릴기지 내외에서 불발탄 처리임무를 수행하였다.

#### 나. 제마부대(2003.4.~2004.4.)

제마부대는 서희부대와 동시에 파병되었으며 선발대, 본대 등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이동하였다. 주둔지도 나시리아 탈릴기지의 서희부대와 같은 울타리 내였다. 제마부대는 2003년 4월 17일 창설식을 거행하고 고유명칭은 ‘제320의료지원단’으로, 상징명칭은 조선 후기 사상의학자인 이제마 선생의 이름을 따서 ‘제마부대’로 결정하였다.

제마부대의 편성은 제1진이 100명, 제2진은 85명으로 축소하여 편성하였으며 각 진은 6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 2월 23일 이라크 추가 파병부대인 자이툰부대가 창설되면서 제마부대 제2진은 2004년 4월 자이툰부대의 직할대인 의무대대에 임무를 인계하였다. 자이툰부대의 의무대대는 제마부대 제2진이 주둔하는 탈릴기지에 와서 임무를 인수하여 수행하다가 2004년 7월 19일 ‘신천지작전’<sup>90)</sup>을 전개하여 자이툰부대 주둔 예정지인 아르빌(Irbil)로 이동하였다.

제마부대의 임무는 미군 및 동맹군에 대한 진료와 인도적 구호활동이었으나 실질적인 임무 수행 시 미군의 통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마부대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미국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sup>91)</sup>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이라크 대민 의료지원과 동맹군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Level-II 이상 수준인 Level-II(+)<sup>92)</sup>의 의료진과 장비를 운용하였으며, 기간 중 동맹군 의무부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순회 진



〈사진 4-17〉 제마부대 순회진료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해외파병활동』

90) 자이툰부대의 주둔지를 건설하기 위해 2004년 7월에 나시리아 지역에서 서희부대의 임무를 수행 중이던 자이툰부대 소속 공병TF를 주축으로 시설준비단을 편성 후 2004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나시리아에서 아르빌로 전개한 작전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p.341.

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 p.174.

료, 임시진료소 운영 등 다양한 의무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제마부대는 2003년 7월 11일 제마병원을 개원하여 이라크 주민, 동맹군과 서희·제마부대원을 진료하였다. 그 후 2004년 8월 17일 자이툰부대의 의무대대로 임무가 전환되기까지 2만 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이라크 주민이 환자의 70%를 차지하였다. 서희·제마부대는 2003년 12월 임무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12월 4일 국회의 연장 동의를 거쳐 파견기간을 2004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였고, 2004년 9월 1일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에 합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 다. 자이툰부대(2003.2.~2008.12.)

2003년 9월 4일 미국은 우리 정부에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 외에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한 사단급 규모의 추가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4년 2월 13일 국회 동의를 거쳐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평화를 상징하는 ‘자이툰’으로 명명된 평화·재건지원부대는 해외에 파병된 민사지원부대로 베트남전쟁과 달리 순수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육·해·공군·해병대 합동군이었다. 정부는 2003년 9월부터 정부합동조사단과 국회조사단을 이라크에 파견하여 지역을 실사한 후 최종적으로 이라크 아르빌을 주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04년 9월 22일 자이툰부대 1진 2,796명이 이라크에 도착하여 임무를 시작하였다. 자이툰부대는 이후 4년 동안 총 5회의 국회 파병연장 동의를 거쳐 2008년 12월 19일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사진 4-18〉 자이툰부대 경호작전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MNF-I: Multi-National Forces-Iraq) 예하 다국적 군단(MNC-I: Multi-National Corps-Iraq)의 예하부대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한국 합참의 지휘 감독하에 동맹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였고,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한국 국방부의 지침 아래 임무를 수행하였다.<sup>92)</sup> 자이툰부대는 2004년 10월 1일 아르빌 일대를 책임지역으로 하

<sup>92)</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p.345.

여 지역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지 치안전력을 활용하여 주둔지를 방호하고 장병 및 교민 이동에 따른 호송작전 등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또한 아르빌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현지 경찰에 장비와 물자를 공급하고 공항 외곽의 검문소를 비롯한 치안관련 시설의 신축·개보수 등을 지원하였다.

파병 초기에는 아르빌의 평화와 재건에 필수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린엔젤(Green Angel)작전<sup>93)</sup>을 전개하였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2004년 11월 27일 자이툰병원을 개원하여 장병, 동맹군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여 총 13만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였다. 총 네 차례에 걸쳐 심장병 어린이와 사지절단 환자 등 총 20명을 국내의료기관에 초청하여 치료하였고, 쿠르드 지방정부 보건 관계자 24명을 대상으로 국내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쿠르드지역 의료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자이툰부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주민 친화적 활동을 통해 현지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고 현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현지인들로부터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자이툰은 쿠르드의 진정한 친구로 다가왔다.”라고 했고, 네치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총리는 “자이툰은 친구이자 쿠르드 사회의 일원이다.”라며 한국과 자이툰부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sup>94)</sup> 자이툰부대는 동맹군 사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사활동으로 평가를 받아 ‘민사작전의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자유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동맹군의 주요 인사와 인적 교류를 통해 동맹군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2004년 12월 5일에는 존 애비자이드 미 중부사령관이 부대를 방문해 자이툰부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찬사를 보냈다. 10월 10일 다국적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격려 방문을 하였다. 또 11월 15일에는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과 단독 환담을 갖는 등 수십 차례에 이르는 동맹군 주요 지휘관·관계자들의 방문으로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동맹군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사진 4-19〉 미 중부사령관 자이툰부대 방문  
※ 출처: 『국방일보』(2004.12.16.).

93) 현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책임 지역 내 복지혜택이 제한되는 소규모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삼아 다기능 대민지원팀을 구성하여 학교 준공, 도로 개통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다.

94) 이석중, “현지인들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 찬사,” 『국방일보』(2008.10.2.).

## 라. 다이만부대(2004.8.~2008.12.)

다이만부대는 2004년 7월 31일 국회에서 파병이 결정된 지 한 달 후인 8월 31일 창설되었고, 같은 해 10월 24일 임무를 시작하였다. 공군은 베트남전쟁에 제55비행단, 1991년 걸프전쟁에 제56비행단, 2001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에 제57비행단이 각각 참전한 경력이 있다.



〈사진 4-20〉 다이만부대 수송지원임무

※ 출처: 『국방일보』(2015.1.6.).

현지어로 ‘항상 그대와 함께’라는 의미인 다이만(Daiman) 부대의 임무는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내 원활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 및 장비의 항공수송 지원 임무와 함께 동맹군에 대해 항공수송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부대는 창설 당시에는 4대의 C-130 수송기와 인원 153명으로 편성되었으나 파병 기간 중 네 차례의 편제 조정으로 인원이 135명으로 변경되었다.<sup>95)</sup>

다이만부대는 합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자이툰부대로부터 작전통제를, 카타르 주재 연합항공작전본부(CAOC: Combined Air Operations Center)로부터는 비행 중 임무통제를 받았다. 다이만부대는 2008년 12월 21일까지 2,000여 회에 걸쳐 지구둘레 67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인 270만km를 운항하였고, 화물 수송량은 3,599톤으로 베트남전쟁의 4배에 달했다.

95) 1차 편제 조정은 2005년 1월 7일 13명이 증가한 166명, 2차 편제 조정으로 9명이 추가된 175명, 3차 편제 조정 시에는 10명이 감축된 165명, 4차 편제 조정 시에는 30명이 감축되어 135명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 pp.428-430.



## 제2장 포괄적 안보협력

기후변화, 사이버, 우주, 신기술 등 새로운 안보위협<sup>1)</sup>의 대두로 포괄적 안보협력<sup>1)</sup>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 간 협력이 확대·심화되고 있다. 한미는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 유행을 계기로 재해·재난 대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사이버·우주 협력은 진영 간의 우위 경쟁으로 동맹국 간 연합방위태세의 강화 및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안보환경이 변화되면서 한미는 국가경쟁력 핵심수단으로 부상한 첨단과학기술의 역량 제고를 위해 방산·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제1절 재해·재난 대비

#### 1. 기후·환경 협력

##### 가. 기후변화와 안보위협

기후변화는 국가안보나 군사작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태풍과 홍수로 군 시설과 첨단 장비가 수해를 입고, 폭염으로 장병들의 연습과 훈련이 제한되는 상황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군사부문의 「기후전략(Climax Strategy)」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맹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한파 등 극한 기후현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재난취약지역을 선별하고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재난 예방공사<sup>2)</sup>를 2020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폭염에 의한 장병들의 인명

1) 포괄안보는 전통안보를 배제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안보위협이 다양해지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안보의 고려 영역이 확대되어, 정치·군사뿐만 아니라 경제·환경·자원·인권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안보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국방부, 『주요 국방정책 용어』(서울: 국방부, 2002), p.12;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63.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폭염 응급키트, 보냉 가방 등 폭염대비 물자를 선정하여 전군에 보급하였으며, 일선 부대의 소요를 고려하여 폭염예방 품목도 늘려가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재난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재난대응공동매뉴얼」을 제정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사임무를 수행하는 재난대응부대를 통합하여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지휘체계를 합동참모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부대운영체제도 재정립하였다.

한편 우리 군은 범정부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2021~2022년에는 다중밀집시설 화재 및 붕괴사고를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군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였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중에도 우리 군은 2020년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태풍, 2021년에는 산불,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규모 수질오염,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항공기 사고, 2022년에는 지진, 화재, 산불 등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현장훈련을 재개하여 실질적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대응역량을 점검하였다.

## 나. 한미협력 현황

2015년 4월 8일 재해·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안전처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국가재난대응시스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양국 사이의 재해·재난 대응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19년 10월 23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와 「국민안전 및 재해·재난 관련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sup>3)</sup> 두 부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화재와 태풍, 홍수, 지진 등 재해재난에 대응하고 치안, 감염병 등 국민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양국 연구소 및 대학 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학술회의 등을 통한 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021년 5월 21일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기후 및 청정 에너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 파트너십을 결성하였다.<sup>4)</sup> 양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목표에

2) 2020년 239개소 124억 원, 2021년 253개소 160억 원, 2022년 200개소 155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예방공사를 추진하였다.

3) 신선미, “과기부, 미국 국토안보부와 MOU…안전·재난대응 R&D 강화,” 『연합뉴스』(2019.10.23.).

4) 이진백, “韓·美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선도,” 『LIFEIN』(2021.5.21.),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470>(검색일: 2022.12.1.).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환경분야에서는 주로 대기, 미세먼지, 수질 오염 등에 대한 한미협력을 추진해 왔다. 2012년 1월 24일 한미는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환경보호와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는 한편 생태계 보호와 대기, 수질 오염, 폐기물 감축,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6년 5월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은 합동으로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실시하였다.<sup>5)</sup> 2019년 5월 13일에는 한미환경협의회(EAC: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와 한미환경협력위원회(ECC: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지속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아울러 한미는 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에 따른 기지의 환경정화를 위해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 2. 보건안보 협력

### 가. 보건과 안보위협

신종감염병은 기후변화 및 사이버공격과 달리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과 피해결과가 즉시 확인된다. 신종감염병은 식량, 난민, 사이버공격 등 다른 신안보 이슈를 초래할 수 있는 기저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신종감염병은 그 대응에 있어 다른 신안보 위협 보다 각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신종감염병 대응은 인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신속한 진단키트,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에 전 세계가 협력하고 있다.

군대 운용에 있어 질병에 대한 통제나 보건 환경의 개선에 관한 문제는 전투력 보존 차원에서 중요하다. 황열병,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대한 연구는 세계대전 중에 군사력 보호

5) 환경부 보도자료, “한미 공동연구 결과, 미세먼지 국내영향 52%...국외보다 높아,”(2017.7.19.), <http://www.me.go.kr/home/web/board>(검색일: 2022.12.1.)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는 2013년 한국 환경부와 미국의 NASA가 합의하여 국내 대기오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 대해 항공관측, 지상관측, 모델링 등을 수행하였다. 국내외 80개 기관, 58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하였다.

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환경문제, 질병의 확산, 인구문제, 난민, 민족주의, 테러 및 핵문제 등을 국가안보문제로 확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했다.<sup>6)</sup> 1990년대는 냉전 해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공중보건과 국가안보 사이의 연관성이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감염병과 국가안보에 관한 연관성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00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여 밝혀졌다. 즉, CIA의 국가정보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이 「세계 감염병 위협과 미국에 대한 함의(The Global Infectious Disease Threat and Its Implication for the United States)」라는 보고서에서 감염병을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식별한 것이다.<sup>7)</sup> 감염병은 개인의 보건문제에서 시작하여 국민건강과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보건문제로 확대되었고, 경제와 사회 및 외교 등의 이슈와 연계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안보문제가 되었다.<sup>8)</sup>

감염병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 국가는 전투력 유지는 물론 작전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곤란하다.<sup>9)</sup> 코로나-19가 미 항모 루즈벨트호에 확산되자 미 해군은 2020년 4월 1일 승조원 4,800명 가운데 필수인원 1,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괌(Guam)의 호텔에 격리시킴으로써 항모전단의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같은 시기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le)과 호위함의 승조원 2,300명 가운데 94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결을 받아 작전 수행을 중지하고 툴롱 해군기지로 복귀하였다. 신종감염병의 발생은 군사훈련의 축소나 취소로 인하여 군의 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총 7억 6,644만 796건이며, 총 693만 2,59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sup>10)</sup>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은 감염병이 반복·지속적으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감염병은 단기간에 대규모 인명피해 및 국제질서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다.

6) Roland Paris,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rt?," *International Security*(Fall 2001), p.97.

7)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The Global Infectious Disease Threat and Its Implication for the United States*,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99-17D. (January 2000).

8) 김상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발표자료』(2020.6.24.), p.2.

9) Chyba, Christopher F., *Biological Terrorism, Emerging Diseases, and National Security* (New York: Rockefeller Brothers Fund Project on World Security, 1998); White House,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10 and National Security Directive Presidential 33: Biodefense for the 21st Century*, April 28, 2004.

10)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 나. 한미협력 현황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19, 원숭이 두창(M-POX) 사태 이전까지 감염병을 비롯한 보건안보에 대한 한미 간의 협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방역 및 백신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간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를 예로 들면, 주한미군은 한국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 내외의 확산을 차단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여 ‘정치·군사적 사안과 별개로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sup>11)</sup> 비록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등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미 간의 협력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한미 간에는 글로벌 보건 및 백신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기간 동안 양국의 보건장관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하였다.<sup>12)</sup> 미국의 백신 개발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 하는 한편, 글로벌 보건안보 및 감염병 대응역량 증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2021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이 열린 뉴욕에서 한미 양국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들 간에 「한미 백신협력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요 목적은 한미 간 백신 생산 관련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위기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은 백신의 빠른 생산과 공급을 통한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도 호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미국 보건부와 2022년 2월 제4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회의를 공동개최하였다.<sup>13)</sup> 이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

11) 지성림, “미국 부장관, 인도주의와 비핵화 별개...북 코로나 상황 우려,” 『연합뉴스TV』(2022.6.3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603020300038>(검색일: 2022.12.10.).

12) 주유엔 대표부,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2021.9.21.), [https://overseas.mofa.go.kr/un-ko/brd/m\\_12053/view.do?seq=1342972](https://overseas.mofa.go.kr/un-ko/brd/m_12053/view.do?seq=1342972)(검색일: 2022.12.10.).

13) 윤병기, “한미, 코로나-19 대응 협력 지속적 강화,” 『후생신문』(2022.2.10), <http://www.whosaeng.com/133801>(검색일: 2022.12.10.).

도·태평양전략을 연계한 백신 협력방안, 감염병 대응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한 인력교류 방안, 코로나-19 대응 경험 등을 논의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제7차 장관급회의’ 폐막식에서 국제 보건안보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신(新)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에서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회원국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고, 특히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해 글로벌 보건안보(GHS: Global Health Security) 조정 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 회의의 성격이 보건협력에 있어 다자적 회의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기간 내내 미국은 한국의 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협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국방 측면에서 한미 간의 보건 협력은 주로 북한의 생물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북한은 1954년 미생물연구소를 만들어 생물학무기를 개발했다. 주로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4)</sup>

한미 국방부는 화생방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공동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국장급 연례 협의체인 ‘대확산회의(CPWG: Counter Proliferation Working Group)’를 운영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명칭을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mittee)’로 변경하여 정책적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sup>15)</sup>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북한의 화생방 위협 제거 및 확산 차단, 한미 공동대응 능력 발전 등에 관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은 2011년부터 생물학 위협에 대한 연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화생방 전 분야로 확대한 한미 화생방대응연습(Adaptive Shield)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에는 북핵 위협과 더불어 화생방무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예전보다 강화된 화생방대응연습을 실시하였다.

14) 국방부, 『202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p.29.

15)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64.

## 제2절 사이버·우주 협력

### 1. 사이버협력

#### 가. 사이버위협과 안보협력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정보수집과 지휘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핵심 공간이 되고 있다. 현대 국가의 군사작전 대부분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수행되므로 사이버공간의 네트워크는 외부 공격의 주요 목표물이 된다. 사이버공간이 국가안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미국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을 ‘사이버범죄’가 아닌 국가의 존위를 위협하는 ‘국가안보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sup>16)</sup>

사이버위협은 국가 기관이나 주요 인프라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투공간과 비전투공간, 전시와 평시 등의 구분도 모호하고, 지상·해상·공중과 우주공간을 모두 연결시키는 초연결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방위과학위원회(DSB: Defense Science Board)의 지적대로, 미국의 사이버 방어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군의 지휘통제 체계와 무기체계 간 사이버 연결성의 심화는 사이버보안이 뒤따라주지 못할 경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sup>17)</sup>

또한 사이버위협은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미국과 서방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국가들 사이의 진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대립은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을 강화하고 있다.

스펙옵스(SPECOPS)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사이버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10대 국가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협의체(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혹은 오커스(AUKUS) 회원국이다. 사이버위협에 많이 노출된 국가의 순위는 미국의 뒤를 이어 영국,

16) 송태은, 『연합 사이버 전력의 역할과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과제』(서울: 국립외교원, 2022), pp.1-28.

17) Defense Science Board, “Task Force on Cyber Deterrence,”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017).

〈그림 4-2〉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은 국가 순위



※ 출처: SPECOPS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고도화, 지능화되어 파괴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우주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 국방부는 2022년 「국방전략서(NDS)」에서 국가방위계획을 추진하는 모든 단계마다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역량 통합을 강조하였다. 2022년 11월 3일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미국의 기존 확장억제 범위였던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넘어 사이버안보와 우주,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신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사이버전력의 통합적 운용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 사이버 정보공유, 사이버보안, 사이버범죄, 사이버 군사훈련, 사이버 방위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독일, 한국, 호주, 우크라이나로 미국의 동맹과 우방들이 대부분이다.<sup>18)</sup>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반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사이버전 지원에 힘입어 전시 지휘통제와 국가 데이터의 보호뿐 아니라 정보작전 시 사이버 공간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사이버전에 있어서 우방의 지원 및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안보 협력과 공조는 동맹국 간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최근의 사이버위협은

18) Specops, "The countries experiencing the most 'significant' cyber-attacks," July 13, 2020.

19) Jenna McLaughlin, "A digital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rages on behind the scenes of war," NPR, June 3, 2022.



## 나. 한미협력 현황

한국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2012년 한미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문제에 대한 양자 간 전략적 정책 대화체인 ‘한미사이버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한미 국방부는 2013년 9월 5일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이버 훈련과 연습 및 사이버 군사교육 등을 협력함으로써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였다.

2017년 10월 제49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는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위협과 미 사이버사령부가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된 것에 주목하여 사이버역량을 핵심 안보역량으로 인식하고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sup>20)</sup> 2019년에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간하여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국제기구 파트너십 강화, 국제협약 가입 등을 통한 국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sup>21)</sup>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안보에 있어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기로 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및 국토안보 기관 간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사이버 워킹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인력, 조직 분야의 협력 및 교류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2021년 7월 16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총 16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국가 사이버 안보정책 조정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필수 요소로 인식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조치로 한미 간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미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sup>22)</sup>

2021년 9월 9일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번 회의가 랜섬웨어와 다른 사이버 범죄 퇴치에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하였다.<sup>23)</sup> 미 NSC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20)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7.10.28.).

21)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서울: 국가안보실, 2019), p.23.

22) 안영국, “靑, 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한미 사이버 워킹그룹 출범,” 『전자신문』(2021.7.16.).

23) 류지복, “한미 랜섬웨어 퇴치 손잡았다...첫 워킹그룹 회의 개최,” 『연합뉴스』(2021.9.13.).

프랑스, 일본 등 30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참석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를 주관하고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였다. 한국은 미국 및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경찰이 2021년 6월 16일 미국과 우리나라에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 6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고 18만 5,000달러에 이르는 대가를 압수하도록 지원하였다.<sup>24)</sup>

2022년 5월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에서는 정책, 작전, 훈련, 교육 등 사이버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22년 8월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 간 사이버 작전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교육 및 연습·훈련, 사이버 전력 확충 및 고도화, 국제 사이버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22년 10월 개최된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 사이버 군사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참가하는 등 국제 사이버 훈련 참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북핵문제와 미·중 기술경쟁, 사이버 공간의 불안정성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유기적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 산업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언급하였다.<sup>25)</sup> 2022년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sup>26)</sup>

2022년 11월 3일 개최된 제54차 SCM에서 양국은 사이버안보 위협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 간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의 확대를 확인했다.<sup>27)</sup>

2023년 4월 26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여 ‘전략적 사이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서,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24) Jim Heintz and Frank Bajak, “Ukraine police seize cash in raid on major ransomware gang,” AP(June 17, 2021).

25)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7.).

26) 박수형, “한미, 연합훈련 확대 협의 개시..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ZDNET Korea』(2022.5.21.).

27)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22.11.4.).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하였다.<sup>28)</sup> 2023년 5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에서는 최근 사이버위협 및 도발양상, 해커조직들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국방 사이버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 측은 미 사이버사령부 주관 다국적군 연합사이버훈련(Cyber Flag)에 정례적인 참여를 제안하여 미 측이 이를 수용했고, 2023년 7월 17일부터 2주간 5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가 참여하는 훈련에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참가했다. 또한 2024년 1월 한미 사이버작전사령부 간 최초 시행 예정인 한미 양자 사이버훈련을 성과있게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3년 6월 2일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 통제체계(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는 한국 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 간 최초로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21년부터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 및 사이버 워킹그룹을 개최하면서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 2. 우주협력

### 가. 우주위협과 국방우주력 발전

우주는 태양활동, 방사능, 우주기상 등 자연적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위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간이 만든 위협으로는 우주쓰레기 등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위협과 재밍(jamming), 레이저, 사이버공격,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등과 같은 의도적 위협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과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면서 우주영역에서의 위협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우주공간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2019년 2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우주에서의 안전보장에 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주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sup>29)</sup> 2019년 11월에는 러시아 위성이 미국 위성 근처에서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고, 2020년 4월에는 인공위성 요격

28) 대한민국 대통령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정상 공동성명(2023.4.26.).

29)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Challenges to Security in Space,” 11 February, 2019.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우주영역에서의 위협 확산으로 미국은 우주자산과 우주에서의 국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30)</sup> 2018년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개발 문제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우주에서의 패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독립된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하였다.<sup>31)</sup> 미 의회의 반대, 공군과의 역할 구분 모호 등의 이유로 우주군 창설 여건이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의 우주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우주자산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힘을 얻어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함으로써 우주군은 공군에서 분리되어 창설되었다.

미 우주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경비대에 이은 미국의 6번째 군대가 되었다. 우주가 독립된 전쟁 수행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우주군은 공군과 대등한 군종이나 행정적으로는 공군성이 공군과 우주군을 나란히 관장한다. 서로 분리된 해군과 해병대가 행정적으로는 나란히 해군성 관할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주군 참모총장은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우주군에 대한 조직, 훈련, 장비를 책임진다.<sup>32)</sup> 2022년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중부사령부가 우주군을 창설했다.

주한미우주군(USSF Korea)은 2022년 12월 14일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부대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창설되었다. 주한미우주군은 미국이 자국 본토 밖에 창설한 세 번째 우주군 부대로서 군사위성 관리, 첩보 활동, 우주 군사장비를 이용한 조기경보체계 운용,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의 미사일 활동 실시간 감시 및 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주한미우주군은 한국 공군이 창설한 우주작전대대 등과 협력하여 연합 우주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군은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는 인식 아래, 우주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합동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우주력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국가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군 정찰위성 및 우주 감시체계 개발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변화하는 우주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국방부

30) Joshua M. McCullion(주한미우주군 부대장), “미국의 우주력 구축 추세와 국방 우주력 발전 방향,” 『제31회 국제 국방학술 세미나』(서울: 합동군사대학교·한국군사학회, 2023), p.96.

31)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Memoranda. Space Policy Directive-4,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 Space Force,” 19 February, 2019.

32) 김호식, “미국 ‘우주군 창설’ 추진현황,” 『한국항공우주학회 2020 춘계학술대회 논문집』(서울: 한국항공우주학회, 2020), p.496.

차원의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계획서에서는 중·장기 국방우주력 발전 목표에 따라 정책기반 구축, 운영체계 발전, 우주전력 확충, 대내·외 협력 확대의 4대 중점분야와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국방우주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1년 11월에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등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군의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방향과 우주작전 수행체계 정립 등을 논의하고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 기술발전계획 등을 확인하였다.

2023년 2월에는 우주개발 등의 우주안보 환경을 고려한 『국방우주전략서』를 발간하여 우주영역을 국방정책의 핵심영역으로 반영하였다. 『국방우주전략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주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 보장 및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 능력 고도화’라는 국방우주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6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작전개념 및 교리 발전, ② 우주위협 및 우주위협에 대한 조기 상황인식 및 대응능력 확보, ③ 국가우주체계와 연계 및 국가우주 발전에 기여, ④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제도·정책적 기반 마련, ⑤ 한미 및 국제 우주협력 확대, ⑥ 민·관·군 우주협력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전략목표와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반 구축, 운영체계 발전, 우주전력 확충, 대내·외 협력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전략지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주영역의 특성상 단일 국가의 우주능력 만으로는 우주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하여 주변국 및 우방국과의 우주협력을 통해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군은 가장 많은 우주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다양한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책임 있는 우주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나. 한미협력 현황

한미 간의 우주협력은 2008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우주협력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IT 강국인 한국의 기술력 활용 차원에서 우주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협력 분야는 주로 과학기술 분야와 인적교류, 우주통신 분야 등 주로 우주의 평화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분야의 우주협력 강화에 국한되었다. 고체 미사일 기술 등 군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민감한

부분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기술이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2010년대 중반 이전 시기의 우주 안보 관련 국제협력은 한국 최초발사체인 나로호(KSLV-1) 개발과 우주인 배출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한미 간의 본격적인 우주협력은 2014년 제1차 ‘민간우주대화’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제1차 대화는 2014년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고위급회담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2016년 서울에서 제2차 대화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4년 한미정상회담 및 한미외교·국방(2+2)회의 후속조치로 2015년 1월에는 제1차 한미 ‘우주정책대화’가 개최되었다. 동 대화는 2016년 7월 2차 대화가 열렸고, 2020년 7월 제3차 대화를 계기로 정례화되었으며, 2021년 8월 제4차 대화가 미국 국무부에서 열렸다. 우주정책 대화는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관련 국제규범 마련 등 양다자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016년 2월에는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기술 교류 차원에서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합의하였다.<sup>33)</sup> 이 협정은 한미 간 외기권 탐사 및 이용을 위한 향후 협력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탐사 분야에 있어 양측 정부 간 협력에 관한 법적인 틀을 수립하여 미래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과학적 데이터의 교환과 전문가 교류를 통해 행성 탐사나 지구관측 등에 관해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한국형 달착륙선’ 등 우주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국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참여, 한국의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였다.<sup>34)</sup>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더 나아가 우주 관련 전 분야에서 한미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유인 달 탐사 계획으로 2023년 6월 기준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미는 한국형 달 궤도선에 유인 달 탐사 착륙지를 탐색하는 장비인 NASA의 ‘새도캠(shadowcam)’을 신는 등 우주 분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31년을 목표로 기획 중인 한국 달착륙선 사업에서도 양

33)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다.

34) 송근호, “한미 우주 협력: 우주개발 협력 이슈와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제언,” 『국가전략』 제27권 제4호(2021), pp.95, 109-111.

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더불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KPS는 2035년까지 8기의 위성을 띄워 한반도에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한미 우주 정책 대화 개최 및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등이 논의되었다.

한미는 국방 분야에서도 연합연습 등 국방우주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우주’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것은 한미 간 우주협력에 있어 국방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양국은 기존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던 ‘글로벌 센티넬(Global Sentinel)’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우주연습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센티넬’은 인공위성 충돌 등 우주 위험과 위협에 대비하는 국제 협력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으로 2022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25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8년부터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11월 제5차 우주정책대화에서는 5월 한미정상회담 시 합의사항인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대화에서 한미 양측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safe, secure, and sustainable)’ 우주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 규범 마련과 우주상황인식(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대화에서 미국은 ‘파괴적이고 직접상승 방식의 위성요격 실험’을 시급한 우주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동 실험의 유예 공약을 환영하였다.<sup>35)</sup>

2022년 12월에는 서울에서 제3차 민간우주대화가 6년 만에 개최되었다. 한미 양국의 다양한 우주분야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제1차 및 제2차 대화에 비해 우주정책뿐 아니라 규범, 산업, 탐사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었고 협의 내용도 내실화되었다. 특히 양측은 우주산업과 탐사 분야의 협력 확대 차원에서 미국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논의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우주탐사와 과학 분야에서는 우주 개발에 참여 중인 대표적 국내 기관들이 참여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달과 화성으로의 여정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35) 위성요격 실험은 지상 및 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위성 등을 직접 파괴하는 실험으로 통상 자국산 노후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동 실험 관련 금지 공약은 미국이 2022년 최초로 발표한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독일 등이 이에 동참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최근 우주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민간 분야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에 대한 양국의 정책 현황을 최초로 공유하였고,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등 해양 영역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 국제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우주포럼’을 외교부 및 미국 국무부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방 분야에 대한 한미 간의 우주협력은 국방부 간 그리고 한 공군과 미 우주군과의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2012년 제44차 SCM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 회의약정(TOR)」을 체결한 후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체인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미는 2014년 9월 「우주 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우리 군은 미국 우주사령부로부터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2015년 7월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을 설치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우주 위협을 분석하고 위성 충돌에 대비하여 우주상황 조치연습을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우주정보상황실은 2020년 2월 천리안2B호 발사 과정에서 미 연합 우주 작전센터와 위성 궤도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성이 목표궤도에 안착하도록 협력한 바 있다. 2017년 9월에는 워싱턴에서 최초로 우주협력 토의식 연습(TTX: Table Top Exercise)을 개최하였다.

특히 2020년 제15차 SCWG에서 한 측이 처음 제안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2년간의 논의 끝에 2022년 4월 18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함으로써 한미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양국 국방부



〈사진 4-21〉 국제우주상황 조치연습(2019.9.)

※ 출처: 국방부, 『2022 국방백서』

간 최초로 우주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공식문서로서 점증하는 우주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동맹 차원의 우주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를 포함하였다. 한미는 우주영역에서의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동의 인식 형성을 위한 정보공유,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연습·훈련, 연합 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상호운용성 향상 등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



기로 하였다. 한미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0월에는 미국이 발표한 ‘파괴적 직접상승 요격미사일(DA-ASAT: Direct-Ascent Anti Satellite) 실험금지’ 공약에 우리가 아시아국가 최초로 동참을 선언하면서 한미 국방 우주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공군 차원에서는 2012년부터 ‘한미우주통합팀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 공군은 각종 지휘소 훈련 시 우주작전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한편 한미 연합작전 지원을 위한 우주작전 수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우주위협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공군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우주작전 수행 역할들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9년 창설된 ‘우주작전대’<sup>36)</sup> 조직을 2022년 12월 1일부로 ‘우주작전대대’로 확대 개편하였다.

우주작전대대는 우리 군 최초의 우주 감시자산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OSS: Electro Opitical Satellite Surveillance System)로 한반도 상공의 우주영역을 집중 감시하고, 우주위협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4-22〉 공군 우주작전대대의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 출처: 국방일보 DB

36) ‘우주작전대’는 공군의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를 기반으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등 우주물체를 탐지 및 식별하고 우주 자산의 충돌 위험성 및 우주잔해물 추락 예보 등 우주상황인식 임무를 수행하였다.

## 제3절 방산·과학기술 협력

### 1. 방산협력

#### 가. 한미 협의체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미 양국은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하여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산하에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는 2016년 제48차 SCM에서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통해 북한위협에 대응하는 로봇·자율기술 등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는데 합의했다.<sup>37)</sup>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는 한미 양국의 방산 및 기술 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이다. 한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에서는 획득운영유지(A&S)차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는 한미 방산협력은 물론 국방과학기술협력도 논의한다. 최근 동 위원회를 통해 함정분야 협력방안,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SOSA, RDP-A), 대미획득사업 현안 관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는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로서 기술협력소위원회(TCSC: Technology Cooperation Sub-Committee)와 방산협력소위원회(DICSC: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Sub-Committee)를 두고 있다. 기술협력소위원회는 한국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과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 국제지원정책과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한미 공동연구개발, 자료교환 및 과학자교환 등 기술협력 분야를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방산협력소위원회는 공동생산, 군수지원 프로젝트 등 한미 협력과제에 대한 지침제공 및 이행 협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한편 한미는 2015년 11월 제47차 SCM에서 양국의 방산기술전략 및 협력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 국방부·외교부, 미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Defense Technology Strategy & Cooperation Group)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sup>38)</sup> DTSCG는 기존의 한미 간 방산 관련 협의체가 정부차원의 고위급 정책의견 조율이 제한되고 의제 또한 FMS 사업추진간 파악된

37)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6.10.26.).

38)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15.11.2.).

현안 및 기술보호 등에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양국 간 기술협력 증진에 집중하고자 신설되었다. 2016년 7월에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고위급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DTSCG는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다.

## 나. 방산협력의 합의와 협정

### 1) 방산협력의 발전과 기본원칙<sup>39)</sup>

1969년 7월 「닉슨독트린」 발표로 자국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동맹국 스스로 맡게 되면서 미국은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70년대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대응은 미국 안보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에 미국은 한국군 장비현대화 계획 추진과 방위산업 육성 기술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 한국의 경제성장과 방위산업의 급속한 기반 확대로 미국은 ‘안보지원을 위한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였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국 산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예의 주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방산물자에 대한 통제 강화, 면허 및 특허료 지불 요구, 첨단기술 이전 기피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6년 이후 미국은 방위산업 기반 구조의 불균형, 전시 긴급생산능력 및 조달시간의 장기화, 기술인력의 부족, 주요 부품과 핵심 원자재의 해외의존도 심화, 새로운 기술과 시설에 대한 투자 저조, 미국 해외 무기수출 기반의 지속적인 잠식 등 자국 방위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의 경제여건, 군사과학기술 수준, 미국의 지역적 이해관계 정도에 따라 안보지원 협력 추진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미국 무기체계 표준화 정책을 추진하여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산업발전 및 방산기술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하여 양국 간 무기생산 협력체계를 모색하였다. 다만 양국 정부 간 협력보다는 업체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방산협력을 추구하였다. 미국은 양국 간 공동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한 기술이전 회피는 물론 특허료 등 비순환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방침을 정하였다.

39) 황동준, “한미 방위산업 협력방안-방위산업 협력협정(MOU)을 중심으로,” 『국방과 기술』(1987.9.), pp.12-13.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1985년 제17차 SCM에서 한미 방산협력을 의제로 채택할 것을 미국에 최초로 제의하였고, 한미정책검토위원회(PRS: Policy Review Subcommittee)는 1986년 12월 제19차 SCM에서 한미 방산협력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987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9차 SCM에서 한미 방산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방산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다. 1986년 6월에는 「한미 방산기술협력 위원회(DTICC)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 작전지역 장비의 표준화 및 호환성 제고를 위한 방위물자의 연구, 개발 및 생산 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양해각서에서는 방산물자, 기술정보 및 방산업체 간 협력, 양국 방위산업 기술과 방산업체 간 협력 보강, 기술교환·연구개발·생산·조달·군수지원, 기술자료에 대한 한미 비밀보호협정에 의한 보호 등의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후 한미는 이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협력 시 요구되는 사안을 협의하였다. 이후 제23차 SCM에서는 한미 간 군수·방산·기술협력체제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다.<sup>40)</sup>

## 2)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공급안보에 관한 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은 미국 및 약정국 간 계약된 물품의 납품 우선순위를 상대국 요청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구속력 없는 기관 간 약정이다. 미국은 공급망 안정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국적 산업기반 협력 확보’를 목적으로 캐나다, 일본 등 13개국과 SOSA를 체결하였다.

2022년 11월 미국은 한국에 SOSA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한국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방위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 검토를 추진하였다.

## 3) 「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Agreement)」은 미 국방부가 협정국과 상호주의 원칙 하에 방산시장을 개방하여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영국·호주·일본을 포함하여 총 28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은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

40) 국가기록원, 제2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89&subjectTypeId=08&pageFlag=C&sitePage=1-2-2>(검색일: 2023.1.3.).

(RDP-Agreement)」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2022년 10월 28일 민간 합동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체결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RDP-A 범정부 TF’를 출범시키고, 신범철 국방부차관(위원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하였다. ‘RDP-A 범정부 TF’는 RDP-A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국방부차관을 위원장, 방위사업청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등 관계 부처 국장급과 출연 기관, 방위산업진흥회,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후 2023년 상반기에 제2차(2월 24일)회의와 제3차(6월 26일) 회의를 실시하여 RDP-A 체결이 국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체결 사례 조사, 체결 형태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3년 7월 28일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계기로 RDP-A 실무검토를 위한 대면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RDP-A 체결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RDP-A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국내시장 보호 대책, 대미 수출 활성화 방안, 협상 방안 등을 검토·수립하여 종합적인 RDP-A 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방산 분야 상호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간 공동개발·생산·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등 방산수출을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다. 방산협력 현황

##### 1) 한미 방산협력의 심화와 확대

한미 방산협력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무기를 도입했던 1세대 방산협력 시기를 지나, 1990년부터 현재까지는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 납품협력이 이뤄진 2세대 시기로 발전해 왔다. 한미 양국은 초기 단계 연구개발부터 생산·마케팅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3세대 방산협력 시기로 전진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무기체계를 자체 생산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출할 정도로 역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은 2018~2022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의 2.4%<sup>41)</sup>를 차지하는 등 세계에서 9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sup>42)</sup>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

41)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2023년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23.

〈그림 4-3〉 연도별 방산수출 수주액



※ 출처: 『2022 국방백서』

다품목의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수출하여 단일국가로는 최대수주액인 124억 달러를 계약했다. 그 결과 국내 방위산업은 수출 173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및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한미 공급망 안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개발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 2) 한국 방위사업청-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간 정례 콘퍼런스 개최

방위사업청은 한미 방산획득 및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2016년부터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도 콘퍼런스 주제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방산협력’으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방산·획득 정책을 짚어보고, 한미 방산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콘퍼런스에서는 한미 방산협력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생산·마케팅까지 협력하는 방안과 유망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이나 절충 교역 등을 통한 부품·구성품 납품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동안의 한미 방산협력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양국 협력의 유망 사례로서 5세대(5G) 및 차세대 통신 분야 협력을 국방 분야에서도 한층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와 계획 중인 ‘산업협력 제도’를 한미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소개하고, 한미 방산정책의 조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2) 국방과학기술연구소, 『2021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진주: 국방과학기술연구소, 2021).

2023년 3월 16일에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방산공급망에서 확대된 한국의 역할과 한미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방 분야 반도체와 국방우주 등 한미 간 협력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를 모색하고 협력방안으로 공급망 안정과 해외비교시험(FCT: Foreign Comparative Testing) 등을 논의하였다.<sup>43)</sup>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반도체 발전방향’과 ‘국방우주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소개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첨단기술 분야 방산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44)</sup> 또한 2023년 2월 미 국방부 FCT팀의 방한 및 ‘한미 FCT Industrial Day’ 개최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내기업의 제품이 FCT 선정과 미국 국방 조달로 연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2. 과학기술협력

### 가. 한미 협의체

한미 간 기술협력은 SCM 정례협의체의 틀 내에서 운영 중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산하 기술협력소위원회(TCSC)를 통해 추진되었다. 기술협력소위원회(TCSC)는 한미 공동연구개발, 자료교환 및 과학자 교환 등 기술협력 제 분야를 추진하는 기술협력 협의체이다. 1979년 제12차 SCM에서 기술협력위원회(TCC: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를 구성하였고, 1981년 기술협력위원회(TCC)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이후 1988년 「한미 방산기술협력(DTIC)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존 기술협력위원회(TCC)를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로 재편하였고, 1990년 「한미 방산기술협력(DTIC) MOU 부록#1 행정절차」 체결에 근거하여 기술협력위원회(TCC) 워킹그룹을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 산하 기술협력소위원회(TCSC)로 개편하였다.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체(DTSCM)는 한미 양국 간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sup>45)</sup>로 한국의 방위사업청 차장과 미국의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DTSA: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dministration) 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43) Foreign Comparative Test: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 및 기술을 시험평가 후 군의 요구도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국방조달로 연계하는 제도.

44)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방산 공급망 관련 한미 방산협력 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콘퍼런스 개최,”(2023.3.1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_View.do?newsId=156557831](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_View.do?newsId=156557831)(검색일: 2023.3.24.).

45)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체 헌장(Defense Technology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Charter)(2011.6.8.).

## 나. 과학기술협력의 합의와 협정

### 1) 과학기술협력의 배경과 추진 방향

전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상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에 따라 동맹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5G 등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편인 한국을 안정적인 최우선적 협력파트너로 인정하였다.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 확대를 강조하는 등 한미동맹을 기술동맹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양국 국방부도 국방과학기술<sup>46)</sup>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 12월 제53차 SCM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합의하였다. 2022년 11월 제54차 SCM에서는 신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례 회의체의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표 4-6〉 제54차 SCM 공동선언문 중 국방과학기술협력 내용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 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상기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 회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기 회의체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출처: 제54차 SCM 공동성명(2022.11.3.).

46)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2020.3.31.).



미 국방부는 2022년 2월 14개의 핵심기술 분야를 발표했다. 그것은 생명공학, 미래 세대 무선 기술(FutureG), 신뢰 인공지능 및 자율화, 초소형(Micro) 전자공학, 재생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양자 과학, 첨단 재료 과학, 통합 네트워크 복합 시스템, 우주 기술, 첨단 컴퓨팅 및 소프트웨어, 지향성 에너지, 통합 센싱 및 사이버이다.<sup>47)</sup> 2022년 3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은 미·중 기술경쟁 하에서 한국을 포함한 한태평양 역내 동맹과의 협력 및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거 미국은 무기·과학기술의 판매를 목적으로 협력을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 경쟁시대에서 미국 국방기술의 우위(Superiority) 강화’를 목표로 미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질서 속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 우위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방기술 연구·개발(R&D) 정책방향에 반영되었으며 관심 분야도 배터리, 5G에서 우주, 사이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확장되었다.

〈표 4-7〉 미 국방기술 연구·개발(R&D) 3대 정책방향

- 임무중심 : 미 국방부의 군사 작전, 연구개발 및 임무수행 중심과제 해결을 위해 기술 혁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 인력/시설 기반구축 : 미래 기술인력 및 인프라를 갖추 수 있는 기반구축
- 팀워크를 통한 성공 :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혁신 생태계와 협력하여 비대칭 이점을 극대화

※ 출처: 기술협력소위원회(2022.10.).

한국 역시 「14~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2014.7.)과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2019.7.)를 수립하여 국방과학기술의 현 수준과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무기체계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진강군 및 창조경제를 추진하였다.<sup>48)</sup> 2020년 3월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강한 국방건설을 추진하였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강군」을 국방운영목표로 설정하고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을 6대 국방운영중점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sup>49)</sup> 이에 국방부는 2023년 5월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각 군의 미래 구상을 기반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47) 국방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023.5.), p.15.

48) 국방부,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2019.7.).

49) 국방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6대 국방운영중점 추진계획」(2022.10.).

비전과 목표를 담은 「2023~ 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쟁 선도, 국가과학기술 융합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0대 분야 30개 기술을 국방전략기술<sup>50)</sup>로 규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과학기술강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4-4〉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및 세부기술(30개) 목록

	인공지능	1. 지능형 전장인식/판단 2. 지능형 통합 지휘결심 3. 스마트 전력지원 4. 국방 SI 플랫폼
	유·무인 복합	5. 유·무인 협업 6. 자율 임무수행 7. 차세대 웨어러 플랫폼
	망자	8. 망자 암호 통신 9. 망자 센서
	우주	10. 우주기반 감시정찰 11. 초정밀 위성항법 12. 우주영역 인식 13. 우주비행체
	에너지	14. 자량성 에너지 15. 차세대 동력원
	첨단소재	16. 고성능 반도체/전자소재 17. 극한환경 구조소재 18. 특수 기능소재 19. 초연결 네트워크
	사이버 네트워크	20. 사이버전 대응 21. 메타버스 훈련
	센서·전자기전	22. 차세대 센서 23. 센서 융합 24. 전자기전 대응
	추진	25. 첨단 엔진 26. 극초음속 추진 27. 수중 추진
	WMD 대응	28. 미사일 방어 29. 고위력 정밀타격 30. 지능형 화생방 방어

※ 출처: 국방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023.5.).

이처럼 한미 양국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제고와 미국의 동맹국과의 기술협력 기초 강화 차원에서 상호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50) 국방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과학기술 융합의 관점에서 국방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로 정의한다. 국방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023.5.).

## 2) 「한미 국방부 간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사업에 관한 협정」 체결

한미 국방부 간 MOU인 「기술연구개발협정(TRDP: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은 양국 국방부 간 공동 연구개발사업의 착수, 수행 및 관리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기관 간 약정으로 1996년에 체결되었다. 한미 양국은 2005년 한미 기술협력소위원회 회에서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하여 관계 기관과 외교부 등 부서 검토 및 양국 추가 협의를 거쳐 2009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협정 정비나 명칭 개칭, 양국 연구개발 협력 범위 확대,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합동사무소 설치 운영, 서명권자 변경 등이었다. 또한 양국은 협정 명칭을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RDT&E: Research,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협정」으로 개칭하였고, 연구개발 협력 범위를 기존의 기초·응용연구에서 시험평가를 포함한 연구개발 전 범위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서명권자를 한국의 국방장관과 미국의 획득·군수차관으로서 한국의 방사청장과 미국의 획득·군수차관으로 변경하였다. 동 개정안은 정책적, 법률적 검토를 거쳐 2009년 11월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체결되었다.

## 3) 「한미 연구개발 정보교환 협정(DEA)」 개정

「한미 연구개발 정보교환 협정(DEA: Data Exchange Agreement)」은 한미 군사기술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협정으로 1963년에 체결되었다. 한미 기술협력소위원회는 2005년 「정보교환협정」의 개정에 합의한 후 관계기관 검토와 개정안에 대한 양국 간 최종 협의를 거쳐 2009년 개정안을 체결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오래된 기존 협정을 정비 및 보완하고 그 명칭을 「정보교환 기본협정(MIEA: Main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비용부담, 평문에 대한 보안통제 및 분쟁해결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고, 협정 서명권자를 한국 국방장관과 미국 연합사령관(육군대장)에서 한국의 방사청장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군수차관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정보교환 대상사업은 총 31건으로 화생방 체계, 지뢰부설 및 지상지뢰, 전술유도무기, 음탐장비, 전자전, 재래 무기효과 분석, 군진의학 등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 협정(DEA/MIEA) 하에 별도로 「정보교환부록」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상호 교환하였다. 한미 연구개발 정보교환 협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8〉 한미 연구개발 정보교환 협정 개정내용

연 도	DEA(기존)	MIEA(추가)
전문	• 상호방위지원협정(1950) 근거	• 상호방위지원협정(1950) 근거
제1조 용어 및 약어정의	없음	• 시행관 등 15개 용어 정의
제2조 목적 및 범위	• 목적 및 정보교환 대상 범위 - 총 31개 사업 (부록에 명시)	• 아래사항 보완 및 추가 - 상호호혜/공평 원칙 선언 - 연구개발 위한 소프트웨어 교환 - 생산정보는 교환 배제 등
제3조 관리	• 부록의 사업별 관계관 명시/관계관 변경 시 각국 국방부 사업담당관이 합의	• 관계관 및 임무를 세부적으로 명시 - 협정시행관 · 한: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 미: 국방성 국제협력국장 - 부록시행관 · 한: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 · 미: 각군 획득/방산업무 부서장 - 각 사업별 기술사업담당관(TPO)
제4조 연락 및 방문경로	• 연락: 주한미국 군사원조 고문단 경유 • 방문: 사업담당관의 허가 필요/관계 기관 인원으로 제한	• 정보교환 권한 명시: 시행관 및 기술 사업담당관 • 방문: 협정서 미포함 방문지 방문시 절차 명시
제5조 재무 관리	없음	• 각자 경비 부담 명시
제6조 계약관리	없음	• 상대 당사자를 대신한 계약체결 불가 등 일반 원칙 수준에서 기술
제7조 연구개발 정보의 공개 및 이용	• 정보는 군사목적에만 사용 • 비밀 수령 시 수령증 발급, • 정보의 타 시설 제공 금지 • 특허/저작권 및 무역 비밀 존중명시	• 정보의 이용: 국방 목적 한정 • 상대국 동의 없이 공개금지 명시 • 연구개발정보 소유권: 원 소유자 • 정보의 적절한 취급 • 제3자에게 공개할수 있는 조건 명시 (제10조)
제9조 보안	• 제출받은 비밀정보에 대한 정보 보 호 방법/보안 조치내용 명시	• 비밀군사정보보호 관한 협정 (1974)/ 산업보안부록(1987) 준수 • 비밀보호 방법/보안조치 명시 • 교환가능정보 최고수준: 2급 비밀
제10조 제3자 양도	• 상대국 동의없이 제3자 공개금지	• 상대국 동의없이 제3자 공개금지
제11조 분쟁의 조정	없음	• 당사자 간 해결 원칙 명시

연 도	DEA(기존)	MIEA(추가)
제12조 언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토론: 영문 혹은 한글</li> <li>• 자료제공: 영문</li> <li>• 계약: 해당국 언어</li> </ul>
제13조 수정, 종료, 발효 및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교환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효 력 명시</li> <li>• 교환된 내용에 대한 보안의무와 소 유권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종료 원칙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협정: 120일 이전통보</li> <li>- 부록: 60일 전 통보</li> </ul> </li> <li>• 본 협정유효기간: 25년 유효, 만료 3년 전 연장여부 합의</li> </ul>
부록	• 정보교환 부록 체결 “예시”	• 정보교환 부록 체결 “예시”

※ 출처: 국방부 전력정책과 제공자료(2023.6.).

## 다. 과학기술협력 현황

### 1) 한미 과학기술협력 콘퍼런스 개최

1990년 개편된 기술협력소위원회(TCSC)는 매년 개최되었다. 1991~2007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국방부 주관으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부장과 미 국방성 국제사업부 차관실 극동아시아과장이 양국 위원장을 맡아 TCSC를 개최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한국의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과 미국의 획득기술군수차관실 극동아시아과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미 정부 부처 간 협의체로 격상되었다. 2019년 한국과 미국의 국방조직 개편에 따라 한국의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과 미국의 연구공학차관실 국제협력과장이 현재까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미 양국은 기술협력소위원회에서 양국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한미 간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협정서 체결과 과학-기술자 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한미 간 국방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는 2006년 이후 총 9회에 걸쳐 한미 양국 간 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를 협의하였다. 2017년 제8차 DTSCM은 미 측의 요청에 따라 방산기술 보호 국제콘퍼런스와 연계하여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 2)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 인적교류 확대

한미는 기술협력소위원회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매년 군 과학기술 부서 및 연구기관 소속 10명 내외의 인력을 ‘한미 과학기술자 교환 프

로그램(ESEP: Engineer and Scientist Exchange Program)’을 통해 교류하였다. 한미 양국 과학기술자들이 상대국 과학기술 현장에서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의 상호연동성을 확보하였다.

### 3)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한미는 기술협력소위원회를 통해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한미는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문서인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RDT&E) 협정」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미 국방부 뿐만 아니라 미 국토안보부와의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여 2023년 3월 20일 한미 간 「국방·국토 안보 연구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주, 양자 등 신기술 분야로 미국과의 협력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Alliance for the Future  
한미동맹 70주년









맺음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을 개시하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을 요청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등 16개 전투부대 지원국을 비롯한 6개 의료지원국, 38개 물자지원국 등 총 60개국이 함께 한반도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이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공식적인 한미 군사동맹 관계가 시작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한미동맹 관계는 미국이 주로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한국은 토지와 시설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미국은 한국에 군사·경제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한국방위도 주한미군이 주도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른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상호보완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편 1969년 “아시아의 일차적 방위 책임은 아시아 국가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은 「울곡사업」으로 가시화되었다. 베트남전쟁 파병으로 전투경험을 축적한 한국군은 「울곡사업」으로 전력이 더욱 보강되면서 주한미군과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하였고, 1978년 11월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였다.

1980년대 한국의 국력 신장은 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한미동맹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1988년 한미 양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하여 양국 군대의 상호 군수지원체계를 정립하였고, 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받게 되었다. 1990년 11월 제22차 SCM에서 양국 간 최초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면서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점점 커졌다. 1994년 12월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평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가 확립되면서 연합방위 측면에서는 전시 대비태세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 냉전이 종식되고 글로벌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진화해 나갔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군사변혁과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국 국내에서도 국력 신장에 걸맞도록 한미동맹이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대내외 상황 변화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를 견인하였다.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역할 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협력 분야를 확대하면서 심화시켜 나갔다. 2009년 6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하여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2010년 10월 「한미국방 협력지침」에 합의하여 21세기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기여를 강조하였다.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이 안보협력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왔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하였고, 2018년 10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마련하였다. 2019년 11월 국방협력을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였으며, 동맹 관계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목표에 합의하였고, 한미동맹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과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워싱턴선언」이 발표되었으며, 자유·법치·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양국 국민의 번영된 삶에 이바지해 왔다. 오늘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글로벌 전략 경쟁의 심화 등 안보환경의 변화,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경쟁,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글로벌 범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협력의 범위도 외교 안보 분야를 비롯해 경제안보·첨단기술·인적교류·문화·정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우방국들과의 자유의 연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부 록

1. 영어 약어
2. 한미관계 연표
3. 한미 안보협의체 개최 현황
4.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대 주요 직위자
5. 한미동맹 주요 합의문 변천 경과
6. 한미 주요 국방·군사 조약·각서·약정 목록
7. 주한미군 기지 약사

참고문헌/찾아보기

## 1. 영어 약어

약어	원어	의미
A2/AD	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ABCT	Armor Brigade Combat Team	기갑여단전투단
AC&W	Aircraft Control and Warning	항공기 관제 및 경보
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AEW	Air Expeditionary Wing	비행단
APCSS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아시아-태평양전략연구소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nference	아시아태평양 제협력체회의
APS	Army Prepositioned Stocks	미 육군 사전배치재고
ASCOM	Army Service Command	군수지원사령부(애스컴시티)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G	Area Support Group	군수지원단
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BCT	Brigade Combat Team	여단전투단
BUR	Bottom UP Review	국방태세에 관한 검토보고서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
CAOC	Combined Air Operations Center	연합항공작전본부
CC	Combined Command	연합사령부
CCPT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연합지휘소연습
CCWG	Cyber Cooperating Working Group	사이버정책실무협의체
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	연합방위증강사업
CFA	Combined Field Army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
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연합군사령부
CFLCC	Coalition Forces Land Component Command	동맹군 지상구성군사령부
CGSC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지휘참모대학
CIWG	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한미 연합이행실무단
CJTF	Combined Joint Task Forces	연합합동특수임무부대
CMCC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
CMFC	Combined Marine Forces Command	한미연합해병대사령부
CMWG	Counter Missile Working Group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연합 권한위임사항
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부록

약어	원어	의미
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Working Group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
CPX	Command Post Exercise	지휘소연습
CRAC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	연합후방지역조정관
CRDL	Critical Requirements Deficiency List	소요부족품 목록
CPWG	Counter Proliferation Working Group	대확산회의
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협력안보지역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DEA	Data Exchange Agreement	한미 연구개발 정보교환협정
DFE	Dynamic Force Employment	역동적 전력 운용
DICSC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Subcommittee	방산협력소위원회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억제전략위원회
DSC TTX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DSG	Defense Strategic Guidance	국방전략지침
DSP	Defense Support Program	방어지원프로그램
DSS	Defense Science Board	미국 방위과학위원회
DTICC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es Cooperation Committee	방산기술협력위원회
DTSA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dministration	미 국방부 방산기술 보호본부
DTSCG	Defense Technology Strategy & Cooperation Group	방산기술전략·협력체
DTSCM	Defense Technology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방산기술보호협의회
DTT	Defense Trilateral Talks	한·미·일 안보회의
EAC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한미환경협의회
EASI	East Asian Strategy Initiative (Strategic Framework for Asian Pacific Rim)	동아시아 전략구상
EASR	East Asian Strategy Report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동아시아 전략보고
ECC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	한미환경협력위원회
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부록

약어	원어	의미
EGS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환경관리기준
EOSS	Electro Optical Satellite Surveillance System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ESEP	Engineer and Scientist Exchange Program	한미 과학기술자 교환 프로그램
FCT	Foreign Comparative Test	해외비교시험
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	신속억제방안
FE	Foal Eagle	독수리연습
FED	U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ern District	미 육군 극동공병단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L	Focus Lens	포커스 렌즈
FM	Field Manual	야전교범
FMC	Full Mission Capability	완전 임무수행능력
FMP	Force Module Package	전투력증강
FMR	Finance Management Review	자금관리회의
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 운용능력
FOD	Flexible Deployment Option	신속 억제방안
FOMOA	Follow-on Memorandum Agreement	후속합의각서
FOS	Forward Operating Site	전진작전기지
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외교문서
FS	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
FSSG	Force Service Support Group	전투근무지원단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C	Field Training Command	야전훈련사령부
FTX	Field Training Exercise	야외기동훈련
FWMAPC	Fee World Military Assistance Policy Council	자유세계 군사원조정책회의
GCC	Ground Component Command	지상구성군사령부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HS	Global Health Security	글로벌 보건안보
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GOM	Global Operating Model	범세계 군사력 운용모델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부록

약어	원어	의미
IA	Implementing Agreement	이행합의서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NSSG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국가안보전략 잠정안
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기본운용능력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
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t	국제안보지원군
JA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s	합동직격탄
JCC	Joint Communique Commission	공동성명위원회
JFCOM	Joint Forces Command	합동군사령부
JOPES	Joint Operation Planning and Executive System	합동작전 기획 및 시행체계
JSA	Joint Security Are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USMAG-K	Joint United State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주한 미합동군사고문단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KMAG	Korea Military Advisory Group	주한 미 군사고문단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
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KR/FE	Key Resolve / Foal Eagle	키리졸브/독수리연습
KRG	Krudistan Regional Government	쿠르드 자치정부
KSC	Korean Service Corps	한국노무단
LCC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군수협력위원회
LPP	Land Partnership Plan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LRA	Long Range Artillery	장사정포병
LST	Londing Ship Tank	상륙함
MA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군사정전위원회
MACV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사지원계획
MC	Military Committee	군사위원회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미 군사위원회회의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해양영역 인식
MDR	Missile Defense Review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부록

약어	원어	의미
MEF	Marine Expeditionary Force	해병기동군
MIEA	Main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정보교환 기본협정
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마일즈 장비
MLSA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of the ROK and Government of the US	상호군수지원협정
MNC-I	Multi-National Corps-Iraq	이라크 다국적군
MNF-I	Multi-National Forces Iraq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MNFP	Multinational Forces Peace Operations	다국적군 평화활동
MOA	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
MOB	Main Operating Base	주작전기지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탄도미사일
MURO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United States Forces Korea Relocation Office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NA	National Authority	국가통수기구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 항공우주국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NC	National Command	국가통수기구
N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핵협의그룹
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	국가통수 및 사시회기구
ND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국방수권법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국방전략서
NLF	Nation Liberation Front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NIPRNET	Non-classified Information Protocol Router	평문정보통신망
NPR	Nuclear Posture Review	핵태세검토보고서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서
NSDD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국가안보결정지침
OEF	Operation Enduring Freedom	항구적 자유작전
OIF	Operation Iraqi Freedom	이라크 자유작전
ORMF	Outlines Realignment of Military Forces	미군 군사력재정비계획
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Missile Defense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협의체
PMAG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임시군사고문단
PMC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사업관리 컨소시움
PMC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상설군사위원회

부록

약어	원어	의미
PPH	Power Projection Hubs	전력투사중추기지
PRS	Policy Review Sub-committee	정책검토위원회
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지방재건팀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4개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협의체
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Agreement	국방상호조달협정
RDT&E	Research,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협정
RMG	Revised Missile Guidance	개정미사일지침
RIMPAC	Rim of the Pacific	환태평양훈련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연합전시지원(수용, 대기, 전방 이동, 통합)
RTDA	Regionally Tailored Deterrence Architecture	지역맞춤형 억제체계
SAMR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Review	사업관리회의
SAWG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	전략동맹공동실무단
SBCT	Stryker Brigade Combat Team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
SBIRS	Space-Based Infrared System	우주배치적외선체계
SCC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안보협력위원회
SCIF	Specialized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특수정보시설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안보협의회의
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의
SEATO	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동남아시아조약기구
SEWS	Satellite Early Warning System	조기경보공유체계
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NDV	Strategic Nuclear Delivery Vehicle	전략핵운반체계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공급안보약정

부록

약어	원어	의미
SPG	Strategic Planning Guidance	전략기획지침
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한미안보정책 구상회의
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우주 상황인식
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전략적 전환계획
TCC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	기술협력위원회
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대북정책 조정그룹
TCSC	Technology Cooperation Working Sub-Committee	기술협력소위원회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맞춤형억제전략
TOR	Terms of Reference	관련약정
TPFDD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	시차별 부대전개제원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체계
TRADOC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미 육군교육사령부
TRDP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기술연구개발협정
TS	Team Spirit	팀스피리트
TSP	Theater Security Package	전구안보자산
TTX	Table Top Exercise	토의식 연습
UA	Umbrella Agreement	기본합의서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
UFG	Ulchi Freedom Guardian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L	Ulchi Focus Lens	을지 포커스 렌즈
UFS	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UNAMI	United Nation Assistance Mission for Iraq	유엔 이라크지원임무단
UNC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사령부
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	주한미군사령부
US KORCOM	United States Korea Command	미 한국사령부
USSFK	U.S. Space Forces Korea	주한미우주군
WBC	Won-Based Cost	원화지출경비
WHNSA	War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	전시주둔국지원협정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WRSA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전쟁예비물자
YRP	Yongsan Relocation Plan	용산기지이전계획

## 2. 한미관계 연표

연도	주요일지
1866	7.27.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발생
1871	6. 1. 신미양요
1882	5.22. 인천부 화도진(花島鎭)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888	2. 6. 최초의 근대적인 사관학교 연무공원(鍊武公院) 개설
1905	11.23. 을사조약 체결(11.17) 후, 주한미공사관 철수로 한미 외교관계 단절
1945	3.15. 한국광복군과 미 OSS의 한미군사합작에 관한 6개월 합의 4.17. 김구 주석과 駐中 미군총사령관 간의 한미군사합작에 관한 협정 체결 8.15. 일본 무조건 항복, 한국 독립 9. 2. 맥아더 사령부,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의 남북한 분할점령 발표(일반명령 제1호) 9. 7. 맥아더 원수, 포고령 1호 발표. 남한에 대한 미군정 실시 발표 9. 8. 미 제24군단, 제7보병사단, 한국(인천) 도착 9. 9. 주한미군, 38도선 이남의 일본군 항복 수리 11.13. 미 군정청에 국방사령부 설치 12. 5. 군사영어학교 개설
1946	1.15. 남조선 국방경비대 창설 9. 2. 미 군정청, 한국인 부처장에 행정권 이양 성명
1947	6. 3. 미 군정청, 한국인 기구를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칭 10.30. 유엔, 유엔한국위원단 설치 및 정부수립후 미·소군 철수안 결의
1948	4. 8.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한미군 철수 정책 결정(NSC-8) 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미군정 종결 8.24. 한미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체결 12.26. 소련군, 북한에서 철수 완료
1949	1. 1. 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승인 6.29. 한국 주둔 미군 철수 완료 7. 1.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 발족
1950	1.12. 애치슨 미 국무장관, 극동의 전략방위선에 대해 언급 1.26. 한미 간 주한미 군사고문단 설치협정 및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6.25. 한국전쟁 발발 6.26. 유엔 안보이사회,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철수 요구 미의회, 대한추가지원안 가결(5,000만 달러) 미 극동사령부 한국공군에 F-51 10대 인수의사 발표 6.27. 트루먼 미 대통령, 해·공군에 한국 출격 명령 미 극동사령부 수원에 전방지휘소(ADCOM) 설치 6.29. 맥아더 원수, 한국전 시찰 6.30. 트루먼 미 대통령, 맥아더 원수에게 지상군의 한국 출동 등 지시

연도	주요일지
1950	7. 1. 스미스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 7. 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군 지휘하의 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안 가결 7. 9. 미 제8군사령부 대구에 설치 7.12. 재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 체결 7.14.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원수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위임 7.24. 유엔군사령부 일본 동경에 설치 7.28. 한미 간 유엔군 비용지출에 관한 협정 체결 8.16. 카투사 제도 시행 9.15. 인천 상륙작전 9.28. 서울 수복 10. 2.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유엔군의 38도선 돌파 명령 10.19. 평양 점령, 중공군 압록강 도하 11.30. 트루먼 미 대통령, 한국 불포기 엄명, 필요시 원폭사용 불사 발언 12.23. 워커 미 제8군사령관 순직(자동차 사고) 12.24. 흥남철수 작전 완료
1951	1. 4. 중공군, 서울 점령, 1·4후퇴 3.18. 서울 재탈환 4.10.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해임, 후임에 리지웨이 장군 7.10. 정전회담 개시 8.17. 주미 한국 무관부 설치 12.18. 휴전협상, 포로명단 교환
1952	4.28. 유엔군사령관으로 클라크 장군 임명 5. 7. 거제도 포로수용소 돛드 소장, 공산포로에 피랍 5.24. '마이어' 협정 체결 12. 2.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당선자 방한
1953	6.18.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 석방 7. 4. 미 제8군사령부, 용산 이전 7.27. 정전협정 체결 8. 5. 판문점에서 포로 교환 8. 8.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10. 1. 한미상호방위조약(워싱턴 D.C. 체결) 12.15. 한국군 제1군사령부 창설
1954	1.26. 미 상원,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7.27. 한미정상회담(워싱턴)에서 휴전후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해 협의 8.18. 미 국방부, 주한미군 6개 사단 중 4개 사단의 철수 방침 발표 11.17.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 의사록」 채택 11.20. 미 제8군사령부, 한국에서 일본 자마(座間) 기지로 이동

부록

연도	주요일지
1955	5.13. 렘니처 대장, 유엔군사령관 취임 5.22. 주한미군사고문원조단 설치 6.21. 한미 군사경제회담 개최(워싱턴) 8. 2. 한미 군사원조회담 개최(워싱턴)
1956	5.28. 한미, 장비 및 물자처분에 관한 협정 조인 9.21.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 공포
1957	5.22.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대표, 한국군 장비 현대화 통보 7. 1. 유엔군사령부, 일본 도쿄에서 한국으로 이동
1958	1.28. 유엔사, 한국에 대한 원자무기 도입 사실을 공식 발표
1959	5. 5. 한미연합상륙작전, 거북훈련 실시
1960	6.19. 아이젠하워 방한(허정 총리와 한·일관계 및 군사·경제 원조 논의) 11.19. 미, 한국군 3만 감군 승인 12.29. 「한미합의의사록」에 의거, 한·국군 정원 책정(60만명)
1961	11.14.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방미 (워싱턴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한·일관계, 베트남전쟁 파병, 경제재건 등 논의)
1962	4. 2. 미 합참의장 내한(주한미군 남베트남 불투입 언명) 9.20. 주한미군지위협정 교섭, 1년 반 만에 재개
1963	4. 1. 미 F-86D 1대, 북한 포화로 판문점 북방에서 추락 11.13. 북한군, 휴전선에서 유엔군에 총격(1명 사망, 2명 중상) 11.25. 박정희·존슨 회담(한국의 민정 이양 환영 및 케네디 대통령 추모)
1964	1.14. 공군 F-86D기 1대, 판문점 근방에서 북한 대공포화에 피격 추락 5. 8. 미,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에 베트남전쟁 지원요청 7.15. 남베트남정부, 한국지원을 정식요청 9. 5. 한·미·남베트남 군사실무합의서 서명(사이공) 9.22. 한국군 베트남전쟁 파병 개시 12.19. 존슨 미 대통령, 한국군 베트남전쟁 파병 요청 친서 박대통령에 전달
1965	1. 8. 내각, 한국군(비전투원 약 2,000명) 베트남전쟁 파병 의결 1.26. 박 대통령, 남베트남 파병 담화문 발표, 한국군의 파월결의문 가결(국회) 3.16. 주월한국군사원조단 남베트남에 도착(한국 출발 10일) 5.17. 한미정상회담(워싱턴에서 남베트남 지원 협조, 대한 차관 제공 합의) 7.11. 미 제1기병사단, 미국으로 복귀, 제2보병사단으로 대체 9.25. 주월한국군사령부 설치
1966	2. 2. 존슨 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게 친서, 한국군 월남 증파 촉구 2.23. 험프리 미 부통령 재차 내한,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 3. 4. 미국 한국에 파월 증파 조건 합의록인 브라운 각서 전달 7.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 9.17. 주월한국군에 M-16 소총 최초 지급 10.24. 베트남전쟁 참전 7개국 정상회담 박정희 대통령 참석(마닐라) 10.31. 존슨 미 대통령 방한 11. 2. 박·존슨 공동성명 발표 (대한 2차 5개년계획 지원, 미군 불감축, 국군현대화 촉진 등 12개 항) 11.10. 정부, 병력 45,000명 이상의 남베트남 파병 불가를 미국에 정식통보

연도	주요일지
1967	2. 9. 주한미군지원협정(SOFA) 발효 2.23. 한미 간 한국노무단(KSC)지위에 관한 협정 조인 5.22. 북한군 서부 비무장지대 침투, 미군막사 폭파(미군 2명 사망, 19명 중상) 8.28. 북한군, 미군 막사 기습(미군 3명 전사, 25명 부상)
1968	1.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미수사건 1.23.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납북, 주한미군 비상령 선포 3.19. 오산에 미 제5공군 전방사령부 창설 3.25. 미 제5공군, F-4D 팬텀기 대대 창설(대구) 발표 4.14. 북한, 판문점 남방 대성동 입구에서 미군차량 습격 (미군 2명과 카투사 2명 사망, 미군 2명 중상) 4.18. 박정희 대통령, 존슨 미 대통령과 호놀룰루에서 회담(군원 및 남베트남 문제) 5.25. 한국군에 M-16 소총 공급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 5.27. 제1차 SCM 개최(북한도발 주시, 군수공장 설립 합의) 7. 5. 태극훈련 실시(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 대응 국가급 대비태세훈련) 11. 1. 울진·삼척지역에 무장공비 출현(사살 110명, 자수 2명, 생포 5명) 12.23. 판문점에서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 유해 1구 귀환
1969	3.10.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한미연합공수훈련 실시 3.19. 레이어드 미 국방장관, 한국에서 북한위협 심각함을 미 상원에서 증언 4.15. 미 해군 E-121 정찰기, 동해상에서 북한에 피격, 추락 4.19. 닉슨 미 대통령, 정찰기의 피격시 무경고 보복을 시사 4.23. 미국, 한국의 대간첩작전 장비 현대화 특별군사원조 1억 달러 제공 동의 4.30. 주월 한국군·미군 간 군사실무 약정체결 (F-4팬텀기 1개 전대(24대) 한국배치) 6. 3. 제2차 SCM 개최(서울, 6.3~4.) 6.20. M16 소총 공장 설립에 관한 한·미 실무자회담 개최(27일까지, 서울) 7. 8. 미국, 주한미군 철수계획 정식 통고 7.25. 닉슨 미 대통령, 아시아 국가 부담을 강조한 「닉슨독트린」 발표 8.21. 박정희 대통령 방미, 닉슨 미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 22일 공동성명 발표 9.25. 미 국방부, 주한미군 '71년 중반까지 유지계획 발표 10.22. 레이어드 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71년까지 현수준 유지 천명 12.16. 미 공군 팬텀 2개 전투대대 군산 도착
1970	1.26. 미 상·하원, 대한 특별군원 5,000만 달러 등 3억 5,000만 달러 통과 3. 5. 미 국가안보회의, 주한미군의 감축·철수문제 동결 결정 발표 3.29. 미 국방부, 한국예비군용 소총 79만 정 특별군원 발표 4.10. 미, '70회계년도 군원 1억 4,000만 달러로 확정 4.23. 한미 간 M-16소총공장 건설에 최종 합의 5.26. 미국 정부, 무상군원 최종분 공여(무상군원 25년 만에 종료) 7. 5. 미국 정부, 주한미군 64,000명 중 20,000명을 1971.6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을 한국에 통보 7.21. 제3차 SCM 개최



부록

연도	주요일지
1970	8.26. 박정희 대통령·애그뉴 미 부통령 회담, '선 장비현대화'에 이견 8.27. 미 국방부, 주한미군 추가 1만 명 철수 발표 9.12. 미 상원 외교위원회(사이밍턴 소위원회) 미국의 대한안보공약 관련 청문회 공표 10. 4. 미 국방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향후 3~4년에 걸쳐 15억 달러 특별군원 제공에 관한 새로운 군원계획 작성 11.30. 한미 간, 주월한국군 장비소유권 한국으로의 이양문제 최종 합의
1971	2. 6. 한국군 현대화 및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서 발표 2.28. 주한미군, 미 제2사단 3월초 비무장지대 철수 및 전 휴전선 한국군 전담 발표 3. 3. 프리덤 볼트 훈련, 한미연합공수기동훈련 실시 3.12. 한국군, 서부전선 미 제2사단 지역 20km를 인수, 155마일 전 휴전선 방어 담당 3.27. 미 제7보병사단 철수 4. 1. 주한미군사교문단(KMAG)을 주한미합동군사지원단(JUSMAGIK)으로 통합 발족 4.22. 한미 간 M-16 소총 생산 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4.24. 어네스트 존(H) 대대 창설(한국군 최초) 7. 1. 군원기관 재개(한국군 남베트남 파병으로 중단), 한미 제1군단(집단) 창설 7.12. 제4차 한미안보협의회의(국방각료회담 개칭) 개최
1972	1. 4.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폴리 수석대표, DMZ 평화이용 4개항 제시 6.27. 제5차 SCM 개최 7. 4.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8.11. 주월한국군 철수를 위한 한미군사실무자회담 개최
1973	1.27. 「파리평화협정」 조인 3.23. 주월한국군 철수 완료 9.13. 제6차 SCM 개최(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추구)
1974	11.11. 유엔사, 북한의 남침용 땅굴(제1땅굴) 발견 발표 9.24. 제6차 SCM 개최 11.22. 한미정상회담(서울), 포드 미 대통령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11.25. 한미 간 한국 내 재래식 탄약 보급에 관한 합의각서(WRSA) 체결 12.12. 유엔사, 작전명령권이 유엔에서 미 합참으로 귀속되었다고 발표
1975	2.22. 주한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미 제8군사령부 3개 사령부가 1974년 9월 단일사령부로 통합되었음을 발표 3.17. 1961년 이래 소규모로 실시된 연습을 독수리훈련으로 최초 실시 5. 5. 을지훈련(한국), 포커스렌스훈련(한미) 통합 7.24. 단일 탄약보급체계(SALS-K) 시행 지시 8.27. 제7차 SCM 개최 12. 7. 미 포드정부 「신태평양독트린」 발표
1976	5.26. 제9차 SCM 개최(주한미군 미 감축, 한국군 현대화 촉진 합의) 6.10. 제1차 팀스피리트(TS) 연습 개시 8.18.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발생 9. 6.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북 분할 경비 실시
1977	3. 9. 카터 미 대통령,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 발표 5.11. 한미 양국, 주한미군 감축문제 협의 개시 7.26. 제10차 SCM 개최(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와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합의)

부록

연도	주요일지
1978	4.21. 카터 미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병력 6,000명에서 3,400명으로 발표 7.27. 제11차 SCM에서 군사위원회 및 연합사 관련 약정(TOR) 합의 7.28. 제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개최, 전략지시 1호 하달 11. 7.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창설(초대사령관 베시 대장, 부사령관 류병현 대장) 11.20. 주한미군 500명 제1차 철수 개시(1978년 말까지 3,400명 철수)
1979	2.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MOU) 체결 7. 1. 한미정상회담(서울, 박정희 대통령 주한미군 철군 반대 주장) 7.20. 카터 미 대통령, 주한 미 지상군 철수 중단 발표 10.19. 제12차 SCM 개최(주한 미 지상군 철수 중지, 한국군 방위력 강화 합의)
1980	3.14. 한미 제1군단을 한미 연합야전군사령부(CFA)로 개편 5.18. 5·18 민주화운동
1981	2. 3. 한미정상회담(워싱턴), 주한미군 철수 백지화 공동성명 발표 4. 7. 미 국방부, F-16 전투기 36대 대한 판매계획 발표 4.29. 제13차 SCM 개최
1982	1. 3. 군정위 유엔군측 대표, 북한에 팀스피리트 연습 참관 제의 2.12. 한미 간 전시포로 및 민간인 억류자 이양에 관한 MOA 체결 3.30. 제14차 SCM 개최 5.22.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일 6.25. 한미 간 전쟁예비물자(WRSA) 이양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1983	4.14. 제15차 SCM 개최 11.12. 한미정상회담, 북한 도발 시 미국의 직접 반격, 안보 공약 확인
1984	3.27. 「한미 간 전쟁예비물자(WRSA) 후속합의각서(FOMOA)」 체결 5. 9. 제16차 SCM 개최
1985	1. 4. 정부, 북한에 팀스피리트 '85 연습에 참관 제의 5. 7. 제17차 SCM 개최
1986	4. 1. 제18차 SCM 개최 9. 8. 주한 미 제7공군사령부 창설 12.16. 미 국무부, '87년부터 대한 군사판매차관(FMS) 공여 종결 발표
1987	5. 7. 제19차 SCM 개최, '88서울올림픽 미국 지원 및 협력 합의 9.24. 한미 간 군사기밀보호 보안협정 체결
1988	1.20. 미 국무부,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 3개 항의 대북 제재 조치 발표 5.11. 미 국방차관 내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및 미 해군기 정비 지원 요구 6. 8. 제20차 SCM 개최(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한미 방산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1989	5. 2. 한미 간 미 제8군사령부를 '90년 중반까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미 제8군 영내 골프장은 내년 중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 7.18. 제21차 SCM 개최(한미 간 한국 내 방위물자 생산에 따른 기술사용 양해각서 체결) 8. 2. 미 의회, 「년·워너 수정안」 채택

부록

연도	주요일지
1990	2.15. 한미방장관회담(서울, '90년부터 3단계 미군감축 및 역할변경 합의) 3.24. 한국 해군, 한태평양(RIMPAC) 훈련에 최초로 구축함 2척 참가 4.19.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I)」 발표 11.15. 제22차 SCM 개최(방위비분담,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등 합의)
1991	1.25. 한미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1.23. 국군의료지원단(134명) 걸프전에 파견(출국) 1.25. 한미 간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설치 협정 체결 3.25.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에 최초로 한국군 장성 임명 3.28. 국방부, 차세대 전투기(FX)사업 기종을 F-16으로 확정, 120대 도입 계획 발표 5.19. 미,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라 1단계 7천 명의 철수 개시 발표 7.19. 한미 정부, 용산기지의 오산·평택기지로의 이전계획 발표 10. 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임무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 (155마일 전 휴전선 경계를 한국군이 전담) 11. 8. 한국정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1.21. 제23차 SCM에서 북한 핵개발 종식까지 주한미군 감축 연기 합의, 전시주둔국지원(WHNS) 협정 체결 12.31. 남북,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2	3. 4. 미국, 북한 핵문제 해결 시까지 주한미군 철수 보류 천명 7. 1.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 해체 7.28.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II)」 발표 8.20. 주한미공군, 미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 첫 배치 10. 2. 권한 위임사항 및 전략지시 제1호 수정 합의 10. 8. 제24차 SCM에서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최초 합의 12. 1.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지상구성군사령관을 겸직 12.31. 주한미군 6,987명 철수 완료(지상군: 5,000명, 공군: 1,987명)
1993	6.14. 연합항공사령부 창설에 관한 한미 합의각서 체결 11. 4. 제25차 S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최종 합의(1994.12.1부) 11.23. 한미 간 제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1994	9. 1. 한미연합사, 전시 미 해군 제7함대를 해군구성군사에 포함하여 작전통제 10. 7. 제26차 SCM 개최(군사위원회(MC) 및 한미연합사 관련약정(TOR) 개정안 서명) 10.21. 미·북 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11.30.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사 권한위임사항 합의, 전략지시 제2호 하달 12. 1.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 한국군으로 전환
1995	2.25. 한미 정부, 팀스피리트 '95 연습 중지 발표(이후 중단) 2.27. 미 국방부,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발표 3.23. 유엔사·연합사와 한국 합참 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 4.10. 한미 간 한국내 육군 전쟁예비 사전배치 장비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5. 8.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최초 실시 6.13. 미·북 경수로 협상 타결 7.27. 한미정상회담(워싱턴), 대북전략고위협의체 합의, 한국전 참전비 개막 9. 2. 한미 '중장기 안보대화' 신설 합의 11. 3. 제27차 SCM 개최(방위비분담 연 증가율을 향후 3년간 10%로 조정 합의) 11.24. 한미 간 제3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연도	주요일지
1996	4.16.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제주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제의) 5.29.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한미 양해각서 체결 11. 1. 제28차 SCM 개최 11.24. 한미정상회담(APEC 정상회담에서 회동, 북한 무장간첩 침투 사건 논의)
1997	6.27. 한미정상회담(뉴욕에서 대북 식량 지원, 4자회담, 경수로 지원 논의) 11.24. 한미정상회담(캐나다에서 미국의 IMF 지원 참여 요청) 12. 9. 제29차 SCM 개최(미 증원전력 조기 전개 합의)
1998	2.11. 한미 간 한미연합사 주요연습에 관한 양해각서 및 연습 시 상호군수지원에 관한 MLSA-IA 체결 6. 9. 한미정상회담(워싱턴에서 한 차원 높은 안보동반자 관계로의 발전 표명) 6.19. 한미 간 제4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정 합의 11.21. 한미정상회담(군건한 한미동맹관계의 재확인) 12. 9. 전시 한미연합심리전사령부 창설 합의각서 체결
1999	1.15. 제30차 SCM 개최(SOFA 개정 조속 타결 노력하기로 합의) 2.25. 한미 간 제4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3.10.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 군수분야 방위비 분담 시행합의서 서명 7. 3. 한미정상회담(워싱턴에서 북한 및 한국경제 문제 등 논의) 11.23. 제31차 SCM에서 21세기 장기적 동맹관계 발전 위한 실무회의 실시 합의
2000	3.18. 한미국방장관회담(서울) 6. 2.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시행합의서 별지#2 체결 6. 8. 한미정상회담(도쿄에서 회동, 남북관계 논의) 6.23. 한미 국방부 간 대한민국 내 미군 유해 발굴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9. 7. 한미정상회담(뉴욕에서 회동, 대북관계 논의) 9.21. 제32차 SCM 개최(21세기 한미안보관계 발전 노력 위한 공동노력 재확인) 11.15. 한미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회동, 대북관계 논의)
2001	3. 8. 한미정상회담 3.29.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9. 6.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도쿄) 10.19. 한미정상회담(상하이 APEC 정상회담에서 회동, 대북관계 논의) 11.15. 제33차 SCM 개최(연합토지관리계획 완성 위한 협의 필요성 합의) 12.18. 아프가니스탄 해성부대 파병
2002	1.29. 부시 미 대통령, 2002년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 2.19. 부시 대통령 방한(2.20.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및 대북정책 논의) 3.29.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체결 11.16. 부시 대통령 대북성명 발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기 계획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제거를 촉구 12. 6. 제34차 SCM 개최(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관계 발전방향 합의) 12.20. 제1차 SOFA 운영개선 한미특별대책반 회의

부록

연도	주요일지
2003	4. 8.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제1차 협의(서울), 주한미군 기지체계 조정 4.30. 이라크 서희부대 파병 5.14. 한미정상회담(노무현 한국 대통령,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6. 4. FOTA 2차협의(한국 국방부), 美2사단 2단계 이전개념 구체화 6.27. 한미국방장관 회담(한미동맹 50주년 기념) 8.27. 제1차 6자회담(남북한·일본·미국·중국·러시아) 9. 3. FOTA 4차협의(한국 국방부), 이라크 추가파병을 한국측에 요청 10. 6. FOTA 5차협의(주한미군사령부),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이행계획(案) 합의 10.20. 한미정상회담(싱가포르에서 회동, 대북관계·이라크 파병 논의) 11.17. 제35차 SCM 개최 11.25. 부시 미 대통령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발표
2004	1.15. FOTA 6차협의(美 태평양사), UNC/CFC 한강이남으로 이전 결정 2.24. 제2차 6자회담 6.24. 제3차 6자회담 7.22. FOTA 10차협의(美 국방부), 용산기지이전합의서(UA/IA) 및 LPP 개정협정 합의 10. 6. 「용산기지이전계획(YRP)협정」 및 「LPP개정 협정」 체결 10.22. 제36차 한미안보협의회의(한미안보정책구상(SPI)추진 합의) 11.20. 한미정상회담(칠레 APEC 정상회담에서 회동, 북핵문제 논의)
2005	1. 1.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발효(조약 제1738호) 2. 3. 제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개최(워싱턴) 5.24. 미 국방부, 북한지역 미군유해발굴 공동작업 잠정 중단 발표 6. 9. 2005~2006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6.11. 한미정상회담(워싱턴에서 동북아 정세 논의) 7.26. 제4차 6자회담(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본격협의 착수) 10.21. 제37차 SCM 개최(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문제 논의) 11.17. 한미정상회담(경주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2006	5.25. 제8차 SPI, '한미동맹의 비전(안)'에 대한 한미 간 최종 조율 7.15. 주한미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15개 주한미군기지의 관리권을 국방부로 이관 7.21. 한국 국방부 내에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 9.16. 한미정상회담(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 10. 9. 제1차 북한 핵실험 10.14.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 10.20. 제38차 SCM 개최(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 합의) 11.18. 한미정상회담(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 회동, 북핵문제 논의)
2007	1.19. 한미상설군사위원회(PMC), 「한미 지휘관계 연합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 체결 2.23. 한미국방부장관회담(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2.4.17로 합의)

부록

연도	주요일지
2007	2.24. 미 국방부장관, 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군의 파병연장과 전투부대 파견 요청 6.28. 한미상설군사위원회(PMC), '전시작전권 단계별 이행계획서(STP)' 서명 9. 7. 한미정상회담(호주 APEC 정상회담에서 회동, 북핵문제 논의) 11. 7. 제39차 SCM 개최(비무장지대 출입승인과 시설관리업무를 2012년 4월부터 한국군에 이양 합의)
2008	4.20. 한미정상회담(캠프 데이비드에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 합의) 7. 9. 한미정상회담(일본 도야코에서 한미동맹·북핵·FTA 논의) 8. 6. 부시 대통령 방한(한미동맹, FTA, 북핵, 포괄적 협력 논의) 10.15.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지위 격상 법안 발효 10.17. 제40차 SCM 개최(공동성명 발표) 11.22. 한·미·일 정상회담(페루 리마 APEC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 개최 논의) 11.26. 한미 전쟁비축물자 이양 합의각서 발효
2009	3. 5.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발효(조약 제1938호) 4. 2. 한미정상회담(런던에서 이명박-오바마 국제금융위기 해결 방안 논의) 6.16. 한미 정상회담(워싱턴)에서 「한미동맹 공동비전」 채택 7.23. 제23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회의 개최(서울) 10.21. 제41차 SCM,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제시된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 11.16. 제8차 한·유엔 국제 군축비확산회의(제주) 11.19. 오바마 대통령 방한(북핵·FTA 문제 논의)
2010	1.13. 한미 간 반환 미군기지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시범 적용 완료 4.12. 2010 핵안보정상회의(워싱턴) 6. 4. 천안함 피격사건 유엔 안보리 회부 6.27. 한미정상회담(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2015년으로 조정 합의) 7.21. 한미외교·국방(2+2)장관회의 개최, 「전략동맹 2015」 채택 합의 10. 8. 제42차 SCM 개최(「전략동맹2015」, 「한미국방협력지침」 합의) 11.11. 서울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 개최(FTA 논의)
2011	7.12. 한미 간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10.13. 한미정상회담(워싱턴)에서 북핵문제, 한미동맹, FTA, 녹색경제 논의 10.28. 제43차 SCM 개최(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신설)
2012	1.25. 한미 합참의장, 「북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 전략기획지침(SPD)」 서명(워싱턴) 3.21. 상부지휘구조/신연합방위추진단(신연합방위추진단) 창설 3.25. 한미정상회담(서울에서 북핵문제·FTA 논의), 오바마대통령 DMZ방문 3.26. 핵안보정상회의(53개국 정상, 4대 국제기구 수장 참가) 3.29. 한미 해병대 '쌍룡연합상륙훈련' 실시(연평도 포격전 도발 후속조치) 4.18. 확대된 위기개념을 적용한 「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체결 4.26. 한미 고위급 회의와 제1차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 개최(워싱턴)

부록

연도	주요일지
2012	5. 7.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 ‘맥스썬더훈련’ 시작(연평도 포격도발 후속조치) 6. 2.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싱가포르) 6.14. 제2차 한미외교·국방(2+2)장관회의(워싱턴) 9.12. 제2차 KIDD 개최(서울) 9.26. 한국 주도, 미·일·호 3개국과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 실시 10.24. 제44차 SCM 개최 12.12. 북한 장거리미사일(은하3호 2호기) 발사 성공
2013	2.21. 제3차 KIDD 개최(워싱턴) 5. 5. 한미정상회담(박근혜·오바마,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7.30. 제4차 KIDD 개최(서울) 10. 2. 제45차 SCM 개최/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수립
2014	4.15. 제5차 KIDD 개최(워싱턴) 4.25. 오바마 대통령 방한(FTA·TPP 논의) 9.17. 제6차 KIDD 개최(서울) 10.16. 한미정상 「2015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10.23. 제46차 SCM 개최(조건에 기초한 전략권 전환 합의) 11.11. 한미정상회담(중국 베이징에서 한반도 안보 논의)
2015	4.14. 제7차 KIDD 개최(워싱턴) 10.16. 한미정상 「2015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11. 2. 제47차 SCM 개최 9.23. 제8차 KIDD 개최(서울)
2016	3. 2. 유엔 안보리 결의(2270호) 3.31. 한미정상회담(워싱턴에서 대북 제재 관련 논의) 5. 9. 제9차 KIDD 개최(워싱턴) 7. 8. 사드(THAAD) 배치 결정 9. 6. 한미정상회담(라오스 ASEAN 정상회담 당시 THAAD 및 북핵문제 논의) 9.12. 제10차 KIDD 개최(서울) 10.20. 제48차 SCM 개최 12.14. 제1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개최(워싱턴)
2017	4.26. 제11차 KIDD 개최(워싱턴) 6.30. 한미정상회담(워싱턴에서 북핵 문제 논의) 7.11. 미 제8군사령부 평택 신청사 개관 9.21. 한미정상회담(뉴욕 유엔총회를 맞이해 북핵·한미FTA 논의) 9.27. 제12차 KIDD 개최(서울) 10.28. 제49차 SCM 개최 11. 7. 한미정상회담(서울에서 북핵·한미FTA 등 논의) 11.13. 유엔총회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 채택 12.11.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실시

부록

연도	주요일지
2018	1. 4. 한미정상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훈련 연기 합의 1.17. 제2차 EDSCG 회의 개최(워싱턴) 3.19. 제13차 KIDD 개최(워싱턴)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 채택) 5.23. 한미정상회담(워싱턴에서 미·북회담 및 북핵문제 사전 협의) 6.12. 미·북정상회담(공동성명 「센토사합의」) 6.29.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신청사 개관 7.25. 제14차 KIDD 개최(서울) 9.24. 한미정상회담(뉴욕에서 종전선언 및 제2차 북미회담 논의) 10.31. 제50차 SCM 개최 및 연합방위지침 승인 12. 1. 한미정상회담(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을 맞아 북핵문제 논의)
2019	4.11. 한미정상회담(워싱턴에서 남북회담 추진 논의) 4.23. 제15차 KIDD 개최(워싱턴) 6.30. 한미정상회담(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9.24. 한미정상회담(뉴욕에서 대북문제 및 한미동맹 강화 논의) 9.26. 제16차 KIDD 개최(서울) 11.15. 제51차 SCM 개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발표
2020	4.22. 제17차 KIDD 개최(화상회의) 9. 9. 제18차 KIDD 개최(화상회의) 10.14. 제52차 SCM 개최
2021	3. 8. 한미연합지휘소훈련 3.18. 한미 외교·국방 공동성명 채택 5.12. 제19차 KIDD 개최(워싱턴) 5.21. 한미정상회담 및 미사일 지침 종료 8.10. 위기관리참모훈련 8.16. 연합지휘소훈련 9.27. 제20차 KIDD 개최(서울) 10.27. 을지태극연습 12. 2. 제53차 SCM 개최
2022	2.11. 미국 인태전략 발표 4.18. 한미연합소지휘훈련 5.21. 한미 정상회담(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천명) 6.29. NATO 정상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 8. 1. 한·미·일 퍼시픽 드래곤 연합훈련 8.16. 제21차 KIDD 개최(서울)



부록

연도	주요일지
2022	9.16. 제3차 EDSCG 개최(워싱턴) 9.26. 한미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11. 3. 제54차 SCM 개최 11.13. 미·일 정상회담 개최 (「프놈펜선언」 발표) 11.15. 연합사 평택 이전 완료 11.18. 제1회 한미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개최 12.28. 외교부,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전략」 발표
2023	1.31. 한미국방장관회담 공동 개최 3.13.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4.11. 제22차 KIDD 개최(워싱턴) 4.26.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정상회담 (「워싱턴선언」 발표) 7.18. 제1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개최 8.18. 한·미·일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개최 8.21.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8.31까지) 9.15. 제4차 EDSCG 개최(외교부) 9.18. 제23차 KIDD 개최(서울)



### 3. 한미 안보협의체 개최 현황

- 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나.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 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Futur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s)
- 라.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 마.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 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 사.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아. 기타

#### 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구 분	일 시	장 소	양국 대표 (국방장·차관)		주요 내용
			한 국	미 국	
제1차	1968. 5.27~28.	워싱턴	최영희 장관	클리포드 장관	북한의 위협주목, 한국의 대간첩작전 강화
제2차	1969. 6. 3~4.	서 울	임충식 장관	패카드 차관	한국 방위문제, M-16소총 공장 설치
제3차	1970. 7.21~22.	호놀룰루	정래혁 장관	패카드 차관	강력한 맹방 확인, S-2형 해군초계기 공여 합의
제4차	1971. 7.12~13.	서 울	정래혁 장관	레어드 장관	한국군 현대화 추진 만족, 자주국방능력 지속
제5차	1972. 6.26~27.	콜로라도	유재홍 장관	레어드 장관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 성과 검토
제6차	1973. 9.12~13.	서 울	유재홍 장관	클레멘츠 차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추구 강조(7·4공동성명)
제7차	1974. 9.23~24.	호놀룰루	서종철 장관	클레멘츠 차관	주한미군 감축계획 없음 천명, 연합준비태세 유지
제8차	1975. 8.26~27.	서 울	서종철 장관	슐레진저 장관	유엔의 유엔사해체결의안(1975.6.27) 제출에 유의
제9차	1976. 5.26~27.	호놀룰루	서종철 장관	럼스펠드 장관	한미연합군의 방위능력과 준비태세에 관한 토의
제10차	1977. 7.25~26.	서 울	서종철 장관	브라운 장관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합의
제11차	1978. 7.26~27.	샌디에고	노재현 장관	브라운 장관	한미군사위원회 및 연합 권한위임사항 승인, 1978년 설치될 한미연합사의 효율성 증대 합의

부록

구 분	일 시	장 소	양국 대표 (국방장·차관)		주요 내용
			한 국	미 국	
제12차	1979. 10.18.~19.	서 울	노재현 장관	브라운 장관	한미연합사 제1차년도 업적 검토
제13차	1981. 4.29~30.	샌프란 시스코	주영복 장관	와인버거 장관	조기정보역량 보강, 연합사 구성개선 필요성 합의
제14차	1982. 3.30~31.	서 울	주영복 장관	와인버거 장관	한미수교 100주년에 즈음 안보협력 증진에 만족
제15차	1983. 4.14~15.	워싱턴	윤성민 장관	와인버거 장관	정전협정 30주년,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공동 노력
제16차	1984. 5. 9~10.	서 울	윤성민 장관	와인버거 장관	미국 핵우산으로 한국안보 보강 공약 재확인
제17차	1985. 5. 7~8.	워싱턴	윤성민 장관	와인버거 장관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 위협에 공동노력 다짐
제18차	1986. 4. 1~3.	서 울	이기백 장관	와인버거 장관	팁스피리트가 양국군의 방위능력 향상에 중요
제19차	1987. 5. 5~7.	워싱턴	이기백 장관	와인버거 장관	안보동반자관계 발전 희망, 연합사 발전방안 논의,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 추진 양해각서 서명
제20차	1988. 6. 7~9.	서 울	오자복 장관	칼루치 장관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체결
제21차	1989. 7.17~19.	워싱턴	이상훈 장관	체니 장관	한미연합방위증강사업을 위한 지원 관련 협의
제22차	1990. 11.13.~15.	워싱턴	이종구 장관	체니 장관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변경에 따른 협력방향 협의, 방위비분담 및 증동사태 관련 대미지원 노력 부각
제23차	1991. 11.20.~22.	서 울	이종구 장관	체니 장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양국 협력, 년-워너 2단계 주한미군감축 유보, 전시주둔국지원협정 서명
제24차	1992. 10.7.~8.	워싱턴	최세창 장관	체니 장관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1단계 계획 추진 만족 한국군에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1994.12.31까지)
제25차	1993. 11.3~4.	서 울	권영해 장관	애스핀 장관	평시작전통제권 한국에 이양 합의(1994.12.1부), 북한 핵 위협 관련 한미 공조방안 협의
제26차	1994. 10.6~7.	워싱턴	이병태 장관	페리 장관	전시주둔국지원협정 빠른 시일내 시행키로 합의, 군사위원회/연합사 관련약정(TOR)개정안에 서명
제27차	1995. 11.2~3.	서 울	이양호 장관	페리 장관	새로운 방위비분담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
제28차	1996. 10.31~11.1.	워싱턴	김동진 장관	페리 장관	한반도 안보환경 고려 TS연습 계속 협의키로 합의
제29차	1997. 12. 9.	워싱턴	김동진 장관	코언 장관	미 증원전력 조기전개, 연합연습방법 개선 등 논의
제30차	1999. 1.15.	서 울	천용택 장관	코언 장관	SOFA조속 타결노력, 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

구 분	일 시	장 소	양국 대표 (국방장·차관)		주요 내용
			한 국	미 국	
제31차	1999. 11.23.	워싱턴	조성태 장관	코언 장관	21세기 대비 장기적 동맹관계 발전방향 토의 위한 실무급 안보대화 주기적으로 실시기로 합의
제32차	2000. 9.21.	서 울	조성태 장관	코언 장관	21세기 한미안보관계 발전 위한 공동노력 재확인
제33차	2001. 11.15.	워싱턴	김동신 장관	럼스펠드 장관	연합토지관리계획 완성 위한 협의 필요성 합의
제34차	2002.12.5.	워싱턴	이 준 장관	럼스펠드 장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관계 발전방향 협의
제35차	2003. 11.17.	서 울	조영길 장관	럼스펠드 장관	주한미군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 방향 협의, 10개 군사임무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합의, 한국 방위력 증강 위해 향후 3년간 110억불 투자 공약
제36차	2004. 10.22.	워싱턴	윤광웅 장관	럼스펠드 장관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및 10개 군사임무 전환 현황 검토·평가, 주한미군 감축계획 논의
제37차	2005. 10.21.	서 울	윤광장 관옹	럼스펠드 장관	주한미군 지속 주둔 필요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 연성 관련 협의,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 및 핵 우산 제공 재확인
제38차	2006. 10.22.	워싱턴	윤광웅 장관	럼스펠드 장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전작권 전환 시기 (‘09.10.15~’12.3.15) 합의, 전작권 전환은 전쟁 억지 및 한미 연합방위능력 유지·강화 진행 보장
제39차	2007. 11.7.	서 울	김장수 장관	게이츠 장관	‘07.2.23 양국 국방장관회담시 전작권 전환 (‘12.4.17부) 합의에 따른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지 휘관계에 기초한 신 작전계획 발전 및 연합연습계 획 추진 합의
제40차	2008. 10.17.	워싱턴	이상희 장관	게이츠 장관	‘08.4.19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약한 주한미군의 현 수 준 유지 재확인, 전작권 전환(‘12.4.17부) 공약 재확인
제41차	2009. 10.22.	서 울	김태영 장관	게이츠 장관	‘09.6.16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 한 공동비전’에 기초한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재확 인, 미국의 핵우산, 미사일방어력 포함한 확장억제 력 한국에 제공 공약
제42차	2010. 10.8.	워싱턴	김태영 장관	게이츠 장관	2015년 전작권 전환 확인, 전작권 전환의 기본틀 인 ‘전략동맹 2015’ 승인, ‘천안함사태’ 이후 동· 서해에서의 한미연합연습 강화 논의
제43차	2011. 10.28.	서 울	김관진 장관	파네타 장관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 구성 합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공동의 맞 춤형 억제전략 개발 합의
제44차	2012. 10.24.	워싱턴	김관진 장관	파네타 장관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평가, 맞춤형 억제에 대한 공동 개념과 원칙 합의, ‘전략동맹 2015’ 이 행체계 내에서 미래 지휘구조 발전 위한 공동실무 단 구성 합의

부록

구 분	일 시	장 소	양국 대표 (국방장·차관)		주요 내용
			한 국	미 국	
제45차	2013. 10.2.	서울	김관진 장관	헤이글 장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2014년까지 미래 한미 동맹의 국방비전에 대한 연구 완성 합의, 한미공 동국지도발대비계획 완성 평가, 양국 사이버정책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련약정 체결 환영, 미래 연합지휘구조 지속보완 합의
제46차	2014. 10.23.	워싱턴	한민구 장관	헤이글 장관	KIDD를 중심으로 양자 안보협의를 추진 합의, 주한미군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 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 하기로 결정,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유지하기로 결정
제47차	2015. 11.2.	서울	한민구 장관	카터 장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 사이버 영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능력 강화 결정,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 (DTSCG) 신설 결정
제48차	2016. 10.20.	워싱턴	한민구 장관	카터 장관	KIDD 관련약정(TOR) 개정안 서명, EDSCG 틀 내 확장억제 능력 강화위한 추가 조치 방안 검토 합의, THAAD 한반도 배치 공약 재확인
제49차	2017. 10.28.	서울	송영무장 관	매티스 장관	한반도에서 연합훈련 지속실시 필요성 재확인, EDSCG회의 개최 합의, THAAD 체계가 제3국을 지향하지 않음을 재확인, 탄두 중량을 해제 하자는 양국 정상외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합의, DTSCG 개최 합의, 창설 100주년 미 제2사단 장병 격려 및 감사 표시
제50차	2018. 10.31.	워싱턴	송영무장 관	매티스 장관	판문점 선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 지속 유지 합의,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이행방안 모색 합의, '연합 방위지침' 서명,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의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 관련약정(TOR-R)' 승인
제51차	2019. 11.15.	서울	정경두장 관	에스퍼 장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 재확인,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및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 재확인,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2018년 서명한 '연합방위 지침'을 이행 할 것임을 재확인,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 제11차 협상 타결 하는 것에 공감

구 분	일 시	장 소	양국 대표 (국방장·차관)		주요 내용
			한 국	미 국	
제52차	2020. 10.14.	워싱턴	서 욱 장관	에스퍼 장관	성주사드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구축합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 재확인, 연합다목적 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 및 구체적 일정 설정해 나가기로 합의, 연합사 본부 소속 이전 완료 및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상호 협력 합의, 양국 사이버사령부 간 교류 필요성 공감, 방위비분담금 협상 조속히 타결 필요성 공감
제53차	2021. 12.2.	서울	서 욱 장관	오스틴 장관	판문점 선언 및 9·19군사합의가 한반도 긴장 완화, 전쟁 위험감소, 우발적 충돌방지 여건 조성 평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 지속 유지 미국 공약 강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KIDD 까지 완료 합의,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 '미라클 작전' 관련 미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 및 공조에 사의 표명,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대한민국 국회 비준에 대한 사의 표명
제54차	2022. 11.3.	워싱턴	이종섭 장관	오스틴 장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행사 개최 합의,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 재확인, 북한의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연례적으로 개최 합의, 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신설,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재가동,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환영 의사 표시, UFS 연습을 통해 실질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 복원 평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부록 완성분 승인,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방안 모색,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지속 증진 및 확대 공약 재확인

## 나.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구 분	일 자	장 소	양국 대표(합참의장)		주요 내용
			한 국	미 국	
제1차	1978. 7.27~28.	샌디애고	김종환 대장	존스 대장	연합사의 창설근거가 된 전략지시 제1호 하달
제2차	1979.10.17.	서 울	김종환 대장	존스 대장	한반도 전쟁억제 위한 전력증강 및 작전계획 발전, 한미연합사 발 전방향 등 논의
제3차	1981.4.28.	샌프란 시스코	류병현 대장	존스 대장	
제4차	1982.3.29.	서 울	윤성민 대장	존스 대장	연합방위력 증강 위한 한미 공동 노력, 대북응징보복계획 발전, 북 한 침투위협 및 대화확진 능력강 화 방안 등 논의
제5차	1983.4.13.	워싱턴	김윤호 대장	베시 대장	
제6차	1984.5.7.	서 울	이기백 대장	베시 대장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제 24회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한 감시자산 추가배치, 항모전투단 전개 등 군사지원대책 협의, 미국의 지속적인 핵우산 보장 재확인
제7차	1985.5.6.	워싱턴	이기백 대장	베시 대장	
제8차	1986.4.1.	서 울	정진권 대장	크로우 대장	북한의 핵 개발 가능성과 화학전 위협 공식 시인, 패트리엇 미사일, 아파치 헬기대대 한국배치 등 연합전력증강 합의, 한미야전군사 령부 해체 합의
제9차	1987.5.5.	워싱턴	오자복 대장	크로우 대장	
제10차	1988.6.7.	서 울	최세창 대장	크로우 대장	북한 핵 위협 관련 군사대응조치 협의, 평시작통권 전환시기(1994. 12.1) 합의
제11차	1989.7.17.	워싱턴	정호근 대장	크로우 대장	
제12차	1990.11.14.	워싱턴	정호근 대장	파월 대장	평시 작통제권 한국군 전환, 한 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상구성군사 령관으로 임명 합의
제13차	1991.11.20.	서 울	정호근 대장	파월 대장	
제14차	1992.10.7.	워싱턴	이필섭 대장	파월 대장	전략지시 2호 서명, 한미연합사 관련약정 합의, 연합연습계획 협의, 연합사와 2군사령부 관계 명문화
제15차	1993.11.3.	서 울	이양호 대장	살리캐쉬 빌리 대장	
제16차	1994.10.6.	워싱턴	이양호 대장	살리캐쉬 빌리 대장	북한 잠수함 침투 등 북한 무력도 발 공동 대응방안, 미 증원전력에 대한 RSOI 지원 보장대책 협의
제17차	1995.11.2.	서 울	김동진 대장	살리캐쉬 빌리 대장	
제18차	1996.10.31.	워싱턴	윤용남 대장	살리캐쉬 빌리 대장	

부록

구 분	일 자	장 소	양국 대표(합참의장)		주요 내용
			한 국	미 국	
제19차	1997.12.9.	워싱턴	윤용남 대장	셸턴 대장	2MTW 및 기타지역 분쟁 발생시 공동 대비책, 북한 미사일·화생전 위협 대비책, 미 증원전력 전개계획 보완계획 등 협의
제20차	1999.1.14.	서 울	김진호 대장	셸턴 대장	
제21차	1999.11.23.	워싱턴	조영길 대장	셸턴 대장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한 공동대응책 합의, 3대 연습 실시방안 협의
제22차	2000.9.20.	서 울	조영길 대장	셸턴 대장	
제23차	2001.11.14.	워싱턴	이남신 대장	마이애스 대장	2002 FIFA 월드컵 대회 및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한미 군사대비태세 강화방안 합의,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대비책 협의
제24차	2002.12.5.	워싱턴	이남신 대장	마이애스 대장	
제25차	2003.11.15.	서 울	김종환 대장	마이애스 대장	한미동맹 정책구상(SPI), 군사임무 전환, 한미 지휘관계 공동연구 협의
제26차	2004.10.21.	워싱턴	김종환 대장	마이애스 대장	
제27차	2005.10.20.	서 울	이상희 대장	라포트 주한미군 선임장교	아·태경제협력(APEC) 회의기간 중 감시자산 증가 운용 등 연합억제력 지원 합의
제28차	2006.10.18.	워싱턴	이상희 대장	페이스 대장	북핵 관련 군사대비, 테러와의 전쟁, 군 구조개혁, 전작권 전환 관련 협의
제29차	2007.11.6.	서 울	김관진 대장	멀린 대장	전략적 전환계획, 공동작계 발전,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 조정, 한·미·일 안보협력,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 협의
제30차	2008.10.16.	워싱턴	김태영 대장	멀린 대장	전작권 전환 관련 최초운용능력 달성 검증, '한미 전략동맹', 개념 계획 5029 협의
제31차	2009.10.21.	서 울	이상의 대장	멀린 대장	
제32차	2010.10.7.	워싱턴	한민구 대장	멀린 대장	'전략동맹 2015' 협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한미 후속조치 평가
제33차	2011.7.1.	화상 회의	한민구 대장	멀린 대장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정전시 교전규칙, 도발위기 정의 재정립, 전략동맹 2015 협의
제34차	2011.7.14.		한민구 대장	멀린 대장	
제35차	2011.10.27.	서 울	정승조 대장	템프시 대장	



부록

구 분	일 자	장 소	양국 대표(합참의장)		주요 내용
			한 국	미 국	
제36차	2012.10.23.	워싱턴	정승조 대장	멤프시 대장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맞춤형 억제전략, 미래 지휘구조 협의
제37차	2013.4.18.	화상 회의	정승조 대장	멤프시 대장	C4I 상호운용성 향상, 미래 연합 지휘 구조 발전,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발전, 전략동맹 2015 향후 추진
제38차	2013.9.30.	서 울	정승조 대장	멤프시 대장	
제39차	2014.10.22.	워싱턴	최윤희 대장	멤프시 대장	북 미사일 대응(Kill-Chain, KAMD), 전략문서, 주요탄약협의결과
제40차	2015.11.1.	서 울	이순진 대장	던포드 대장	
제41차	2016.10.13.	워싱턴	이순진 대장	던포드 대장	연합사이버 군사협력,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추진경과,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개념 발전
제42차	2017.10.27.	서 울	정경두 대장	던포드 대장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개념 발전, 연합 C4I 상호운용성(IFF, Link-16/AKJCCS), 전략문서(TOR-R)
제43차	2018.10.25.	워싱턴	박한기 대장	던포드 대장	남북정상회담 성과 설명, 군사분야 후속조치 공감대 형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협의
제44차	2019.11.14.	서 울	박한기 대장	밀리 대장	동맹의 “Fight Tonight” 군사대비 태세 유지,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작계발전, 사격장 연구 추진
제45차	2020.10.13.	워싱턴	원인철 대장	밀리 대장	연합합동 다목적 실사격장,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평가, THAAD 지상 접근로
제46차	2021.12.1.	서 울	원인철 대장	밀리 대장	사격장 문제, 탄약부족, 미래연합사 FOC 검증평가, 연합훈련 및 연습
제47차	2022.10.19.	워싱턴	김승겸 대장	밀리 대장	연합사 편성, 연합실사격 훈련장, 탄도미사일 방어, 다자 훈련, 확장억제 공약

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03.4.8.~9. (서울)	주한미군 기지체계 조정(2개 권역 목표), 한국군 군사능력 고려, 일부 군사임무 한국군에 전환
제2차	2003.6.4.~5. (서울)	미 제2사단 2단계 이전개념 구체화, 한미동맹의 강화·형성·조정 관련 협의
제3차	2003.7.22.~23. (하와이)	'90년 합의서 (MOA/MOU)의 불합리한 조항 개선, 군사임무 전환 구체적 협의, 주한미군의 미래 역할 조정
제4차	2003.9.3.~4. (서울)	용산기지 잔류부지/인원 관련 협의
제5차	2003.10.6.~8. (서울)	UNC/CFC 잔류부지 규모 논의,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이행계획(案) 합의
제6차	2004.1.15.~16. (하와이)	UNC/CFC 한강이남으로 이전 결정(2.5만평 규모 잔류), 새로운 합의서(UA/IA) 중점 협의
제7차	2004.2.13.~14. (서울)	용산기지 이전목표연도, LPP 협정 개정 방향 합의
제8차	2004.5.6.~7. (워싱턴)	UA/IA 법적체계, 비(非)SOFA 청구권, 간부주택 제공 잠정합의, MOU 수정·보완 합의, 포괄적 안보환경 평가 약정(TOR) 체결
제9차	2004.6.7.~8. (서울)	기본합의서(UA) 및 이행합의서(IA) 법적 체계 개선, 비(非)SOFA 청구권 문제 합의
제10차	2004.7.22. (워싱턴)	용산기지 이전합의서(UA/IA) 및 LPP 개정협정 합의, C4I 제공범위 협 의, 부지 규모 합의(349만평), 이전시기 2008년으로 합의
제11차	2004.8.19. (서울)	평택지역 추가 제공부지 위치 최종 합의, 주한미군감축 협의,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UA/IA) 및 LPP 개정협정 가서명
제12차	2004.9.12. (워싱턴)	주한미군 감축시한 연장 논의

라.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구분	일시/장소	주요 협의 내용
제1차	2005.2.3. (한 국방부)	SPI회의 일반적 의제 선정, 한미동맹 비전 연구, FOTA 관련 사안, 안보협력증진 방안, 전략적 유연성 등
제2차	2005.4.5.~6. (미 하와이)	지역안보협력증진 방안 SPI 의제 채택 합의, FOTA 관련사안(E-MOU, MP 작성, PM 주간사 선정, 부지매수 등), 군사분야(군사임무전환, 전력 증강계획 등)
제3차	2005.6.23.~24. (미 국방부)	JVS/CSA 이견사항 논의, 한국의 Khaan Quest '06 참여 검토, E-MOU/MP 작성절차서, 기지 내 임대주택 논의
제4차	2005.9.28.~30. (미 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지휘관계 논의 가속화 필요성 강조 주한미군 재배치, 환경오염 치유, 공지사격장 제공 논의
제5차	2005.12.6. (한 육사)	한미동맹 관련 3개 연구과제 추진현황 점검 군사임무전환 협의,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 등 논의
제6차	2006.2.14.~15. (미 괌)	한미동맹 관련 3개 연구과제,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주한미군 재배치 부지매수/성토문제 등 논의
제7차	2006.3.21. (한 국방부)	한미동맹 관련 3개 연구과제,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주한미군 기지 이전, 군사임무 전환, 한미 안보협력 증진 논의
제8차	2006.5.25. (미 하와이)	한미동맹 관련 3개 연구과제, 공지사격장 관리, 군사임무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 한미안보협력 증진 논의
제9차	2006.7.13.~14. (한 국방부)	북한 미사일 대응, 한미동맹 관련 3개 연구과제,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 유, 공지사격장 관리, 군사임무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논의
제10차	2006.9.27.~28. (미 국방부)	지역정세 평가, 한미동맹 관련 3개 연구과제, 공지사격장, 반환기지 환경 오염 치유,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한미 안보협력 증진, 38차 SCM 준비 논의
제11차	2007.2.7.~8. (한 국방부)	전작권 전환일자, 주한미군 기지 이전 논의,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위한 국방·외교당국 고위급 협의체 구성에 합의
제12차	2007.4.16. (미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반환, 주한미공군 훈련여건 개선, 방위비분담, 아프가니스 탄 재건 참여, 전작권 전환,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논의
제13차	2007.6.8. (한 국방부)	주한미공군 훈련여건 개선, 아프간 파병연장 및 PRT 참여,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방위비분담 논의, 전략적 전환계획 점검
제14차	2007.7.25. (미 하와이)	군산지역 미군 헬기부대 이전, 방위비분담, 전작권 전환, 유엔사 정전관 리 책임 조정 논의, 미 8군 변혁 브리핑
제15차	2007.10.10. (한 국방부)	남북 정상회담 결과, 對테러전 공조 및 안보협력 증진,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 조정 로드맵, 전작권 전환 논의
제16차	2008.1.23. (미 국방부)	남북 정상회담 평가, 유엔사 정전관리, 전작권 전환, 미 8군 및 태평양 사 변혁, 이라크·아프간 정세 브리핑
제17차	2008.4.8. (한 국방부)	지역 및 범세계 안보 현안(파병협력, 북한미사일 위협), 전작권 전환('08 KR/FE연습 평가), FMS 지위향상, 주한미군 재조정

부록

구분	일시/장소	주요 협의 내용
제18차	2008.7.23. (미 국방부)	안보현안(평화작전, 북한미사일 위협,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 안보협력 증진, 유엔사 정전관리, 전작권 전환(태극연습 평가)
제19차	2008.9.10. (한 국방부)	지역 및 범세계 안보현안, 한미안보협력 증진(Program Analysis), 전작권 전환(UFG연습평가, AKJCCS브리핑), 주한미군 재조정(CDIP, PMC 최종안보고), 40차 SCM 협의
제20차	2008.12.12. (미 국방부)	한미 안보협력 증진(Program Analysis), 전작권 전환(AKJCCS브리핑), 주한미군 재조정(기지이전, 반환)
제21차	2009.3.2. (한 국방부)	한미연합 대비태세(북한 미사일, AKJCCS 추진계획) 주한미군 재조정, 전략적 전환계획 이행현황, 안정화재건작전
제22차	2009.5.14. (미 국방부)	한미연합 전투준비(북한상황 평가), 주한미군 재조정, 전작권 전환 (전략적 전환계획, 전략기획지침), 청해부대 파견
제23차	2009.7.23. (한 국방부)	한미연합 전투준비(북한상황 평가, 확장억제), 전작권 전환(전략적 전환 계획, 전략커뮤니케이션, 정전관리 책임조정), 주한미군 기지이전/반환, 「한미동맹 미래비전」국방지침
제24차	2010.1.28. (한 국방부)	한미연합 전투준비, 전작권 전환, 정전관리 책임조정, 주한미군 재조정 (기지이전/반환), 아프간 PRT 파견
제25차	2010.7.23. (한 국방부)	한미연합 전투준비(북한 관련 정책공조, 안정화·재건작전 교훈 교류), 전작권 전환(전략적 전환계획, 보완/지속전력 구체화)
제26차	2010.7.9. (한 국방부)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이행을 위한 New Plan), 주한미군 기지이전, PSI, 천안함사태 이후 대북정책 공조 협의
제27차	2010.12.13. (한 국방부)	대북정책 공조, 지역·범세계적 안보협력 (아프간 PRT, PSI), 전략동맹 2015 추진 논의
제28차	2011.3.29. (하와이 APC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정책 공조, 국방개혁, 사이버정책, 지역·범세계적 안보협력 논의</li> <li>· 주한미군 재배치 및 일본 지진피해 복구,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강화 방안 논의</li> <li>·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북한의 핵·WMD 위협 공동 평가, 한미 확장억제 수단 토의식 연습(TTX) 실시방안 논의</li> <l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추진과업의 이행상태 점검 및 평가</li> </ul>
제29차	2011.9.22. (한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정책 공조, 지역·범세계적 안보현안(아프간 지원, 유엔 남수단 임무), PAWG 연구결과 보고,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논의</li> <li>·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북한의 핵·WMD 위협 공동평가, 북한 핵 및 WMD 위협 억제방안 협의</li> <l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추진과업의 이행상태 점검 및 평가</li> </ul>

※ 2012년 이후 KIDD로 통합

마. 한미통합국방협약체(KIDD)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제1차	'12.4.26. ~27.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미사일 등 WMD 위협 대비 실질적인 확장억제 정책을 발전,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주요 군사사항과 동맹현안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 한미 사이버·우주 협력 등 미래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발전을 위한 협의</li> <li>*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li> <li>· (SPI) 미 신국방전략지침 설명, 한미 C4I 상호운용성 증진, 보완 및 지속능력 구체화, 「전략동맹 2015」 부록 “K”서명</li> <li>· (SAWG)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동맹의 조치사항을 점검, 전작권 전환 주요과제가 정상 추진중임을 확인</li> <li>· (EDPC) '12년 확장억제수단 토의식 연습(TTX) 시 대응방안, 한미 공동연구 및 고위 정책결정자 대상 세미나 추진, 북한 생물학전 능력 등 비대칭 위협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사이버 및 우주 분야 구체적 협력 추진 등 합의</li> </ul>
제2차	'12.9.12. ~13.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I) 북한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대확산 협력, 우주협력, 사이버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동맹 현안과 미래 발전방향 등 논의</li> <li>· (SAWG) 「전략동맹 2015」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 핵심 군사능력 및 미국 보완 및 지속능력, 한미 C4I 상호운용성 등을 논의</li> <li>· (EDPC)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과 원칙, 향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li> </ul>
제3차	'13.2.21. ~22.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위협 평가, 한미 공동대응 방안 협의, 북핵문제 및 도발, 연합방위태세, 사이버·우주, 범세계적 안보협력, 전시작전통제권 및 주한미군기지이전 등 논의,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li> <li>· (SPI) 북핵 실험 이후 북한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국방비전, 정전·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협력 등 동맹현안과 미래발전방향 논의,</li> <li>· (EDPC) 북한의 핵·WMD 위협 공동 평가,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핵위기 시 한미 협의절차 등 논의</li> <li>· (SAWG) 「전략동맹 2015」 추진상황 점검, 미래지휘구조, 한국 핵심군사능력, 미국 보완 및 지속능력, 주한미군 재배치 등 논의</li> </ul>
제4차	'13.7.30. ~31.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대비 실무협의</li> <li>· (SPI)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동맹현안과 미래 발전방향 논의</li> <li>· (EDPC) 북한의 핵 및 WMD 위협 공동 평가,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논의</li> <li>· (SAWG) 심각해진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상황을 주요 조건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 북한의 핵 상황 등 안보평가에 근거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상황 조건 검토</li> </ul>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제5차	'14.4.15. ~16.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WMD와 소형 무인기를 포함한 비대칭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공조 강화 합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지역·범세계 안보협력, WMD 대응 및 차단, C4I 상호운용성, 사이버 및 우주협력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의 협력 논의, 한국의 Kill Chain 및 KAMD 체계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강화방안 협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논의</li> <li>· (SAWG) 한측이 제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협의, 미래지휘 구조, 연합 연습계획,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미국의 보안 및 지속능력 등 협의</li> </ul>
제6차	'14.9.17. ~18.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전작권 전환 논의, 장사정포를 포함한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미국에 대한 핵 위협, 사이버 공간상 한국의 국내 혼란을 위한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 간 정책 공조 강화 논의</li> <li>· (SAWG) 한측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의 변경에 대해 협의,</li> <li>·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전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li> </ul>
제7차	'15.4.14. ~15.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억제전략위원회(ROK US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출범 합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C4I 상호운용성, 우주 및 사이버 협력 등 지역·범세계적 협력 논의, 맞춤형 억제전략 토의식 연습(TTX: Table Top Exercise)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li> <li>· (SAWG) 제46차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 각서」의 세부 이행계획과 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 준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li> </ul>
제8차	'15.9.23. ~24.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재확인, 지역·범세계적 협력,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한미공동의 한국형 군사 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Alliance DB) 구축의 필요성 논의</li> <li>· (DSC)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1차회의 개최, 북한의 도발·침략 대응능력의 향상, 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4D 능력(탐지, 교란, 파괴, 방어) 강화 합의</li> <li>· (SAWG)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켜온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완성함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제46차 한미 SCM에서 합의된 전략문서 대체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li> </ul>
제9차	'16.5.9. ~10.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4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중대한 위협 재확인,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li> <li>· (SPI) 방산기술 협력, 우주·사이버 협력 발전방안 논의, 한·미·일 3자 협력, 해양 안보 증진,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지역 안정 논의</li> <li>· (DSC) 미측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할 것임을 강조, 북한 도발 및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한 다양한 조치 모색</li> <li>· (GOTWG) '전략동맹 공동실무단(SAWG,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을 대체하여 출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공동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의 첫 번째 회의 개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이행현황을 점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 지속</li> </ul>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제10차	'16.9.12. ~13.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문제 및 도발(핵실험,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 규탄, 북핵포기 촉구</li> <li>· (SPI) 범세계적 안보와 사이버·우주 협력,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조,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 제41차 MCM과 제48차 SCM의 협의방향 논의</li> <li>· (DSC) THAAD 전개 및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에 관한 미국의 공약 강조, 미국은 재래식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li> <li>· (GOTWG)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지속</li> </ul>
제11차	'17.4.26. ~27.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가 한미동맹 전력과 양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및 범세계 안보에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공감</li> <li>· (SPI)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검토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한 공조, 해군·사이버·우주·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 동맹협력 심화방안 논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국 협력의 지속 증진 합의</li> <li>· (DSC) 북한 핵·WMD 및 탄도 미사일 억제를 위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정보·감시·정찰·미사일 방어능력 증강, THAAD 배치는 북한에 대한 순수한 방어수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li> <li>· (GOTWG)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 노력 경주</li> </ul>
제12차	'17.9.27. ~28.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 북핵실험,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 규탄, 대북제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핵 포기 재강조</li> <li>· (SPI) 사이버·우주·국방과학기술·방산 등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및 확대 방안 모색</li> <li>· (DSC)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조 방안 논의, 미국은 북한 공격에 대한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강력한 대응 재강조</li> <li>· (GOTWG)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하여,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li> </ul>
제13차	'18.3.19. ~20.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및 미·북대화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 강화</li> <li>· (SPI)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연합대비태세 강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위한 3자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 강화, 방산·국방과학기술·국방기술보호·사이버·우주 분야 협력 심화</li> <li>· (DSC)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실질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 논의</li> <li>· (GOTWG)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 지침을 받는 연합지휘 구조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능력의 신속한 확보, 지휘구조 정립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지속,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체제 관련 공동의 추진지침 마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최신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 전략 문서 발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li> </ul>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제14차	'18.7.25. ~26.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및 미·북간 고위급 및 실무회담을 통해 두 차례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 한·미·북 간의 상호신뢰 구축,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제재 지속</li> <li>· (SPI)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공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미래 한미 동맹을 심화·확대하는 협력방안 논의,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과 한미 상호운용성 증진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데 공감, 방산·국방과학기술·사이버·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지속 심화,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li> <li>· (DSC)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효과적 억제력 제고 방안 논의, 미측은 확장억제 능력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공약 재확인</li> <li>· (GOTWG)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 강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난 4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심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는데 의견 공유</li> </ul>
제15차	'19.4.23. ~24.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준비태세 유지 및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한 대북제재 유지</li> <li>·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하기 위한 협력방안 논의, 미래 한미동맹 비전에 대한 의견 교환,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 한미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등에 대한 의견 교환</li> <li>· (GOTWG) 한국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 달성 가속화에 중요하다는데 공감,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가 긴요하다 는데 공감하고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 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등을 통한 공동평가 지속 합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문서 발전,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시행 등을 적극 추진</li> </ul>
제16차	'19.9.26. ~27.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이행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li> <li>· (SPI)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하기 위한 협력방안 논의, 미래 한미동맹 비전에 대한 의견 교환,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 한미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도 및 이행절차를 통한 동맹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li> <li>· (DSC)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핵·재래식·마시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억제능력 유지 및 강화방안 논의, 미측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에 관한 협력 지속 합의</li> <li>· (GOTWG) 최근에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에게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기초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 부록 등 관련 문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li> </ul>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제17차	'20.4.22. (화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협조 높이 평가, 미측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한측의 지원 노력에 깊은 사의 표명,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검토하고 전략문서 완성 및 평가의 중요성에 공감, 코로나-19 등의 영향요소들을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 논의,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과 한미동맹을 먼 미래에도 심화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 심도있게 토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위해 긴밀한 협력 합의</li> <li>· (DSC)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li> <li>· (GOTWG)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검토하고 전략문서 완성 및 평가의 중요성에 공감, 코로나-19 등의 영향요소들을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을 논의</li> </ul>
제18차	'20.9.9./ 9.11. (화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강조,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공동연구의 진전 검토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연합사본부 이전 조속히 추진 협의, 전작권 전환 준비의 진전 확인, '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 성과 평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효과적인 억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 향상 위해 긴밀히 협력</li> <li>· (GOTWG) 2020년 8월 연합지휘소 훈련이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필요한 여건을 구체화한 단계였다는 데 동의,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 평가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li> </ul>
제19차	'21.5.12. ~13.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재확인,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 지속 유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지속 이행 재확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에 관한 양측의 공약 확인, 미측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 재확인</li> <li>· (GOTWG)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와 지속 및 보안 능력 강화를 지속,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 논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함에 동의, 한측이 핵심 군사능력들을 획득·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li> </ul>
제20차	'21.9.27. ~28.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 연합방위태세, 「9.19 군사합의」 논의</li> <li>· (SPI)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 위해 한미동맹의 역할 심화·확대 방안 모색 합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공동연구의 진전을 검토하면서 향후 추진방안 논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사이버·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의 협력 심화하기로 협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양국의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 증진 합의</li> <li>· (DSC)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 및 대응 개념을 논의, 북한의 핵·WMD·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수단 토의식 연습(TTX) 참여</li> <li>· (GOTWG)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 등 올해 수행한 전작권 전환 이행 과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확인</li> </ul>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제21차	'22.8.16. ~17.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 연합방위태세, 남중국해 항해·비행의 자유, GSOMIA, DTT, THAAD 논의</li> <li>· (SPI) 연합훈련 및 연습, 훈련시설과 기지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출입이 상시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 용산기지 이전계획 지속 이행, 우주와 사이버 영역 동맹의 협력 심화 확대, 제18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합의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높이 평가, 우주·사이버·인공지능·자율기술·5G 등 과학기술 협력방안 모색, 상호용성의 지속 향상을 위해 방산 및 연구개발분야에서 협력 계속 강화</li> <li>· (DSC)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에 공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강조, 2022년 9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한미억제전략위원회 확장억제수단 토의식 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합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내에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신설 합의</li> <li>· (GOTWG) 미래 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상호 공약 재확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관한 공동 연구와 모든 부록작성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li> </ul>
제22차	'23.4.11. ~12.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급회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 재확인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 논의, 한미 지역협력실무협의 회의(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 결과 평가,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활용하여 3국 안보협력 지속 합의</li> <li>· (SPI) 북한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지속하기로 합의, 연합연습 및 훈련 필요성 재강조,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 중요성에 공감,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합의, CCWG 등 사이버협력 진전 평가, 우주협력 TTX 개최 추진 등</li> <li>· (COTWG) 상호 승인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검토하여 SCM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건의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li> <li>· (DSC) TDS 진전에 주목, 개정추진에 합의, 다양한 TTX를 통한 억제 및 대응방안 논의 지속,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 강화, 연합방위체계 하에서 한축 역할 확대 가속화, PAWG, CMWG 진전사항 점검 등</li> </ul>
제23차	'23.9.18.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급회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통한 아세안 국가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평가, 한·미·일 3자협력이 한반도 및 인태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다층적 협력체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 새롭게 창설되는 韓전략사령부가 전략부대로서 역할과 위상이 구비되도록 美전략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li> <li>· (SPI)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 '23UFS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 국방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동맹방위체계 내에서 상호운용성과 상호호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급망 회복탄력성 및 한미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li> </ul>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제23차	23.9.18. (서울)	·(COTWG)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략권 전환계획(COTP)」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한미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 COTP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를 비롯하여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추진과 역내 안보환경 평가 등 올해 전략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고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이후 과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16.12.20. (워싱턴)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 ·미국은 지속적인 공약의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에 있어 계속 확고할 것임을 강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억제 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재확인
제2차	2018.1.17. (워싱턴)	·미측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한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순환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 ·한반도 정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양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함
제3차	2022.9.16. (워싱턴)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 하기로 약속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 확인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공조 강화 약속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하기로 합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데 합의
제4차	2023.9.15. (서울)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추구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행동을 일삼는 데 평가와 우려 표명 ·북한의 핵 및 비핵 공격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역내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양자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동맹의 억제·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 ·핵·재래식·미사일 방어·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확인

## 사. 핵협의그룹(NCG)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23.7.18.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li> <li>·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li> <li>·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li> <li>-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 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li> <li>-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li> </ul>

## 아. 기타

## 1) 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Countering WMD Committee)

구분	주요 내용
목적	北 핵·WMD 위협의 제거·확산차단·최종처리 등 한미 공동의 WMD 대응능력 발전 모색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
설치년도/주기	'17년 설치 / 연 1회 개최
참석단위	(한측) 국방부 정책기획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등 핵·WMD 대응 분야 주요 관계관 (미측) 국방부 핵·WMD대응부차관보, 화생방어정책과장 등 핵·WMD 대응 분야 주요 관계관
주요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핵·WMD 위협 최신정보 공유,</li> <li>· 한국군 대응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li> <li>· 연합작전 수행능력 확대방안 협의,</li> <li>· 화생무기 폐기기술 관련 한미 공동연구 추진,</li> <li>· CTR 협력 등</li> </ul>

## 2) 한미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 Missile Working Group)

구분	주요 내용
목적	北 미사일 위협 변화가 동맹의 미사일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설치년도/주기	'22년 설치 / 연 2회 개최
참석단위	(한측) 미사일우주정책과장 등 국방 주요 관계관 (미측) 미사일정책선임담당관(과장급) 등 국방 주요 관계관
주요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미사일 위협 평가,</li> <li>· 정책적 공조방안 논의,</li> <li>· 미사일 방어 협력 등</li> </ul>

3) 한미국방우주정책실무협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구 분	주요 내용
목 적	한미 국방우주협력 강화
설치년도 /주기	'13년부터 운영 / 연 2회 개최
참석단위	(한측) 방위정책관, 미사일우주정책과장 등 국방 주요 관계관 (미측) 우주정책부차관보, 우주정책협력과장 등 국방 주요 관계관
주요 의제	· 양국 우주 관련 정보 교류 · 인사교류 및 교육훈련, 기술협력 협의 등

4) 한미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구 분	주요 내용
목 적	한미 국방부 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설치년도 /주기	'14년 설치 / 연 2회 개최
참석단위	(한측) 방위정책관,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등 국방 주요 관계관 (미측) 사이버정책부차관보, 국제사이버전략과장 등 국방 주요 관계관
주요 의제	· 사이버 관련 정책 및 전략, · 사이버 교육 훈련 등

## 4.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대 주요 직위자

## 가. 역대 유엔군사령관 및 연합군사령관(1950-현재)

구 분	계 급	성 명	재직기간
유엔군 사령관	제1대	원 수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50.7.~'51.4.
	제2대	대 장 메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51.4.~'52.5.
	제3대	대 장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52.5.~'53.10.
	제4대	대 장 존 헐(John E. Hull)	'53.10.~'55.4.
	제5대	대 장 맥스웰 테일러(Maxwell D. Taylor)	'55.4.~'55.6.
	제6대	대 장 라이먼 렘니처(Lyman L. Lemnitzer)	'55.6.~'57.7.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미8군사령관	제7대	대 장 조지 덱커(George H. Decker)	'57.7.~'59.6.
	제8대	대 장 카터 맥그루더(Carter B. Magruder)	'59.6.~'61.6.
	제9대	대 장 가이 멜로이 2세(Guy S. Meloy, Jr.)	'61.6.~'63.7.
	제10대	대 장 헤밀턴 하우즈(Hamilton H. Howze)	'63.7.~'65.6.
	제11대	대 장 드와이트 비치(Dwight E. Beach)	'65.6.~'66.8.
	제12대	대 장 찰스 본스틸 3세(Charles H. Bonesteel, III)	'66.8.~'69.10.
	제13대	대 장 존 미첼(John H. Michaelis)	'69.10.~'72.8.
	제14대	대 장 도널드 베넷(Donald V. Bennett)	'72.8.~'73.7.
유엔군 사령관/연합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미8군사령관	제15대	대 장 리처드 스틸웰(Richard G. Stillwell)	'73.7.~'76.10.
	제16대(1)	대 장 존 베시 2세(John W. Vessey, Jr.)	'76.10.~'79.7.
	제17대(2)	대 장 존 위컴 2세(John A. Wickham, Jr.)	'79.7.~'82.6.
	제18대(3)	대 장 로버트 세네월드(Robert W. Sennewald)	'82.6.~'84.6.
	제19대(4)	대 장 윌리엄 립시(William J. Livsey)	'84.6.~'87.6.
	제20대(5)	대 장 루이스 메네트리(Louis C. Menetrey)	'87.6.~'90.6.
	제21대(6)	대 장 로버트 리스카시(Robert W. Riskassi)	'90.6.~'93.6.

부록

유엔군 사령관/ 연합군 사령관/주한미 군사령관	제22대(7)	대 장	게리 럭(Gary E. Luck)	'93.6.~'96.7.
	제23대(8)	대 장	존 킬렐리 2세(John H. Tilelli, Jr.)	'96.7.~'99.12.
	제24대(9)	대 장	토마스 슈워츠(Thomas A. Schwartz)	'99.12.~'02.5.
	제25대(10)	대 장	리온 라포트(Leon J. LaPorte)	'02.5.~'06.2.
	제26대(11)	대 장	버웰 벨 3세(Burwell B. Bell, III)	'06.2.~'08.6.
	제27대(12)	대 장	월터 샤프(Walter L. Sharp)	'08.6.~'11.7.
	제28대(13)	대 장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11.7.~'13.10.
	제29대(14)	대 장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13.10.~'16.4.
	제30대(15)	대 장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16.4.~'18.11.
	제31대(16)	대 장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18.11.~'21.7.
	제32대(17)	대 장	폴 라카메라(Paul J. LaCamera)	'21.7.~현재

※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1978년 11월 7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미8군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존 베시(John W. Vessey, Jr.) 장군이 초대 연합사령관 직위를 겸직하였다.

## 나.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 및 부참모장(1950-현재)

## 1)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

부사령관			
구분	계급	성명	재직기간
제1대	대장	류병현	'78.11.~'79.12.
제2대	대장	백석주	'79.12.~'81.8.
제3대	대장	박노영	'81.8.~'83.8.
제4대	대장	이상훈	'83.8.~'85.8.
제5대	대장	한철수	'85.8.~'87.8.
제6대	대장	정진태	'87.8.~'89.4.
제7대	대장	나중배	'89.4.~'90.12.
제8대	대장	김진영	'90.12.~'91.12.
제9대	대장	김동진	'91.12.~'93.3.
제10대	대장	김재창	'93.3.~'94.4.
제11대	대장	장성	'94.4.~'96.10.
제12대	대장	김동신	'96.10.~'98.3.
제13대	대장	정영무	'98.3.~'00.5.
제14대	대장	이종욱	'00.5.~'02.4.
제15대	대장	남재준	'02.4.~'03.4.
제16대	대장	신일순	'03.4.~'04.5.
제17대	대장	김장수	'04.5.~'05.3.
제18대	대장	이희원	'05.3.~'06.11.
제19대	대장	김병관	'06.11.~'08.3.
제20대	대장	이성출	'08.3.~'09.9.
제21대	대장	황의돈	'09.9.~'10.6.
제22대	대장	정승조	'10.6.~'11.10.
제23대	대장	권오성	'11.10.~'13.9.
제24대	대장	박선우	'13.9.~'15.9.
제25대	대장	김현집	'15.9.~'16.9.
제26대	대장	임호영	'16.9.~'17.8.
제27대	대장	김병주	'17.8.~'19.4.
제28대	대장	최병혁	'19.4.~'20.9.
제29대	대장	김승겸	'20.9.~'22.5.
제30대	대장	안병석	'22.5.~현재



부록

2) 역대 연합사 부참모장

부참모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직기간
제1대	소 장	심유선	'78.7.~'80.5.
제2대	소 장	이태영	'80.7.~'83.1.
제3대	소 장	안철호	'83.1.~'84.4.
제4대	소 장	윤덕규	'84.6.~'85.4.
제5대	소 장	이창욱	'85.4.~'86.12.
제6대	소 장	정봉울	'86.12.~'87.12.
제7대	소 장	김성권	'87.12.~'89.1.
제8대	소 장	정영주	'89.1.~'90.1.
제9대	소 장	황원탁	'90.1.~'91.7.
제10대	소 장	도일규	'91.7.~'93.4.
제11대	소 장	이석복	'93.4.~'96.7.
제12대	소 장	차기문	'96.7.~'98.11.
제13대	소 장	하재평	'98.11.~'00.5.
제14대	소 장	안광찬	'00.5.~'02.4.
제15대	소 장	송영근	'02.4.~'03.4.
제16대	소 장	이성규	'03.4.~'03.11.
제17대	소 장	박홍환	'03.11.~'04.11.
제18대	소 장	조영래	'04.11.~'06.12.
제19대	소 장	김용기	'06.12.~'08.4.
제20대	소 장	장용구	'08.4.~'09.11.
제21대	소 장	윤영범	'09.11.~'10.12.
제22대	소 장	권태오	'11.1.~'11.4.
제23대	소 장	이양구	'11.5.~'12.10.
제24대	소 장	장경욱	'12.11.~'13.4.
제25대	소 장	전인범	'13.4.~'13.10.
제26대	소 장	서형석	'13.11.~'15.2.
제27대	소 장	장광현	'15.2.~'15.11.
제28대	소 장	조영진	'15.11.~'18.6.
제29대	소 장	신상범	'18.6.~'19.5.
제30대	소 장	강종문	'19.5.~'20.5.
제31대	소 장	강인순	'20.5.~'21.11.
제32대	소 장	이기성	'22.1.~'22.12.
제33대	소 장	최인수	'22.12.~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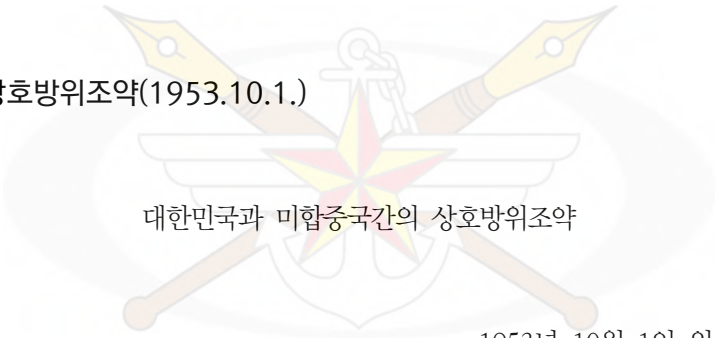
## 다. 역대 미 8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 참모장(1944-현재)

구	분	계급	성명	재직기간
미8군 사령관	제1대	중 장	로버트 아이첼버거(Robert L. Eichelberger)	'44.9.~'48.9.
	제2대	중 장	월튼 워커(Walton H. Walker)	'48.9.~'50.12.
	제3대	대 장	매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50.12.~'51.4.
	제4대	대 장	제임스 밴플리트(James A. VanFleet)	'51.4.~'53.2.
	제5대	대 장	맥스웰 테일러(Maxwell D. Taylor)	'53.2.~'55.4.
	제6대	대 장	라이먼 램니처(Lyman L. Lemnitzer)	'55.4.~'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7~1992 : 유엔군사령관이 미8군사령관을 겸직(1957. 7. 1부)</li> <li>• 1978~1992 : 연합군사령관이 미8군사령관을 겸직(1978. 11. 7부)</li> <li>• 1992년 이후 : 연합사 참모장이 미8군사령관 겸직</li> </ul>				
연합사 참모장	제1대	중 장	찰스 가브리엘(Charles A. Gabriel)	'78.11.~'79.3.
	제2대	중 장	에반 로센크란스(Evan W. Rosencrans)	'79.3.~'81.4.
	제3대	중 장	윈필드 스킷 2세(Winfield W. Scott, Jr)	'81.4.~'83.5.
	제4대	중 장	존 픽킷(John L. Pickitt)	'83.6.~'85.6.
	제5대	중 장	잭 그레고리(Jack I. Gregory)	'85.6.~'86.9.
	제6대	소 장	제임스 칼라한(James T. Callaghan)	'86.9.~'88.6.
	제7대	소 장	리처드 칼(Richard E. Carr)	'88.6.~'90.6.
	제8대	소 장	제임스 레코드(James R. Record)	'90.6.~'92.7.
연합사 참모장 (미8군 사령관 겸직)	제9대	중 장	윌리엄 크라우치(William W. Crouch)	'92.12.~'94. 10.
	제10대	중 장	리처드 티몬스(Richard F. Timmons)	'94.10.~'97.8.
	제11대	중 장	랜돌프 하우스(Randolph W. House)	'97.8.~'98.9.
	제12대	중 장	다니엘 페트로스키(Daniel J. Petrosky)	'98.9.~'00.9.
	제13대	중 장	다니엘 자니니(Daniel R. Zanini)	'00.9.~'02.11.
	제14대	중 장	찰스 캠벨(Charles C. Campbell)	'02.11.~'06.4.
	제15대	중 장	데이비드 발코트(David P. Valcourt)	'06.4.~'08.4.
	제16대	중 장	조셉 필(Joseph F. Fil)	'08.4.~'10.11.
	제17대	중 장	존 존슨(John D. Johnson)	'10.11.~'13.6.
	제18대	중 장	버마드 샴포우(Bemard S. Champoux)	'13.6.~'16.2.
	제19대	중 장	토머스 밴달(Thomas S. Vandal)	'16.2.~'18.1.
	제20대	중 장	마이클 빌스(Michael A. Bills)	'18.1.~'20.10.
	제21대	중 장	윌러드 버러슨(Willard M. Burleson III)	'20.10.~현재

## 5. 한미동맹 주요 합의문 변천 경과

- 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 나.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2009.6.16.)
- 다. 한미 국방협력지침(2010.10.8.)
- 라.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2013.5.7.)
- 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2018.10.31.)
- 바.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2019.11.15.)
- 사. 워싱턴 선언(2023.4.26.)
- 아. 캠프 데이비트 정신(2023.8.18.)

### 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

1954년 11월 17일 발효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 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 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델레스

미합중국의 양해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하에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 아래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공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 1953

Entered into force November 17, 1954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 부록

###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 Article 5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 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For the Republic of Korea: /s/ Y. T. Pyu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 John Foster Dulles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that neither party is obligated, under Article III of the above Treaty, to come to the aid of the other except in case of an external armed attack against such party; nor shall anything in the present Treaty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United States to give assistance to Korea except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against territory which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or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Republic of Korea.





## 나.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2009.6.16.)

##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009년 6월 16일 워싱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우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우리 양 국민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화·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사회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 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역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인 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 사회와 개방 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우리 양국과 민간 기구들은 이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내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 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 다. 한미 국방협력지침(2010.10.8.)

1. 목적 : 한미동맹 미래비전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침
2. 한미동맹 강화
  - 21세기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위한 동맹의 전략적 기여 강화
  - 전작권전통제권을 2015년 12월 1일 한국 합참으로 전환하고「전략동맹 2015」에 따라 전작권 전환 및 기타 국방현안을 동시에 추진
  - 북한과 기타 위협을 억제 및 격퇴하고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미래 평화통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
  - 공동 가치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 미군 주둔, 증원전력, 확장억제 제공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의무의 범위 재확인
  -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은 조약상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며 한반도 연합방위 주도
3. 한국 연합방위
  -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향상,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추구 재확인
  -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위협을 관리하고 전략커뮤니케이션(SC) 긴밀히 협력
  - 포괄적 전략비전 충족을 위해 정보 및 첩보 공유, 보안대책 강구, 다양한 시나리오와 우발상황에 대해 작전계획 발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능력 발전,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제도화. 군사교리 및 교육훈련, C4I 등 상호운용성 향상, 연합연습프로그램 발전
4.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
  -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
  - 보다 폭 넓은 지역 및 글로벌 기여를 통해 한국방위 임무수행 능력 강화, 한국의 안보 역할확대에 따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세계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 확대

-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역할 제고위해 관련 능력 강화, PSI와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의 확산방지 지원, 양자-삼자-다자 간 국방협력 강화, 해양안보 협력 등 국제안보 및 평화유지활동 협력 강화,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도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

5. 이행

- 공동이익의 증진과 동맹 발전 위해 정책 및 전략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
- SCM에서 국방협력지침 이행을 위한 예하 위원회 및 군사위원회 조치를 지속 감독
- 국방협력지침에 기반한 상호 안보 노력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독려



## 라.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2013.5.7.)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점차 전 세계의 안정, 안보 및 번영의 초석이 되어왔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0년간의 양국간 파트너십과 공동번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선언을 제시한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안보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우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i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확장억제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지 1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의 파트너십이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성장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고, 에너지 부문을 포함, 양국 간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 ‘공동비전’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에 기초하여,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함께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들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적 그리고 범세계적 안보 및 경제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계되어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는 공동 도전에 대응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과,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 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 비확산, 사이버 안보, 해적 퇴치 등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노력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60년간의 파트너십과 공동 번영을 통해 우리는 한미동맹의 힘이 양국 국민들 간 긴밀한 관계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내 대규모 한인 사회는 한미 양국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많은 힘과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기타 기관들 간 협력을 포함, 양국 사회 간 보다 긴밀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과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한다.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7, 2013

For six decades, the ROK-U.S. Alliance has served as an anchor for stability,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creasingly around the world. President Park Geun-hy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Barack Obam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eeting in Washington, D.C. on May 7, 2013, present this Joint Declaration in celebration of sixty years of bilateral partnership and shared prosperity. The two leaders affirm that the Alliance is well-placed to addres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the future.

The ROK-U.S. Alliance, forged in the Korean War and founded on the 1953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Mutual Defense Treaty, has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with deep cooperation extending beyond security to also encompass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people-to-people realms. The freedom, friendship, and shared prosperity we enjoy today rest upon our shared values of liberty,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Building on the past sixty years of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continue to strengthen and adapt our Alliance to serve as a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and to meet the security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remains firm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roug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This year also marks another milestone for our two nations-the first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This agreement embodies the positive evolution of our partnership and demonstrates how deepl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mitted to a shared future of growth and prosperity. We are pleased to note the positive results of the KORUS FTA, including increased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recognize its potential for expanding bilateral cooperation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cluding in the energy sector. Our two countries will fully implement the KORUS FTA to ensure that the agreement serves as an economic growth engine in both our countries.

We are pleased with the significant progress made in realizing the 2009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lays out a blueprint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our strategic Alliance. We pledge to continue to build a better and more secure future for all Korean people, working on the basis of the Joint Vision to foster end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nuclearization, democracy and a free market economy. In this contex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through the Alliance to bring North Korea in to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rough the trust-building process initiated by President Park.

We share the deep concern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s and its repeated provocations pose grave threats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determined to achieve the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re working with other Six-Party Talks partne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sist that North Korea adheres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ile we invite North Korea to take the path that leads out of isolation and to join the community of nations as a responsible member, we are resolved to continue to defend our citizens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ons by strengthening our comprehensive, interoperable, and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to include shared efforts to counter the missil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integrat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ystems. Because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a deep concern for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we encourage North Korea to invest in, and improve, the conditions for its citizens and to respect their basic human rights.

The peace and prosperity of both our nations are inextricably linked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solid ROK-U.S. Alliance,



we are prepared to address our common challenges and seek ways to build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ROK-U.S. Alliance is an increasingly global partnership, and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s leadership and active engagement on the world stage, including in international fora. We will strengthen our efforts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to promote clean energy, energy security, human rights, humanitarian assistance, development assistance cooperation, counter-terrorism,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nuclear safety, non-proliferation, cybersecurity, and counter-piracy.

Our sixty years of partnership and shared prosperity have demonstrated that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stems from th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our peoples. The larg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not only serves as a significant link between our two countries, but also makes countless contributions to the strength and vitality of American society. We pledge to continue programs and efforts to build even closer ties between our societies, including cooperation among business, civic, academic, and other institutions.

As allies and Asia-Pacific nations, we look forward to shaping together the future of Asia for generations to come.

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2018.10.31.)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간 결의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018년 10월 31일

(목적)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전문)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 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노력한다.

**Resolution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Guiding Principles Follow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ctober 31, 2018

(Purpose) After the decision between the Presidents of both nations in 2017 to “expeditiously enable the conditions-bas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of ROK forc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hereafter referred to as “the ROK MND”)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hereafter referred to as “U.S. DoD”) have formulated the following Alliance Guiding Principles in order to maintain a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Preamble) The ROK MND and U.S. DoD recognize that since the signing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hereafter referred to as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hereafter referred to as “U.S.”) in 1953, the ROK-U.S. Alliance, built on mutual trust as well as shared values of liberal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has served a critical role in the

security,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sia-Pacific Region.

The ROK MND and U.S. DoD confirm that the contributions of the ROK-U.S. Alliance are to continue into the future, carrying on the spirit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o prevent arm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contribute to global peace.

Together in this recognition, the ROK MND and U.S. DoD mutually approve the following Alliance Guiding Principles in order to maintain a reinforced combined defense posture even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s a symbol of the commitment pursuant to the Mutual Defense Treaty, U.S. Forces Korea(USFK) is to continue to be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irmly fulfill the security commitment to the ROK.

The ROK-U.S.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and its subordinate combined component commands are to be established to deter external aggression and, if deterrence fails, to defend the ROK.

The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is to operate as a separate standing entity, and receive strategic direction and operational guidance from a Military Consultative Committee which receives bilateral guidance from the ROK and the U.S. national command authorities.

The national authorities of the ROK are to appoint a General or an Admiral to serve as the Commander of the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national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re to appoint a General or an Admiral to serve as the deputy commander of the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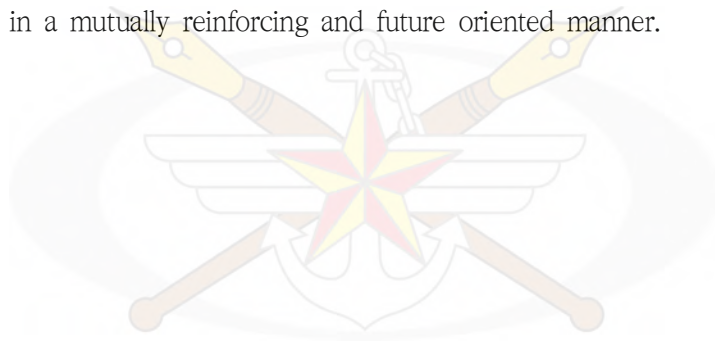
The ROK MND and U.S. DoD are to continue to maintain and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mmand, which has served the function of preventing arm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 th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the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USFK,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ROK MND is to continue to develop capabilities to lead the combined defense, while the U.S. DoD provides bridging and enduring capabilities for the defense of the ROK.

The ROK MND is to expand its responsibilities in deterring external aggression, while the U.S. DoD continu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he ROK MND and U.S. DoD are to engage regularly in consultations even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Therefore, together in the recognition that the combined defense structure follow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erves to strengthen further th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rovided by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 ROK MND and U.S. DoD commit to strive towards developing the Alliance in a mutually reinforcing and future oriented manner.



바.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2019.11.15.)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1. 한미동맹은 지난 66년 간 양국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유대관계 심화에 기여해 왔으며, 양국의 공동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삼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
2. 한미 국방장관은 역동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50차 SCM('18.10.31.)에서 동맹의 국방협력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국방비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미 양 정상과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한미 양 정상은 2019년 6월 30일 정상회담에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한미 국방협력은 한반도, 지역 및 세계 질서를 뒷받침하는 공동 원칙에 대한 공약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러한 공동 원칙은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다.
  - 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 추구
  - 나.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존중
  - 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과 규범에 따른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 라.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

4.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에도 상기 공동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당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공동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동맹의 국방협력은 한미 양국이 새로운 도전과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이버, 우주, 해양, 그리고 환경문제와 같은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인 새로운 위협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방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초국가 및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여 역내 파트너 역량 구축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동맹은 잠재적 핵, 화학, 생물 및 방사능(CBRN) 위협 예방 및 대응과 아울러, CBRN 능력과 투발체계 및 관련물질 확산 예방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동맹은 사이버, 무인·자율 분야, 그리고 전략물자·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국방과학기술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7.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 안정 및 번영을 보장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사. 워싱턴 선언(2023.4.26.)

## 워싱턴 선언(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구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 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 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 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 Washington Declaration

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ROK) met on this 26th day of April, 2023,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has been forged in shared sacrifice, fortified by enduring security cooperation, and nourished by our close kinship that has enabled both countries to leverage their diplomatic resources to peaceably achieve crucial, strategic outcomes. What began as a security partnership has grown and expanded into a truly global Alliance that champions democratic principles, enriches economic cooperation, and drives technological advancements. Our Alliance has been tested

many times, and in every instance we have risen to the occasion and responded to the changing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To commemorate this historic year for our Alliance,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have committed to develop an ever-stronger mutual defense relationship and affirm in the strongest words possible their commitment to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and the measures we take together are in furtherance of that fundamental goal.

The ROK has full confidence in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nd recognizes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benefit of its enduring reliance on the U.S. nuclear deterrent. The United States commits to make every effort to consult with the ROK on any possible nuclear weapons em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stent with the U.S. Nuclear Posture Review's declaratory policy, and the Alliance will maintain robust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se consultations. President Yoon reaffirmed the ROK's longstanding commitment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s well as to the U.S.-ROK Agreement for Cooperatio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Alliance commits to engage in deeper, cooperative decision-making on nuclear deterrence, including through enhanced dialogue and information sharing regarding growing nuclear threats to the ROK and the region. The two Presidents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discuss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and manage the threat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In addition, the Alliance will work to enable joint execution and planning for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and improve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activities on the application of nucle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keeping with the Presidents' commitments, the Alliance has established a new bilateral, interagency table-top simulation to strengthen our joint approach to planning for nuclear contingencies.

President Biden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ROK and the Korean people is enduring and ironclad, an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ROK will be met with 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President Biden highlighted that the U.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is backed by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Going forward, the United States will further enhance the regular visibility of strategic assets to the Korean Peninsula, as evidenced by the upcoming visit of a U.S.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to the ROK, and will expand and deepen coordination between our militaries.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and ROK will strengthen standing bodies for consultations on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to better prepare the Alliance to defend against potential attacks and nuclear use and conduct simulations to inform joint planning efforts.

President Yoon affirmed that the ROK will apply the full range of its capabilities to the Alliance's combined defense posture. This includes working in lockstep with the United States to closely connect the capabilities and planning activities of the new ROK Strategic Command and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Such activities will include a new table-top exercise conducted with U.S. Strategic Command.

In view of these critical developments,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send a firm messa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stand together in the face of any and all threats to their shared security, and continue their close consultations on further steps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In parallel, both Presidents remain steadfast in their pursuit of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s a means to advance the shared goal of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아. 캠프 데이비드 정신(2023.8.18.)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들어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는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있어 공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간 개발정책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개별 국가 및 태평양 지역을 강화하는 ‘태평양 방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태평양 지역과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안보 및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역량 구축 노력과 새로이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대상 지역 역량 강화 노력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최대한 이로울 수 있도록 동 역량 강화 노력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협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016년 7월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사국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

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횡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필요한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초기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 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계속 초점을 둘 것이다. 프놈펜 성명서 상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안보팀들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도 두 차례 만났다.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용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연합되고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환적 기술로서 AI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치하며, 프론티어 AI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로서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을 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적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과 학생들을 포함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향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보여준 강력하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평가한다. 우리는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발금융기관 간 3자 협력과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그리고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의 지구적 도전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양허성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양허성 재원과 빈곤퇴치 여력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최빈국들을 위한 자원 확대를 모색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 재앙과도 같은 침략전쟁으로부터 얻을 오랫동안 지속될 교훈은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의지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도단의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에 있어 단결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의지와 낙관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난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다. 한·미·일 국민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민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자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지켜온 의지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ugust 18, 2023

We, the leaders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ROK), and the United States, convened at Camp David to inaugurate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 We do so at a time of unparalleled opportunity for our countries and our citizens, and at a hinge point of history, when geopolitical competition, the climate crisis,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nuclear provocations test us. This is a moment that requires unity and coordinated action from true partners, and it is a moment we intend to meet, together.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determined to align our collective efforts because we believe our trilateral partnership advances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all our people, the region, and the world. In this spirit, Pre -sident Biden commended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for their courageous leadership in transforming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OK. With the renewed bonds of friendship—and girded



by the ironclad U.S.-Japan and U.S.-ROK alliances—each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s is now stronger than ever. So too is our trilateral relationship.

On this historic occasion, we commit to expand our cooperation trilaterally and raise our shared ambition to a new horizon, across domains and across the Indo-Pacific and beyond. We will strengthen our economies, provide resilience and prosperity, support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bolster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especially as current and incoming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We will strengthen our coordination on promoting democracy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we will enhance strategic coordination between the U.S.-Japan and U.S.-ROK alliances and bring ou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new heights. As we embark together in this new era, our shared values will be our guide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n which our half-billion people are safe and prosperous, will be our collective purpose.

Today, we declare openly that we are united in a common purpose to strengthen our shared region. Our mandate is to ensure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ligned in our objectives and in our actions, generating the common capacity required to ensure that the Indo-Pacific is thriving, connected, resilient, stable, and secure. Ours is a partnership built not just for our people but for the entire Indo-Pacific.

We announce our governments' commitment to consult with each other in an expeditious manner to coordinate our responses to 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 that affect our collective interests and security. Through these consultations we intend to share information, align our messaging, and coordinate response actions. To this end we will improve our trilateral communication mechanism to facilitate regular and timely communication between our countries, including our national leadership. We will hold trilateral meetings between our leaders, foreign ministers, defense ministers,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s at least annually, complementing existing trilateral meetings between our respective foreign and defense ministries. We will also hold the first trilateral meeting between our finance ministers as well as launch a new commerce and industry ministers track that will meet annually. We will also launch an annual 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 to coordinate implementation of our Indo-Pacific

approaches and to continually identify new areas for common action. Recognizing the increased threat posed by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misuse of surveillance technology, we will also discuss ways to coordinate our efforts to counter disinformation. We welcome the trilateral development policy dialogue planned in October to advance concrete discussions for deepening development policy coordination. We are resolute in our determination to uphold regional security, strengthen Indo-Pacific engagement, and promote common prosperity.

We wholeheartedly reaffirm ASEAN centrality and unity and our support for the 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 We a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ASEAN partners to support robust implementation and mainstreaming of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We are collectively working to support sustainable energy and promoting water security and climate resilience in the Mekong River Basin. We reaffirm, too, our support of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intend to work in genuine partnership with the Pacific in a transparent and effective manner, consistent with the Pacific Way, that strengthens individual countries and the Pacific region. We plan to coordinate regional capacity-building efforts to ASEAN and Pacific Island countries to ensure that they are mutually reinforcing and maximally beneficial to our valued partners, including through capacity building efforts in cybersecurity and financial integrity and our new Trilater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We share concerns about actions inconsistent with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hich undermine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Recalling the publicly announced position of each of our countries regarding the dangerous and aggressive behavior supporting unlawful maritime claims that we have recently witnes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in the South China Sea, we strongly oppose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waters of the Indo-Pacific. In particular, we steadfastly oppose the militarization of reclaimed features; the dangerous use of coast guard and maritime militia vessels; and coercive activities. In addition, we are concerned abou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We reiterate our firm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s reflect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The July 2016 award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sets out the legal basi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maritim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to that proceeding.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is no change in our basic positions on Taiwan, and we call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Furthermore,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SC resolutions and urge the DPRK to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relevant UNSC resolutions.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multip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ICBM) launches and conventional military actions that pose a grav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We express concern regarding the DPRK's illicit cyber activities that fund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announce the establishment of a new trilateral working group to drive our cooperation, includ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mbat DPRK cyber threats and block its cyber-enabled sanctions evasion. Japa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remain committed to reestablishing dialogue with the DPRK with no preconditions. We also commit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reaffirm a shared commitment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We express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and support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The United States unequivocally reaffirms that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both Japan and the ROK are ironclad and backed by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Our three countries announce today that we intend to hold annual, named, multi-domain trilateral exercises on a regular basis to enhance our coordinated capabilities and cooperation. In mid-August, our three countries conducted a maritime ballistic missile defense warning test for the real-time sharing of missile warning data to demonstrate our ability to deter and respond to the DPRK's advanc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more effectively. By the end of 2023, we intend to operationalize our sharing of missile warning data on the DPRK in real-time in fulfillment of commitments reflected in the November

2022 Phnom Penh Statement, and our countries have taken initial steps to test our technical capabilities for real-time sharing of missile warning data. We are committed to pursuing enhanced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to counter DPRK nuclear and missile threats. We reaffirm that achiev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s a common go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continue to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at nuclear weapons are never used again.

Even as we deepen our security partnership, we will also maintain focus on building robust cooperation in the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y spheres, leveraging the unique capabilities that each of our countries brings to bear. In implementing our commitments in the Phnom Penh Statement, our national security teams have met twice under the auspices of the Trilateral Economic Security Dialogue to advance our shared objectives. We are now cooperating trilaterally on supply chain resilience, particularly on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as well as on technology security and standards, clean energy and energy security, biotechnology, critical minerals, pharmaceuticals, artificial intelligence(AI), quantum computing, and scientific research.

Going forward, our countries a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together to launch early warning system pilots to expand information sharing and enhance policy coordination on possible disruptions to global supply chains as well as to better prepare us to confront and overcome economic coercion. We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Partnership for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RISE)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play larger roles in the supply chains of clean energy products. We will also enhance cooperation on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to prevent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we develop from being illegally exported or stolen abroad. To that end, we will conduct inaugural exchanges between the U.S.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 and Japanese and ROK counterparts to deepen information-sharing and coordination across our enforcement agencies. We will also continue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on export controls to prevent our technologies from being diverted for military or dual-use capabilities that could potentially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andem with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we will bolster combined and

collaborativ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cluding by pursuing new trilateral National Labs cooperation and expanding trilateral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ersonnel exchanges, particularly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STEM) sectors. In addition, we seek to expand trilateral cooperation on open radio access network(RAN) and further enhance trilateral dialogue on space security cooperation, particularly regarding threats in the space domain, national space strategies, and the responsible use of space. We acknowledge the crucial role of AI as a transformative technology and affirm our respective efforts to help shape international governance on AI and ensur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I, in line with our shared democratic values and as the basis for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frontier AI systems.

We are fully committed to continuing to eliminate barriers to economic participation and build diverse, accessible, and inclusive economies in which all our people—including women and marginalized groups—can succeed. We will work to further strengthen our people-to-people ties, including among our young people and students. We will continue our cooperation toward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IPEF) negotiations, and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welcome the United States' hosting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forum this year.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pplaud Japan's strong and principled leadership at the G7 Hiroshima Summit to respond to challeng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Together, we are committed to accelerate the clean energy transition; mobilize financing for quality infrastructur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ncluding through trilateral collaboration among our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as well as through the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PGII); and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as well as orderly and well-functioning financial markets. We will continue our ambitious agenda to evolve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o make them more responsive to shared global challenges. The Leaders committed to explore delivering new World Bank Group concessional resources and headroom to fight poverty by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in line with its forthcoming concessionality framework and enhancing resources for the poorest countries, including crisis response.

We are united in our support for Ukraine.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stand

with Ukraine against Russia's unprovoked and brutal war of aggression that has shaken the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We commit to continue providing assistance to Ukraine, imposing coordinated, robust sanctions on Russia, and accelerating the reduction of dependency on Russian energy. We believe the lasting lesson from this catastrophic war of aggression must b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biding will to uphold the principles of territorial integrity, sovereignty,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We reaffirm our view that when these foundational principles are rejected anywhere, they represent a threat to our region. We are unified in our intent to ensure that no such egregious acts are ever perpetrated again.

We depart Camp David with a shared resolve and optimism for the future. The opportunity that lies before us was not guaranteed—it was embraced. It is the product of a determination, fiercely held by each of us, that if we are to deliver a peaceful and prosperous future for our people, and the people of the Indo-Pacific, we must more often stand together. Today, we declare that a new chapter in our trilateral relationship has begun. We are aligned in our vision; undaunted in the face of our era's greatest challenges; and, most of all, united in our belief that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 meet those challenges together, now and in the future.

## 6. 한미 주요 국방·군사 조약·각서·약정 목록

구분	조약·각서·약정 제목	서명일자
1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 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1948.8.9.
2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시행협정	1948.8.24.
3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 협정	1950.1.26.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1951년 미국 상호안전보장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장에 관한 협정	1952.1.4.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4.11.17. 발효)	1953.10.1.
6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 의사록	1954.11.17.
7	원조 장비·물자의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1956.5.28.
8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 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개정	1960.10.21.
9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경제기술원조 협정	1961.2.8.
10	기술자료교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성 간의 기본협정	1963.5.15.
11	한·미·월남 군사실무 합의서	1964.9.5.
1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록문서 (1967.2.9. 발효)	1966.7.9.
1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7.2.23.
14	M16소총 생산 사업계획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	1971.4.22.
15	한·미 합동 군 주파수 관리위원회 합의서	1972.6.16.
16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1978.10.17.
17	한·미 공군기의 A-10항공기 전개에 관한 양해각서	1981.1.15.

부록

구분	조약각서·약정 제목	서명일자
18	한미 해군 간의 진해 군항 내 연합작전 상황실의 건설, 장비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	1981.7.28.
1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시포로 및 민간인 억류자 이양에 관한 합의각서	1982.2.12.
20	한미 연합군의 탱고지휘소 SCIF 개선에 관한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의 합의각서	1982.2.12.
2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안보협정	1987.9.24.
22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성 간의 방산 기술협력 양해각서	1988.6.8.
23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군수지원 협정	1988.6.8.
24	한국 보병 제1사단과 미 보병 제2사단 간의 자유교 통제권에 관한 합의각서	1989.8.7.
25	한미 공군 간의 영공사용(군사작전)에 관한 양해각서	1990.4.19.
26	대한민국 국방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간의 한강 통제체계 개발에 관한 합의각서	1990.5.1.
27	용산기지 이전 기본 합의각서	1990.6.25.
2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991.1.25.
2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993.11.23.
30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성 간의 냅스타 지구 위치측정체계(GPS)에 관한 합의각서	1994.3.18.
31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령부 간에 한국 내 육군 전쟁 장비 사전 배치 장비에 관한 합의각서	1995.4.10.
3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3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995.11.24.
33	한미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 운영내규	1996.3.18.



부록

구분	조약각서약정 제목	서명일자
34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	1998.2.11.
35	전술지휘, 통제 및 통신 기준의 형상관리에 관한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	1998.4.23.
3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	1998.6.2.
3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4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999.2.25.
38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시행 합의서	1999.3.10.
39	한국 공군과 주한 미 제8군 간의 한국 공군기지 내 패트리엇 전개훈련에 관한 합의서	2000.1.14.
40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간 대한민국 내 미군유해 발굴에 관한 합의	2000.6.23.
41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한미연합사 2001 을지포커스 렌즈 연습에 관한 상호지원 및 상환 합의각서	2001.8.9.
4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5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02.4.4.
43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국가영상지도국 간 지리 정보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 교환협력 협정서	2002.9.26.
44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 간 작전 및 정책회의에 관한 약정서	2003.12.11.
45	2003년 한미 연합 대화력전 훈련에 관한 대한민국 제3야전군사령부와 미합중국 제2보병사단과의 합의각서	2003.11.14.
46	지휘소자동화체계와 한국전구 지휘통제체계 간 연동을 위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합의각서	2004.3.16.
47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간의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	2004.10.24.
48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전시지원(WHNS)연습에 관한 지침서	2005.3.3.

부록

구분	조약각서·약정 제목	서명일자
4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6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05.6.9.
50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간의 한미 대확산회의(CPWG)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관련약정	2006.8.1.
5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06.12.22.
52	한미 연합군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	2007.6.28.
53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 창설관련 제1차 상설회의	2008.2.20.
5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09.1.15.
55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하는 군수관리관실과 미합중국 국방부를 대표하는 방위에너지지원본부 간의 유류 교환과 상환에 관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 약정서	2009.8.12.
56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합의각서	2010.4.16.
57	대한민국 탄약사령부 3탄약창장과 미합중국 미 육군 평택 기지시설 부대장 간의 합의각서	2010.11.24.
58	대한민국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와 미합중국 미 8군 사령부 간의 동맹 강화를 위한 합의각서	2012.5.31.
59	한미 연합 항공작전능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와 미합중국 제2보병사단 간의 합의각서	2013.2.13.
60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수송이동본부 운영을 위한 국군수송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합의각서	2013.4.16.
61	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 간 연합/합동특수임무부대-8 연합인원편성표에 관한 협의	2013.6.17.
62	대한민국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와 미합중국 육군 제94방공 및 유도탄방어사령부 간 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작전 협조본부(CAMDOCC) 운영절차에 대한 합의서	2013.11.8.

부록

구분	조약각서약정 제목	서명일자
6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14.2.2.
64	연합 지상군 군수위원회 운용을 위한 대한민국 육군(한국 육군)과 미합중국 미8군사령부(미8군) 간의 행정합의각서	2014.2.7.
65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간 한미군수협력자금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	2014.4.30.
66	한미 연합사단 합의각서	2014.7.11.
67	대한민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2014.12.26.
68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미합중국 7공군사령부 간 쌍매훈련 활성화에 관한 합의서	2015.2.6.
69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 간 광주, 김해, 수원, 대구, 청주 공동운영 기지에 관한 합의서 시행을 위한 김해 공군기지 기술협정서	2015.7.31.
70	군수 비용부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이행합의서 개정안	2015.10.14.
71	대한민국 해군 제5성분전단과 미합중국 주한 미 해군사령부 간 UNCNCC 기뢰대항책 심포지엄 및 다국적 연합기뢰전훈련 양해각서	2015.12.21.
72	대한민국 해군과 미합중국 해군 간 「한미 해군 해상초계기위원회회의」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 수정서	2016.5.20.
73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 간 대한민국 공군 탄약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	2016.7.26.
74	한-미-영 연합훈련 양해각서(영문)	2016.11.4.
75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연합군/주한미군사 간 한미 연합군 주파수위원회 합의각서(1972년 6월 16일 체결된 합의 대체)	2016.12.16.
76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 간의 우주분야 실무협의체에 관한 약정서	2017.4.11.
77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미합중국 7공군사령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7.7.12.

구분	조약각서약정 제목	서명일자
78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중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 간 항공기 전투상호정비지원에 관한 이행약정서(1988년 최초 체결, 2009년 개정)	2017.11.29.
79	대한민국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미합중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작전전대 간의 연합훈련에 관한 합의서	2018.1.23.
80	대한민국 해군 제72기동전대와 미합중국 제15구축함전대 간 대잠전위원회 양해각서	2018.10.15.
81	대한민국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미합중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 간의 연합참모회의 관련 합의서	2018.11.26.
8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19.3.8.
8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2019.4.5.
84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2019.7.11.
85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미합중국 7공군사령부 간 연합근접항공지원훈련에 관한 합의서	2019.11.21.
86	대한민국 해군과 미합중국 해군 간의 해군 전략대화에 관한 양해각서(개정)	2020.6.16.
87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미합중국 7공군 간 연합 화생방 핵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개정)	2020.6.22.
88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20년 후반기 합지휘소훈련에 관한 작전합의각서	2020.8.13.
89	대한민국 해군과 미합중국 해군 간 대잠전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2021.1.21.
9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21.4.8.

부록

구분	조약각서약정 제목	서명일자
91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상군구성군사령부와 미합중국 육군 제8군 사령부 간 동맹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2021.4.21.
92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우주군 간 우주정책협의체 관련약정	2021.8.27.
93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미합중국 7공군사령부 간 항공정찰자산 상호운 용에 관한 양해각서	2021.9.28.
94	대한민국 해군과 미합중국 해군 간 대잠전 해양정보 지원에 관한 협력 양 해각서	2022.6.7.
95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와 미합중국 제3해병기동군사령부, 주한미해병부대 사령부 간 해병공지기동부대작전본부 공동사용에 관한 양해각서	2022.8.29.
96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간 제1중앙방공통제소, 제2중앙방공통제소 및 한국형 전투통제체계의 연합작전 및 협조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2022.11.8.
97	대한민국 해군과 미합중국 해군 간의 군사적 해양탐사 협력에 관한 합의각 서의 다섯 번째 수정문	2023.1.6.
98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간 국방·국토안보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23.3.20.

## 7. 주한미군 기지 약사

연도	주요내용
1950	7. 9. 미8군사령부 대구에 설치, 대구 K-58 비행장 공여 9. 6. 캠프 하야리아 공여
1951	1.26. 캠프 홀링워터 공여 4. 1. 대구 H-805 헬기장 공여 4.15. 캠프 모스 공여 5. 캠프 케이시 공여 5.28. 캠프 라과디아 공여 7. 1. 서울 을지로 극동공병단(FED)공여 8. 1. 광주 K-55 비행장 공여 8.31. 캠프 마켓 공여 10.13. 니블로 배럭스(현 한남 빌리지) 공여
1952	2.24. 용산기지 캠프 킴 및 수송단(당시 미8군 제21수송중대) 공여, 유엔 콤파운드(UNC) 공여 3. 캠프 코이너, 캠프 스탠튼 공여 5. 캠프 보니파스 공여 5.26. 캠프 그레이에넥스(서울 대방동) 공여 10.13. 남산 미8군 종교휴양소 공여 12. 1. 평택 베타 탄약고 공여
1953	1.24. 캠프 님블 공여 4.15. 캠프 스탠리 공여 7. 4. 미8군사령부 용산기지로 이전 7.27. 캠프 레드클라우드 공여 7.30. 캠프 그리브스 공여 8.13. 캠프 하우스 공여 9.27. 캠프 시어스 공여 10. 1. 평택 알파 탄약고 공여 12. 3. 캠프 캐슬, 캠프 카일 공여 12.15. 캠프 잭슨 공여
1954	1.14. 캠프 호비 공여 2. 1. 캠프 게리 오웬 공여 5.25. 짐볼스 훈련장 공여 5.28. 캠프 에드워드 공여 7. 1. 캠프 룡 공여, 와킨스 훈련장 공여 12.1. 캠프 에세이온 공여
1955	8. 찰리블럭 사이트(통신중계소) 공여
1956	8.10. 포천 바요넷 훈련장 공여
1957	7. 1. 유엔군사령부·미8군사령부, 일본 동경에서 한국 용산으로 이동, 주한미군사령부(USFK) 창설, 극동공병단 창설 9.30. 캠프 자이언트 공여

부록

연도	주요내용
1958	1. 1. 캠프 페이지 공여
1959	7.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에 미8군 골프장 건설
1961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가 유엔사 내로 이전 2.19. 화성 매향리 사격장 공여
1963	3. 캠프 리버티 벨 공여 6.14. 캠프 콜번 공여 6.30. 아리랑 택시부지 공여(오늘날 용산구청 부지)
1968	3.19. 오산에 미5공군 전방사령부 창설, 원주 캠프 이글 공여 4. 1. 양주 모빌 훈련장 공여
1969	5.22. 불스아이, 다그마노스 훈련장 공여
1970	4.16. 부산역 미군 TMO 공여
1971	2. 미 제15야전포병 캠프 스탠리로 이동 배치 12.15. 대구역 미군 TMO 공여, 주한미군 합동방사기구(USO) 캠프 킴에 설치
1975	2.22.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8군사령부가 1974년 9월에 단일사령부로 통합되었음을 발표
1977	6. 9. 미 해병대 포항파견대(캠프 무적) 부지 공여
1978	5. 4. 평택 CPX-A1 훈련장(미2사단 통신훈련장) 공여
1979	7.20. 필승사격장 공여
1981	8. 2. 서빙고 501정보 여단 부지 공여
1982	5. 니블로 배럭스에 現 한남 빌리지 거주 시설 건립
1986	9. 8. 주한 미7공군사령부 창설(오산)
1987	6.24. 왜관 캠프 캐롤 TMO 공여
1988	5. 7. 캔사스, 오클라호마 사격장 공여, 미 특수전사령부 캠프 킴에 설치
1989	5. 2. 한미 간 미8군사령부를 90년 중반까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미8군 영내 골프장은 1990년까지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 주한미군 약 44,000명 주둔 8. 2. 미 의회, 년·워너 수정안 채택
1990	2.15. 한미 국방장관회담(90년부터 3단계 미군감축 및 역할변경 합의) 4.19. EASI 발표
1991	1. 캠프 리버티 벨, 캠프 보니파스에 합병 5.28. 성남 골프장 공여, 용산 미8군 골프장 폐쇄, 한측 인수 7.19. 한미정부, 용산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계획 발표 12.25. 소비에트 연방 해체, 탈냉전시대 도래, 주한미군 약 43,000명 주둔
1995	2.27. EASR 발표
2002	3.29.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체결
2003	6. 4.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제2차 협의, 미 2사단 2단계 이전개념 구체화 11.25. 미국,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 발표 12.30. 아리랑 택시부지 반환(용산구청이 들어섬)
2004	1.15.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제6차 협의, 유엔사/연합사를 한강이남으로 이전 결정 10. 6. 용산기지가이전계획(YRP) 협정 및 LPP개정 협정 체결

부록

연도	주요내용
2005	9. 2. 바요넷 모빌, 페이지 훈련장 반환 9.20. 볼스아이, 와킨스 훈련장, 사천비행장 보급 창고 반환 9.30. 캔사스, 오클라호마 사격장, 짐볼스 훈련장 반환 12. 9. 용산헬기장(H-208) 국방부로 이전 신축
2006	6.28. 텍사스 사격장 반환 7.15. 주한미군지휘협정에 따라 15개 주한미군기지의 관리권을 국방부로 이관, 제주 캠프 맥넵 반환 7.21.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 창설
2007	3.20. 다그마노스 훈련장 반환 4.13. 캠프 그리브스, 남블, 라과디아, 리버티 벨, 스탠톤, 자이언트, 하우스, 콜번, 유엔 콤파운드, 서울역 미군TMO, 찰리블럭 사이트(통신중계소) 반환 5.31. 캠프 게리오웬, 시어스, 에드워드, 에세이온, 카일, 그레이, 에빅스, 페이지, 매 향리 사격장 반환 11.13. 평택 미군기지이전 기공식
2008	1. 6. 시설종합계획(MP) SOFA 합동위 승인 11.17. 부산역 미군 TMO, 대구역 미군 TMO 반환
2009	5.31. 캠프 홀링워드 반환 9.11. 왜관 캠프 캐롤 TMO 반환 10.19. 와그너 사격장 반환
2010	1.12. 김포 우편터미널 반환 1.27. 캠프 하야리아 반환
2011	5.11. 칠곡 금오산 살렘사이트 반환
2012	11. 병원-치과 기공식
2013	1. 미94헌병대대 이전 착수 7.18. 평택 미국 한국사령부 작전센터 기공식 8.29. 美해군사령부 기공식 8. 캠프 험프리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준공
2014	4. 7. 미2사단 본부 기공식 12. 보육센터 준공
2015	12. 제47차 SCM, YRP·LPP사업 적시 완료 공동 노력 확인
2016	2. 철도차량기지 및 부산 미해군작전사령부 준공
2017	7.11. 미8군 청사이전
2018	2. 7. 평택 다운타운 식료품점 개장 6.29. 주한미군사령부/UN사령부 신청사 개관식
2019	11.15. 브라이언 D. 올 굿 병원 개원식 12.11. 캠프 마켓, 캠프 룡, 캠프 호비(사격장 부분반환), 캠프 이글 반환
2022	11.15. 한미연합군사령부 이전 기념식



# 한미동맹 70년사



참고문헌

## I. 국내자료

### 1) 문헌자료

-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개정협정」, 조약 제1553호 (2001.1.18. 서울에서 서명; 2001.4.2. 발효)
-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조약 제1701호(2004.10.26.)
-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작전지휘권의 유엔군사령관 복귀에 관한 성명(UNC and SCNR Issue Joint Statement)」(1961.5.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705.
-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협상 결과(기자회견 설명자료)」(2004.10.6.)
- 「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3497호(1981.1.1. 시행)
-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 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조약 제1125호(1948.8.24.)
-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협정에 관한 행정협정(1948.8.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34-39.
-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협정(교환각서)」, 조약 제66호(1960.10.21. 서울에서 서명; 1960.10.21. 발효)
-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 제5호 (1950.1.26. 서명; 1949.7.1. 소급발효)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1988.6.8.)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사원조 쌍무협정」, 조약 제4호(1950.1.26. 서명·발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대한미군원 10퍼센트의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조약 제427호 (1972.5.12. 서울에서 서명; 1972.2.7. 발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 조약 제1702호(2004.10.28.)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 제1040~2484호(1991.1.25.~2021.9.1.)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3.10.1. 워싱턴에서 서명, 1954.11.17. 발효),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154-157.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조약 제34호(1953.10.1. 워싱턴에서 서명; 1954.11.18. 발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조약 제1610호(2002.3.29. 서울에서 서명; 2002.10.31. 발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조약 제40호(1956.11.28.)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조약 제232호(1966.6.22.)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각서교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련 합의의사록 이행에 관한 양해사항」, 조약 제1038호(1991.2.1.)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의 한국 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조약 제238호 (1967.2.23. 서울에서 서명; 1967.3.10. 발효)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1950.1.26. 서명, 1950.1.26. 발효)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64-69.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1950.1.26. 서명, 1949.7.1. 소급발효)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58-63.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1950.1.26. 서명, 1949.7.1. 소급발효),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58-63.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1987.10.29. 전부개정; 1988.2.25. 시행)
- 「맥아더 장군의 회한(回翰)」(1950.7.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629-631.
- 「브라운 각서」(1966.3.4.), 외교부 외교사료관(공개번호: 1867)
- 「서울 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간의 합의각서」(1990.6.25.)
-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규정」, 국방부 훈령 제297호(1983.3.22.)
- 「월남 관계 비밀문서」, 외교부 외교문서(문서번호: 772-1338)
- 「이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공한」(1950.7.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629-630.
-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1950.7.12. 대전에서 서명, 1950.7.12. 발효),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70-73.
-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대전협정)」, 조약 제1135호 (1950.7.12. 서명 및 발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2018.10.31.)

- 「제10차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각서 제2호」 별지(1992.12.1.)
- 「제10차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합의각서」(서명일: 1992.10.2, 발효일: 1992.12.1.)
- 「제152회 제1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1.2.7.)
- 「제152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1.1.21.)
- 「제1차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합의각서」(서명일: 1978.10.23, 발효일: 1978.10.23.)
- 「제245회 제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4.2.13.)
- 「제245회 제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4.2.13.)
- 「제2차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합의각서」(서명일: 1980.3.11, 발효일: 1980.3.11.)
- 「제45회 제13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4.7.31.)
- 「제45회 제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4.1.26.)
- 「제9차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합의각서」(서명일: 1992.5.19, 발효일: 1992.5.19.)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 대통령령 제19613호(2006.7.21.)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271호(2004.12.31. 제정; 2005.4.1. 시행)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 제1939호(2009.1.15.)
-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1954.11.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164-165.
-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 고용 및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2001.1.18.)
- 「한미 연합사의 탱크 지휘소 SCIF 개선에 관한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의 합의각서」(1983.1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52-58
- 「한미 연합사의 탱크 지휘소 SCIF 개선에 관한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의 합의각서」(1983.1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52-58.
-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1978.10.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548.
-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1979.2.15.)
- 「한미전시지원에 관한 협정(WHNSA)」(1991.11.21.)
- 「형법」, 법률 제293호(1953.9.18. 제정; 1953.10.3. 시행)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1.18.)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장교 미국에 파견의 건」(1951.5.30.)
-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 평화변영과 국가안보』(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 기지 역사: 반환기지를 중심으로』(서울: 국방부, 2015)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이전백서: YRP사업 10년의 발자취』(서울: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2018)
- 국방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1차~12차 회의 결과」(서울: 국방부, 2003~2004)
- 국방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3차 회의결과 보도자료」(2003.7.23.)
- 국방부, 「제1차~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서울: 국방부, 1968~2022)
- 국방부, 「제2차 철군계획에 대한 연구」(세종: 정부기록보존소, 1972, CA002752자료)
- 국방부, 「한미국방장관회담 공동발표문」(워싱턴 D.C., 2003.6.27.)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이승만 서한철』(과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2023)
- 노태우, 『밝은 미래와의 노태우 약속(13대 대통령선거 공약)』(서울: 민주정의당, 1987)
- 대한민국 국회, 『국회회의록』(서울: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2023)
-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2022.12.)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2019.11.15.)
- 박명림·박용수 편, 『북핵문제사료집』 II(서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2019)
- 외교부, 「주한 미국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 교섭 경위,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전59권)」(서울: 외교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2023)
- 외교부,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보도참고자료」(2023.4.26.)
- 외무부, 「티우 대통령과의 면담내용 보고」(세종: 정부기록보존소, 1970, CA004741자료)
-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1994.11.30.)
-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1994.11.30.)
-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7.7.26.)
-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78.7.27.)
- 제1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85.5.8.)
- 제1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87.5.7.)
- 제2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88.6.9.)
- 제2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89.7.19.)
- 제2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1.11.21.)
- 제2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2.10.8.)
- 제2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3.11.4.)
-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4.10.7.)
- 제2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1995.11.3.)
- 제3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0.9.21.)
-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2002.12.5.)

-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03.11.17.)  
제3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04.10.22.)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06.10.20.)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07.11.7.)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08.10.17.)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09.10.22.)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0.10.8.)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1.10.28.)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3.10.12.)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4.10.23.)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5.11.2.)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6.10.20.)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20.10.14.)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21.12.2.)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22.11.3.)  
주월한국군사령부, 「정기 정세보고」(1970.11.11.)  
총무처 의정국, 「국무회의 의안처리전(제726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 개정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국무회의(1994.11.14.)  
총무처, 「조약 제1258호」, 『관보 제12887호』(대한민국 정부, 1994.12.10.)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일반명령 제19호」(1957.10.19.)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컬렉션-연설기록』(세종: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2023)

## 2) 단행본

- 공군본부, 『공군사』 제4집(서울: 공군본부, 1977)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 해외 파병사』(계룡: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07)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울: 대통령실, 2023)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료지원단 걸프파견 역사자료』 II(성남: 국군의무사령부, 1991)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성남: 국군의무사령부, 2004)  
국방과학기술연구소, 『2021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진주: 국방과학기술연구소, 2021)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 발전』(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미의회 보고서』(서울: 국방대학원, 197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연구총서』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1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증강사』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6권: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9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 국방부 재정국, 『국방예산통계』(서울: 국방부, 197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미국합동참모본부사 제3집) 한국전쟁』(상)(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2002)
- 국방부, 『200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4)
-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국방부, 『202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국방부,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1998~2002)』(서울: 국방부, 1998)  
 국방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서울: 국방부, 1995)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서울: 국방부, 2009)  
 국방부, 『국방백서 1967』(서울: 국방부, 1966)  
 국방부, 『국방백서 1988』(서울: 국방부, 1988)  
 국방부, 『국방백서 1989』(서울: 국방부, 1989)  
 국방부, 『국방백서 1990』(서울: 국방부, 1990)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서울: 국방부, 1991)  
 국방부, 『국방백서 1992~1993』(서울: 국방부, 1993)  
 국방부, 『국방백서 1993~1994』(서울: 국방부, 1994)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서울: 국방부, 1995)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국방부, 『국방부사(1989~1991)』 제3집(서울: 국방부, 1994)  
 국방부, 『국방부사(1992~1994)』 제4집(서울: 국방부, 1997)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국방부, 1983)  
 국방부, 『국방사』 제2집(서울: 국방부, 1987)  
 국방부,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0)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2011)  
 국방부, 『방위비 분담 1988』(서울: 국방부, 1989)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서울: 국방부, 1994)  
 국방부, 『주요 국방정책 용어』(서울: 국방부, 2002)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4)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강군』(서울: 국방부, 2013)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강군』(서울: 국방부, 2013)  
 국방부, 『주한미군 THAAD 배치』(서울: 국방부, 2016)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이해와 실제』(서울: 국방부, 20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국사편찬위원회, 『한미행정협정 문서 1(1954~1961)』(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8)  
 국사편찬위원회, 『한미행정협정 문서 2(1962~1966)』(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0)



- 군사용어대사전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서울: 청미디어, 2016)
- 김계동 외, 『한미관계론』(서울: 명인문화사, 2012)
- 김봉중, 『독트린의 역사』(광주: 전남대학교출판원, 2017)
- 김삼웅 편, 『민족민주민중선언』(서울: 일월서각, 1984)
- 김열수, 『한미동맹 70년 한미역사 140년』(서울: 법문사, 2022)
- 김영두, 『안케패스 대혈전』(서울: 북코리아, 2018)
- 김영삼,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서울: 조선일보사, 2001)
- 김영주, 『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 인사동문화, 2004)
- 김일영 외, 『주한미군 쟁점 역사 전망』(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서울: 중앙일보사, 1992)
- 남정옥, 『대한민국과 함께 한 국군과 주한미군 70년』(서울: 청미디어, 2021)
-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하권(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1)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주한미지상군철수에 관한 청문록』(서울: 국회도서관, 1979)
- 돈 오버도퍼 저, 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서울: 길산, 2002)
- 동아일보특별취재반, 『철저 해부 주한미군』(서울: 동아일보사, 1990)
- 라몬 파체코 파르도 외 저, 권영근 외 역, 『북한 핵위기와 북미 관계』(서울: 연경문화사, 2016)
- 랄프 N. 클라프 저, 구중서 역, 『주한미군과 한반도』(서울: 범학도서, 1977)
- 로버트 소이어 저, 이상호 외 역, 『주한미군사고문단사』(서울: 선인, 2018)
-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서울: 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 2007)
- 류병현, 『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 류병현 회고록』(서울: 조감제닷컴, 2013)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서울: 1994)
- 박종철, 『북미 미사일 협상과 한국의 대책』(서울: 통일연구원, 2001)
- 배정호 편저,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서울신문사, 1979)
-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서울: 민영사, 1992)
- 송태은, 『연합 사이버 전력의 역할과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과제』(서울: 국립외교원, 2022)
- 신복룡 편, 『한국분단사 자료집』II(서울: 원주문화사, 1991)
- 안동만 외,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서울: 플렛니미디어, 2016)
- 외교부, 『2013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13)
- 외교부, 『2014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14)
- 외교부, 『2015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15)
- 외교부, 『2016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16)
- 외교부, 『2018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18)
- 외교부, 『2020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20)

- 외교부, 『2021 외교백서』(서울: 외교부, 2021)
- 외교통상부, 『2005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5)
- 외교통상부, 『2007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7)
- 외교통상부, 『2008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8)
- 외교통상부, 『2009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9)
- 외교통상부, 『2011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11)
- 외교통상부, 『2012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12)
- 외교통상부, 『2013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13)
-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서울: 외교통상부, 2009)
-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저, 최종기 역, 『왜 월남은 패망하였는가』(서울: 광명출판사, 1976)
- 윌리엄 페리 외 저, 박건영 외 역, 『예방적 방위전략: 페리 구상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서울: 프레스 21, 2000),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전투발전종합사』(대전: 육군교육사령부, 1984)
- 육군군수사령부, 『군사령부 50년 발자취』(대전: 육군군수사령부, 2010)
- 육군대학, 『육군대학 30년사』(진해: 육군대학, 1981)
- 육군본부 역, 『(유엔군전사 제1집)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서울: 육군본부, 1968)
- 육군본부 역, 『(유엔군전사 제3집) 정책과 지도』(서울, 육군본부, 1974)
- 육군본부, 『육군 40년 발전사(1945~1985)』(서울: 육군본부, 1989)
- 육군본부, 『육군교리 50년 발전사』(논산: 육군본부, 2000)
-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변천사』(계룡: 육군본부, 2019)
- 육군본부, 『육군사』 제24집(서울: 육군본부, 1983)
- 육군본부, 『육군조직발전사』(논산: 육군본부, 1997)
- 육군본부, 『제3야전군사령부 변천사(창설~2018)』(계룡: 육군본부, 2019)
- 육군본부, 『창군전사(創軍前史)』(서울: 육군본부, 1980),
-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변천사(창설~2018)』(서울: 육군본부, 2019)
- 육군본부, 『파월 육군 종합전사』 제1권(서울: 육군본부, 1969)
- 육군본부, 『해외파병 40년사』(계룡: 육군본부, 2008)
-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60년사』(서울: 육군사관학교, 1996)
- 윤영관·신성호 엮음,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서울: 한올아카데미, 2008)
- 이강래, 『핵보유국 북한』(서울: 폴리티쿠스, 2014)
-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서울: 고려원, 1992)
- 이라크평화·재건사단, 『이라크파병 성과 교훈집』(서울: 이라크평화·재건사단, 2008)
- 이수훈,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 이현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서울: 중앙일보사, 1993)
- 장철운, 『남북한 미사일 경쟁사』(서울: 선인, 2015)
- 전경만 외, 『북한 핵과 DIME 구상』(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 전성훈, 『미국의 대한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정경영, 『전자권 전환과 국가안보』(서울: 매봉, 2022)
- 정일권, 『정일권회고록』(서울: 고려서적, 1996)
- 조만·김진하, 『북핵일지 1955~2009』(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조성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서울: 백산서당, 2021)
-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서울: 백산서당, 2019)
- 채명신, 『채명신 회고록』(서울: 팔복원, 2006)
-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서울: 국가안보실, 2019)
- 최용환,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 최종섭 외, 『한미 정보화기술(ICT) 협력 종합 발전 전략 연구』(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8)
- 최현수 외, 『한반도에 사드를 끌어들이는 북한 미사일』(서울: 경당, 2017)
- 토머스 G. 맨켄 저, 김수빈 역, 『궁극의 군대』(서울: 미지북스, 2018)
- 한국국방안보포럼 엮음,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서울: 플래닛미디어, 2006)
- 한국국방연구원,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전력 운용과 한국의 대응 방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2)
-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플래닛미디어, 2015)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서울: 북코리아, 201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미수교 1세기의 회고와 전망』(성남: 한국정신문화원, 1983)
-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발자취』(의정부: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1979)
- 한미연합사령부, 『연합업무수행을 위한 미국과 미군에 대한 이해』(서울: 한미연합사, 2006)
- 한용섭, 『북한 핵의 운명』(서울: 박영사, 2018)
- 한용원, 『창군』(서울: 박영사, 1984)
- 함형필,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 합동참모본부, 『‘22년 연합 및 합동 연습·훈련 편람』(서울: 합동참모본부, 2022)
-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8집(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 합동참모본부, 『연합·합동작전 군사용어사전』(서울: 합동참모본부, 2020)
-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서울: 합동참모본부, 1994)
-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1집(서울: 해군본부, 1954)
- 해병대사령부, 『베트남전쟁 해병대 전투사』 제1권(화성: 해병대사령부, 2015)
- 해병대사령부, 『베트남전쟁 해병대 전투사』 제2-1권(화성: 해병대사령부, 2016)

## 3) 논문·보고서

- Joshua M. McCullion(주한 미 우주군 부대장), “미국의 우주력 구축 추세와 국방 우주력 발전 방향,” 『제31회 국제 국방학술 세미나』, 합동군사대학교·한국군사학회(2023)
- 강구상 외, “한미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22권 제10호(2021)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년 신 안보위협 전망,” 『이슈 브리프』18-62(2018)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박영준·설인효, 「〈2022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한미동맹의 미래: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동맹의 미래과제」(2022)
- 국방부, 「〈2020년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01〉 한국전쟁 이후 주요 시점별 미국의 한반도 지정학적 가치 평가와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연구」(2020.12.31.)
- 국방부,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의의와 성과」(서울: 국방부, 2003)
- 권속도,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국가안보와 전략』 제15권 3호(2015)
- 김광진(국방위원회)·정청래(외교통일위원회), 「2013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황과 쟁점」(서울: 대한민국 국회, 2013.10.)
- 김도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의 주요내용과 쟁점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91호(2021)
- 김민식,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군사』 제98호(2016.3.)
- 김상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발표자료』(2020.6.24.)
- 김수광, “닉슨-포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연구,” 서울대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2008)
- 김영일·신종호, “한미 방위비분담의 현황과 쟁점,” 『현안보고서』(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8)
- 김영주, “박 대통령과 외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보』4권(2005)
- 김일영, “1960년대의 정치지형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서울: 백산서당, 1999)
- 김현숙, “대한제국기 미국관료지식인의 한국 인식 : 궁내부 고문관 샌즈(W.F.Sands)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58호(2005)
- 김호석, “미국 ‘우주군 창설’ 추진현황,” 『한국항공우주학회 2020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1953,” 『군사』 제63호(2007.6.)
- 노훈 외, “미군의 군사교리 혁신개념과 한국군의 접근방향,” 『국방논집』 제42호(1998 여름)
- 문성목, “북한 핵개발 실태와 대외정책,”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2016)
- 박동찬, “주한미군사교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1953),”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1)
- 박용욱, “팀스피리트 훈련과 남북회담,” 『군비통제』 제9집(1992)
- 박용하·이정호 외, 「군부대 주둔 및 이전부지의 환경관리: 정책토양·지하수 환경을 중심으로」(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 송근호, “한미 우주 협력: 우주개발 협력 이슈와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제언,” 『국가전략』 제27권 4호(2021)
- 송병기, “구미열강의 조선 출진과 대응,” 『동양학』 제28호(1998)
- 신상구,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대게릴라전 경험의 수용 과정,” 『군사연구』 제150집(2020)
- 신상구,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미군 유격교리의 수용 과정,” 『군사연구』 제149집(2020)
- 안승범,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기 보유 변천사,” 『디펜스 타임스』 통권 26호(2004.7)
- 이상엽, “미(美) ‘경쟁’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함의,” 『합참』 제92호
- 이상철, “북한 핵문제: 실상과 대응,” 『원광군사논단』 제3호(2007)
- 이승열·이승현,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3년 남북관계 전망,” 『이슈와 논점』 제2048호(2023)
-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권 제1호(1995)
- 장재규, “전략권 전환: 미래 연합사 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37권 3호(2021)
- 장철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변화와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 『KINU Online Series』 제 21-11호(2021)
- 전재성, “1980년대 전반기 전두환-레이건 정부 한미협력,”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사와 외교사』 현대편 3권(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9)
- 정성태, “SWOT 분석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 방안 연구 - 한미협력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7집 제2권(2021)
- 정용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 연구,” 경기대 외교안보학과 박사학위논문(2006)
- 차상철, “이승만과 한미 합의의사록의 체결,” 『군사연구』 제135집(2013)
- 황동준, “한미 방위산업 협력방안-방위산업 협력협정(MOU)을 중심으로,” 『국방과 기술』(1987.9.)

#### 4) 기타

- 『BBC NEWS 코리아』, 『KBS News』, 『경향신문』, 『국민일보』, 『국방일보』, 『국방일보』, 『노컷뉴스』, 『뉴시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전우신문』, 『전자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통일한국』, 『평택시민신문』,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후생신문』
-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제53차 SCM 성과와 의의,” 『Policy Cooperation Relation Management』 (2022)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추모의 벽’ 준공, 6·25전사 미군·카투사 4만여 명 이름 각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077>(검색일: 2023.4.5.)

- 박수형, “한미, 연합훈련 확대 협의 개시,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 『ZDNET Korea』(2022.5.21.)
- 박영준, 「한미동맹, 6·25전쟁의 ‘혈맹’에서 인도-태평양 시대의 중추 동맹으로」, 『영원한 친구들』 제271호(서울: 한미우호협회, 2023년 1~2월)
-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방산 공급망 관련 한미 방산협력 방안 논의: 방위사업청-미국 국제전략문제 연구소(CSIS) 컨퍼런스 개최(2023.3.17.)
- 외교부, 「SOFA 주요 관심 사항 관련 일문일답」(서울: 외교부 홈페이지, 2002.11.)
- 외교부, 「알기 쉬운 SOFA 해설」(서울: 외교부 홈페이지, 2002.11.)
- 이종섭 국방부장관 특별기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성과와 의의」, 『영원한 친구들』 제272호 (2023년 3~4월호)
- 이진백, “韓·美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선도,” 『LIFEIN』(2021.5.21.)
- 인천광역시, 『역사: 캠프 마켓의 어제』(인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23)
- 주유엔 대표부,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2021.9.21.)
-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리회보(23-1호)』(논산: 합동군사대학교, 2023)
- 환경부 보도자료, 「한미 공동연구 결과, 미세먼지 국내영향 52%, 국외보다 높아」(2017.7.19.)
- 공군본부 제공자료
- 국방부 제공자료
- 육군본부 제공자료
- 한미연합사 제공자료
- 합동참모본부 제공자료
- 해군본부 제공자료
- 해병대사령부 제공자료
- 국방부(<https://www.mnd.go.kr>)
-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 한미연합군사령부(<http://knsi.org>)
- 합동참모본부(<https://www.jcs.mil.kr>)

## Ⅱ. 국외자료

### 1) 문헌자료

- “Brown Memorandum”(Seoul, March 4, 1966)
- “Factors Affecting the Withdrawal of U.S. Ground Combat For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1 June 1979)
- “Informal Remarks in Guam With Newsmen”(UC Santa Barbara, July 25, 1969)
- “Meeting wit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Park Tong-Chin” (March 8, 1977)
- “Memorandum for Mrs. Evelyn Lincoln from W.W. Rostow: Topical Outline for the President for his conversations with Chairman Park on Tuesday”(November 13, 1961)
-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mmary of the President’s Meeting with President Chun Doo Hwan of the Republic of Korea”(February 2, 1981)
- “Memorandum of Conversation: U.S.-Korean Relations”(Washington D.C., May 17, 1965)
- “Memorandum: Richard V. Allen to President Reagan – Your Meeting with President Chun of Korea”(February 6, 1981)
- “Presidential Directive-12” (May 5, 1977)
- “Reply of General MacArthur to President Rhee through American Ambassador John J. Muccio in Korea”(Taegu, July 18, 1950)
- “Security Treaty between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Ministry of External Affairs(Australia), September 1, 1951)
- “Seventh Annual Message(Monroe Doctrine)”(University of Virginia Miller Center, December 2, 1823)
- “Speech of Mr. Jefferson at his inaugural, Washington”(Library of Congress, March 4, 1801)
-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Violation of the 38th Parallel in Korea, 25 June 1950”(Harry S. Truman Library)
-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Seoul Embassy, July 3, 1964, Asia and the Pacific: National Security Files, 1963~1969, First Supplement”(Microfilmed from L.B.J. Library No. 5-0649)
-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Unified Command, S/1588”(July 7, 1950)

- “The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to the American Embassy”(Pusan, July 14, 1950)
-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North Atlantic Treaty(repor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6 June 1949*(Washington DC: GPO, 1949)
-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 Report to Congress: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April 1990)
-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September 30, 2001)
-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May 1997)
- Department of State, *The Statutes at Larg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23*(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85)
-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sia 1973-1976, <https://history.tate.gov/historicaldocuments/shs/frus1969-76ve12/d268>(검색일: 2022.12.20.)
- Document 5: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ect: Summary of the President's Meeting with President Chun Doo Hwan of the Republic of Korea, February 2, 1981, 11:20 – 12:05 P.M., Cabinet Room, with Cover Memorandum, Richard V. Allen to President Reagan, February 6, 1981.
- Donald Rumsfeld, “Transforming the Military,” *Foreign Affairs* 81-3 (2002)
- George Washington’s Farewell Addr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ial Library at Mount Vernon Historical Offic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Public Statements of Donald H. Rumsfeld, Secretary of Defense, 2001, Volume II*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1)
- HQ I Corps(ROK/US) Group, “Annual History Supplement”(March 20, 1973)
-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10*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1996)
- Les Aspin, *Report on the Bottom 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1993)
-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Kissenger, “U.S. Military Posture”(October 2, 1969)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Yale Law School, August 30, 1951)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November 3, 1969: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War in Vietnam (University of Virginia Miller Center)
- NSC 8/2, “The Position of the U.S. with Respect to Korea”(March 22, 1949)
- Office of Force Transformation, *Military Transformation: a strategic approach*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2)



-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Nixon, 1969, 718. <https://quod.lib.umich.edu/p/ppotpus/4731731.1969.001/778?view=image&size=100>(검색일: 2022.12.20.)
- Secretary of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III Message to the Force”(March 4, 2021)
- SIPRI, *2022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SIPRI, 2022)
-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Challenges to Security in Space”(February 11, 2019)
-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2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 The White Hous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eoul.usembassy.gov/pv-061609b.html>, (검색일: 2023.2.1.)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No.32.: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Top Secret),” May 20, 1982. <https://fas.org/irp/offdocs/nsdd/nsdd-32.pdf>. (검색일: 2022.12.3.)
-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Memoranda. Space Policy Directive-4,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 Space Force”(February 19, 2019)
- The White House, NSDM 27, “US Military Posture,” October 11, 1969, <https://fas.org/irp/offdocs/nsdm-nixon/nsdm-27.pdf>(검색일: 2022.12.20.)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 <https://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검색일: 2022.12.30.)
-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 Transformation Study Group, “Transformation Study Group Report: Transforming Military Operational Capabilities”(April 27, 2001, Homeland Security Digital Library)
-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Statement for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December 20, 2016)
-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2018),” DoD(defense.gov).(검색일: 2023.1.16.)
-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2018),” DoD(defense.gov).(검색일: 2023.1.16.)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October 27, 2022)

-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th Century(EASI-I)* (April 1990)
-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th Century(EASI-II)* (July 1992)
- U.S. Department of Defense, *Elements of Defense Transformation* (Washington D.C., 2004)
-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February, 2010)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September 30, 2001)
-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January, 2018)
-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 Pacific Region(EASR-II)* (November 1998)
-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EASR-I)* (February 1995)
-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8*, Vol. 3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0*, Vol. 7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1*, Volume 7, Part 1, Korea and Chin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2-1954*, Volume 15, Part 1, Kore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2-1954*, Volume 15, Part 2, Kore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61-1963*, Volume 22,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64-1968*, Volume 29, Part 1, Kore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69-1972*, Volume 19, Part 1, Kore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6)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76-1988*, Volume 29, Part 1, Kore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0)
- U.S. Department of State, *Treaties and Conventions Concluded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ther Powers Since July 4, 1776*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89)
- U.S. Department of Defense, 1995. "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 Pacific Region" <https://nautilus.org/globalproblem-solving/us-security-strategy-for-the-east-asia-pacific-region/>(검색일: 2023.4.1.)
- United States 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of 1949(1949.10.6.),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4-1 (1950)
-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Mutual Defense Treaty with Korea: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4)

## 2) 단행본

- Bush, George W., *Decision Points*(New York: Crown Publishers, 2010)
- Casey, Steven, *Selling the Korean War: propaganda, politics, and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1950-19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Chyba, Christopher F., *Biological Terrorism, Emerging Diseases, and National Security* (New York: Rockefeller Brothers Fund Project on World Security, 1998)
-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North Atlantic Treaty (repor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6 June 1949*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9)
- Condit, Kenneth W.,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7-1949* (Washington DC.: GPO, 1996)
- Fields, David P., *Foreign Friends Syngman Rhee, American Exceptionalism, and the Division of Korea*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2019)
- Futrell, Robert Frank., *Ideas, Concepts, Doctrine: Basic Thinking i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1907-1960* (Maxwell AFB, AL: Air University, 1989)
- Hilderbrand, Robert C., *Dumbarton Oaks: The Origin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arch for Postwar Securit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 Ireland, Timothy, *Creating the Entangling Alliance: the origins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1981)

- Johnsen, William T. et al, *The Principles of War in the 21st Century: Strategic Considerations*,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1995)
- Kaplan, Lawrence S., *NATO 1948: The Birth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07)
- Lewis Sorley, *A Better War* (New York: Harcourt Books, 1999)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The Global Infectious Disease Threat and Its Implication for the United States*,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99-17D (January 2000)
- Paul, Roland A., *American Military Commitments Abroad*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73)
- Pollack, Jonathan D. and Young Koo Cha, ed. al.,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the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Santa Monica: RAND, 1995)
- Powalski, Ronald, *Toward an Entangling Alliance: American Isolationism, Internationalism and Europe, 1901-1950*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 Robert S. McNamara, *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 (Washington, D.C.: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1995)
- Ross, Steven T., *American War Plans, 1945-1950* (New York: Frank Cass, 1996)
- Sawyer, Robert K.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5)
-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The Global Posture Review of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Stationed Overseas, 23 September 2004*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5)
- Snyder, Scott A.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2018)
- Straton, Samuel S.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to Withdraw United States Forces from Kore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 Stueck, William,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The White House, “Press Conference by President Trump”(Capella Hotel, Singapore: June 12, 2018)
- The White House,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10 and National Security Directive Presidential 33: Biodefense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April 28, 2004)
- The White Hous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June 16, 2009)
-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Defense Burdensharing Panel, *Common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and How the Cost and Benefits of Those Interests Are Shared by the US and Its Allies – Hearing Before the Defense Burdensharing Panel of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th Congress Second Session 20–413 Hearing Held April 19, 198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
-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Threat Assessment, Military Strategy,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United States Senate, One Hundred First Congress, Second Session, December 12, 1989; January 23-24-25-26-30; February 2-6-7-8-21-22; March 7, 1990 Vol. 4*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Report of the Defense Burdensharing Panel of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House of Representatives, August 198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 Vance, Cyrus, *Hard Choices* (New York: Simon & Shuster, 1983)
- Watson, Robert J.,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3–1954* (Washington DC.: GPO, 1998)
- Westmoreland, General William C., *A Soldier Reports* (New York: Da Capo Press Inc., 1989)

### 3) 논문·보고서

- Anne LeLand, “American War and Military Operations Casualties: Lists and Statistic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bruary 26, 2010)
- Asia-Pacific Defense Forum, “US Defense Secretary Visits the Asia-Pacific”(US Information Agency Press Leases, 1998)
- Choi, Kang and Joon-Sung Park, “South Korea: Fears of Abandonment and Entrapment,”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t Century Asi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 Defense Science Board, “Task Force on Cyber Deterrence,”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017)

- Hal Brands and Evan Montgomery, “One War is not Enough: Strategy and Force Planning for Great Power Competition,”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Vol. 3, No. 2 (Spring 2020)
- Jenna McLaughlin, “A digital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rages on behind the scenes of war,” *NPR* (June 3, 2022)
- Jim Heintz and Frank Bajak, “Ukraine police seize cash in raid on major ransomware gang,” *AP* (June 17, 2021)
- Mabon, David W., “Elusive Agreements: The Pacific Pact Proposals of 1949–1951,” *Pacific Historical Review* 57–2 (1988)
- Roland Paris,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rt?,” *International Security* (Fall 2001)
- Weathersby, Kathryn,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Series No. 8* (November 1993),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4) 기타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s 1990 and 1991”(https://www.congress.gov/bill/101st-congress/senate-bill/1352/all-info)
- AP News,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 Daniel Sneider, “The U.S.–Korea Tie: Myth and Reality,”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12, 2006)
- Michael Finnagan Interview(Washington D.C., 2013.5.14.)
- NATO Archives(https://www.nato.int)
- Specops, “The countries experiencing the most ‘significant’ cyber-attacks”(July 13, 2020)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https://www.ipcc.ch)
- 미국 공군지휘참모대학(https://www.airuniverisity.af.edu/ACSC)
- 미국 교육사령부(https://www.tradoc.army.mil)
- 미국 국방대학교(https://www.ndu.edu)
- 미국 국방성(https://www.defense.gov)
- 미국 국방인력데이터센터(US DMDC)

## 부록

미국 육군지휘참모대학(<https://armyuniversity.edu/cgsc/cgsc>)

미국 합동참모대학(<https://www.jfsc.ndu.edu>)

미국 합동참모본부(<https://www.jcs.mil>)

미국 해군지휘참모대학(<https://usnwc.edu/college-of-naval-command-and-staff>)

주한 미국대사관(<https://seoul.usembassy.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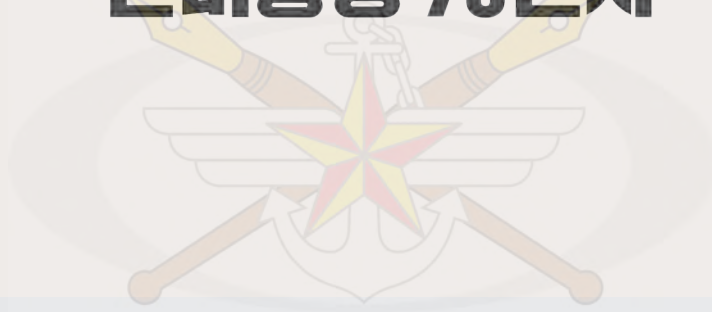


Alliance for the Future  
한미동맹 70주년





# 한미동맹 70년사



찾아보기

<p><b>ㄱ</b></p>	개정합의의사록	118, 119	김일성	26, 29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303, 311	깜란(Cam Ranh)	304, 308	
	경수로 공급협정	224, 229	퀴년(Qui Nhon)	304, 308, 314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474	<p><b>ㄴ</b></p>		
	공군지원단(은마부대)	306, 311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	307, 308, 312
	공급안보약정(SOSA)	354, 356		남북기본합의서	198, 226
	교환서한	109, 110, 115		년·워너 수정안	75, 140, 279
	국가재건최고회의	273, 300		노태우	76, 126, 320
	국군 현대화계획	81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46
	국군의료지원단	320, 385, 468		닉슨(Richard M. Nixon)	46, 71, 309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249, 251	닌호아(Ninh Hoa)		306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354, 355, 356	<p><b>ㄷ</b></p>			
국방수권법(NDAA)	346			다국적군 평화활동(MNFPO)	317
국방우주전략서	347		다낭(Da Nang)	303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350		다산부대	318, 323, 327	
국방전략기술	360		다이만부대	318, 319, 334	
국방협력활동(DCA)	300		대량살상무기(WMD)	253	
국제안보지원군(ISAF)	323, 328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340	
국제우주상항 조치연습	350		대량응징보복(KMPR)	260	
국제원자력기구(IAEA)	198, 217, 23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17, 248, 251	
군사 기본교리	212, 213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230	
군사고문단(KMAG)	25	대북제재	229, 243, 277		
군사교리	202, 207, 211	대전협정	45, 62		
군사영어학교	202	덜레스(John Foster Dulles)	27, 34, 37, 38, 40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	281	독수리연습	186, 192, 199		
군사정전위원회	51, 80, 179, 279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302		
글로벌 센티넬(Global Sentinel)	349	동맹연습	186, 187, 191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14, 42, 369	동아시아전략구상	50, 130, 279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92, 293, 294	동아시아전략보고서	76, 77		
기본합의각서(주한미군 기지 이전)	127				
기술협력소위원회(TCSC)	357, 359, 363				

부록

동의부대 319, 323, 328  
 뗏(Tet)공세 307, 309

ㄹ

러스크(Dean Rusk) 305  
 로버트슨(Walter Robertson) 33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30, 39

ㄴ

말리크(Yakov Malik) 29  
 맥아더(Douglas MacArthur) 28, 60, 266  
 맹호6호작전 314  
 미 극동군사령부 267  
 미 제8군사령부 95, 168, 267  
 미·북 고위급회담 217, 222, 229  
 미·북정상회담 249, 390  
 미군정 60, 201, 202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55, 56, 369  
 미래연합군사령부 55, 294, 295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52, 97, 158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161, 253  
 미사일지침 258, 259, 348

ㄷ

반공포로 석방 33, 35  
 반접근/지역거부 86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352, 353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154, 352, 361  
 방산협력소위원회(DICSC) 352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06, 137, 141,  
 밴플리트(James Van Fleet) 63, 112, 203

뱀부계획 61, 201  
 버거(Samuel Berger) 108  
 베리아상륙작전 314  
 베트남전쟁 16, 65, 300  
 부시(George W. Bush) 50, 198, 225  
 북핵문제 228, 233, 240  
 북핵위기 217, 225, 232  
 브라운 각서 43, 305, 306  
 브라운(Winthrop G. Brown) 304  
 브릭스(Ellis O. Briggs) 30  
 비마부대 318, 320, 322  
 비핵화 공동선언 225, 226, 235

ㄷ

사드체계(THAAD) 260  
 사이공(Saigon) 303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345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343, 344, 345  
 샘물교회 사건 323  
 서희부대 319, 330  
 수도사단(맹호부대) 304  
 스미스특수임무부대 28  
 스탈린(Joseph V. Stalin) 26  
 스트라이커전투여단 89, 102, 184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 289  
 싱글러브 73

ㅇ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30, 65, 255  
 안보정책구상 52, 86, 160  
 안전조치협정 217, 221, 236

안케고개전투	315
애치슨(Dean Acheson)	24, 27
야외기동훈련	196, 198
야전훈련사령부	203
여단전투단	85, 101, 184
연구개발정보교환협정(DEA)	361
연구공학차관	359
연합검증평가	293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280, 281, 282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139
연합전시증원 연습	190, 194, 196
연합지휘소훈련	294
연합토지관리계획(LPP)	106, 131, 132
오쉬노부대	318, 219, 323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294, 296
용산지기이전협정(YRP)	106, 132, 133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231, 243
우주상황인식(SSA)	349, 350, 351
위성턴션언	15, 163, 36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68
유엔군사령부	48, 174, 282
유엔평화유지활동(PKO)	300, 317
울곡사업	47, 82, 368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186, 193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186
이동외과병원	308
이라크 자유작전	317, 329, 334
이세호	309, 310
이승만	20, 109, 296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88

ㅈ

자유세계군사원조정책회의(FWMAPC)	313
자이툰부대	10, 318, 334
자조(self-help)	36, 137
작전지휘권	28, 263, 316
잠정적 군사안전협정	263, 264
전략동맹 2015	161, 289, 296
전략동맹공동실무단	160, 288
전략적 유연성	84, 90, 93
전략적 전환계획(STP)	54, 286, 287
전시작전통제권	54, 280, 369
전시주둔국지원협정	152, 164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OSS)	351
정보교환기본협정(MIEA)	361
정전협정	20, 30, 71
제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	306, 311
제2해병여단(청룡부대)	304, 311
제9사단(백마부대)	306, 311
제네바 기본합의	199, 229, 245
제마부대	318, 330, 33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	292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21, 22, 30
존슨(Lyndon B. Johnson)	42, 71, 301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DD)	96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MACV)	313
주한미군	14, 127, 368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	124, 132, 136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137, 202, 206
주한미군사령부(USAFIK)	264, 265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37, 108, 152
주한미우주군	89, 96, 346
주한미우주군(USSFK)	346

## 부록

중대전술기지	312, 315	판문점계획	310
지방재건팀(PRT)	328	평시작전통제권	81, 277, 296
지상구성군사령부(GCC)	179, 280	평택	99, 124, 136
직접 군사원조	63	포괄적 전략동맹	14, 42, 369
짜빈동전투	314	포커스 레티나 훈련	188
		폴 라카메라(Paul J. LaCamera)	93, 136
		필리핀	23, 113, 310

## ㅈ

청룡1호작전	314
청마부대	318, 322, 325

## ㅋ

카쓰라-태프트 협정(Katsura-Taft Agreement)	21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97, 126
클라크(Mark Clark)	32
클린턴(Bill Clinton)	222
키리졸브 연습	194
킬체인(Kill Chain)	257, 258, 291

## ㄷ

태권도교관단	42, 302, 308
태극연습	100, 188, 193
태평양동맹	24
통킹만사건	303
트루먼(Harry S. Truman)	24, 266
특별사찰	219, 223, 226
팀스피리트 연습	78, 196, 219

## ㅊ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280
-----------------	-----

## ㅎ

한국노무단(KSC)	112
한국형 3축체계	256, 257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257, 259, 291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253, 256
한미 제1군단(집단) 사령부	168, 170
한미국방각료회담	70, 79, 153
한미군사위원회회의	55, 173, 280
한미동맹 공동비전	286, 287, 368
한미동맹조약	23, 24, 35
한미상설군사위원회(PMC)	280, 285, 295
한미상호방위조약	14, 137, 304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158, 284, 288
한미안보협의회의	33, 143, 273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161, 253, 257
한미연합방위체제	16, 103, 193
한미연합사단	87, 102, 184
한미연합어전군사령부(CFA)	80, 172, 208
한미연합이행실무단	286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255, 288, 294
한미합의의사록	35, 107, 296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62, 254, 255
한미확장억제협의체	162, 163, 254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224, 229, 243

부록

합동군사지원단(JUSMAG-K)	139	확장억제	16, 163, 342
항구적 자유작전	317, 322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255
해군수송전대(백구부대)	311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160, 253, 288
해성부대	318, 324, 386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118
해외 주둔미군 재배치계획	52, 93, 131	환태평양훈련	199
해외비교시험(FCT)	357		
핵실험	53, 163, 253		
핵우산	53, 103, 252	4D 작전개념	104, 256, 257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103, 254, 342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	84, 86, 130
핵협의그룹(NCG)	54, 163, 256	5·16군사정변	272, 300
핵확산금지조약(NPT)	130, 217, 236	9·19 공동성명	234, 239, 241
헐(John E. Hull)	39, 412	ANZUS(미·호주·뉴질랜드 동맹)	23
험프리(Hubert H. Humphrey)	305	LPP 개정 협정	133
형사재판권	45, 110, 120		



Alliance for the Future  
한미동맹 70주년



## 한미동맹 70년사(1953~2023)

---

### ■ 집필

계 용 호	국방사부 부장
이 미 숙	국방사부 선임연구원
최 정 준	국방사부 선임연구원
김 선 호	국방사부 선임연구원
강 승 모	국방사부 연구원

### ■ 자문(가나다순)

김 영 호	국방대학교 교수
김 재 창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김 정 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박 상 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박 영 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박 용 옥	전 국방부차관
박 원 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 태 균	서울대학교 교수
이 신 화	고려대학교 교수
정 경 영	한양대학교 교수
조 성 렬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한 용 섭	전 국방대학교 부총장

### ■ 감수

김 열 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장 삼 열	전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황 수 현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 한미동맹 70년사(1953~2023)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 국방출판지원단 김정은  
**인쇄** 국방출판지원단 N23110861



**신고유형**  
북간첩/테러범, 보안사고(위변)  
외국군/방산 스파이, 군사기밀유출

**상금내역**  
간첩선-간첩: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최고 1억원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방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cc.mil.kr](http://www.dcc.mil.kr)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Alliance for the Future  
한미동맹 70주년



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224-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ISBN 979-11-5598-107-8(93390)